2025.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토보고

총괄부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 CONTENTS

## 총 괄


### Ⅰ. 개 관

1. 편성 배경 ····· 3

2. 주요 내용 및 세부구성 ····· 11

### Ⅱ. 주요 검토사항

1.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정성 ····· 31

2. 세입경정 ····· 45

3. 추경안의 재원 ····· 56

4.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집행실적 ····· 64

### Ⅲ. 유형별 검토

1. 개요 ····· 70

2. 경기 진작 ····· 71

3. 민생 안정 ····· 80

# 부 처 별

## 정무위원회

### ❖ 금융위원회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91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93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95
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현금출자를 통한 재원 기반 마련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 필요 ····· 95
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신규): 신속한 부실채권 소각 및 연계지원 병행 필요 ····· 102

### ❖ 국가보훈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10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13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115

1. 광복회 선양 행사: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15

# 기획재정위원회

## ❖ 기획재정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121
2. 세입경정 현황 ····· 124
3.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26

###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세입경정: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마련 및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병행할 필요 ····· 13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지출증액> ····· 139

2.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2년간의 대규모 세수부족과 2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 ····· 139

【기후대응기금】

<지출감액> ····· 142

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2024년 이월금 및 2025년 투자계획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 가능성 검토 필요 ····· 142

## 교육위원회

❖ 교육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4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52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의대 지원사업: 의대정원 증원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관련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 필요 ····· 155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증액> ····· 158

2. (국립대학 시설) 보수사업: 예산비목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58

3. 4단계 두뇌한국21: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절차 신속 진행 필요 ····· 160

**<세출감액>** ····· 162

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감액편성된 국가장학금 집행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 16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6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70

####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정보보호 강화 관련 사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검토 필요 등 ····· 172

**【일반회계】**

**<세출증액>** ····· 178

2.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위험 산업군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필요 등 ····· 178

3.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예산 연내 활용 필요 ····· 183

4. 공공AX 프로젝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 투입의 성과 도출 필요 ····· 187
5. AI 혁신펀드 사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 시점을 앞당길 필요 등 ····· 192

# 외교통일위원회

## ❖ 외교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9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02

###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가별 협력사업(ODA): 2024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 204

**【일반회계】**

<세출감액> ····· 212
2.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차년도 회의일정 및 국가별 참석 조기 확정을 위해 적극적 협의 필요 ····· 212

## ❖ 통일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216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19

# 국방위원회

## ❖ 국방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2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26

###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방시설 사업: 병영생활관 등 4개 시설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228

**【일반회계】**

<세출증액> ····· 233
2. 병영생활관: 본예산의 임시숙영시설 감리비 중 자체감리를 고려한 집행 필요
····· 233

# 행정안전위원회

## ❖ 행정안전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3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41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243**
1. 민생회복 소비쿠폰(신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철저 등 ····· 2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증액> ····· 254**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수도권·비수도권 국비 차등지원의 타당성 검토 ···· 254

## ❖ 소방청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5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59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260**
1. 국립소방병원 건립: 차질없는 개원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노력 필요 ····· 26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26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70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273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기존 펀드 결성 상황 및 투자여력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273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증액> ····· 278
2. 문화예술향유지원: 형평성 제고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 ····· 278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증액> ····· 282
3. 국내관광 역량 강화: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 ····· 282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출증액> ····· 286
4.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제로페이 이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등 ····· 28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291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94

###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회계·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재원 강구방안 검토 필요 ····· 296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기간 내에 효율적 사업추진 필요 ····· 3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출증액> ····· 303
3. 축사시설개선(융자):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 303

## ❖ 해양수산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306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09

## Ⅱ. 사업별 검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증액> ····· 311

1.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본격적인 물김 생산 시기 이전에 장비 도입 완료 필요 ····· 311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세출증액> ····· 314

2.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14
3.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공사비 등이 연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필요 ····· 3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325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28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세출증액> ····· 330

1.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신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유념할 필요 ····· 330
2.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신규): 보다 철저한 과제관리 필요 ····· 3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증액> ····· 338

3. 지역산업위기대응(신규): 보전금리 적정성 검토 및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38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증액> ····· 344

4.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신규): 기존 사업의 인프라를 적극 참고하여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 등 ····· 344
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위법 및 부적정 대출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353

# ❖ 중소벤처기업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35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60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세출증액> ····· 364

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후속사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 364
2. 창업패키지: 창업지원 관련 민간 컨설팅에 대한 지속적 점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71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출증액> ····· 375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병행 필요 ····· 375
4.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일반회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 검토 필요 ····· 383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증액> ····· 391

5.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신규): 홍보 강화 등 사업대상자의 신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391
6.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신규) 등: 분할상환 지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필요 ····· 397
7.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단가 상승 시 자부담 비율 설정 등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검토 필요 ····· 402

# 보건복지위원회

## ❖ 보건복지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411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414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418**

1. 의료급여: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418
2. 긴급복지: 구체적 예산 추계 및 적기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 422
3.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다 면밀한 본예산 편성을 통한 추경 소요 최소화 필요 ····· 426
4.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지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민간자본보조 비목으로 변경 검토 필요 ····· 430
5.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자부담 기준 보완 필요 ····· 433
6. 소록도병원관리: 적기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436

**<세출감액> ····· 442**

7.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추경 감액에 따른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442

# 환경노동위원회

## ❖ 환경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44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450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453**
1. 국가하천정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453
2.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수위관측소 선정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필요 ····· 457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감액> ····· 462**
3. 스마트하수관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추가 감액 검토 필요 등 ····· 462

**<세출증액> ····· 467**
4. 폐기물처리시설: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46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감액> ····· 470**
5. 무공해차 보급사업: 향후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47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증액> ····· 474**
6. 도시침수대응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474

## ❖ 고용노동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47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480

###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출증액> ····· 483**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추경 증액분의 연내집행 노력 필요 ····· 483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및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 강화프로그램 목표의 적극적인 달성 노력 필요 ····· 489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계정)】**

**<지출증액> ····· 498**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의 내실있는 관리 필요 등 ····· 498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지출증액> ····· 505**
4. 구직급여: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 50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증액> ····· 512**
5. 건강일터조성지원: 폭염 전 적정한 지원을 위한 집행관리 필요 ····· 512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증액> ····· 516**
6.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주 융자 활성화 및 융자 회수 관리 필요 ····· 516

# 국토교통위원회

## ❖ 국토교통부

###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52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526

###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SOC 투자: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530

**【일반회계】**

<세출증액> ····· 533
2.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자기자본비율 확대 유도 필요 ····· 533
3.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선로사용료 추가 징수액 고려 필요 ····· 537
4.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노후시설 교체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 ····· 541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세출증액> ····· 545
5.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연내 착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545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출감액> ····· 548
6.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 548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증액> ····· 552**

7.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보조율 검토 필요 ····· 552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지출증액> ····· 555**

8.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현금·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555

9. 전세임대: 각 유형별 수요에 대한 검토 필요 ·····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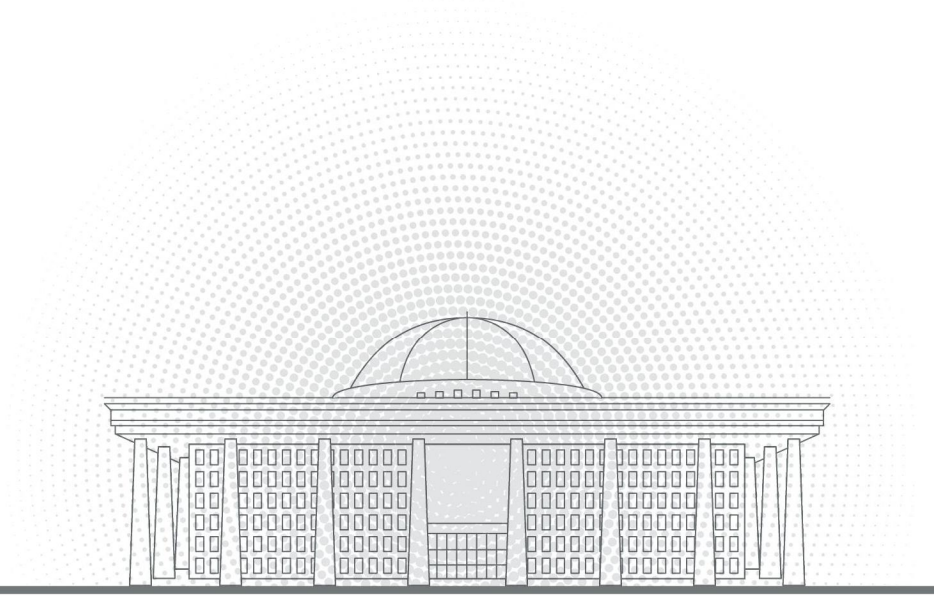
**<지출감액> ····· 564**

10. 행복주택(융자) : 행복주택 출자사업의 미집행 금액 고려 필요 ····· 56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 【 총 괄 】



# 총 괄

# Ⅰ. 개 관

## 1. 편성 배경

### 가. 편성이유

정부는 경기 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국세수입 부족 등 재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30.5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을 2025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재정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추경안 편성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 경제는 최근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과 대외 여건 악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들은 2025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임.

OECD는 2024년 말 2.1%로 전망하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3월 1.5%로 낮춘 데 이어, 6월 3일에는 1.0%로 재차 하향하였고, IMF(2.2%→2.0%→1.0%), 한국은행(1.9%→1.5%→0.8%), 한국개발연구원(2.0%→1.6%→0.8%) 등도 모두 전망치를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음.

문의 : 양창석 예산결산조사관 ycs82@assembly.go.kr (02-6788-5684)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esembly.go.kr (02-6788-5679)

[2025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내역]

(단위: %, %p)

| 구분 | | 조정 전(A) | 1차 조정(B) | 2차 조정(C) | 조정치(C-A) |
|---|---|---|---|---|---|
| 국제기구 | OECD | 2.1 (2024.12.) | 1.5 (2025.3.) | 1.0 (2025.6.) | △1.1 |
| | IMF | 2.2 (2024.10.) | 2.0 (2025.1.) | 1.0 (2025.4.) | △1.2 |
| 국내기관 | 한국은행 | 1.9 (2024.11.) | 1.5 (2025.2.) | 0.8 (2025.5.) | △1.1 |
| | KDI | 2.0 (2024.11.) | 1.6 (2025.2.) | 0.8 (2025.6.) | △1.2 |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한국의 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4년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2025년 1분기 △0.2%로 나타나며, 4분기 연속 0.0% 내외의 저성장 또는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투자의 감소임. 건설투자는 2024년 2분기 이후 매 분기 △3.0%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고, 2025년 1분기에도 △3.1%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전체 건설투자가 △1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5년 월별 주요 건설지표를 보면, 건설기성은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5.0%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4월에는 △20.5% 감소하였음.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 3월에는 증가하였으나, 4월에는 다시 전환되어 △17.5% 감소하였음.

그밖에 설비투자는 2024년 하반기에 증가세(3분기 5.4%, 4분기 0.8%)를 보였으나, 2025년 1분기에는 △0.4% 감소하였으며, 민간소비 역시 2024년 하반기에 약증가세(3분기 0.4%, 4분기 0.2%)를 보였으나, 2025년 1분기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0.1% 감소로 전환되었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2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 2023 | | | | 2024p | | | | 2025p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 국내총생산 (GDP) | 0.4 (1.3) | 0.7 (1.2) | 0.8 (1.5) | 0.5 (2.2) | 1.2 (3.4) | △0.2 (2.2) | 0.1 (1.4) | 0.1 (1.1) | △0.2 | (0.0) |
| 민 간 소 비 | 0.6 | 0.0 | 0.1 | 0.3 | 0.5 | 0.0 | 0.4 | 0.2 | △0.1 | (0.6) |
| 정 부 소 비 | 0.9 | △1.9 | 0.6 | 0.3 | 0.9 | 0.8 | 0.9 | 0.4 | 0.0 | (2.3) |
| 건 설 투 자 | △0.2 | △0.5 | 1.5 | △3.9 | 4.5 | △3.3 | △3.6 | △4.1 | △3.1 | (△13.3) |
| 설 비 투 자 | △1.7 | 0.5 | △3.6 | 2.2 | △1.0 | 0.0 | 5.4 | 0.8 | △0.4 | (5.8)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3 | 0.7 | 0.7 | △0.5 | 1.9 | △1.3 | △0.2 | 0.9 | 1.5 | (0.9) |
| 재 고 증 감[주1)] | 0.7 | △0.7 | △0.4 | △0.1 | △0.4 | 0.2 | 0.3 | 0.1 | △0.1 | (0.5) |
| 수 출 | 3.6 | 1.3 | 2.5 | 3.4 | 1.3 | 1.5 | 0.0 | 0.6 | △0.6 | (1.5) |
| 수 입 | 4.0 | △2.5 | 0.1 | 1.9 | △0.3 | 1.6 | 1.3 | 0.2 | △1.1 | (2.1) |

주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2)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25.6.5.

[월별 주요 건설지표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 건설기성(불변) | 7.8 | △4.7 | △27.4 | △19.8 | △16.3 | △20.5 |
| 건설수주(경상) | △18.3 | 10.9 | △15.5 | 3.0 | 13.3 | △17.5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 수준을 유지해오다 2024년 10월부터 단계적 인하를 시작하여, 2025년 5월 29일 현재 2.50%까지 인하되었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2022년 5.1%, 2023년 3.6%에서 2024년에는 2.3%로 하향된 이후, 2025년에는 월별로 1.9~2.2%의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활용 기반은 일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내역]

(단위: %, %p)

| 변경일자 | | 기준금리 | 직전 대비 조정치 |
|---|---|---|---|
| 연도 | 월일 | | |
| 2023 | 1월 13일 | 3.50 | 0.25 |
| 2024 | 10월 11일 | 3.25 | △0.25 |
| | 11월 28일 | 3.00 | △0.25 |
| 2025 | 2월 25일 | 2.75 | △0.25 |
| | 5월 29일 | 2.50 | △0.25 |

자료: 한국은행 발표자료로 재작성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CPI 상승률 | 2.5 | 5.1 | 3.6 | 2.3 | 2.2 | 2.0 | 2.1 | 2.1 | 1.9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및「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바탕으로 재작성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 시행과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2025년 4월 미국이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4월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5월 △8.1%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 및 해상물류 지연 등 에너지, 공급망, 무역 등 관련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대(對) 미국 수출 추이(전년동월 대비)]

(단위: 억달러, %)

| 구 분 | 2024년도 | | | | | | | | 2025년도 | | | | |
|---|---|---|---|---|---|---|---|---|---|---|---|---|---|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수출액 | 109 | 113 | 102 | 99 | 104 | 104 | 104 | 119 | 93 | 99 | 111 | 106 | 100 |
| 증감률 | 15.5 | 17.7 | 9.4 | 10.9 | 3.3 | 3.3 | △5.2 | 5.4 | △9.5 | 0.8 | 2.2 | △7.0 | △8.1 |

자료: 관세청,「2025년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는바, 2~5분위는 모두 증가한 반면 1분위 소득은 △1.5%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1]은 전년 동기 5.98배에서 6.32배로 상승하였음. 반면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 증가율(4.2%)은 전체 평균(2.2%)보다 높은바,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2025년도 1/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 | 1분위 | | 2분위 | | 3분위 | | 4분위 | | 5분위 | | 전체평균 | |
|---|---|---|---|---|---|---|---|---|---|---|---|---|
|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소 득 | 1,140 | △1.5 | 2,759 | 1.9 | 4,391 | 2.9 | 6,578 | 5.8 | 11,884 | 5.6 | 5,351 | 4.5 |
| 가계지출 | 1,578 | 4.2 | 2,415 | △1.3 | 3,519 | 3.9 | 4,941 | 1.3 | 7,908 | 2.8 | 4,072 | 2.2 |

자료: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영업자들은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체 자영업자 수는 2022년 2분기 4.8만명에서 2024년 말 14.8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0.69%에서 2024년 1.67%로 증가하였음. 또한 연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020년 3,983만원에서 2024년 3,763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2.05억원에서 2.29억원으로 증가하여 채무부담이 심화되고 있음.[2]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자영업자[3]의 대출규모는 2023년말 기준 115.7조원에서 2024년말 기준 125.4조원으로 9.6조원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2024년 대출 연체율은 11.16%로 전체 대출 연체율 1.67%보다 크게 높은 상황임.

다만, 이와 같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심리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행의 경제심리지수(ESI)는 2024년 12월 83.3에서 2025년 5월 92.2로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같은 기간 88.2에서 101.8로 전환되었으며, 기업심리지수(CBSI) 또한 2025년 2월 85.3에서 5월 90.7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제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1)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배율

2)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3)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취약자영업자 차주로 분류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4.12.

[경제심리 관련 지수 월별 변동 추이]

| 구분 | 2024년도 | | | | | | | | | | | | 2025년도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 경제 심리지수 | 91.8 | 93.7 | 92.5 | 94.8 | 94.1 | 95.0 | 96.3 | 94.5 | 94.0 | 92.8 | 93.0 | 83.3 | 86.7 | 90.2 | 87.2 | 87.5 | 92.2 |
| 소비자 심리지수 | 101.6 | 101.9 | 100.7 | 100.7 | 98.4 | 100.9 | 103.7 | 100.8 | 100.0 | 101.8 | 100.7 | 88.2 | 91.2 | 95.2 | 93.4 | 93.8 | 101.8 |
| 기업 심리지수 | 89.8 | 88.2 | 89.8 | 91.7 | 93.3 | 96.0 | 95.5 | 92.8 | 91.6 | 92.5 | 91.8 | 87.3 | 85.9 | 85.3 | 86.7 | 87.9 | 90.7 |

자료: 한국은행 발표자료로 재작성

한편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BSI)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25년 1월 체감BSI가 47.6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5월에는 70.0으로 상승하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전망BSI는 2025년 4월 86.9로 상승하였으나, 6월에는 79.1로 다소 하락하여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통시장의 체감BSI는 2025년 2월 40.3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5월 59.0으로 상승 중이나 2024년 12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망BSI는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2025년 4월 84.5로 상승한 이후 2025년 6월 69.9로 하락하였음.

[월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 구분 | | 2024년도 | | | | 2025년도 | | | | | |
|---|---|---|---|---|---|---|---|---|---|---|---|
|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소상공인 | 체감BSI | 65.6 | 69.1 | 62.4 | 53.7 | 47.6 | 51.3 | 66.5 | 63.6 | 70.0 | - |
| | 전망BSI | 82.8 | 83.9 | 79.8 | 79.3 | 75.5 | 69.3 | 86.6 | 86.9 | 79.8 | 79.1 |
| 전통시장 | 체감BSI | 76.2 | 61.1 | 63.2 | 49.7 | 49.3 | 40.3 | 55.6 | 53.1 | 59.0 | - |
| | 전망BSI | 88.7 | 79.2 | 82.1 | 77.5 | 76.9 | 60.7 | 80.6 | 84.5 | 75.2 | 69.9 |

자료: e-나라지표,「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경기 부진과 민생 위기의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관세 협상, 국제 분쟁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정부는 경기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참고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하반기 집행임을 감안하여 금년 0.1%p (연간 0.2%p)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이 0.14~0.32%p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나. 편성요건

「국가재정법」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4)]

법령상 명시된 요건 외에도 추경안 제도의 취지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추경안 편성 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장기화된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제고,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 및 민간소비 부진에 따라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안정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던 경제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4)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규모인 382.4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같은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을 불용해야 하므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5] 따라서 세수결손에 대응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5) 2023년 및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세입경정 없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예산 불용 등으로 대응함.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결하였음.

## 2. 주요 내용 및 세부구성

### 가. 주요 내용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세입경정 10.3조원을 포함한 총 30.5조원 규모로 ① 경기 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 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와 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조원)

| | | |
|---|---|---|
| **기본방향** |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 |
| | ◇ ① 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 |
| **주요내용** | **1 경기 진작** | **15.2** |
| | ▸ 소비여력 보강 | 11.3 |
| | ▸ 건설경기 활성화 | 2.7 |
| |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1.2 |
| | **2 민생 안정** | **5.0** |
| |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1.4 |
| | ▸ 고용안전망 강화 | 1.6 |
| |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 0.7 |
| | ▸ 지방재정 보강 등 | 1.3 |
| | **3 세입경정** | **10.3** |
| |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먼저, 경기 진작 분야는 총 15.2조원 규모로, 소비여력 보강에 11.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7조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1.2조원이 편성되었음.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6]을 지급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철도·항만 등 SOC의 조기 착공 및 준공 지원(1.4조원)과 PF 지원(0.8조원) 등[7]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유망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0.9조원)과 AI·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0.3조원)할 계획임.

다음으로, 민생 안정 분야는 총 5.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6조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에 0.7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1.3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4조원)[8]를 마련하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확대(161.1→179.8만명, 1.3조원)하며, 전세임대 3천호 추가공급

6) <민생회복 소비쿠폰>

| 총 5,117만명 | 지원단가 | | | | 지원금액 | |
|---|---|---|---|---|---|---|
| | 상위 10% (512만명) | 일반국민 (4,296만명) | 차상위 (38만명) | 기초수급자 (271만명) | 전체 | (국비) |
| 1차 선지급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8.5조 | (6.6조) |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 4.6조 | (3.6조) |
| 합 계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13.2조 | (10.3조) |

7)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

(단위: 조원)

| | 투자 규모 | 재정지원 | 지원내용 |
|---|---|---|---|
| **합 계** | **+5.4** | **(+0.8)** | |
| (초기) 마중물 리츠 | +1.0 | (+0.3) | · 우수사업장 초기 브릿지론 단계 공공 선투자 |
| (착공) PF 특별보증 | +2.0 | (+0.2) | ·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대출 보증 신규 지원 |
| (분양) 미분양 안심환매 | +2.4 | (+0.3) | ·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

8)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지원 내용 | | 인원 | 소요 |
|---|---|---|---|
| **< 합 계 >** | | **143만명** | **1.4조원** |
| ❶ 장기연체채권매입·소각 | ·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 113만명 | 0.4조원 |
| ❷ 새출발기금 확대 | · 90% 원금감면 확대(당초취약계층 → 개선취약계층·저소득층)<br>· 대상기간 연장(당초' 20.4~' 24.11월 → 개선' 20.4~' 25.6월) | 10만명 | 0.7조원 |
| ❸ 성실회복프로그램 (정책자금) | · (경영위기) 분할상환(7년) + 이자지원 1%p<br>· (폐업기업) 분할상환(15년) + 우대금리(2.7%) | 19만명 | 0.3조원 |
| ※ 은행권 채무조정(민간대출) | · 분할상환(5~30년)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br>※ 2024.12월 발표 | - | (민간재원) |

등 취약계층 지원(0.6조원)과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1.0조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세입경정을 살펴보면, 내수회복 지연과 美관세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실질성장률 2.2%)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0.8%[9])되는 등 국세수입 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예산을 10.3조원 감액편성하였음.

세목별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5개 세목이 감액되었고, 상속·증여세 1개 세목이 증액되었음. 감액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4조 6,872억원(△5.3%)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4조 3,095억원(△4.3%),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1,036억원(△7.3%), 개별소비세 9,184억원(△9.5%), 교육세 2,637억원(△4.4%) 순임.

9)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5)」, 2025.5.29.

## 나. 분야별 재원배분

이번 추경안에 따른 총지출은 제1회 추경 대비 14.9조원(2.2%) 증가한 702.0조원으로 이를 12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13.3조원(11.9%)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이 이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임.

다음으로 크게 증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2.3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5조원) 순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지원인원 확대(1.3조원) 및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4조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반면, 교육 분야, 환경 분야 및 외교·통일 분야는 각각 △2.4조원, △0.4조원, △0.3조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추경안의 재원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특히 교육 분야는 세입경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동되어 감액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안]

(단위: 조원, %)

| 구 분 | 본예산 | | 제1회 추경(A) | | 제2회 추경안(B) | | 증감(C=B-A) | |
|---|---|---|---|---|---|---|---|---|
| | | | | | | | | 증감률 (C/A) |
| **총 지 출** | **656.6** | **(100.0)** | **687.1** | **(100.0)** | **702.0** | **(100.0)** | **14.9** | **2.2** |
| 1. 보건·복지·고용 | 237.6 | (36.2) | 249.7 | (36.3) | 252.0 | (35.9) | 2.3 | 0.9 |
| 2. 교육 | 95.2 | (14.5) | 98.6 | (14.4) | 96.2 | (13.7) | △2.4 | △2.4 |
| 3. 문화·체육·관광 | 8.7 | (1.3) | 8.8 | (1.3) | 8.9 | (1.3) | 0.1 | 1.1 |
| 4. 환경 | 12.5 | (1.9) | 13.1 | (1.9) | 12.8 | (1.8) | △0.4 | △3.1 |
| 5. R&D | 26.5 | (4.0) | 29.7 | (4.3) | 29.7 | (4.2) | 0.0 | 0.0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8.0 | (4.3) | 34.0 | (4.9) | 35.5 | (5.1) | 1.5 | 4.4 |
| 7. SOC | 26.4 | (4.0) | 25.9 | (3.8) | 26.2 | (3.7) | 0.2 | 0.8 |
| 8. 농림·수산·식품 | 25.4 | (3.9) | 26.6 | (3.9) | 26.8 | (3.8) | 0.2 | 0.8 |
| 9. 국방 | 59.4 | (9.0) | 61.2 | (8.9) | 61.4 | (8.7) | 0.1 | 0.2 |
| 10. 외교·통일 | 7.5 | (1.1) | 7.7 | (1.1) | 7.5 | (1.1) | △0.3 | △3.9 |
| 11. 공공질서·안전 | 24.4 | (3.7) | 25.8 | (3.8) | 25.8 | (3.7) | 0.1 | 0.4 |
| 12. 일반·지방행정 | 110.5 | (16.8) | 112.0 | (16.3) | 125.3 | (17.8) | 13.3 | 11.9 |

주)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 다. 소관별 구성

이번 추경안의 세출·지출 증액 사업은 총지출 기준 12개 상임위원회 17개 부처의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10조 9,513억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2,967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2조 354억원, 고용노동부 1조 5,929억원, 기획재정부 1조 3,199억원, 금융위원회 1조 1,004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 405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증액 사업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수 | 증액규모 |
|---|---|---|---|---|
|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부 | 일반회계 | 15 | 93,153 |
| | 금융위원회 | 일반회계 | 3 | 1,100,354 |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 | 1 | 2,570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2 | 1,272,874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 4 | 44,429 |
| | | 소 계 | 7 | 1,319,873 |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5 | 223,536 |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 8 | 191,751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 | 13,960 |
| | | 소계 | 11 | 205,711 |
| 국방위원회 | 국방부 | 일반회계 | 7 | 222,760 |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3 | 10,298,811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 | 652,500 |
| | | 소계 | 5 | 10,951,311 |
| | 소방청 | 일반회계 | 1 | 6,64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회계 | 2 | 115,000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1 | 26,000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1 | 10,000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 | 23,579 |
| | | 영화발전기금 | 1 | 27,100 |
| | | 소계 | 6 | 201,679 |
|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 118,755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25,000 |
|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 | 22,400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 | 20,000 |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수 | 증액규모 |
|---|---|---|---|---|
| | | 소계 | 6 | 186,155 |
| | 해양수산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 41,064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3 | 42,583 |
| | | 소계 | 6 | 83,647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일반회계 | 5 | 28,006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3,665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6 | 463,942 |
| | | 소계 | 12 | 495,613 |
|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2 | 78,000 |
| | |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 3 | 650,000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3 | 312,530 |
| | | 소계 | 8 | 1,040,530 |
| 보건복지위워회 |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9 | 177,440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10,349 |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2 | 7,955 |
| | | 응급의료기금 | 1 | 1,762 |
| | | 소계 | 13 | 197,506 |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 일반회계 | 3 | 63,900 |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5 | 172,797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7,000 |
| | | 소계 | 9 | 243,697 |
| | 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 5 | 221,678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 | 45,049 |
| | | 고용보험기금 | 2 | 1,303,000 |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1 | 8,129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1 | 15,000 |
| | | 소계 | 10 | 1,592,856 |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일반회계 | 6 | 516,310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 | 623,485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 | 15,000 |
| | | 주택도시기금 | 4 | 880,645 |
| | | 소계 | 35 | 2,035,440 |
| **12개 상임위** | **17개 부처** | **합 계** | **159** | **20,200,470** |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의 세출·지출 감액 사업은 총지출 기준으로 11개 상임위원회 13개 부처 5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2조 6,569억원(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1조 2,449억원, 환경부 △5,473억원, 보건복지부 △2,278억원 등의 순으로 감액되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감액 사업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세부사업수 | 감액규모 |
|---|---|---|---|
|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부 | 1 | △9,724 |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4 | △87,000 |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10 | △2,656,902 |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 8 | △60,506 |
| | 통일부 | 3 | △170,000 |
| 국방위원회 | 국방부 | 2 | △80,500 |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1 | △16,092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4 | △112,383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1 | △50,000 |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4 | △227,757 |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 4 | △547,250 |
| | 고용노동부 | 1 | △9,189 |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11 | △1,244,863 |
| **11개 상임위** | **13개 부처** | **54** | **△5,272,166** |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동일 세부사업 내에 증액·감액이 혼재된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증액·감액이 동시에 있는 세부사업(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처 | 회계 | 세부사업(내역사업) | 증감 계 | 증액 | 감액 |
|---|---|---|---|---|---|
| 교육부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 | 61,500 | 195,700 | △134,200 |
| | | (보수사업) | | (195,700) | |
| | | (의대교육여건개선) | | | (△134,200) |
| 문화체육 관광부 | 일반회계 |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 25,000 | 30,000 | △5,000 |
| |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 | (30,000) | |
| |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 | | (△5,000) |
| **합계** | | | **86,500** | **225,700** | **△139,200** |

자료: 기획재정부

## 라. 회계·기금별 구성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증액내역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예산에서 15조 1,086억원, 기금에서 5조 919억원이 증액되어 총 20조 2,005억원이 증액되었음.

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13조 1,138억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2,967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75억원(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661억원(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1,259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기금 중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1조 3,030억원(구직급여 1조 2,92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 2,729억원(지방채 인수 1조원), 주택도시기금 8,806억원(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500억원(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000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증액 사업의 회계·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회계・기금 | | 세부사업수 | 증감규모 | 주요 증액내용 |
|---|---|---|---|---|
| 예산 | 일반회계 | 69 | 13,113,812 |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2,967억원<br>·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원<br>·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원<br>·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3,000억원<br>·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3,000억원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6 | 159,819 | · 수리시설개보수 816억원<br>· 국가어항 271억원<br>· 농촌용수개발 222억원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20 | 666,068 | ·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1,259억원<br>· 평택-오송 2복선화 1,000억원<br>·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1,000억원 |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1 | 45,049 | · 진폐위로금 451억원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5 | 172,797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610억원<br>· 하수처리장 설치 576억원<br>·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304억원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 | 727,474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00억원<br>·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525억원 |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5 | 223,536 | · 국립대학 시설확충 1,957억원<br>·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200억원 |
| | 소 계 | 123 | 15,108,555 |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기금 | | 세부사업수 | 증감규모 | 주요 증액내용 |
|---|---|---|---|---|
| 기금 | 복권기금 | 1 | 2,570 |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26억원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2 | 1,272,874 | · 지방채인수(융자) 1조원<br>·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729억원 |
| | 국유재산관리기금 | 4 | 44,429 | ·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96억원<br>·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99억원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1 | 26,000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60억원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1 | 10,000 | · 문화예술향유 지원 100억원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 | 23,579 | · 국내관광 역량 강화 236억원 |
| | 영화발전기금 | 1 | 27,100 | · 영화정책지원 271억원 |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 | 22,400 | · 축사시설현대화(융자) 224억원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 | 20,000 |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0억원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6 | 463,942 | · 전력효율향상 3,261억원<br>·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1,000억원<br>·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50억원 |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3 | 650,000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000억원<br>·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000억원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3 | 312,530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813억원<br>· 소상공인재기지원 263억원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2 | 7,955 | · 모자보건사업 54억원 |
| | 응급의료기금 | 1 | 1,762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8억원 |
| | 고용보험기금 | 2 | 1,303,000 | · 구직급여 1조 2,929억원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1 | 8,129 |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81억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 | 15,000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50억원 |
| | 주택도시기금 | 4 | 880,645 |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4,000억원<br>· 전세임대(융자) 3,208억원 |
| | 소 계 | 36 | 5,091,915 | |
| **합 계** | | 159 | **20,200,470** | |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감액내역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예산에서 △4조 6,044억원, 기금에서 △6,678억원 등 총 △5조 2,722억원이 감액되었음.

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2조 4,158억원(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감액되어 가장 크게 감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9,684억원(가덕도신공항건설 △5,224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568억원(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4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03억원(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원) 등의 순으로 감액되었음.

기금 중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2,765억원(행복주택(융자) △1,24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되었고, 다음으로는 남북협력기금 △1,700억원(민생협력지원 △878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843억원(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843억원) 순으로 감액되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지출 감액 사업의 회계·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회계·기금 | | 세부사업수 | 증감규모 | 주요 감액내용 |
|---|---|---|---|---|
| 예산 | 일반회계 | 25 | △2,415,834 | ·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br>·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236억원<br>· 기초연금지급 △637억원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8 | △968,375 | · 가덕도신공항건설 △5,224억원<br>·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1,821억원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 | △530,250 | · 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원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2 | △17,000 |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100억원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16,092 |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161억원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 | △656,800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400억원 |
| | 소 계 | 42 | △4,604,351 | |
| 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2 | △40,000 |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 △320억원 |
| | 기후대응기금 | 1 | △17,000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170억원 |
| | 국유재산관리기금 | 1 | △30,000 | · 비축토지매입 △300억원 |
| | 남북협력기금 | 3 | △170,000 | · 민생협력지원 △878억원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1 | △84,327 |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843억원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 | △50,000 | · 소상공인지원(융자) △500억원 |
| | 주택도시기금 | 3 | △276,488 | · 행복주택(융자) △1,244억원 |
| | 소 계 | 12 | △667,815 | |
| **합 계** | | **54** | **△5,272,166** | |

주) 동일 세부사업 내 증액·감액이 혼재한 경우 각각을 증액·감액으로 집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 마. 비목별 구성

이번 추경안에서 순증액된 세목은 총지출 기준 총 28개, 순감액된 세목은 총 14개임.

순증액된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조 9,780억원, 일반출자금(460-01) 2조 1,813억원, 보험금(320-04) 1조 2,929억원,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1조원 등의 순으로 증액되었음.

순감액된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교부금(330-02) △1조 9,982억원, 사업출연금(350-02) △3,313억원, 보수(110-01) △823억원, 국제부담금(340-02) △259억원 순으로 감액되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비목별 증감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목 - 세목 | | 예산 | 기금 | 합계 |
|---|---|---|---|---|
| 인건비 (110) | 보수(01) | △82,300 | - | △82,300 |
| | 일용임금(04) | △205 | 6 | △199 |
| | 소 계 | △82,505 | 6 | △82,499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01) | 4,174 | 27,187 | 31,361 |
| | 공공요금및제세(02) | △24 | 2 | △22 |
| | 특근매식비(05) | △24 | 5 | △19 |
| | 임차료(07) | △396 | 40 | △356 |
| | 시설장비유지비(09) | 6,503 | - | 6,503 |
| | 일반용역비(14) | △3,625 | - | △3,625 |
| | 관리용역비(15) | 895 | - | 895 |
| | 기타운영비(16) | - | 1 | 1 |
| | 소 계 | 7,503 | 27,236 | 34,739 |
| 여비 (220) | 국내여비(01) | - | 25 | 25 |
| | 국외업무여비(02) | △20 | - | △20 |
| | 소 계 | △20 | 25 | 5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01) | 80 | - | 80 |
| | 관서업무추진비(02) | - | 4 | 4 |
| | 소 계 | 80 | 4 | 84 |
| 직무수행경비 (250) | 직책수행경비(02) | △20 | - | △20 |
| 연구용역비 (260) | 일반연구비(01) | 200 | 30 | 230 |
| 보전금 (310) | 기타보전금(04) | 277,995 | - | 277,995 |

(단위: 백만원)

| 목 - 세목 | | 예산 | 기금 | 합계 |
|---|---|---|---|---|
| 민간이전 (320) | 민간경상보조(01) | △55,622 | 278,471 | 222,849 |
| | 민간위탁사업비(02) | 51,855 | - | 51,855 |
| | 보험금(04) | - | 1,292,900 | 1,292,900 |
| | 이차보전금(05) | 1,140 | - | 1,140 |
| | 민간자본보조(07) | 28,677 | 2,570 | 31,247 |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08) | 30,440 | △17,000 | 13,440 |
| | 고용부담금(09) | △20,823 | - | △20,823 |
| | 소 계 | 35,667 | 1,556,941 | 1,592,608 |
| 자치단체이전 (330) | 자치단체경상보조(01) | 10,946,972 | 31,059 | 10,978,031 |
| | 자치단체교부금(02) | △1,998,235 | - | △1,998,235 |
| | 자치단체자본보조(03) | △3,056 | 49,800 | 46,744 |
| | 소 계 | 8,945,681 | 80,859 | 9,026,540 |
| 해외이전 (340) | 국제부담금(02) | △25,889 | - | △25,889 |
| 일반출연금 (350) | 기관운영출연금(01) | 475 | - | 475 |
| | 사업출연금(02) | △637,575 | 306,269 | △331,306 |
| | 소 계 | △637,100 | 306,269 | △330,831 |
| 연구개발출연금 (360)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05) | 7,684 | 1,000 | 8,684 |
| 건설보상비 (410) | 건설보상비(00) | 130,372 | △30,000 | 100,372 |
| 건설비 (420) | 기본조사설계비(01) | △12,742 | - | △12,742 |
| | 실시설계비(02) | △8,144 | - | △8,144 |
| | 공사비(03) | 450,991 | 40,792 | 491,783 |
| | 감리비(04) | 5,249 | 3,599 | 8,848 |
| | 시설부대비(05) | 277 | 38 | 315 |
| | 소 계 | 435,631 | 44,429 | 480,060 |
| 유형자산 (430) | 자산취득비(01) | 27,579 | - | 27,579 |
| 융자금 (450) | 기타민간융자금(04) | - | 364,428 | 364,428 |
| | 지방자치단체융자금(05) | - | 1,000,000 | 1,000,000 |
| | 소 계 | - | 1,364,428 | 1,364,428 |
| 출자금 (460) | 일반출자금(01) | 1,381,346 | 800,000 | 2,181,346 |
| 상환지출 (510) | 차입금이자(03) | - | 272,874 | 272,874 |
| **합 계** | | **10,504,204** | **4,424,100** | **14,928,304**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 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내역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함께 총 2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국회제출사유 | | 구 분 | 지출변경액 (총지출 기준) | 비 고 |
|---|---|---|---|---|
|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국회제출 필요 | 프로그램(항) 20% 초과 증액 | 국유재산관리기금 | 14,429 | 사업성기금 |
| | | 남북협력기금 | △170,000 | |
| | | 영화발전기금 | 27,100 |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463,942 | |
| | | 주택도시기금 | 604,157 | |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650,000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62,530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1,272,874 | 계정성기금 |
| | 프로그램(항) 신설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22,400 | 사업성기금 |
|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체변경도 가능하지만 국회 제출 | | 대외경제협력기금 | △40,000 | 사업성기금 |
| | | 기후대응기금 | △17,000 |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58,327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10,000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23,579 |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0,000 | |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7,955 | |
| | | 응급의료기금 | 1,762 | |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8,129 | |
| | | 고용보험기금 | 1,303,000 | 사회보험성기금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15,000 | 사회보험성기금 |
| | | 복권기금 | 2,570 | 계정성기금 |
| | | 외국환평형기금 | △51,000 | 계정성기금 |
| - | | 합 계 (22개) | 4,424,100 | ※외평기금 제외 |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70조[10]에 따라 주요항목(프로그램)의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기존계획의 20%(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남북협력기금·영화발전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주택도시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개임.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기금·기후대응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고용보험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등 13개 기금은 자체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제출되었음.

10)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 사. 의무·재량지출 구성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을 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93억원 감소한 365조 323억원이고, 재량지출은 15조 2,076억원 증가한 336조 9,746억원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의무지출은 감소하고 재량지출은 증가하면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0%로 △1.2%p 감소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48.0%로 1.2%p 증가하였음.

이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등)과 기초연금(△637억원) 등의 의무지출이 감액된 반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2,96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원 등의 재량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 유형별 비교(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p)

| 구 분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 (B-A) |
|---|---|---|---|---|
| □ 의무지출 | 365,018,030 | 365,311,551 | 365,032,275 | △279,276 |
| (구성비) | (54.2) | (53.2) | (52.0) | (△1.2) |
| □ 재량지출 | 308,283,550 | 321,766,976 | 336,974,556 | 15,207,580 |
| (구성비) | (45.8) | (46.8) | (48.0) | (1.2) |
| 계 | 673,301,580 | 687,078,527 | 702,006,831 | 14,928,304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의무지출 구성내역(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 (B-A) |
|---|---|---|---|---|
| □ 의무지출 | 365,018,030 | 365,311,551 | 365,032,275 | △279,276 |
| 1. 지방이전 | 142,425,223 | 142,425,223 | 140,426,988 | △1,998,235 |
| 2. 복지분야 법정지출 | 181,810,989 | 181,961,823 | 183,454,597 | 1,492,774 |
| 3. 이자지출 | 29,382,059 | 29,524,746 | 29,797,620 | 272,874 |
| 4. 기타 의무지출 | 11,399,759 | 11,399,759 | 11,353,070 | △46,689 |

자료: 기획재정부

## 아. 신규 증액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159개(20조 2,005억원) 사업으로, 이 중 올해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세부사업은 총 15개(9.4%), 증액 규모로는 12조 2,588억원(60.7%)이며, 이 중 13개의 신규 세부사업은 최근 3년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바가 없는 사업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증액사업 중 신규사업 비중]

| 구분 | 증액 세부사업 개수 | | 증액규모 | |
|---|---|---|---|---|
| 신규 세부사업 | 15개 | 9.4% | 12조 2,588억원 | 60.7% |
| 최근 3년('23~'25)간 편성연혁 없는 경우 | 13개 | 8.2% | 11조 2,588억원 | 55.7% |
| 기존사업 | 144개 | 90.6% | 7조 9,416억원 | 39.3% |
| 합 계 | 159개 | 100.0% | 20조 2,005억원 | 100.0% |

주) 신규사업: 세부사업 기준 202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신규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포함)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11]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되, 같은 조에 따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한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15호[12]에 따라 그 내역을 추경안에 첨부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에 첨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다음 1건임.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 사업명 | 추경안 | 면제 사유 |
|---|---|---|---|
| 국토교통부 |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융자) | 100,000 | 예비타당성 조사 실익 미흡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9호)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2025.6.23.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조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위 1건의 사업 외에 신규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포함)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없다는 입장임.

이번 추경안에서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음.[13)]

13) 아래 표의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추경안 중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목록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중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
|---|---|---|---|---|---|
| | |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행안부 | 일반회계 | 민생회복 소비쿠폰 | - | 10,296,667 | - |
| 산업부 | 전력기금 | 전력효율향상 |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 430,432 | 326,103 |
| 국토부 | 일반회계 |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 - | 300,000 | - |
|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 400,000 | 200,000 |
| | | |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 | 200,000 |
| | | 미분양안심환매(융자) | - | 100,000 | - |
| 과기부 | 일반회계 | AI 혁신펀드 | - | 100,000 | - |
| | | 공공AX 프로젝트 | - | 30,000 | - |
| | | AI반도체 실증지원 |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 98,370 | 30,000 |
| 금융위 |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 400,000 | - |
| 중기부 | 중진기금 | 재도약 촉진 |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 91,549 | 50,000 |
| | 소진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 825,646 | 281,269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자. 12대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이번 추경안의 지자체보조금은 총 11조 248억원이며,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는 3조 7,1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대응지방비가 가장 크게 소요되는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분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과 지역사랑상품권(0.6조원) 등에서 기인하며, 다음으로는 SOC 분야 1,660억원, 보건·복지·고용 분야 1,156억원, 환경 분야 743억원 순으로 나타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단위: 백만원)

| 분 야 | 금 액 | | |
|---|---|---|---|
| | 2025 지자체보조금 추경예산안(A) | 2025 대응지방비 추계(B) | 합계 (A+B) |
| 합 계 | 11,024,775 | 3,714,666 | 14,739,441 |
| 1. 보건·복지·고용 | 126,909 | 115,587 | 242,496 |
| 2. 교육 | △60,000 | - | △60,000 |
| 3. 문화·체육·관광 | 19,500 | 5,500 | 25,000 |
| 4. 환경 | △334,893 | 74,287 | △260,606 |
| 5. R&D | - | - | -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49,800 | 16,600 | 66,400 |
| 7. SOC | 239,429 | 166,035 | 405,464 |
| 8. 농림·수산·식품 | 61,000 | 9,750 | 70,750 |
| 9. 국방 | - | - | - |
| 10. 외교·통일 | - | - | - |
| 11. 공공질서·안전 | 36,708 | 36,408 | 73,116 |
| 12. 일반·지방행정 | 10,886,322 | 3,290,500 | 14,176,822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2025.6.23.

# Ⅱ. 주요 검토사항

## 1.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

### 가.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현황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642.4조원으로, 10.3조원 규모의 국세수입 경정과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10.4조원(△1.6%) 감소하였음.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은 702.0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5.4조원(6.9%), 제1회 추경 대비 14.9조원(2.2%)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세출확대 20.2조원에서 지출구조조정 5.3조원을 차감한 것임.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구분 | 2024년 본예산 | 2025년 | | | 제1회 추경 대비(B-A)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
| ◇ 총수입 | 612.2 | 651.6 | 652.8 | 642.4 | △10.4 |
| (증가율) | (△2.2) | (6.4) | (6.6) | (4.9) | |
| ◇ 총지출 | 656.6 | 673.3 | 687.1 | 702.0 | 14.9 |
| (증가율) | (2.8) | (2.5) | (4.6) | (6.9) | |
| ◇ 통합재정수지 | △44.4 | △21.7 | △34.3 | △59.6 | △25.3 |
| (GDP 대비, %) | (△1.8) | (△0.8) | (△1.3) | (△2.2) | (△1.0%p) |
| ◇ 관리재정수지 | △91.6 | △73.9 | △86.4 | △110.4 | △24.0 |
| (GDP 대비, %) | (△3.6) | (△2.8) | (△3.3) | (△4.2) | (△0.9%p) |
| ◇ 국가채무 | 1,195.8 | 1,273.3 | 1,280.8 | 1,300.6 | 19.8 |
| (GDP 대비, %) | (47.4) | (48.1) | (48.4) | (49.0) | (+0.6%p)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총수입은 세입경정 등으로 10.4조원이 감소하고 총지출이 14.9조원 증가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제1회 추경 대비 적자규모가 △25.3조원 확대된 △59.6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 대비 적자규모는 △2.2%로서 제1회 추경 대비 △1.0%p 악화됨.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15]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10.4조원 적자로 제1회 추경 대비 적자규모가 △24.0조원 확대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4.2%로 △0.9%p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16]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6조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9.8조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제1회 추경 대비 0.6%p 증가할 전망임. 이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마련을 위한 19.8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에서 기인함.

정부는 「국가재정법」[17]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번 추경안에 따른 변화요인을 반영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총수입·총지출)]

(단위: 조원)

|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총수입 | 2024~2028계획 | 612.2 | 651.6주) | 677.7 | 706.4 | 731.5 |
| | ■(+) 세외·기금수입 확대 | - | +1.3 | - | - | - |
| | 2025년 제1회 추경 | 612.2 | 652.8 | 677.7 | 706.4 | 731.5 |
| | ■(-) 국세수입 감소 | - | △10.3 | △10.9 | △11.5 | △12.1 |
| | ■(-) 기금수입 감소 | | △0.04 | - | - | -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612.2 | 642.4 | 666.8 | 694.9 | 719.4 |
| 총지출 | 2024~2028계획 | 656.6 | 673.3주) | 704.2 | 730.3 | 756.2 |
| | ■(+) 추경 사업 | - | +13.8 | - | - | - |
| | 2025년 제1회 추경 | 656.6 | 687.1 | 704.2 | 730.3 | 756.2 |
| | ■(+) 추경 사업 | - | +14.9 | - | - | -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656.6 | 702.0 | 704.2 | 730.3 | 756.2 |

주) 2025년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15)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6)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이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0% 이내에서 관리하는 중기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17)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먼저 총수입과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 등으로 총수입은 2025년에 △10.4조원[18]이 감소하고, 2026년 이후에는 2025년 국세수입 감액(△10.3조원)에 따른 감소효과로 매년 11~12조원 수준의 국세수입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반면, 총지출은 2025년에만 14.9조원이 증가하고 2026년 이후에는 당초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재정수지·국가채무)]

(단위: 조원)

|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통합재정수지 | 2024 ~ 2028계획 | △44.4 | △21.7[1)] | △26.6 | △23.9 | △24.7 |
| | (GDP대비, %) | (△1.8) | (△0.8) | (△1.0) | (△0.8) | (△0.8) |
| | 2025년 제1회 추경 | △44.4 | △34.3 | △26.6 | △23.9 | △24.7 |
| | (GDP대비, %) | (△1.8) | (△1.3) | (△1.0) | (△0.8) | (△0.8)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44.4 | △59.6 | △37.4 | △35.4 | △36.8 |
| | (GDP대비, %) | (△1.8) | (△2.2) | (△1.4) | (△1.2) | (△1.2) |
| 관리재정수지 | 2024 ~ 2028계획 | △91.6 | △73.9[1)] | △75.8 | △73.1 | △72.2 |
| | (GDP대비, %) | (△3.6) | (△2.8) | (△2.7) | (△2.5) | (△2.4) |
| | 2025년 제1회 추경 | △91.6 | △86.4 | △75.8 | △73.1 | △72.2 |
| | (GDP대비, %) | (△3.6) | (△3.3) | (△2.7) | (△2.5) | (△2.4)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91.6 | △110.4 | △86.7 | △84.5 | △84.4 |
| | (GDP대비, %) | (△3.6) | (△4.2) | (△3.1) | (△2.9) | (△2.8) |
| 국가채무 | 2024 ~ 2028계획 | 1,195.8 | 1,273.3[1)] | 1,353.9 | 1,432.5 | 1,512.0 |
| | (GDP대비, %) | (47.4) | (48.1) | (49.1) | (49.8) | (50.5) |
| | 2025년 제1회 추경 | 1,195.8 | 1,280.8 | 1,357.7 | 1,436.2 | 1,515.8 |
| | (GDP대비, %) | (47.4) | (48.4) | (49.2) | (50.0) | (50.6)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1,195.8 | 1,300.6 | 1,388.4 | 1,478.4 | 1,570.1 |
| | (GDP대비, %) | (47.4) | (49.0) | (50.3) | (51.4) | (52.5) |
| ※ 명목GDP(2024~2028계획) | | 2,520.5 | 2,646.5 | 2,759.5 | 2,875.0 | 2,993.0 |
| (변경) | | 2,556.9[주2)] | 2,654.0[3)] | 2,759.5 | 2,875.0 | 2,993.0 |

주 1) 2025년 본예산 기준
2) 2024년 GDP 잠정치(한국은행)
3)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월)의 2025년 성장전망 수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18) 국세수입 감소 △10.34조원, 기금수입 감소 △0.04조원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이번 추경안에 따라 △59.6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6년 이후 2028년까지 적자규모가 매년 총수입의 감소분만큼 제1회 추경 대비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관리재정수지 역시 이번 추경안에 따라 △110.4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6년 이후 2028년까지 매년 총수입의 감소분만큼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4.2%를 기록한 후 2026~2028년 △2.8~△3.1%로 제1회 추경(△2.4~△2.7%) 대비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임.

국가채무의 경우, 이번 추경안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 추가발행 등으로 2025년 1,300.6조원을 기록하고, 2026년 이후 매년 전년도 제1회 추경 대비 국가채무 증가액과 총수입 감소분을 합한 규모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8년 국가채무는 1,570.1조원, GDP 대비 52.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나. 검토의견

**첫째, 내수회복 지연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결손 전망에 따라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수기반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는데, 기획재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으로 전망되고,[19] 2025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0조원으로 20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할 전망임.

「국가재정법」[20]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21]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2023~2025년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잠정 | 2025년 전망 |
|---|---|---|---|
| ○ 국세감면액 (A) | 69.8 | 71.4[1)] | 78.0 |
| ○ 국세수입총액[2)] (B) | 370.4 | 364.4 | 412.2 |
| ○ 국세감면율 [A/(A+B)] | 15.8 | 16.3[1)] | 15.9 |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3)] | 14.3 | 14.6 | 15.2 |

주 1) 2024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작성한 2024년 전망치
2)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5.3.

그러나 2023~2025년 국세감면율을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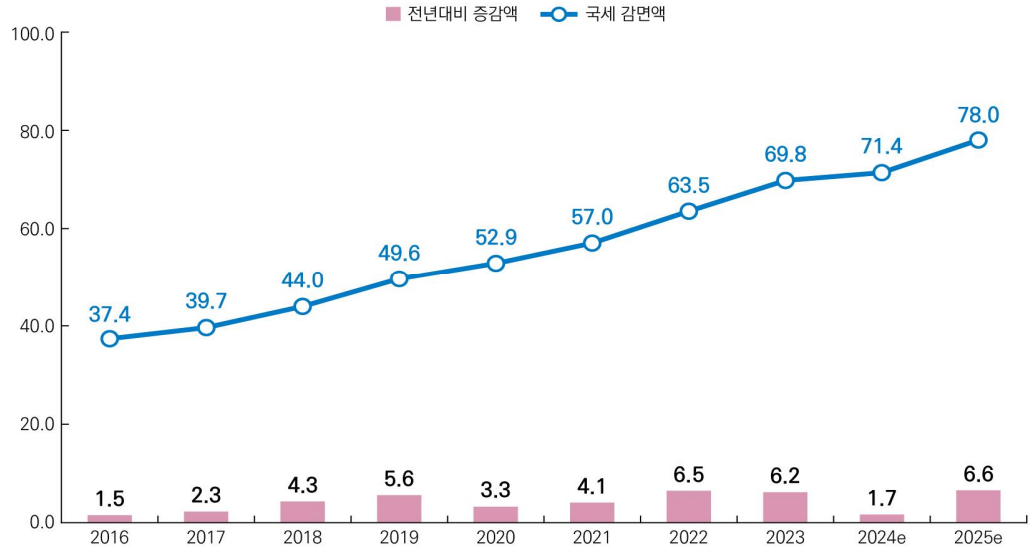
19) 2024년 확정적인 국세감면액은 2025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20)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6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LPG·가공과일 등 할당관세 6개월 연장 등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시행하면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22]

[국세감면액 추이: 2016~2025년]




주) 2024년·2025년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된 잠정·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대한민국 조세」, 2025.3.28.

정부는 조세지출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수준[23]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인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은 36조 9,999억원 수준임.[24]

22)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보도자료, 2025.6.16.

23) 〈조세지출 항목의 유형별 구분기준〉

낮음 ← 관리 가능성 → 높음

| 〈구조적 지출〉 | | | 〈잠재적 관리대상〉 | | | 〈적극적 관리대상〉 | | |
|---|---|---|---|---|---|---|---|---|
| 특정성 | 대체 가능성 | 폐지 가능성 | 특정성 | 대체 가능성 | 폐지 가능성 | 특정성 | 대체 가능성 | 폐지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항목 → 정비가 사실상 곤란 | | | ※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고, 특정성·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 | | ※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 | |

24)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 국세감면액 | 697,664 | 100.0 | 714,305 | 100.0 | 780,178 | 100.0 |
| 구조적지출 | 152,630 | 21.9 | 168,204 | 23.5 | 179,044 | 22.9 |
| 잠재적 관리대상 | 210,961 | 30.2 | 216,894 | 30.4 | 228,543 | 29.3 |
| 적극적 관리대상 | 330,442 | 47.4 | 326,690 | 45.7 | 369,999 | 47.4 |
| 경과규정 | 3,631 | 0.5 | 2,517 | 0.4 | 2,591 | 0.3 |

주)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없는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또한 202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65건이며, 2025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총 16.9조원 규모로, 이 중 61건은 적극적 관리대상, 나머지 4건은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2025년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각각 15.1조원, 1.8조원 수준임.[25)]

이번 추경안에서 국세수입 결손 전망에 따라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준수하고 국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세청은 어려운 국세수입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 실적을 제고하는 동시에 징수를 포기하는 정리보류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2024년말 기준 19조 3,562억원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정리보류액[26)]은 2024년 8조 7,993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36조 8,219억원에 이르고 있음.

---

25) 국회예산정책처, 「2025대한민국조세」, 2025.3.28., 592p.

26)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5조 7,644억원을 위탁하고 413억원을 징수하여 0.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징수율은 0.49~0.76% 수준으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수납액 및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징수결정액 | | 2,856,578 | 3,355,359 | 3,729,198 | 3,445,554 | 3,486,236 |
| 수납액 | | 2,408,798 | 2,871,869 | 3,194,457 | 2,824,493 | 2,789,419 |
| 정리 대상 체납액 (A) | 합계 | 271,866 | 279,128 | 329,848 | 382,724 | 402,962 |
| | 당해연도 발생액 | 192,364 | 196,711 | 229,935 | 243,089 | 242,112 |
| | 전년도 이월액 | 92,844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 | 결정취소·결정감 | 13,342 | 12,867 | 14,623 | 16,038 | 16,641 |
| 체납 정리 현황 (B) | 합계 | 176,582 | 164,592 | 174,175 | 205,233 | 209,400 |
| | 현금정리 | 105,999 | 103,003 | 114,082 | 117,272 | 121,407 |
| | 정리보류 | 70,583 | 61,589 | 60,093 | 87,961 | 87,993 |
| 정리중체납(A-B) |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193,562 |

자료: 국세청

[최근 10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총 위탁금액 (A) | 징수액 (B) | 징수율 (B/A) | 위탁수수료 지급액 |
|---|---|---|---|---|
| 2015 | 3,155,322 | 15,555 | 0.49 | 997 |
| 2016 | 4,623,082 | 29,215 | 0.63 | 1,496 |
| 2017 | 5,829,306 | 37,846 | 0.65 | 2,000 |
| 2018 | 6,127,475 | 39,036 | 0.64 | 1,946 |
| 2019 | 6,340,757 | 42,901 | 0.68 | 2,000 |
| 2020 | 6,147,171 | 39,713 | 0.65 | 1,732 |
| 2021 | 6,326,740 | 43,522 | 0.69 | 1,523 |
| 2022 | 6,251,867 | 47,698 | 0.76 | 1,569 |
| 2023 | 6,129,553 | 45,258 | 0.74 | 1,522 |
| 2024 | 5,764,433 | 41,347 | 0.72 | 1,623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고령사회로의 전환 등 어려운 국세수입 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체납을 줄이고, 체납 시 재산 추적조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 실적 제고 및 징수를 포기하는 정리보류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세입경정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총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 등 국세수입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 등으로 총수입은 2025년에 △10.4조원[27]이 감소하고, 2026년 이후 2028년까지 국세수입 경정(△10.3조원)에 따른 감소효과로 매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2조원 수준의 국세수입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총수입 | 2024~2028계획 | 612.2 | 651.6주) | 677.7 | 706.4 | 731.5 |
| | ■(+) 세외·기금수입 확대 | - | 1.3 | - | - | - |
| | 2025년 제1회 추경 | 612.2 | 652.8 | 677.7 | 706.4 | 731.5 |
| | ■(-) 국세수입 감소 | - | △10.3 | △10.9 | △11.5 | △12.1 |
| | ■(-) 기금수입 감소 | | △0.04 | - | - | -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612.2 | 642.4 | 666.8 | 694.9 | 719.4 |

주) 2025년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약 5,167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5만명 내외로 감소하며,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전환됨과 동시에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28]

27) 국세수입 감소 △10.34조원, 기금수입 감소 △0.04조원

28)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24.9.

이러한 총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국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성장 기조[29]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등 국세수입 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정부는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22.7조원과 외평채 발행규모 3조원 축소를 상계하여 추가 국채 발행규모를 19.8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3조원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국가채무의 질적 저하가 발생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5조원으로,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및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을 보면, 이번 추경안으로 인한 적자국채 추가발행 규모는 22.7조원이며, 원화표시 외평채 감축규모 3조원[30]을 상계하여 추경안에 따른 국채 순증규모는 19.8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임.[31]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공채 발행수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 (A) | 변경안 (B) | 증감 (B-A) | (B-A)/A |
| 국공채 발행수입 | 158,422,061 | 158,422,061 | 197,552,551 | 207,065,023 | 229,804,470 | 22,739,447 | 11.0 |

자료: 기획재정부

2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하여 지난 전망(2024.10월)에 비해 0.2%p 하향 조정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5.3.).

30)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증액(12억불 → 35억불)하면서 같은 금액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감액(20조원 → 16.7조원)하였고, 이번 추경안에서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추가로 3조원 감액(16.7조원 → 13.7조원)하였음.

31) 다만, 22.7조원의 국채 발행규모에서 3조원의 원화 외평채 축소규모를 차감하면 19.7조원으로, 정부가 말하는 국채 순증규모 19.8조원과 0.1조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843억원의 차입금을 국채 발행규모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43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타기금 예수금 항목으로 국채 발행과는 관계가 없으나, 국가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경안의 재원 중 국채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채무는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됨.

‘외환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등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현금자산 등의 대응자산이 있어 적자성 채무보다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결국 미래세대의 국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할 수 밖에 없음.

[2015~2024년 국가채무 성질별 변동 현황]

(단위: 조원,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가채무 | 591.5 | 626.9 | 660.2 | 680.5 | 723.2 | 846.6 | 970.7 | 1,067.7 | 1,126.7 | 1,175.2 |
| (GDP 대비 %) | (34.0) | (34.2) | (34.1) | (33.9) | (35.4) | (41.1) | (43.7) | (45.9) | (46.9) | (46.1) |
| 적자성 채무 | 330.8 | 359.9 | 374.8 | 379.2 | 407.6 | 512.7 | 597.5 | 676.3 | 726.4 | 815.4 |
| (비중) | (55.9) | (57.4) | (56.8) | (55.7) | (56.4) | (60.6) | (61.6) | (63.3) | (64.5) | (69.4) |
| 일반회계 적자보전 | 240.1 | 271.3 | 289.6 | 300.4 | 334.7 | 437.5 | 523.1 | 605.8 | 660.1 | 756.7 |
| (비중) | (40.6) | (43.3) | (43.9) | (44.1) | (46.3) | (51.7) | (53.9) | (56.7) | (58.6) | (64.4) |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 90.7 | 88.6 | 85.1 | 78.8 | 72.9 | 75.2 | 74.4 | 70.5 | 66.3 | 58.7 |
| (비중) | (15.3) | (14.1) | (12.9) | (11.6) | (10.1) | (8.9) | (7.7) | (6.6) | (5.9) | (5.0) |
| 금융성 채무 | 260.6 | 267.0 | 285.4 | 301.3 | 315.6 | 333.9 | 373.2 | 391.3 | 400.3 | 359.8 |
| (비중) | (44.1) | (42.6) | (43.2) | (44.3) | (43.6) | (39.4) | (38.4) | (36.6) | (35.5) | (30.6) |
| 외환시장 안정 | 198.3 | 209.8 | 222.3 | 234.9 | 247.2 | 256.4 | 263.8 | 265.7 | 251.0 | 210.3 |
| (비중) | (33.5) | (33.5) | (33.7) | (34.5) | (34.2) | (30.3) | (27.2) | (24.9) | (22.3) | (17.9) |
| 서민주거 안정 등 | 62.3 | 57.2 | 63.1 | 66.4 | 68.5 | 77.5 | 109.3 | 125.6 | 149.4 | 149.5 |
| (비중) | (10.5) | (9.1) | (9.6) | (9.8) | (9.5) | (9.2) | (11.3) | (11.8) | (13.3) | (12.7) |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의 국가채무의 성질별 변동 현황을 보면,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15년 44.1%에서 2024년 30.6%로 감소한 반면, 적자성 채무 비중은 55.9%에서 69.4%로 13.5%p 증가하였음. 특히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40.1조원에서 756.7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국가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도 40.6%에서 64.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번 추경안으로 인해 금융성 채무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규모 감소로 제1회 추경 대비 △2.8조원 감소하고, 적자성 채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 증가로 22.6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71.0%까지 증가할 전망임.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 2025년 | | |
|---|---|---|---|---|---|---|
| | | 예산 | 결산 | 예산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안 |
| □ 국가채무 | 1,126.8 | 1,195.8 | 1,175.2 | 1,273.3 | 1,280.8 | 1,300.6 |
| ○ 적자성 채무 | 726.4 | 792.3 | 815.4 | 879.5 | 900.9 | 923.5 |
| (비중, %) | (64.5) | (66.3) | (69.4) | (69.1) | (70.3) | (71.0) |
| ○ 금융성 채무 | 400.3 | 403.5 | 359.8 | 393.9 | 379.9 | 377.1 |
| (비중, %) | (35.5) | (33.7) | (30.6) | (30.9) | (29.7) | (29.0)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22.7조원과 외평채 발행규모 3조원 축소를 상계하여 추가 국채 발행규모를 19.8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외평채 발행규모 3조원 축소로 인해 금융성 채무가 3조원 감소하고 적자성 채무가 22.7조원 증가하게 됨.

이로 인해 국채의 순 발행규모는 19.8조원이나,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채무의 질적 저하가 발생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은 아니나, 세입여건의 악화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32]는 전년 대비 60.1조원 증가한 1,217.3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50.7%이며, 2019년 이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33]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60.1조원)는 국고채 증가(58.6조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에서 기인함.

32) < 부채 유형 >

[연도별 일반정부 부채(D2) 추이]

(단위: 조원, %)

| 구 분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 일반정부 부채(D2) | 810.7 | 39.7 | 945.1 | 45.9 | 1,066.2 | 48.0 | 1,157.2 | 49.8 | 1,217.3 | 50.7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주요 국가의 2019~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단위: %)

|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호주 | 46.7 | 57.0 | 55.4 | 50.3 | 49.0 |
| 캐나다 | 90.2 | 118.2 | 113.5 | 107.4 | 107.5 |
| 핀란드 | 65.2 | 75.3 | 73.1 | 73.9 | 77.0 |
| 프랑스 | 97.6 | 114.6 | 112.6 | 111.1 | 109.9 |
| 독일 | 58.6 | 67.9 | 67.9 | 64.8 | 62.7 |
| 이탈리아 | 133.6 | 154.1 | 145.5 | 138.1 | 134.6 |
| 일본 | 236.4 | 258.4 | 253.7 | 256.3 | 249.7 |
| **한국** | **39.7** | **45.9** | **48.0** | **49.8** | **50.7** |
| 포르투갈 | 116.6 | 134.9 | 124.5 | 112.4 | 99.1 |
| 스페인 | 97.6 | 119.2 | 115.6 | 109.4 | 105.0 |
| 스웨덴 | 35.7 | 40.3 | 36.8 | 33.8 | 36.4 |
| 영국 | 85.7 | 105.8 | 105.1 | 99.6 | 100.0 |
| 미국 | 108.0 | 131.8 | 124.5 | 118.6 | 118.7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 유형 | 2023년 규모 (GDP대비) | 포괄범위 | 산출기준 | 활용 |
|---|---|---|---|---|
| 국가채무 (D1) | 1,126.8조원 (46.9%)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 국가재정 운용계획 |
| 일반정부 부채 (D2) | 1,217.3조원 (50.7%) | D1 + 비영리공공기관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국제비교 (IMF, OECD) |
| 공공부문 부채 (D3) | 1,673.3조원 (69.7%) | D2 + 비금융공기업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33)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감(%p): (2019)1.9 (2020)6.2 (2021)2.1 (2022)1.8 (2023)0.9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50.7%로 프랑스(109.9%), 일본(249.7%), 영국(100.0%), 미국(118.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2019년 39.7%에서 2023년 50.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세입여건은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는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0.7%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 국가의 2023~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

(단위: %)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스웨덴 | 31.5 | 32.6 | 33.7 | 33.9 | 33.2 | 32.6 | 31.8 | 30.9 |
| 미국 | 119.0 | 120.8 | 122.5 | 123.7 | 124.9 | 125.9 | 127.0 | 128.2 |
| 독일 | 62.9 | 63.9 | 65.4 | 67.0 | 68.5 | 70.4 | 72.5 | 74.9 |
| 이탈리아 | 134.6 | 135.3 | 137.3 | 138.5 | 138.6 | 138.2 | 137.7 | 137.7 |
| **한국** | **50.7** | **52.5** | **54.5** | **55.7** | **56.6** | **57.5** | **58.4** | **59.2** |
| 캐나다 | 107.7 | 110.8 | 112.5 | 110.9 | 109.4 | 107.9 | 106.2 | 104.1 |
| 프랑스 | 109.7 | 113.1 | 116.3 | 119.1 | 121.6 | 123.9 | 126.1 | 128.4 |
| 일본 | 240.0 | 236.7 | 234.9 | 233.7 | 232.1 | 231.2 | 231.1 | 231.7 |
| 영국 | 100.4 | 101.2 | 103.9 | 105.4 | 106.1 | 106.5 | 106.5 | 106.1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4.),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 2. 세입경정

## 가. 개 요

세입경정은 당해연도 세입이 실제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현실화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 집행예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게 됨.[34)]

이번 제2회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372조 850억원으로, 제1회 추경(382조 4,296억원) 대비 10조 3,446억원(△2.7%) 감액 편성하였음.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61조 4,604억원으로, 제1회 추경(371조 8,050억원) 대비 10조 3,446억원(△2.7%)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 6,246억원으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함.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10.3조원 규모의 국세수입을 감액하고, 이를 국채 추가발행과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35)]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경정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 | | 증감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B-A) | 비율 |
| □ 국세수입 | 3,365,324 | 3,824,296 | 3,824,296 | 3,720,850 | △103,446 | △2.7 |
| ㅇ 일반회계 | 3,261,793 | 3,718,050 | 3,718,050 | 3,614,604 | △103,446 | △2.7 |
| ㅇ 특별회계 | 103,531 | 106,246 | 106,246 | 106,246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34) 2023년 및 2024년 세입경정 없이 △56.4조원,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타 회계·기금의 가용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불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음.

35) 정부는 총 30.5조원(세출확대 20.2조원 + 세입경정 10.3조원)의 재원을 국채발행 19.8조원(64.9%), 지출구조조정 5.3조원(17.3%), 외평채 축소 3조원(9.8%), 기금 여유자금 등 2.4조원(8.0%)으로 충당할 계획임.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5개 세목의 감액과 상속·증여세 1개 세목의 증액으로 총 6개 세목임.

감액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4조 6,872억원(△5.3%)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4조 3,095억원(△4.3%),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1,036억원(△7.3%), 개별소비세 9,184억원(△9.5%), 교육세 2,637억원(△4.4%) 순으로 나타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 | | 제1회 추경 대비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증감률 (B-A/A) |
| 총 국 세 | 3,365,324 | 3,824,296 | 3,824,296 | 3,720,850 | △103,446 | △2.7 |
| ○ 소 득 세 | 1,174,180 | 1,268,192 | 1,268,192 | 1,268,192 | - | - |
| · 종합소득세 | 195,265 | 220,582 | 220,582 | 220,582 | - | - |
| · 양도소득세 | 166,852 | 194,116 | 194,116 | 194,116 | - | - |
| · 근로소득세 | 610,491 | 647,310 | 647,310 | 647,310 | - | - |
| ○ 법 인 세 | 625,113 | 882,544 | 882,544 | 835,671 | △46,872 | △5.3 |
| ○ 상속증여세 | 152,981 | 145,059 | 145,059 | 154,437 | 9,378 | 6.5 |
| ○ 부가가치세 | 822,358 | 876,388 | 876,388 | 833,292 | △43,095 | △4.3 |
| ○ 개별소비세 | 86,566 | 96,663 | 96,663 | 87,479 | △9,184 | △9.5 |
| ○ 증권거래세 | 47,602 | 38,454 | 38,454 | 38,454 | - | - |
| ○ 인 지 세 | 8,460 | 8,836 | 8,836 | 8,836 | - | - |
| ○ 과년도수입 | 65,334 | 65,156 | 65,156 | 65,156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13,891 | 151,048 | 151,048 | 140,012 | △11,036 | △7.3 |
| ○ 관 세 | 69,723 | 84,093 | 84,093 | 84,093 | - | - |
| ○ 교 육 세 | 53,738 | 60,402 | 60,402 | 57,765 | △2,637 | △4.4 |
| ○ 종합부동산세 | 41,847 | 41,215 | 41,215 | 41,215 | - | - |
| ○ 주 세 | 33,282 | 32,093 | 32,093 | 32,093 | - | - |
| ○ 농 특 세 | 70,249 | 74,153 | 74,153 | 74,153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법인세는 2024년 법인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36] 되어 법인세 신고세액이 당초 예상보다 하회하였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전망과 원천징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 대비 4.7조원을 감액하였음.

부가가치세는 2024.12월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2025년 부가가치세 실적 부진 등을 반영하여 4.3조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37] 등으로 1.1조원,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및 발전연료 탄력세율 인하조치[38]로 0.9조원 감액하였음.

참고로, 정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는 세목 중 소득세의 경우 최근 월별실적이 등락하고 있어 올해 전망이 불확실하고, 증권거래세는 6월 주식시장 호조세가 상당하여 하반기 세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관세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수입액 전망이 불확실하여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정부는 세수부족 또는 초과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의 세입경정을 실시하여 왔는데,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10.3조원 규모의 감액경정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감액경정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1.4조원)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경정(△11.4조원)과 유사한 규모임.

[역대 세입경정 사례]

(단위: 조원)

| 연도 | 본예산 | 추경안 증감 | 국회확정 증감 | 주요 증감액 사유 |
|---|---|---|---|---|
| 1997 | 74.0 | △1.6 | △1.6 | IMF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부족 |
| 1998 | 78.7 | △2.8 | △2.3 | IMF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부족 |
| | | △5.5 | △7.9 | |
| 1999 | 71.2 | 0.4 | 0.4 | 예산대비 세수전망 초과<br>* 모든 세목 |
| 2003 | 113.6 | 1.0 | 1.3 | 예산대비 세수전망 초과<br>* 법인세 +2.6, 증권거래세 △0.8, 부가세 △0.4 |
| 2005 | 130.6 | △4.2 | △3.5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36) 2024년 코스피 +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 (상반기) 232% → (하반기) 86%

37)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1~4월) △15/△23 → (5~8월) △10/△15

38) 발전연료/자동차 탄력세율(%): (연중) △15/△30

(단위: 조원)

| 연도 | 본예산 | 추경안 증감 | 국회확정 증감 | 주요 증감액 사유 |
|---|---|---|---|---|
| 2009 | 175.4 | △11.2 | △11.4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3.7, 법인세 △5.7, 부가세 △2.1, 교통세 +1.1, 관세 △1.1 |
| 2013 | 216.4 | △12.0 | △6.0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0.7, 법인세 △2.1, 부가세 △2.3, 관세 △0.7, 기타 △0.2 |
| 2015 | 221.1 | △5.6 | △5.4 |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 2016 | 222.9 | 9.8 | 9.8 |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br>* 소득세 +2.5, 법인세 +5.4, 부가세 +1.7, 교통세 +0.7, 관세 △0.4 |
| 2017 | 242.3 | 8.8 | 8.8 | 일자리 대책 추진<br>* 소득세 +3.9, 법인세 +3.3, 부가세 +1.0, 상증세 +0.6 |
| 2020 | 292.0 | △3.2 | △0.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0.1, 부가세 △0.2, 개소세 △0.4, 교육세 △0.1 |
| | | △11.4 | △11.4 | 코로나19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br>* 법인세 △5.8, 부가세 △4.1, 관세 △1.1, 개소세 △0.4, 증권거래세 +0.6, 과년도수입 △0.5, 기타 △0.1 |
| 2021 | 282.7 | 31.5 | 31.5 |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우발세수<br>* 양도세 +8.6, 배당소득 +1.1, 법인세 +12.2, 부가세 +2.7, 상속세 +2.3, 증여세 +0.5, 증권거래세 +3.2, 농특세 +0.9 |
| 2022 | 343.4 | 53.3 | 53.3 | 법인실적 개선, 고용·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br>* 양도세 +8.6, 배당소득 +1.1, 법인세 +12.2, 부가세 +2.7, 상속세 +2.3, 증여세 +0.5, 증권거래세 +3.2, 농특세 +0.9 |
| 2025 | 382.4 | △10.3 | - | 법인실적 증가세 둔화 및 작년 12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4.7, 부가세 △4.3, 상속세 +0.9, 교통세 △1.1, 개소세 △0.9, 교육세 △0.3 |

주) 2009년과 2013년 추경은 세입경정 규모에 세외수입이 포함됨(2009년: +0.2조원, 2013년: △6.0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2.2%)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0.8%[39])되고, 2025년 1/4분기에 △0.2%의 역성장이 나타나는 등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국채 추가발행에 따른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집행예산 부족으로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2023년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56.4조원, 2024년에는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등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세출예산의 불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음.

이러한 대응방법에 대해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또한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됨에도 전년 대비 15.1조원(4.1%) 증가한 382.4조원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과다편성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수납현황 및 내년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현실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40]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2025.5월까지의 세수진도율, 내수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에도 국세수입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음.

---

39)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5)」, 2025.5.29.

40)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국세수입을 정부안(382.4조원)보다 3.9조원 적은 378.5조원으로 전망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2024.10.28.).

[세입경정 세목별 2024년 실적, 2025년 예산 및 추경예산 비교]

(단위: 조원)

| 세 목 | 2024년 실적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제1회 추경 | 2025년 제2회 추경안 | | |
|---|---|---|---|---|---|---|
| | | | | 금액 | 제1회 추경 대비 | 전년대비 |
| **총 국 세** | **336.5** | **382.4** | **382.4** | **372.1** | **△10.3** | **35.6** |
| 법인세 | 62.5 | 88.3 | 88.3 | 83.6 | △4.7 | 21.1 |
| 부가가치세 | 82.2 | 87.6 | 87.6 | 83.3 | △4.3 | 1.1 |
| 상속증여세 | 15.3 | 14.5 | 14.5 | 15.4 | 0.9 | 0.1 |
| 교통세 | 11.4 | 15.1 | 15.1 | 14.0 | △1.1 | 2.6 |
| 개소세 | 8.7 | 9.7 | 9.7 | 8.7 | △0.9 | 0.1 |
| 교육세 | 5.4 | 6.0 | 6.0 | 5.8 | △0.3 | 0.4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실질 2.2%)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0.8%[41])되고, 2024년 2/4분기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올해 1/4분기에 다시 △0.2%의 역성장이 나타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부족 전망에 따른 세입경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202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 2023 | | | | 2024p | | | | 2025p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 국내총생산 | 0.4 | 0.7 | 0.8 | 0.5 | 1.2 | △0.2 | 0.1 | 0.1 | △0.2 | (0.0) |
| (GDP) | (1.3) | (1.2) | (1.5) | (2.2) | (3.4) | (2.2) | (1.4) | (1.1) | | |
| 농 림 어 업 | △2.3 | 1.5 | △1.5 | △5.6 | 4.1 | 2.0 | 0.7 | △1.8 | 4.4 | (4.9) |
| 제 조 업 | 1.6 | 2.5 | 1.7 | 1.6 | 0.9 | 0.9 | 0.0 | 0.1 | △0.6 | (0.4) |
| 건 설 업 | △0.7 | △2.3 | 1.8 | △3.9 | 5.8 | △5.6 | △3.0 | △4.4 | △0.4 | (△12.5) |
| 서 비 스 업[1)] | 0.2 | 0.3 | 0.6 | 0.4 | 0.6 | 0.1 | 0.4 | 0.3 | △0.2 | (0.7) |

주 1)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포함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25.6.5.

41)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5)」, 2025.5.29.

다만,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10.3조원)과 세출확대(20.2조원)로 19.8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2025년 국가채무는 1,300.6조원(GDP 대비 49.0%)으로 증가하고 2028년에는 1,570.1조원(52.5%)까지 증가할 전망이므로, 국가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국가채무 | 2024 ~ 2028계획 | 1,195.8 | 1,273.3[1)] | 1,353.9 | 1,432.5 | 1,512.0 |
| | (GDP대비, %) | (47.4) | (48.1) | (49.1) | (49.8) | (50.5) |
| | 2025년 제1회 추경 | 1,195.8 | 1,280.8 | 1,357.7 | 1,436.2 | 1,515.8 |
| | (GDP대비, %) | (47.4) | (48.4) | (49.2) | (50.0) | (50.6)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1,195.8 | 1,300.6 | 1,388.4 | 1,478.4 | 1,570.1 |
| | (GDP대비, %) | (47.4) | (49.0) | (50.3) | (51.4) | (52.5) |
| ※ 명목GDP(2024~2028계획) | | 2,520.5 | 2,646.5 | 2,759.5 | 2,875.0 | 2,993.0 |
| (변경) | | 2,556.9[2)] | 2,654.0[3)] | 2,759.5 | 2,875.0 | 2,993.0 |

주 1) 2025년 본예산 기준
2) 2024년 GDP 잠정치(한국은행)
3)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월)의 2025년 성장전망 수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둘째, 세입경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그대로 교부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으나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보임.**

「지방교부세법」[42)]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43)]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조절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42)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10.3조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실시하였고, 각 근거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감액하여야 하나, 정부는「지방교부세법」제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교부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감액하였음.

[내국세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25년도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B) | 증감 (B-A) | (B-A)/A |
| 보통교부금 (내국세분) | 67,077,580 | 67,077,580 | 65,282,114 | △1,795,459 | △2.7 |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743,713 | 743,713 | 726,916 | △16,797 | △2.3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247,905 | 247,905 | 242,306 | △5,599 | △2.3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1,067,409 | 1,067,409 | 1,033,814 | △33,595 | △3.1 |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60,839 | 560,839 | 545,908 | △14,931 | △2.7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지방교부세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감액경정 시 지방교부세도 함께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는 2023년 56.4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8조 1,6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3,970억원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으며, 2024년에는 30.8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2조 2,363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2,524억원을 미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2023~2024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감소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 국세수입 | | | 지방교부세 감소규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규모 |
|---|---|---|---|---|---|
| | 본예산(A) | 결산(B) | 결손(B-A) | | |
| 2023 | 4,004,570 | 3,440,711 | △563,859 | 81,689 | 103,970 |
| 2024 | 3,673,140 | 3,365,324 | △307,816 | 22,363 | 42,524 |
| 합계 | 7,677,710 | 6,806,035 | △871,675 | 104,052 | 146,494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은 것은 2023년과 2024년 연속된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워진 점과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 지역사랑상품권(6,000억원) 등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44]

**셋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원의 세입경정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각 회계·기금별 전출금을 법정 배분비율대로 감액하여야 하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법정전출금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분계리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45]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반출·수입 시 등 부과되는 국세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조 1,036억원(△7.3%) 감소한 14조 1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325,800 | 15,104,800 | 15,104,800 | 14,001,191 | △1,103,609 | △7.3 |

주 1) 최종 납부세액(140,012억원) = 휘발유분(71,706억원)+ 경유분(68,305억원)
2) 2025년 에너지 수요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2025.2월) 반영, 휘발유: 15,660천㎘, 경유: 22,655천㎘
3)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적용 반영: (1~4월) △15/△23 → (5~8월) △10/△15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5년 휘발유·경유 수요전망 변경[46],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47]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조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하였음.

---

44) 「지방교부세법」은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세의 예산과 결산의 차액에 의한 교부세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올해 감액하지 않은 교부세는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감액반영하게 되므로, 지자체 재원부담의 이연효과만 발생함.

4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46) 휘발유 소비 전망(천㎘, 에경연): (예산 전제) 14,520 → (2025.2 전망) 15,660
경유 소비 전망(천㎘, 에경연): (예산 전제) 24,674 → (2025.2 전망) 22,655

47)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1~4월) △15/△23 → (5~8월) △10/△15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각 근거법률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68%[48], 환경개선특별회계 23%[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0], 기후대응기금 7%[51]로 각각 배분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예상액이 1조 1,036억원 감액되었으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4개 회계・기금별로 법정 배분비율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법정 배분비율 | 세입경정에 따른 감액 필요액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00.0 | △1,103,609 |
| 교통시설특별회계 | 68.0 | △750,454 |
| 환경개선특별회계 | 23.0 | △253,83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 | △22,072 |
| 기후대응기금 | 7.0 | △77,253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액경정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으로의 법정전출금은 감액하였으나, 경기 진작이라는 추경안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4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따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49)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0893호) 부칙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따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5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따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5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따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에도 목적세분의 법정전출금과 추가 전출금이 구분되지 않아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처럼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액의 배분을 위한 법정전출금은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구분계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목적세이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을 실시한 교육세의 경우에는 △2,637억원의 감액경정에 따라 세출예산도 각각 법정비율에 따라 감액하였음.

[교육세 세입경정에 따른 세출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25년도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 2,169,013 | 2,169,013 | 2,037,159 | △131,854 | △6.1 |
| 보통교부금 (교육세분 교부금) | 2,581,992 | 2,581,992 | 2,450,145 | △131,854 | △5.1 |
| 합계 | | | | △263,708 | -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추경안의 재원

## 가. 개 요

정부는 총 30.5조원(세출확대 20.2조원 + 세입경정 10.3조원)의 필요재원을 국채발행 19.8조원(64.9%), 지출구조조정 5.3조원(17.3%),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라 함) 발행한도 축소 3조원(9.8%), 기금 여유자금 등 2.4조원(8.0%)으로 충당할 계획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재원]

(단위: 백만원, %)

| 항 목 | 재원 규모 | 비 중 |
|---|---|---|
| 국채 발행 | 19,823,774 | 64.9 |
| 지출구조조정 | 5,272,166 | 17.3 |
| 외평채 축소 | 3,000,000 | 9.8 |
| 기금 여유자금 등 | 2,449,157 | 8.0 |
| 합계 | 30,545,097 |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 발행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 22.7조원과 원화 외평채 발행규모를 3조원 감축하여 19.8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임.

5.3조원(17.3%)의 지출구조조정은 일반 사업비 감액이 5.2조원(9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823억원(1.6%)은 인건비 감액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비중 |
|---|---|---|
| 사업비 감액 | △5,189,866 | 98.4 |
| 인건비 감액 | △82,300 | 1.6 |
| 합계 | △5,272,166 |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1998년 이후 제출한 총 31회의 추경안 중 지출구조조정을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8차례였음.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연혁]

(단위: 조원, %)

| 구분 | | 추경안 규모 | 지출구조조정 규모 | | 국채발행 규모 |
|---|---|---|---|---|---|
| | | | | 추경안 대비 비중 | |
| 1998년도 | 제1회 | 12.5 | 8.5 | 68.0 | - |
| | 제2회 | 11.5 | 0.7 | 6.1 | 7.9 |
| 2003년도 | 제2회 | 4.2 | 0.3 | 7.1 | - |
| 2013년도 | 제1회 | 17.3 | 0.3 | 1.7 | 15.8 |
| 2020년도 | 제2회 | 7.6 | 4.3 | 56.6 | - |
| | 제3회 | 35.3 | 4.0 | 11.3 | 23.8 |
| 2022년도 | 제2회 | 59.4 | 7.0 | 11.8 | - |
| 2025년도 | 제2회 | 30.5 | 5.3 | 17.3 | 22.7 |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기금 여유자금 현황을 보면, 복권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2.5조원을 활용할 계획임.[52)]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재원 중 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규모 | 비고 |
|---|---|---|
| 복권기금 | 2,570 |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 국유재산관리기금 | 44,429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26,000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10,000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23,579 | |
| 영화발전기금 | 27,100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270,000 | |
| 응급의료기금 | 1,762 | |
| 고용보험기금 | 1,303,000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8,129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15,000 | |
| 주택도시기금 | 600,645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00,000 | |
| 합계 | 2,532,214 | - |

자료: 기획재정부

52) 위 총괄표에서는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2.4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0.1조원의 차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843억원의 차입금을 국채 발행 규모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 나. 국채 발행

**첫째,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규모가 사실상 22.7조원임에도 원화 외평채 3조원의 감축규모를 상계처리하여 국채 발행규모는 19.8조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국채 추가발행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5조원으로 ① 경기진작(15.2조원), ② 민생안정(5.0조원), ③ 세입경정(10.3조원)으로 구성되며, 이를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및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추경안의 재원마련에 관한 정부의 설명만 보면, 세입경정을 포함한 30.5조원의 추경안 편성으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일응 19.8조원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을 보면, 이번 추경안으로 인한 국채 추가발행 규모는 22.7조원이며, 여기에서 원화표시 외평채 감축규모 3조원[53]을 상계처리하여 추경안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는 19.8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임.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공채 발행수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 (A) | 변경안 (B) | 증감 (B-A) | (B-A)/A |
| 국공채 발행수입 | 158,422,061 | 158,422,061 | 197,552,551 | 207,065,023 | 229,804,470 | 22,739,447 | 11.0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이는 추경편성으로 인해 추가 발행하여야 하는 국채 규모를 투명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만, 22.7조원의 국채 발행규모에서 3조원의 원화 외평채 축소규모를 차감하면 19.7조원으로, 정부가 말하는 국채 순증규모 19.8조원과 0.1조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843억원의 차입금을 국채 발행규모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임.[54]

53)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 축소: 16.7조원 → 13.7조원

한편 외평채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증액(12억불 → 35억불)하면서 같은 금액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감액(20조원 → 16.7조원)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추가로 3조원 감액(16.7조원 → 13.7조원)하였음.

**둘째, 2025년 국채 발행계획은 당초 197.6조원에서 제1회 추경으로 207.1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19.8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이번 추경안은 10.3조원의 세입경정과, 20.2조원의 세출확대를 포함하여 총 30.5조원 규모이며, 이 중 19.8조원을 국채로 조달할 계획임.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 활용 및 원화 외평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채의 추가 발행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원 가능한 재원 외의 부족분을 국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2021~2025년 연도별 국채 발행규모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국채 발행규모는 2016년 101.1조원, 2017년 100.8조원, 2018년 97.4조원, 2019년 101.7조원으로 연간 100조원 내외의 규모였으나, 2020년 174.5조원, 2021년 180.5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가 2024년까지 지속되었음.[55)]

[2021~2025년 연도별 국채 발행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A) | 2025년 | | | (B-A) |
|---|---|---|---|---|---|---|---|---|
| | | | | | 당초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안(B) | |
| 총발행 | 180.5 | 168.6 | 165.7 | 158.4 | 197.6 | 207.1 | 226.9 | 68.5 |

주) 2025년은 발행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 2025.5.7.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국채 발행계획은 당초 197.6조원이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9.5조원 증액됨에 따라 207.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48.7조원(30.7%) 증가한 수준임.

---

54)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43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타기금 예수금 항목으로 국채 발행과는 관계가 없으나, 국가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경안의 재원 중 국채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55) 기획재정부, 「2023년 국채백서」, 2024.3.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총 19.8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올해 국채 발행규모는 226.9조원으로, 전년 대비 68.5조원이 증가하고 증가율은 43.2%로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다. 지출구조조정

**첫째, 지출구조조정에 포함된 사업 및 유사·연관 사업 중 일부는 사업 추진 경과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출구조조정 사업 및 유사·연관사업 중 추가 검토 필요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추경안 조정규모 | 추가 검토 필요성 |
|---|---|---|---|---|
| 기획재정부 | 기후대응기금 | 온실가스 국제감축(산업부) | △17,000 | 전년도 이월예산 집행 불가능,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 추가 감액 검토 필요 |
|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구축·운영 | △10,000 | 이미 확정된 총사업비의 국비 지원액보다 과다 금액이 편성되어 추가 감액 검토 필요 |
| 외교부 | 일반회계 | 국가별 협력사업(ODA)주) | △23,000 | 추경안 감액 ODA사업과 동일하게 수원국의 현지 사정, 약정서 검토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입찰 지연 등의 현황을 고려한 감액 검토 필요 |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 행복주택 출자 | - | 행복주택 물량 감소 및 LH의 미집행 출자금을 고려한 신규 출자 지원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주) 단위사업인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2431)(개발협력국),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개발협력국), 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 및 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로 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투자지원사업 주요 유치국인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관련 규정 미비 등 사유로 사업승인 및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연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024년 이월예산인 245억 8,600만원으로 2025년에 실집행 가능성이 있는 투자 예상액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 가능 금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내내역사업인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의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가 감액조정 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 171억 2,000만원 중 1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이월액 및 기 투입금액을 고려하면, 추경안 감액을 반영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총사업비의 국비 지원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의 **‘국가별 협력사업(ODA)’** 중 일부는 수원국의 정부조직 개편, 약정서 검토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입찰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액(△230억원)되었는데, 그 외의 국가별 협력사업(ODA) 중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들 또는 최근 무력충돌이 발생한 이란과 관련된 사업 등은 수원국의 현지 사정 및 약정서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융자)’** 사업은 통합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의 신규 사업승인 물량이 없어 불용예상액이 감액(△1,244억원)된 것인데, ‘행복주택 출자’ 사업의 경우에도 행복주택 물량 감소 및 LH의 미집행(상계대상) 출자금을 고려하여 신규 출자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주로 시설 구축사업과 ODA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규모의 감축 없이 예산의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것이어서 차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이번 지출구조조정 사업 중 시설 구축사업과 ODA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감축하지 않고 예산 지출시기만 연기하고 있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감축 없이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 소관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규모 | |
|---|---|---|---|---|
| | | | |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
| 국가보훈부 | 일반회계 | 국립묘지조성 | △9,724 | △0.18 |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협력기금 | 중남미차관(융자)(ODA) | △8,000 | △0.15 |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협력기금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 △32,000 | △0.61 |
| 교육부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60,000 | △1.14 |
| 외교부 | 일반회계 | 베트남(ODA) | △5,000 | △0.09 |
| 외교부 | 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 △5,000 | △0.09 |

(단위: 백만원, %)

| 소관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규모 | |
|---|---|---|---|---|
| | | | |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
| 외교부 | 일반회계 |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 △5,000 | △0.09 |
| 외교부 | 일반회계 | 탄자니아(ODA) | △8,000 | △0.15 |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 △16,092 | △0.31 |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회계 |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 △5,000 | △0.09 |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회계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12,669 | △0.24 |
|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7,000 | △0.13 |
| 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 숙련기술장려사업 | △9,189 | △0.17 |
|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 △25,100 | △0.48 |
|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 남부내륙철도 | △50,000 | △0.95 |
|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 월곶-판교 복선전철 | △20,000 | △0.38 |
|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 충북선 고속화 | △9,957 | △0.19 |
|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 가덕도신공항건설 | △522,364 | △9.91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예산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56]

56)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시공 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4.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집행실적

정부는 2025년 4월 21일 산불대응과 통상·AI 및 민생지원을 위하여 12.2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대해 국회는 ① 재해·재난 대응에 0.1조원, ② 통상·AI 경쟁력 제고에 0.1조원, ③ 민생지원에 0.8조원, ④ 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을 감액하여 2025년 5월 1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하였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국회 조정 내역]

| 규모 | (정부안) 12.2조원 → (국회확정) 13.8조원(+1.6조원) |
|---|---|

(단위: 조원)

| | 구분 | 정부안 | 국회확정 | 증감 |
|---|---|---|---|---|
| 주요내용 | **1 재해·재난 대응** | 3.2 | 3.3 | 0.1 |
| |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 1.4 | 1.4 | 0.03 |
| |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 1.9 | 1.9 | 0.09 |
| | **2 통상 및 AI 지원** | 4.4 | 4.5 | 0.1 |
| |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 2.1 | 2.1 | 0.01 |
| | ▸ AI 생태계 혁신 | 1.8 | 1.9 | 0.1 |
| |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0.5 | 0.5 | 0.02 |
| | **3 민생 지원** | 4.3 | 5.1 | 0.8 |
| |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 2.6 | 2.6 | - |
| |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 1.6 | 2.0 | 0.4 |
| |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0.2 | 0.6 | 0.4 |
| | **4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 0.2 | 1.0 | 0.9 |
| | ▸ 건설경기 보강 | - | 0.8 | 0.8 |
| | ▸ APEC 정상회의 등 | 0.2 | 0.2 | 0.04 |
| | **5 국회 감액 (국고채 이자 등)** | - | △0.2 | △0.2 |
| | **합 계** | 12.2 | 13.8 | 1.6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5.5.1.

이후 정부는 2025년 5월 2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한 후 본격적인 집행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2025년 5월말까지의 정부 추경예산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집행실적(2025년 5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집행 | | | 실집행 | | |
|---|---|---|---|---|---|---|---|---|
| | | | 증액규모 | 집행액 | 집행률 | 교부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법무부 | 일반회계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153 | - | - | 해당없음 | | |
|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4,539 | 241 | 5.3 | | | |
| |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 88 | - | - | | | |
|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35,543 | 2,160 | 6.1 | | | |
| | | 공공수사 | 1,740 | 10 | 0.6 | | | |
| | |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 3,726 | 54 | 1.4 | | | |
| | | 마약수사 | 1,387 | 89 | 6.4 | | | |
|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 942 | 3 | 0.3 | | | |
|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 1,187 | - | - | | | |
| | | 공판활동지원 | 772 | 14 | 1.8 | | | |
|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 614 | 17 | 2.8 | | | |
| 감사원 |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 | 4,519 | 581 | 12.9 | 해당없음 | | |
| 금융위원회 |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36,500 | 36,500 | 100.0 | 36,500 | 36,500 | 100.0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 - | - | 해당없음 | | |
| |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 200,000 | 120,000 | 60.0 | 해당없음 | | |
| | |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 100,000 | 60,000 | 60.0 | 해당없음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반회계 | 개인정보침해방지 | 1,296 | - | - | - | - | - |
| 기획재정부 | 일반회계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 300,000 | 300,000 | 100.0 | 300,000 | 300,000 | 100.0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29,117,031 | 17,452,146 | 59.9 | 해당없음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 5,558,035 | 1,728,800 | 31.1 | 해당없음 | | |
| | 복권기금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 45,640 | 13,140 | 28.8 | 13,140 | 13,140 | 100.0 |
| | 공자기금 | 지방채인수(융자) | 210,000 | 45,000 | 21.4 | 해당없음 | | |
| | |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 30,120,585 | 14,682,270 | 48.7 | 해당없음 | | |
| | | 일반회계 예탁 | 91,071,577 | 64,900,000 | 71.3 | 해당없음 | | |
| | | 특별회계 예탁 | 3,174,102 | 71,350 | 2.2 | 해당없음 | | |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집행 | | | 실집행 | | |
|---|---|---|---|---|---|---|---|---|
| | | | 증액규모 | 집행액 | 집행률 | 교부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 | 기타기금 예탁 | 45,075,492 | 11,382,572 | 25.3 | 해당없음 | | |
| 교육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115,700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15,000 | - | - | - | - | - |
| |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7,500 | - | - | - | - | - |
| |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3,750 | - | - | - | - | - |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3,750 | - | - | - | - | - |
| |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 9,166 | 9,166 | 100.0 | 9,166 | 4 | 0.04 |
| |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 1,619,438 | 596,848 | 36.9 | 596,848 | - | - |
| | |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 50,000 | 17,000 | 34.0 | 17,000 | - | - |
| | | 생성AI선도인재양성 | 3,500 | - | - | - | - | - |
| | | AI스타펠로우십지원 | 3,000 | - | - | - | - | - |
| | |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 5,000 | - | - | - | - | - |
| | |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 10,000 | 4,000 | 40.0 | 4,000 | 4,000 | 100.0 |
| | | 융합서비스글로벌시장진출지원 | 5,400 | 5,400 | 100.0 | 5,400 | 1 | 0.02 |
| | | 국산AI반도체기반 마이크로데이터센터확산(R&D) | 3,500 | - | - | - | - | - |
| | | AI반도체실증지원 | 44,000 | 44,000 | 100.0 | 44,000 | - | - |
| |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 6,700 | 6,700 | 100.0 | 6,700 | - | - |
| | |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 |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 8,000 | 6,000 | 75.0 | 6,000 | - | - |
| | 지특회계 | 연구개발특구육성 | 10,000 | - | - | - | - | - |
| | 방발기금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 10,000 | 10,000 | 100.0 | 10,000 | - | - |
| | 정진기금 | AI산업육성 | 23,493 | 23,493 | 100.0 | 23,493 | - | - |
| | | AI혁신펀드 | 55,000 | 55,000 | 100.0 | 55,000 | - | - |
| | |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 4,800 | - | - | - | - | - |
| |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 5,000 | 5,000 | 100.0 | 5,000 | 5,000 | 100.0 |
| 방송통신위원회 | 방발기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 590 | - | - | 해당없음 | | |
| 외교부 | 일반회계 | 2025 APEC 의장국 운영 | 16,275 | - | - | 1,700 | - | - |
| 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재난대책비(보조) | 660,000 | 453,523 | 68.7 | 453,523 | 93,105 | 20.5 |
| | | 국경일등 정부행사 | 930 | 34 | 3.6 | 해당없음 | | |
| | 지특회계 | 재해위험지역정비 | 17,678 | 17,678 | 100.0 | 17,678 | 집계 중 | 집계 중 |
| |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10,000 | - | - | - | - | - |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400,000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집행 | | | 실집행 | | |
|---|---|---|---|---|---|---|---|---|
| | | | 증액규모 | 집행액 | 집행률 | 교부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경찰청 | 일반회계 | 사이버수사역량강화 | 703 | - | - | 해당없음 | | |
| |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 550 | - | - | 해당없음 | | |
| 소방청 | 일반회계 | 현장대응역량강화<br>(중앙단위 자원집결지 운영) | 479 | - | - | 해당없음 | | |
| | |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br>(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 2,200 | - | - | - | - | - |
| | |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br>(산단·건설현장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 5,163 | - | - | - | - | - |
| 문화<br>체육<br>관광부 | 일반회계 |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 4,634 | 984 | 21.2 | 984 | - | - |
| | |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육성 | 16,500 | 11,550 | 70.0 | 11,550 | - | - |
| | | 디지털 신기술 기반<br>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 2,500 | 1,000 | 40.0 | 1,000 | - | - |
| |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20,443 | - | - | 해당없음 | | |
| | | 도서관정보서비스<br>구축 운영 | 2,500 | - | - | 해당없음 | | |
| | | 국제문화정책 지원 | 2,000 | - | - | - | - | - |
| 농림<br>축산<br>식품부 | 농특회계 | 농기계임대 | 2,397 | 2,397 | 100.0 | 2,397 | 2,397 | 100.0 |
| | | 푸드서비스선진화 | 65,000 | 50,000 | 76.9 | 50,000 | - | - |
| |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120,000 | 30,000 | 25.0 | 30,000 | - | - |
| |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br>수급안정 지원 | 25,500 | 6,400 | 25.1 | 6,400 | - | - |
| 산림청 | 일반회계 | 산림재해대책비 | 174,000 | 94,039 | 54.0 | 94,039 | - | - |
| | | 산림헬기 도입·운영 | 103,675 | - | - | 해당없음 | | |
| | | 산불방지대책 | 43,630 | - | - | - | - | - |
| | | 대형산불 대응<br>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 11,657 | - | - | - | - | - |
| | 농특회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5,940 | - | - | - | - | - |
| | | 숲가꾸기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 지특회계 | 임도시설 | 100,825 | - | - | 해당없음 | | |
| 해양<br>수산부 | 일반회계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br>(구명조끼보급한시지원) | 6,180 | 4,944 | 80.0 | 4,944 | - | - |
| | 농특회계 | 수산업가치 및<br>소비촉진 제고 | 50,000 | - | - | - | - | - |
| 해양<br>경찰청 | 일반회계 | 범죄수사활동 | 315 | - | - | 해당없음 | | |
| 산업<br>통상<br>자원부 | 일반회계 | 무역보험기금출연 | 300,000 | 100,000 | 33.3 | 100,000 | 100,000 | 100.0 |
| | | 수출지원기반활용 | 88,807 | 3,069 | 3.5 | 3,069 | 242 | 7.9 |
| | |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 1,900 | 495 | 26.0 | - | - | - |
| | | 반도체아카데미구축 | 1,000 | - | - | - | - | - |
| | | 산업기술국제협력(R&D) | 1,000 | - | - | - | - | - |
| |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br>기반시설구축지원 | 117,008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집행 | | | 실집행 | | |
|---|---|---|---|---|---|---|---|---|
| | | | 증액규모 | 집행액 | 집행률 | 교부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 |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 2,300 | - | - | - | - | - |
| |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 | 62,580 | - | - | - | - | - |
| | 에특회계 |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 2,019 | 92 | 4.6 | 92 | 92 | 100.0 |
| |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85,998 | - | - | - | - | - |
|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7,400 | 7,400 | 100.0 | 7,400 | - |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214,720 | - | - | - | - | - |
| | | 해외자원개발조사 | 1,000 | - | - | - | - | - |
| | 지특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 | 56,100 | - | - | - | - | - |
| | | 투자유치기반조성 | 39,550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신용보증기금출연 | 100,000 | 100,000 | 100.0 | 100,000 | 100,000 | 100.0 |
| | | 기술보증기금출연 | 70,000 | 70,000 | 100.0 | 70,000 | 70,000 | 100.0 |
|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26,847 | 26,847 | 100.0 | 26,847 | 599 | 2.2 |
|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 10,000 | 10,000 | 100.0 | 10,000 | - | - |
| | | 수출지원기반활용 | 89,800 | 89,800 | 100.0 | 89,800 | - | - |
| |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10,000 | 10,000 | 100.0 | 10,000 | - | - |
| | 중진기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300,000 | 43,300 | 14.4 | 해당없음 | | |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100,000 | 19,800 | 19.8 | 해당없음 | | |
| | |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융자) | 100,000 | 2,000 | 2.0 | 해당없음 | | |
| | 소진기금 | 소상공인지원(융자) | 500,000 | - | - | 해당없음 | | |
|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333,437 | 333,437 | 100.0 | 333,437 | 333,437 | 100.0 |
| | | 소상공인성장지원 | 1,697,336 | 231,356 | 13.6 | 231,356 | 131,356 | 56.8 |
| | | 소상공인재기지원 | 49,388 | 49,388 | 100.0 | 49,388 | 1,952 | 4.0 |
|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1,439,925 | 89,925 | 6.2 | 89,925 | 5,960 | 6.6 |
|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제약산업 육성 지원 | 1,000 | - | - | - | - | - |
|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 4,980 | 234 | 4.7 | - | - | - |
| | | 글로벌 K-cell뱅크·라이브러리 구축(세포특화연구소)(R&D) | 8,140 | - | - | - | - | - |
| 환경부 | 일반회계 | 국가하천정비(국가하천정비(일반)) | 22,500 | 4,491 | 20.0 | 해당없음 | | |
| | 환특회계 | 환경교육강화(기후재난 대응) | 2,550 | - | - | - | - | - |
| | | 국립공원공단출연(사업출연비) | 20,100 | 10,000 | 49.8 | 10,000 | - | - |
| | | 재해대책비(폐기물처리비용) | 112,000 | 112,000 | 100.0 | 112,000 | 4,901 | 4.4 |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 | 집행 | | | 실집행 | | |
|---|---|---|---|---|---|---|---|---|
| | | | 증액규모 | 집행액 | 집행률 | 교부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 지특회계 |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 84,294 | - | - | - | - | - |
| 고용 노동부 | 일반회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25,416 | - | - | 해당없음 | | |
| | | 중장년 인턴제 | 4,290 | - | - | 해당없음 | | |
| | 지특회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30,000 | - | - | - | - | - |
| | 고보기금 | 고용유지지원금 | 11,113 | 3,820 | 34.4 | 해당없음 | | |
| |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 4,272 | 860 | 20.1 | - | - | - |
| | 산재기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6,560 | 1,895 | 28.9 | 해당없음 | | |
| | 임채기금 | 대지지급금지급 | 150,834 | 48,000 | 31.8 | 해당없음 | | |
| | 근복기금 | 생활안정자금융자 | 14,880 | 6,100 | 41.0 | 해당없음 | | |
| | | 신용보증대위변제 | 32,952 | - | - | 해당없음 | | |
| 국토 교통부 | 일반회계 |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 913 | - | - | - | - | - |
| | | 건설및지하 안전관리 | 4,360 | 975 | 22.4 | 975 | - | - |
| | | 건축안전 | 1,200 | - | - | - | - | - |
| |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 1,428 | 100 | 7.0 | 해당없음 | | |
| |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 71,780 | - | - | - | - | - |
| | | 건설기계사고조사및예방지원 | 1,286 | - | - | - | - | - |
| | | 지하시설물전산화 (보조, 정보화) | 1,200 | - | - | 해당없음 | | |
| |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 40,675 | - | - | - | - | - |
| | 교특회계 | 도로유지보수 | 129,900 | 12 | - | 해당없음 | | |
| | | 드론안전 및 활성화지원 | 10,000 | - | - | 해당없음 | | |
| | | 도로안전및환경개선(비총액) | 38,200 | - | - | 해당없음 | | |
| | | 도로안전및환경개선(총액) | 18,000 | - | - | 해당없음 | | |
| | | 평택-오송2복선화 | 100,000 | - | - | - | - | - |
| | |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 17,815 | - | - | - | - | - |
| | |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 2,150 | - | - | - | - | - |
| | | 일반공항시설관리 | 22,390 | - | - | - | - | - |
| | |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 | 700 | - | - | - | - | - |
| | 지특회계 | 도시재생사업 | 8,000 | - | - | - | - | - |
| | 주택기금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 24,400 | 48 | 0.2 | 48 | 48 | 0.2 |
| | 주택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275,500 | - | - | - | - | - |
| | 주택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215,310 | - | - | - | - | - |
| | 주택기금 | 임대주택리츠 출자 | 150,000 | 29,700 | 19.8 | 29,700 | 29,700 | 19.8 |
| 여성 가족부 |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 1,090 | 1,090 | 100.0 | - | - | - |

자료: 각 부처 5월말 기준 제출자료를 단순 취합한 것으로서, 일부 오차 발생 가능

# Ⅲ. 유형별 검토

## 1. 개요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① 경기 진작(15.2조원), ② 민생 안정(5.0조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총 30.5조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1)2)]

[2025년 제2회 추경안 유형별 주요내용]

| | | |
|---|---|---|
| 기본방향 | 총 30조 5,000억원<br>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br>①경기 진작, ②민생 안정 등 2대 분야 집중 투자 | |
| 주요내용 | ① 경기 진작 | 15.2조원 |
| | - 소비여력 보강 | 11.3조원 |
| | - 건설경기 활성화 | 2.7조원 |
| |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1.2조원 |
| | ② 민생 안정 | 5.0조원 |
| |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1.4조원 |
| | - 고용안전망 강화 | 1.6조원 |
| |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 0.7조원 |
| | - 지방재정 보강 등 | 1.3조원 |
| | ③ 세입경정 | 10.3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5.6.19.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진 심화로 인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기·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된 필수 사업만을 선별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추경안의 신규·증액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음.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5.6.19.

2) 세입경정 10.3조원 관련사항은 ‘Ⅱ. 주요 검토사항’ 참조

# 2. 경기 진작

## 가. 개요

추경안의 경기 진작 관련 사업은 15개 부처 122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조 2,239억원이 증액된 37조 2,043억원이 편성되었음.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0조 2,96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6,000억원 등 총 10조 9,492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5개 사업, 교통시설특별회계 17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개 사업, 주택도시기금 3개 사업으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 3,0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4,000억원,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1,000억원 등 총 1조 6,575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2개 사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개 사업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 4,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2,000억원 등 총 7,2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5개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6개 사업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3,261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1,000억원 등 총 4,919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그 외에도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환경부 2,437억원, 교육부 2,235억원, 국방부 2,22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57억원, 문화체육관광부 2,017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438억원, 해양수산부 776억원, 기획재정부 444억원, 보건복지부 195억원, 국가보훈부 79억원, 소방청 66억원이 제2회 추경안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경기 진작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 행안부 | 일반회계 | 민생회복 소비쿠폰 | - | - | - | 102,967 | 102,967 |
|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3,000 | - | 4,000 | 10,000 | 6,000 |
| |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 8,697 | 8,742 | 8,918 | 9,443 | 525 |
| 소계 | | | 11,697 | 8,742 | 12,918 | 122,410 | 109,492 |
| 국토부 | 일반회계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 5,110 | 5,455 | 5,455 | 5,983 | 528 |
| |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 2,438 | 2,884 | 3,291 | 3,591 | 300 |
| | |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 | 5,948 | 5,619 | 5,619 | 6,219 | 600 |
| |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 573 | 275 | 275 | 438 | 163 |
| |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 - | - | - | 3,000 | 3,000 |
| | 교통시설 특별회계 | 민자도로건설지원 | 8,431 | 9,799 | 9,799 | 9,919 | 120 |
| | |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 260 | 207 | 207 | 707 | 500 |
| | |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 1,054 | 461 | 461 | 821 | 360 |
| | |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 2,419 | 757 | 757 | 837 | 80 |
| | | 평택-오송 2복선화 | 1,415 | 2,500 | 3,500 | 4,500 | 1,000 |
| | |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 2,420 | 1,386 | 1,386 | 2,386 | 1,000 |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 1,880 | 338 | 338 | 638 | 300 |
| | | 보성-임성리철도건설 | 289 | 178 | 178 | 278 | 100 |
| | | 도담-영천 복선전철 | 2,125 | 94 | 94 | 394 | 300 |
| | |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 1,300 | 1,399 | 1,399 | 2,113 | 715 |
| | |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 230 | 587 | 587 | 1,846 | 1,259 |
|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584 | 347 | 525 | 725 | 201 |
| | |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 188 | 633 | 633 | 733 | 100 |
| | | 양산도시철도 건설 | 415 | 536 | 536 | 656 | 120 |
| | | 제주공항 시설개선 | 26 | 23 | 23 | 44 | 21 |
| |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 100 | 75 | 75 | 104 | 29 |
| | | 드론 종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75 | 102 | 102 | 132 | 30 |
|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장현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 70 | 60 | 60 | 74 | 14 |
| |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진입도로 | 75 | 79 | 79 | 128 | 48 |
| | |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 15 | 83 | 83 | 96 | 13 |
| | |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 80 | 54 | 54 | 84 | 30 |
| | | 사천서부산단진입도로 | 7 | 10 | 10 | 15 | 5 |
| | |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 12 | 22 | 22 | 38 | 16 |
| | | 함안군북산단진입도로 | 31 | 27 | 27 | 41 | 14 |
| | | 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 1 | 10 | 10 | 20 | 10 |
| | 주택도시기금 |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 - | - | - | 1,000 | 1,000 |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7,000 | - | - | 4,000 | 4,000 |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4,136 | 3,370 | 3,370 | 3,969 | 599 |
| 소계 | | | 48,708 | 37,369 | 38,954 | 55,529 | 16,575 |
| 중기부 | 일반회계 | 창업사업화지원 | 3,591 | 4,036 | 4,036 | 4,576 | 540 |
|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2,191 | 2,361 | 2,629 | 2,869 | 240 |
|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20,078 | 16,358 | 16,358 | 18,358 | 2,000 |
| | | 재도약촉진(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 108 | 415 | 415 | 915 | 500 |
|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4,500 | 5,000 | 5,000 | 9,000 | 4,000 |
| 소계 | | | 30,468 | 28,170 | 28,438 | 35,718 | 7,280 |
| 산업부 | 일반회계 | 전시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 70 | 66 | 66 | 109 | 43 |
| | |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 426 | 439 | 439 | 475 | 36 |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3,213 | 3,293 | 3,293 | 3,344 | 51 |
| | |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 - | - | - | 128 | 128 |
| | |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 제조자율랩기술개발사업(R&D) | - | - | - | 22 | 22 |
| | 전력산업 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 | 1,634 | 1,043 | 1,043 | 4,304 | 3,261 |
| |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675 | 1,564 | 1,564 | 1,682 | 118 |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3,693 | 3,263 | 3,263 | 4,263 | 1,000 |
| |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85 | 183 | 183 | 333 | 150 |
| | |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 10 | 35 | 35 | 45 | 10 |
|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 200 | 100 | 100 | 200 | 100 |
| 소계 | | | 11,005 | 9,987 | 9,987 | 14,906 | 4,919 |
| 환경부 | 일반회계 | 공업용수도 안정화 | 93 | 275 | 275 | 346 | 71 |
| |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 1,547 | 935 | 935 | 1,085 | 150 |
| | | 국가하천정비 | 6,627 | 6,794 | 7,019 | 7,437 | 418 |
| | 환경개선 특별회계 | 비점오염저감사업 | 339 | 288 | 288 | 468 | 180 |
| | | 공공폐수처리시설 | 956 | 1,032 | 1,032 | 1,090 | 58 |
| | | 하수처리장 설치 | 10,241 | 8,527 | 8,527 | 9,103 | 576 |
|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1,600 | 2,255 | 2,255 | 2,865 | 610 |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2,137 | 1,456 | 1,456 | 1,760 | 304 |
|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하수관로 정비 | 12,816 | 16,264 | 17,107 | 17,177 | 70 |
| 소계 | | | 36,355 | 37,826 | 38,894 | 41,331 | 2,437 |
| 교육부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4,438 | 1,827 | 1,827 | 1,850 | 23 |
| | | 대학구조개혁 지원 | 139 | 112 | 112 | 155 | 43 |
| |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5,247 | 5,225 | 5,225 | 5,238 | 13 |
|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053 | 10,929 | 10,929 | 12,886 | 1,957 |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 | |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 3,277 | 1,957 | 1,957 | 2,157 | 200 |
| 소계 | | | 23,154 | 20,050 | 20,050 | 22,285 | 2,235 |
| 국방부 | 일반회계 | 병영생활관 | 3,119 | 2,590 | 2,590 | 2,703 | 113 |
| | | 병영기본지원시설 | 2,225 | 2,144 | 2,144 | 2,671 | 527 |
| | | 관사및간부숙소 | 5,260 | 7,863 | 7,863 | 7,969 | 106 |
| | | 정비 및 보급시설 | 3,134 | 3,941 | 3,941 | 4,140 | 199 |
| | | 일반지원시설 | 7,920 | 5,227 | 5,227 | 5,849 | 622 |
| | | 경계 및 작전시설 | - | 2,416 | 2,416 | 2,665 | 249 |
| | | 시설유지관리 | 14,258 | 11,222 | 11,222 | 11,634 | 412 |
| 소계 | | | 35,915 | 35,402 | 35,402 | 37,630 | 2,228 |
| 과기부 | 일반회계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정보화) | 260 | 195 | 195 | 262 | 67 |
| | | AI혁신펀드 | - | - | - | 1,000 | 1,000 |
| | | AI 반도체 실증 지원 | 158 | 244 | 684 | 984 | 300 |
| | | 공공AX프로젝트 | - | - | - | 300 | 300 |
| | | 의료AI혁신생태계 조성(닥터앤서3.0) | - | 23 | 23 | 103 | 80 |
| | | 인터넷 경로보안 고도화 사업 | - | - | - | 30 | 30 |
| | |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 | - | - | 50 | 50 |
| |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고도화(정보화,출연) | 621 | 579 | 646 | 736 | 90 |
|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디지털역량강화교육 | 357 | 321 | 321 | 387 | 66 |
| | | 지역디지털인재양성 | 542 | 576 | 576 | 610 | 34 |
| | |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 100 | 100 | 100 | 140 | 40 |
| 소계 | | | 2,038 | 2,037 | 2,544 | 4,602 | 2,057 |
| 문체부 | 일반회계 |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 301 | 372 | 537 | 837 | 300 |
| | | K-콘텐츠 펀드 출자 | 3,400 | 2,950 | 2,950 | 3,800 | 850 |
| | 국민체육 진흥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203 | 1,313 | 1,313 | 1,573 | 260 |
| | 문화예술 진흥기금 | 문화예술향유 지원 | 2,751 | 2,806 | 2,806 | 2,906 | 100 |
| | 관광진흥 개발기금 | 국내관광 역량 강화 | 531 | 428 | 428 | 664 | 236 |
| | 영화발전기금 | 영화정책지원 | 174 | 165 | 165 | 436 | 271 |
| 소계 | | | 8,362 | 8,033 | 8,198 | 10,215 | 2,017 |
| 농림부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수리시설개보수 | 7,462 | 7,617 | 7,617 | 8,433 | 816 |
| |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434 | 579 | 579 | 729 | 150 |
| | | 농촌용수개발 | 2,513 | 2,357 | 2,357 | 2,579 | 222 |
|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배수개선 | - | 4,852 | 4,852 | 5,102 | 250 |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 소계 | | | 10,409 | 15,405 | 15,405 | 16,842 | 1,438 |
| 해수부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국가어항 | 3,063 | 3,378 | 3,378 | 3,649 | 271 |
| | | 가거도항복구 | 216 | 161 | 161 | 241 | 80 |
| | 교통시설 특별회계 | 일반항 | 696 | 988 | 988 | 1,128 | 141 |
| | | 재해안전항만구축 | 994 | 480 | 480 | 686 | 206 |
| | |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 1,312 | 1,254 | 1,254 | 1,333 | 79 |
| 소계 | | | 6,282 | 6,260 | 6,260 | 7,036 | 776 |
| 기재부 | 국유재산 관리기금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 54 | 125 | 125 | 224 | 99 |
| |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 380 | 515 | 515 | 615 | 99 |
| | |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 29 | 69 | 69 | 119 | 50 |
| | |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 164 | 176 | 176 | 373 | 196 |
| 소계 | | | 627 | 886 | 886 | 1,330 | 444 |
| 복지부 | 일반회계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구축 | 6 | 6 | 6 | 33 | 27 |
| | | 제약산업 육성 지원 | 327 | 367 | 377 | 411 | 34 |
| |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94 | 94 | 94 | 125 | 30 |
| | | 보험정책사업관리 | 9 | 9 | 9 | 58 | 49 |
| | |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 - | - | - | 33 | 33 |
| | |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 - | - | - | 22 | 22 |
| 소계 | | | 437 | 476 | 486 | 681 | 195 |
| 보훈부 | 일반회계 | 국립서울현충원 | - | 113 | 113 | 126 | 12 |
| | | 국립대전현충원 | 163 | 114 | 114 | 131 | 18 |
| | | 국립4.19묘지 | 6 | 6 | 6 | 9 | 2 |
| | | 국립3.15묘지 | 6 | 6 | 6 | 6 | 1 |
| | | 국립5.18묘지 | 15 | 14 | 14 | 17 | 3 |
| | | 국립영천호국원 | 104 | 136 | 136 | 143 | 7 |
| | | 국립임실호국원 | 116 | 46 | 46 | 52 | 7 |
| | | 국립이천호국원 | 135 | 209 | 209 | 229 | 21 |
| | | 국립산청호국원 | 93 | 27 | 27 | 28 | 1 |
| | | 국립괴산호국원 | 76 | 45 | 45 | 46 | 1 |
| | | 국립제주호국원 | 38 | 35 | 35 | 41 | 6 |
| | | 국립신암선열공원 | 7 | 7 | 7 | 8 | 1 |
| 소계 | | | 759 | 758 | 758 | 837 | 79 |
| 소방청 | 일반회계 | 국방소방병원 건립 | 713 | 624 | 624 | 691 | 66 |
| 소계 | | | 713 | 624 | 624 | 691 | 66 |
| 15개 부처 | | 122개 사업 | 226,928 | 212,024 | 219,804 | 372,043 | 152,239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소비진작 및 경영안정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2,96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소비진작·경영안정 등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하고 합리적인 사용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및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3]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정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소득기준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지표만으로 산정[4]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하여 산정[5]되므로 소득여건의 동일한 반영이 어렵고,[6] 1차 지급 후 2차 지급까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분할지급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재정력·인구감소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매칭 지방비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게 각각 5%와 8%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서울과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수

---

3) 세계일보(2025.6.25.). 13조 ‘소비쿠폰’ 풀리면 꽁꽁 언 내수 다시 살아날까?[뉴스+]
(출처: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50625060324002)

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 보수외소득월액×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건강보험료율)+{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6) 가령, 직장가입자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배기량 1,600cc 이상의 자동차나 전·월세로 임차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음

도권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국비차등 지원의 근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의 지원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차등지원될 예정인데, 이들 계층이 개별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으나 재정력이 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지원수준을 다층화하여 재정부담이 재정력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2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비와 지방비를 70:30으로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매칭 지방비가 신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증액 편성된 사업은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증액 편성된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일반지원시설’, ‘시설유지관리’** 사업은 임시숙영시설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356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3년 평균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실화 및 집행률 제고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교육부의 **‘국립대학 시설 보수’** 사업은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9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 각 대학의 동 보수사업예산 실집행률이 11.9%[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경 증액분이 연내에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6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남원매립정비사업의 경우 아직 설계 단계이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7)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20일 현재 각 대학에 배정된 동 보수사업 예산 3,788억 5,000만원 중 450억 6,700만원이 실집행되었다고 함. 다만, 대학시설 보수공사는 주로 방학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4년 동 사업예산에서 각 대학에 배정된 5,186억 6,300만원 중 3,675억 9,300만원(70.9%)이 연내 실집행되었고, 1,497억 5,100만원(28.8%)은 예산을 교부받은 대학에서 차년도에 집행완료하였으며, 13억 1,900만원(0.3%)은 대학에서 불용처리하였다고 함.

환경부의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과 삼척시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에 대한 연부액이 7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은 펌프장 부지선정 지연으로 설계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24년 말 재개된 상황이므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정부는 기존 펀드의 결성 상황과 투자여력 및 추가적인 현금출자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민간재원을 조속히 조달하여 연내 사업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5년 본예산으로 조성 계획인 12개 자펀드가 모두 미결성 상황이고, 문화계정 내 기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 중인 금액이 2023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므로,[8] 기존 펀드의 결성 상황과 투자여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미분양 안심환매 및 PF 위기극복 특별보증을 위해 4,000억원이 HUG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되었으나, HUG는 2024년 이후 현금·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약 6조원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공적보증공급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9] 추가적인 현금출자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지원대상 물량으로 한정하여 재정소요를 재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 사업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단계인 자펀드 결성 시점이 2026년 1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데, 연내에 예산투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2,400억원과 스케일업 펀드 1,600억원 총 4,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LP첫걸음펀

8) 최근 5년간 문화계정의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을 살펴보면, 결성총액이 2020~2022년 2,000억원대에서 2023년 4,486억원, 2024년 7,19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20년에 2,118억원이었던 연간 투자집행액은 2024년에도 2,829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계속 2,000억원대에 그치고 있음.

9) 2025년 5월말 기준 HUG의 보증배수는 64.7배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보증한도(90배)보다 낮은 상황임.

10)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2025~2026년 2년간’ 4,000호 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추경안으로 산출하였으나 2025년 매입 가능한 물량 약 1,000호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은 2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2,0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조원의 보증규모는 3년간의 목표치이므로 2025년 공급규모(약 4천억원)를 기준으로 재정소요를 재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드의 출자자 참여의향이 저조하고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는 부동산에 기초한 리츠 상품으로 이루어져 벤처투자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벤처펀드 조성 시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정부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확대 및 사업화 자금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다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은 딥테크 분야 1,000개 이상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5년 하반기 AX 스타트업 및 컨소시엄 등의 지원사업 종료 후 우수 기업에 대하여 2026년 후속 지원사업 연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각 부처로부터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수행하기 위해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부처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에 예산 투입을 통한 성과 도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은 사업화 지원이 홍보 및 마케팅 중심의 간접적 지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매출 창출 및 시장 진입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지원 이후 실제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화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3. 민생 안정

## 가. 개요

추경안의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은 11개 부처 37개 사업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조 9,766억원이 증액된 66조 1,231억원이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5개 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 고용보험기금 2개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1개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직급여 1조 2,92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652억원, 진폐위로금 450억원 등 총 1조 5,9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복권기금 1개 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2개 사업으로,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26억원, 지방채 인수(융자) 1조원,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729억원 등 총 1조 2,7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3개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4억원 등 총 1조 1,004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 주택도시기금 1개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72억원, 전세임대(융자) 3,208억원 등 총 3,7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개 사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813억원, 소상공인재기지원 263억원,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50억원 등 총 3,1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1,780억원, 국가보훈부 85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424억원, 해양수산부 6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7억원, 행정안전부 21억원이 제2회 추경안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민생 안정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 고용부 | 일반회계 | 취약계층취업촉진 | 62 | 92 | 92 | 112 | 20 |
| | | 내일배움카드(일반) | 5,849 | 5,802 | 5,802 | 5,962 | 160 |
|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8,375 | 8,851 | 8,851 | 9,109 | 258 |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9,425 | 8,457 | 8,457 | 10,109 | 1,652 |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77 | 218 | 218 | 346 | 128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진폐위로금 | 868 | 837 | 837 | 1,288 | 450 |
| | 고용보험기금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1,250 | 1,192 | 1,192 | 1,293 | 101 |
| | | 구직급여 | 109,144 | 109,171 | 109,171 | 122,100 | 12,929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 402 | 704 | 704 | 785 | 81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4,718 | 4,818 | 4,818 | 4,968 | 150 |
| 소계 | | | 140,270 | 140,142 | 140,142 | 156,070 | 15,929 |
| 기재부 | 복권기금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 - | 13 | 13 | 39 | 26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지방채 인수(융자) | 26,000 | 100 | 2,100 | 12,100 | 10,000 |
| | |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포함) | 282,599 | 299,779 | 301,206 | 303,935 | 2,729 |
| 소계 | | | 308,599 | 299,892 | 303,319 | 316,073 | 12,754 |
| 금융위 |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 - | - | 4,000 | 4,000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3,300 | 5,000 | 5,000 | 12,000 | 7,000 |
| |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13 | 12 | 12 | 16 | 4 |
| 소계 | | | 3,313 | 5,012 | 5,012 | 16,016 | 11,004 |
| 국토부 | 일반회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794 | 777 | 777 | 1,349 | 572 |
| | 주택도시기금 | 전세임대(융자) | 45,469 | 51,141 | 51,141 | 54,349 | 3,208 |
| 소계 | | | 46,263 | 51,919 | 51,919 | 55,698 | 3,779 |
|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1,254 | 2,109 | 5,444 | 8,256 | 2,813 |
| | | 소상공인재기지원 | 1,663 | 2,748 | 3,242 | 3,505 | 263 |
| |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 1,363 | 1,122 | 1,122 | 1,172 | 50 |
| 소계 | | | 4,280 | 5,979 | 9,808 | 12,933 | 3,125 |
| 복지부 | 일반회계 | 의료급여 | 89,377 | 86,882 | 86,882 | 88,223 | 1,341 |
| | | 긴급복지 | 3,585 | 3,501 | 3,501 | 3,730 | 229 |
| | | 소록도병원관리 | 57 | 53 | 53 | 62 | 9 |
| | 지역균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33 | 391 | 391 | 494 | 103 |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 | 발전특별회계 | | | | | | |
| | 국민건강 증진기금 | 모자보건사업 | 245 | 276 | 276 | 331 | 54 |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508 | 562 | 561 | 587 | 25 |
| | 응급의료기금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108 | 124 | 124 | 142 | 18 |
| 소계 | | | 94,313 | 91,790 | 91,789 | 93,569 | 1,780 |
| 보훈부 | 일반회계 | 보훈병원진료 | 3,920 | 3,923 | 3,923 | 4,421 | 498 |
| | | 위탁병원진료 | 2,563 | 2,491 | 2,491 | 2,837 | 346 |
| |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 351 | 343 | 343 | 351 | 8 |
| 소계 | | | 6,835 | 6,757 | 6,757 | 7,609 | 852 |
| 농림부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축사시설현대화(융자) | 1,000 | 960 | 960 | 1,184 | 224 |
| |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1,446 | 1,634 | 1,634 | 1,834 | 200 |
| 소계 | | | 2,446 | 2,593 | 2,593 | 3,017 | 424 |
| 해수부 | 농어촌구조 개서특별회계 | 수산식품산업육성 | 72 | 42 | 42 | 102 | 60 |
| 소계 | | | 72 | 42 | 42 | 102 | 60 |
| 산업부 |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지역산업위기대응 | - | - | - | 37 | 37 |
| 소계 | | | - | - | - | 37 | 37 |
| 행안부 | 일반회계 | 10.29참사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 1 | 5 | 5 | 21 | 15 |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168 | 80 | 80 | 86 | 6 |
| 소계 | | | 169 | 86 | 86 | 107 | 21 |
| 11개 부처 | | 37개 사업 | 606,559 | 604,211 | 611,466 | 661,231 | 49,766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장기연체 채무 탕감 및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활능력 및 재기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배드뱅크 방식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의 일괄 소각·감면을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면제·경감함으로써 차주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속히 경제력을 회복하도록 기여할 수 있고, 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처분하여 금융권의 건전성을 일부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 역시 제기되는 만큼, 채무 소각·감면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고용·복지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재기 지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0개월 동안 채권매입액 누적 실적이 9조 8,021억원으로 계획액 33조 4,000억원의 29.3%에 그치고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대상 차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제도개편과 더불어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사업은 지방비 부담, 미흡한 사업 계획,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조속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50%)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경을 통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구조인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적시 지원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 가능 여부 등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은 연 평균 대출건수의 3배가 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분할상환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책자금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상환연장 심사·현장실사의 지체로 인해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국민취업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1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7만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말 기준 2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1만 8,512명에 불과하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소관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내 준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소록도병원관리’** 사업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와 원장 관사의 경우 관련 부처 협의 등으로 인해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단기간 심사와 선정으로 인해 훈련 제공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나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는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강화,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나, 2025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모집인원이 0명에 해당하는 등 기존 운영기관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의 내실화와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급여’** 사업은 60세 이상 수급자와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구직급여의 목적과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인력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은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이 폭염 전 사업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빠르게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나,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생략으로 부적정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근로자 융자를 받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임

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융자 후 회수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넷째,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및 타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사시설개선(융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이차보전사업으로도 융자지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급여’** 사업은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의 실질 가용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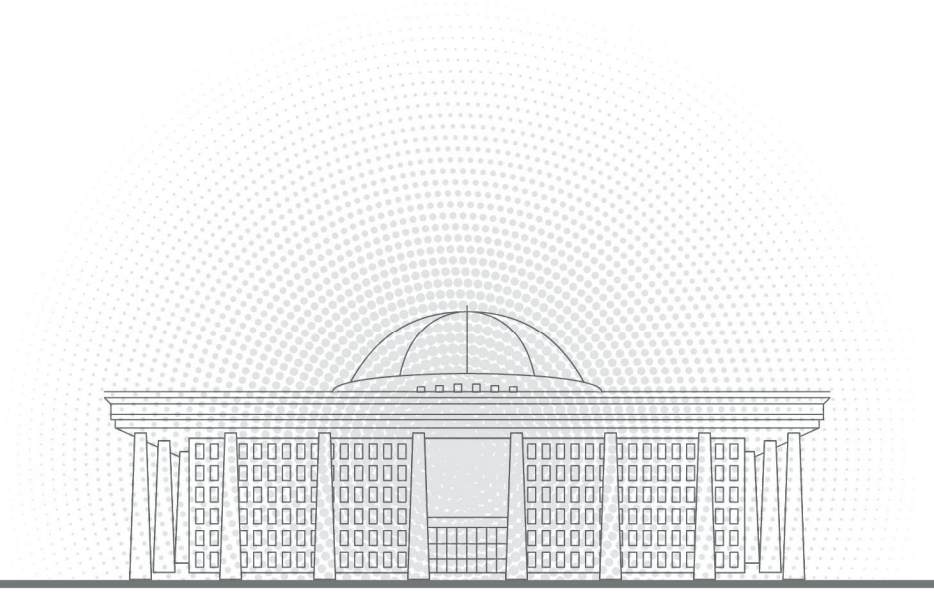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수요 예측과 단가 선정의 미흡, 서비스 이용 데이터 부재 및 지자체별 실집행률 미고려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 **‘전세임대’**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非아파트형 전세임대의 경우 2025년 본예산에서 처음 편성된 사업으로 입주자 모집 결과 청약률이 48.6% 수준에 불과하고, 전세임대 사업은 매년 기금운용계획변경 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별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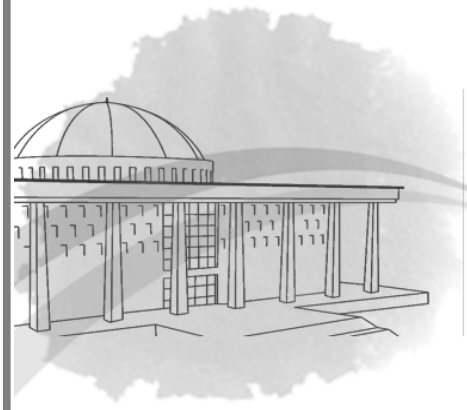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 【 부처별 】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3조 9,20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예산은 1,011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고, 기금도 3조 8,19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896 | 1,011 | 1,011 | 1,011 | - | - |
| 기 금 | 43,325 | 38,198 | 38,198 | 38,198 | - | - |
| 합 계 | 44,221 | 39,209 | 39,209 | 39,209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3조 1,70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1,004억원(53.1%) 증가함.

---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예산은 3조 1,70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1,004억원(53.1%) 증가하였고, 기금은 1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5,030 | 16,838 | 20,703 | 31,707 | 11,004 | 53.1 |
| 기 금 | 1 | 1 | 1 | 1 | - | - |
| 합 계 | 15,031 | 16,839 | 20,704 | 31,708 | 11,004 | 53.1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1,011억원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896 | 1,011 | 1,011 | 1,011 | - | - |
| 합계 | 896 | 1,011 | 1,011 | 1,011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1,004억원(24.1%)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40,030 | 41,838 | 45,703 | 56,707 | 11,004 | 24.1 |
| 합계 | 40,030 | 41,838 | 45,703 | 56,707 | 11,004 | 24.1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조 1,004억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7,000억원을 증액하였음.

한편,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최근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3억 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없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331,255 | 501,205 | 501,205 | 1,601,559 | 1,100,354 | 219.5 |
| 1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 - | - | 400,000 | 400,000 | 순증 |
| 2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330,000 | 500,000 | 500,000 | 1,200,000 | 700,000 | 140.0 |
| 3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1,255 | 1,205 | 1,205 | 1,559 | 354 | 29.4 |
| 합계 | | 331,255 | 501,205 | 501,205 | 1,601,559 | 1,100,354 | 219.5 |

주) 총계 기준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는 새출발기금 관련 캠코채 발행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자본금 확충은 채권 매입범위 확대 등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속한 재기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무를 신속히 탕감하여 조속한 재기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바,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채권 매입·소각과 더불어 다양한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현금출자를 통한 재원 기반 마련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 필요

### 가.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00억원(140.0%) 증액된 1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증감률 (B-A)/A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330,000 | 500,000 | 500,000 | 1,200,000 | 700,000 | 140.0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이라 함)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4)] 또는

3)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구조개선정책관)

4)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를 의미함.

부실우려차주[5]를 대상으로 원금 조정, 장기·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6]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이 있음.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한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새출발기금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 이후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내용) ① 원금조정(순부채 60~80%), ② 금리감면, ③상환기간 연장(최대 10년, 부동산담보 최대 20년), ④ 거치기간 부여(최대 1년, 부동산담보 최대 3년), ⑤ 추심중단 등

◦ (지원대상) 2020.4월~20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차주

◦ (지원방식)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 및 중개형으로 구분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캠코)으로 지원
- 부실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신복위)으로 지원

| | 매입형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
| 대상채권 |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br>*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무 | 부실우려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br>부실차주 담보채무 |
| 지원내용 | 원금조정: 순부채의 60~80% 감면<br>(취약계층 90%)<br>금리조정: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 원금조정 : 없음<br>금리조정 : 연체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br>(연체이자 감면)<br>* (연체 30일 이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br>*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
| 만기연장 |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 | |

(매입형)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

(중개형) 신복위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하여 지원)

◦ (사업기간 / 수행주체) 2022.10.4~2026.12월까지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금융위원회

5)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함.

6)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의미함.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6년까지 ‘40조원+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2024.7.)한 바 있고,[7] 금융위원회는 그간 사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채권 매입액, 채권매입가율, 예상부도율 등을 조정하여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채무조정규모를 40조원+α로 하고, 채권 매입이 필요한 비율을 83.5%로, 예상매입가율을 40.7%로, 예상부도율을 29.5%로 하여, 정부 출자금 규모는 예상 손실비용 규모인 4.0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9.59조원은 캠코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임.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재원 조성 계획 변경 내역]

| 구 분 | 당초 계획<br>(2022.10.~) | 제1차 변경계획<br>2025년 예산안(2024.9.) | 제2차 변경계획<br>2025년 제2회 예산안(2025.6.) |
|---|---|---|---|
| 채무조정<br>전체 규모 | 30조원 | 40조원+α | 40조원+α |
| 채권<br>매입 규모 | 30조원 | 33.4조원 = 40조원 × 83.5%<br>(채권 매입 비율: 83.5%) | 33.4조원 = 40조원 × 83.5%<br>(채권 매입 비율: 83.5%) |
| 채권매입<br>소요재원 | 18조원 = 30조원 × 60%<br>(예상매입가율: 60%) | 13.6조원 = 33.4조원 × 40.7%<br>(예상매입가율: 40.7%) | 13.6조원 = 33.4조원 × 40.7%<br>(예상매입가율: 40.7%) |
| 정부 출자 | 3.6조원 = 18조원 × 20%<br>(예상부도율: 20%) | 4.01조원 = 13.6조원 × 29.5%<br>(예상부도율: 29.5%) | 4.48조원 = 13.6조원 × 33.0%<br>(예상부도율: 33.0%) |
| 캠코채<br>발행 규모 | 14.4조원 = 18조원 -<br>정부출자금 | 9.59조원 = 13.6조원 -<br>정부출자금 | 9.12조원 = 13.6조원 -<br>정부출자금 |

자료: 금융위원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영위기간을 연장(2020.4.~2024.11.→2020.4.~2025.6.)하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총 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상향(최대 80%→최대 90%)하고 상환기간을 연장(최대 10년→최대 20년)하려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매입대상 차주 확대 및 원금감면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매입 채권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예상부도율을 상향(29.5%→33.0%)하고 정부 출자분도 함께 확대(4.01조원→4.48조원)하였음. 참고로, 채무조정 규모와 채권 매입목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정부 출자분 확대에 따라 캠코채 발행 규모는 일부 축소(9.59조원→9.12조원)되었음.

7)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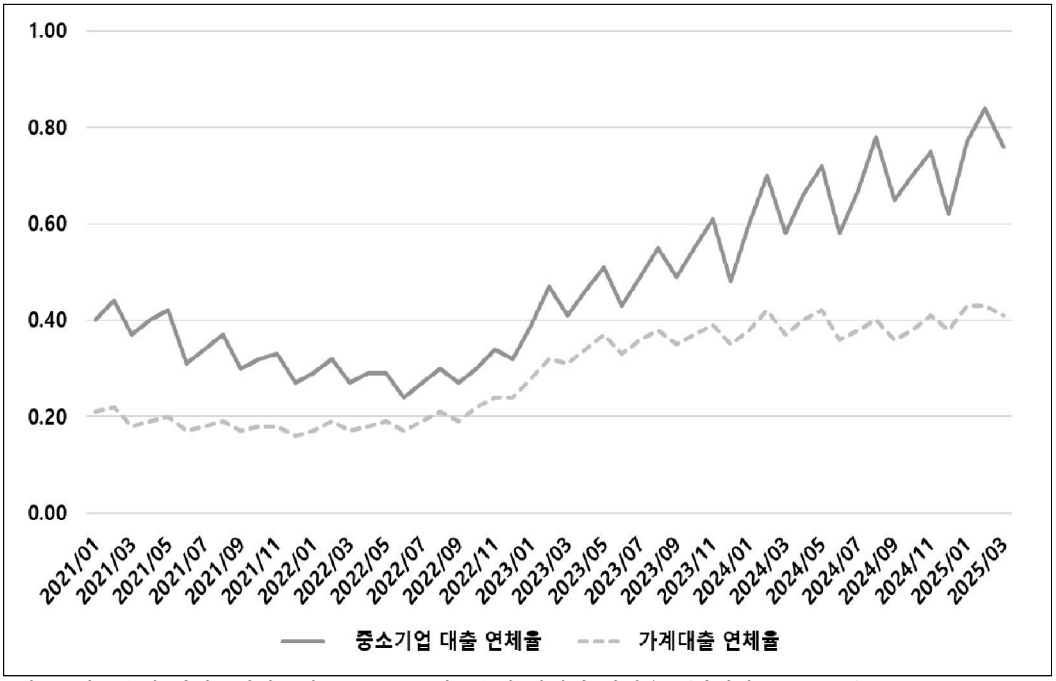
**새출발기금 관련 캠코채 발행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자본금 확충은 채권 매입범위 확대 등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속한 재기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의 집행,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의 부실이 이연되었다가 2023년부터 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말 도입되었음. 정부재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보전하고 캠코채 발행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되었음.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2.3.7.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검색일 2025.6.23.)

그러나 새출발기금 초기에는 당초 계획보다 채권매입규모가 적어 사업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캠코채 발행 필요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캠코채가 계획보다 적게 발행되었음. 다만 2024년 2월 코로나19의 피해 입증 요건이 사라지면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규모가 증가하고 캠코채 발행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 | 2022 | 2023 | 2024 | 2025.3. | 2025 | 2026(예상) | 합 계 |
|---|---|---|---|---|---|---|---|---|
| 채무조정계획 | 당초(30조원) | 60,000 | 90,000 | 90,000 | 60,000 | 60,000 | - | 300,000 |
| | 변경 | 217 | 20,696 | 94,200 | 144,300 | 144,300 | 141,300 | 400,713 |
| | 매입규모 | 2,952 | 26,145 | 75,603 | 115,850 | 115,850 | 113,450 | 334,000 |
| 채권매입액 실적 | | 2,952 | 26,145 | 42,303 | 14,854 | - | - | 86,254 |
| 채권매입가액 실적 | | 863 | 11,309 | 19,204 | 6,409 | - | - | 37,785 |

주) 채무조정계획은 2025년 말 예상치이고,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 실적은 2025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소요액 1조 8,900억원 중 정부 출자금은 3,300억원, 캠코채 발행액은 1조 5,600억원으로, 정부 재원 비중은 17.5%로 당초 예상 부도율 29.5%에 비해 낮은데, 이는 매입채권에서 발생하는 예상손실 대비 정부출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계획 대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계 획 | | 현 황 | | | | | |
|---|---|---|---|---|---|---|---|---|
| | 당 초 (2022.10.) | 변 경 (2024.9.) | 2022 | 2023 | 2024 | 2025.5. | 2022 ~2025.5. (누적) | 변경계획 대비 투입비율 |
| 정부출자금(예산) | 36,000 | 40,058 | 6,000* | 2,800 | 3,300 | 5,000 | 17,100 | 42.7% |
| 캠코채 발행액 | 144,000 | 96,105 | - | 3,600 | 15,600 | 8,000 | 27,200 | 28.3% |
| 합 계 | 180,000 | 136,163 | 6,000 | 6,400 | 18,900 | 13,000 | 44,300 | 32.5% |

주) 현물출자 5,000억원 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계획대로 캠코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213.7%로 이미 공공기관 부채비율 상한(200%)을 초과하였고, 채무조정 및 채권매입 계획을 준수할 경우 2025년 말에는 274.0%로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000억원이 현금출자될 경우, 당초 계획처럼 추가적인 캠코채 발행이 없는 경우 2025년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은 229.5%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캠코채 발행 여력이 확대되어 새출발기금을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 및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재원 조달 방식 | | 자본 (A) | 부채 (B) | 부채비율 (B/A) |
|---|---|---|---|---|---|
| | 재정(현금출자) | 캠코채 발행 | | | |
| 2022년 (결산) | 새출발기금 출범(2022.10.) | | 34,289 | 58,470 | 170.5 |
| | 6,000 | - | 40,289 | 58,470 | 145.1 |
| 2023년 |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 | 33,760 | 73,741 | 218.4 |
| | 2,800 | 3,600 | 42,560 | 77,341 | 181.7 |
| 2024년 |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 | 34,811 | 81,061 | 232.9 |
| | 3,300 | 15,600 | 46,911 | 100,261 | 213.7 |
| 2025년 5월 |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 | 34,811 | 84,961 | 244.1 |
| | 5,000 | 8,000 | 51,911 | 112,161 | 216.1 |
| 2025년 말 (추경 미반영) |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 | 34,811 | 81,068 | 232.9 |
| | 5,000 | 41,947 | 51,911 | 142,215 | 274.0 |
| 2025년 말 (추경 반영) |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 | 34,811 | 81,068 | 232.9 |
| | 12,000 | 34,947 | 58,911 | 135,215 | 229.5 |

주)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 일괄 소각' 사업 관련 출자금은 제외하고 새출발기금 관련 출자금 현황만 반영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실적이 목표 대비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6년까지의 채무조정 목표(40조원+α)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0개월동안 채권매입액 누적 실적은 9조 8,020억원으로 변경된 계획액(2024.9. 기준) 33조 4,000억원의 29.3%에 그침.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33조 4,000억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진도율이 29.3%에 지나지 않은 것임.

금융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말까지 19개월 간 총 23조 5,98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채권매입액은 1조 2,42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24년 월평균 채권매입액은 3,525억원에 불과함.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4년 실적의 3배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이 필요해 보임.

[새출발기금의 월별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 실적 및 예상치]

(단위: 억원)

| 연 도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
|---|---|---|---|---|---|---|---|---|---|---|---|---|---|---|
| 2022 | 채권 매입액 | (2022.10. 새출발기금 출범) | | | | | | | | | - | 750 | 2,202 | 2,952 |
| | 채권 매입가액 | | | | | | | | | | - | 364 | 500 | 864 |
| 2023 | 채권 매입액 | 1,693 | 2,222 | 1,777 | 2,114 | 2,130 | 1,859 | 576 | 2,784 | 2,819 | 2,868 | 2,695 | 2,608 | 26,145 |
| | 채권 매입가액 | 406 | 611 | 826 | 947 | 976 | 796 | 311 | 1,432 | 1,410 | 1,320 | 1,119 | 1,155 | 11,309 |
| 2024 | 채권 매입액 | 2,520 | 2,525 | 2,900 | 3,076 | 3,464 | 4,257 | 4,933 | 3,991 | 4,148 | 3,506 | 3,008 | 3,975 | 42,303 |
| | 채권 매입가액 | 1,209 | 1,158 | 1,350 | 1,306 | 1,596 | 1,861 | 2,313 | 1,830 | 2,004 | 1,284 | 1,481 | 1,812 | 19,204 |
| 2025 | 채권 매입액 | 4,007 | 5,099 | 5,748 | 4,717 | 7,049 | - | - | - | - | - | - | - | 26,620 |
| | 채권 매입가액 | 1,770 | 2,231 | 2,408 | 2,187 | 3,357 | - | - | - | - | - | - | - | 11,953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재가공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신규): 신속한 부실채권 소각 및 연계지원 병행 필요

### 가.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대출 연체에 따른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증감률 (B-A)/A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 - | - | 400,000 | 400,000 | 순증 |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가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 일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소각하고,[9)]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보다 우대하여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하고 최대 10년 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채무조정하기 위한 현금출자금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것임.[10)]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채무조정을 수행하여 채무조정에 시일이 걸리는 반면, 이 사업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지원대상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하도록 하여 일괄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8)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 일괄 소각)(2432-305)(구조개선정책관)

9)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사가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의 권리를 채권 형태로 저가에 매입해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소액 장기 연체자의 회생을 돕는 전문 기관을 의미함.

10) 금융위원회는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최장기간, 파산면책 이후 파산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 연체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고려해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이 경우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의 95% 이상이 5,000만원 이하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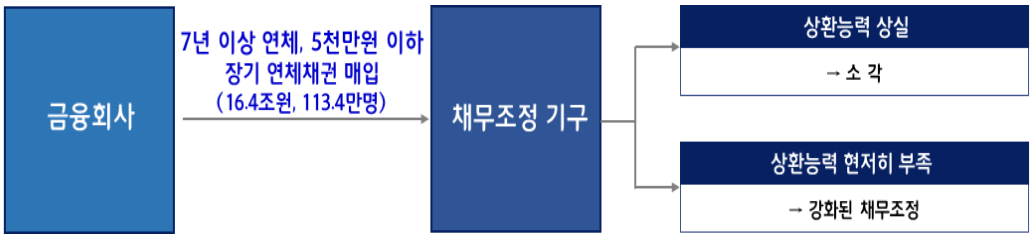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대출 연체에 따른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 경감 및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내수 부진 극복 전환점 마련을 지원
◦ (지원대상) 생업 종사 등으로 채무조정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재기 의지가 저하된 장기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
① (매입) 일정 기간 이상 연체 + 일정 금액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 (연체기간) 7년 이상 연체 채권*
* 연체 발생일로부터 7년은 금융권 공유대상 신용정보에서 삭제되는 시점
- (연체금액) 5천만원 이하 채권
② (소각·감면) 매입 즉시 추심 중단 後 채무이행곤란 채권 소각·원금 감면
- (소각)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지난 후 자격 재확인을 거쳐 소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 범위 내 등
- (원금감면) 소각 外 채권은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최대 10년(신복위 기준보다 강화)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최대 원금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 (사업비) 약 8,000억원(정부출연금 4,000억원)
- 정부 재정과 금융권 출연금을 1:1로 분담 시 약 4,000억원 소요 전망
◦ (지원절차)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SPC)가 대상채권 일괄매입
- 캠코-채권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협약 금융회사는 지원대상 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
* 채무자보호법상 3회 이상 매각된 채권은 캠코 또는 캠코 출자회사에만 매각 가능
-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 중단 후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연체 7년 이상 채권 약 34조원 중 5,000만원 이하의 채권 총액은 약 16조 4,000억원(113만 4,000명)으로 추산하고,[11] 평균 채권매입가율을 5%로 산정하여 약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음. 이 중 4,000억원은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예산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부 재정부담분 4,000억원을 편성하였음.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

11) 차주 1인당 장기연체 채무액은 평균 1,446만원임.

##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무를 신속히 탕감하여 조속한 재기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속한 채권 매입·소각과 더불어 재기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021~2024년 고정이하 가계여신 및 개인사업자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종료된 2023년부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상승하고 여신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계·개인사업자 여신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23년 1/4분기 0.23%에서 2024년 4/4분기 0.30%으로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대출 상환 연체 등으로 인해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2021~2024년 고정이하 가계여신 및 개인사업자여신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 | | 2022년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고정이하 가계여신+개인사업자여신 | 2,026,918 | 1,886,487 | 1,838,439 | 1,705,716 | 1,758,458 | 1,767,802 | 1,803,168 | 1,972,859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21% | 0.19% | 0.18% | 0.17% | 0.17% | 0.17% | 0.18% | 0.19% |
| 구분 | 2023년 | | | | 2024년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고정이하 가계여신+개인사업자여신 | 2,365,994 | 2,570,407 | 2,726,040 | 2,696,107 | 2,995,894 | 3,132,236 | 3,169,641 | 3,320,534 |
|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 | 0.23% | 0.25% | 0.26% | 0.26% | 0.28% | 0.29% | 0.29% | 0.30%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건전성(여신종별 고정이하여신)” (검색일: 2025.6.2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연체자는 금융 뿐만 아니라 근로활동,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바,[12]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함.

12)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자가 강도 높은 추심으로 인한 고통·불안, 급여·주거래통장 등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 압류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고, 제도권 금융 배제에 따른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의 일괄 소각·감면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면제·경감함으로써 차주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속히 경제력을 회복하도록 기여할 수 있고, 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처분하여 금융권의 건전성을 일부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배드뱅크 설립 후 취약계층의 연체 채무 일괄 매입 후 소각·감면은 2008년 '신용회복기금',[13] 2013년 '국민행복기금'[14] 및 2018년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15] 등이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과거 유사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같이 장기연체 채무의 일괄 매입 후 소각·감면하려는 것으로 보임.[16]

---

13) [신용회복기금 개요]

◦ 사업목적
- 금융소외자의 채무재조정, 저금리 전환 및 자활지원

◦ 사업내용
- (채무조정)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2007.12말 기준) ⇒ 원금 감면없이 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8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
- (전환대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 △3천만원 이하 채무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2008.9.2이전)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보증,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종합자활지원) 근본적인 자활이 가능하도록 종합자활지원정보(새희망네트워크) 안내

◦ 사업방식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기관 배분금을 재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신용회복기금을 설립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2008.9.2.

14) [국민행복기금 개요]

◦ 사업목적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

◦ 사업내용
-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

◦ 사업방식
- 국민행복기금에서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
-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되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13.3.25.

15)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부실채권 관련 역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 연도 | 프로그램명 | 채무조정 대상 | 채무조정 내용 | 채무조정 형태 |
|---|---|---|---|---|
| 2008 | 신용회복기금 | 3천만원 이하,<br>3개월 이내 연체 | 연체이자 전액감면<br>최대 8년 장기분할상환 | 일괄매입형 |
| 2013 | 국민행복기금 | 1억원 이하 신용대출,<br>6개월 이상 연체 | 최대 50%(기초수급자 70%) 감면<br>최대 10년 분할상환 | 일괄매입형 |
| 2018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 즉시 채무면제 또는<br>3년 이내 채권소각 | 복합형<br>(국민행복기금 내 일괄매입, 그외 차주신청) |
| 2022 | 새출발기금 |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br>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br>(코로나 피해 요건 삭제) | 원금 60-80% 조정, 금리 조정(9% 이내)<br>최대 10년 이내 분할상환(부동산 담보 20년) | 차주신청형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재구성

채무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의 공동 분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차주도 채무조정 후 잔여대출에 대해 강한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부실 여신을 보유한 민간 금융사도 채무조정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재정과 민간 금융사의 적정한 비용분담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17]

만일 금융위원회의 계획과 같이 채무조정기구에 정부재정과 금융권 출연금이 절반씩 출자되는 경우 배드뱅크가 추심한 장기연체채권의 회수액 및 그 수익을 일부 분배

◦ 사업목적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 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인 채무 정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일괄·신청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 (정리방안)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적 채무감면,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속 정리
-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

◦ 사업방식
- 장기 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설립 후 사업 수행

자료: 금융위원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2017.11.29.

16) 다만 2022년 10월 출시된 새출발기금은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신청에 따라 채무조정이 진행되며, 채권의 소각 없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조정 후 분할상환하도록 함.

17) 과거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부실채권기금 잉여금 중 금융기관 배분금을 재원으로 마련되었고,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일시 차입 후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상환하여 마련되었음.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연금, 금융권의 자발적 기부금, 금융회사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관련 기부금 등으로 마련되었음.

받을 수 있는데, 국민행복기금과 같이 금융권의 채무조정기구 지분별 수익금(배당금)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금융 분야에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은행권에서 대부분 상각처리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평균 매입가율을 연체연령별 채권 예상매입가율의 상단에 해당하는 5%로 설정하였는데,[18]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채권의 연체연령별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입가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19] 만일 사업추진 상황을 보아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 재원 규모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이와 같은 채무조정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및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20]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무에 대한 소각·감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자활능력을 함양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코로나19 전후 채무조정 및 채무조정실효(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용직·자영업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채무조정 실효율이 높을 수 있고, 특히 채무조정에 실패하지 않도록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교육·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21]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취약계층이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수요자로서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

18) 연체연령별 채권 예상 매입가율 : (~2005) 1.6% (2006~2015) 3.24% (2016~2018) 5%

19) 2013년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에는 부실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관행(5%)보다 높은 채권 매입가율(10% 내외)을 적용하여 연체채권 대출채권을 사들임에 따라 정부가 채권추심기관을 자처하여 은행의 이익을 챙겨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국민일보, 행복기금＝은행행복기금?… 부실채권 높은 가격에 매입땐 은행권 이익, 2013.3.31.)

20) 이데일리, “이자도 못 갚는 한계 자영업자 빚 탕감... 성실 상환자는 박탈감”, 2025.6.19.

21) 청년층과 미혼자, 일용직의 채무조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지원 확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혼별거사별을 한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유형에서 규칙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일용직에서 채무조정 실효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일용직은 소득 불규칙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합리적인 지출행동 및 비상자금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및 일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교육과 상담의 강화가 요구된다.(김성숙·정운영, 「코로나19 전후 채무조정이용자의 채무재조정 및 채무조정실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71~72.)

경제적 자립, 고용률 제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22)]

금융·고용·복지 연계지원이 시행된 이후 연계 대상자 중 무직·비정규직 및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복합지원 이용자의 금융여건이 개선되어 연계지원을 통한 경제력 회복 및 재기지원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구체적으로는 금융-고용 및 금융-복지 복합지원 이후 연계지원자 중 무직·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복합지원 비연계자에 비해 연계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및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합지원을 통해 금융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중 취약계층 비중]

| 구분 | 무직·비정규직 비율 | | | | 저소득자 비율 | | | |
|---|---|---|---|---|---|---|---|---|
| | 복합지원 이전 | | 복합지원 이후 | | 복합지원 이전 | | 복합지원 이후 | |
| 금융-고용 | 56% | (1,298명) | 83% | (14,530명) | 75% | (1,734명) | 83% | (14,602명) |
| 금융-복지 | 62% | (15,258명) | 68% | (23,272명) | 78% | (18,955명) | 77% | (26,191명) |

주 1) [금융-고용] 2024.3월말 본격 개시하여, 2024.1~3월을 복합지원 이전으로, 2024.4~12월을 복합지원 이후로 분류함
2) [금융-복지] 2024.6월말 본격 개시하여, 2024.1~6월을 복합지원 이전으로, 2024.7~12월을 복합지원 이후로 분류함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복합지원 주요 통계"

[복합지원 이용자 금융 여건 변화]

| 구 분 | 복합지원 非연계자 | 복합지원 연계자 | | |
|---|---|---|---|---|
| | 금융지원만 받은 자 | 금융-고용 | 금융-복지 | 금융고용-복지 |
| 이용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1)] | △10.9% | △13.3% | △10.8% | **△11.4%** |
|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 8.0% | 2.7% | 6.8% | **2.8%** |
| 채무조정 실효자[2)] 비중 | 3.1% | 0.7% | 2.4% | **0.7%** |

주 1) 지원 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지원시와 2024년 말을 비교한 보유 대부잔액(18%↑ 금리)
2)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복합지원 주요 통계"

22) 관계기관 합동,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2024.12.18.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 발굴 및 신속 심사를 통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자활능력 제고 및 재기 지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2,15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00 | 101 | 101 | 101 | - | - |
| 기 금 | 2,018 | 2,057 | 2,057 | 2,057 | - | - |
| 합 계 | 2,118 | 2,158 | 2,158 | 2,158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6조 5,30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4억원(1.3%) 증가함.

예산은 6조 3,123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4억원(1.3%) 증가하고, 기금은 2,17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61,791 | 62,289 | 62,289 | 63,123 | 834 | 1.3 |
| 기 금 | 2,266 | 2,178 | 2,178 | 2,178 | - | - |
| 합 계 | 64,057 | 64,467 | 64,467 | 65,302 | 834 | 1.3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98 | 99 | 99 | 99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 | 1 | 1 | 1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1 | 1 | 1 | - | - |
| 합계 | 100 | 101 | 101 | 101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4억원(1.3%) 증가함.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62,562 | 63,092 | 63,092 | 63,926 | 834 | 1.3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33 | 99 | 99 | 9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3 | 24 | 24 | 24 | - | - |
| 합계 | 62,718 | 63,215 | 63,215 | 64,049 | 834 | 1.3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834억 2,900만원임.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931억 5,3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훈단체 선양활동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고, 진료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진료’ 사업 및 ‘위탁병원진료’에 각각 498억 4,200만원과 345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립묘지 안전 강화를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등 12개 국립묘지 사업에 79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759,414 | 751,446 | 751,446 | 844,599 | 93,153 | 12.3 |
| 1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 35,120 | 34,281 | 34,281 | 35,081 | 800 | 2.3 |
| 2 | 보훈병원진료 | 392,031 | 392,296 | 392,296 | 442,138 | 49,842 | 12.7 |
| 3 | 위탁병원진료 | 256,315 | 249,113 | 249,113 | 283,686 | 34,573 | 13.9 |
| 4 | 국립서울현충원 | - | 11,333 | 11,333 | 12,581 | 1,248 | 11.0 |
| 5 | 국립대전현충원 | 16,320 | 11,352 | 11,352 | 13,134 | 1,782 | 15.7 |
| 6 | 국립4·19묘지 | 616 | 622 | 622 | 861 | 239 | 38.4 |
| 7 | 국립3·15묘지 | 555 | 560 | 560 | 647 | 87 | 15.5 |
| 8 | 국립5·18묘지 | 1,502 | 1,422 | 1,422 | 1,685 | 263 | 18.5 |
| 9 | 국립영천호국원 | 10,402 | 13,620 | 13,620 | 14,333 | 713 | 5.2 |
| 10 | 국립임실호국원 | 11,560 | 4,557 | 4,557 | 5,232 | 675 | 14.8 |
| 11 | 국립이천호국원 | 13,541 | 20,857 | 20,857 | 22,938 | 2,081 | 10.0 |
| 12 | 국립산청호국원 | 9,334 | 2,701 | 2,701 | 2,774 | 73 | 2.7 |
| 13 | 국립신암선열공원 | 704 | 708 | 708 | 808 | 100 | 14.1 |
| 14 | 국립괴산호국원 | 7,604 | 4,501 | 4,501 | 4,628 | 127 | 2.8 |
| 15 | 국립제주호국원 | 3,810 | 3,523 | 3,523 | 4,073 | 550 | 15.6 |
| 합계 | | 759,414 | 751,446 | 751,446 | 844,599 | 93,153 | 12.3 |

주) 총계 기준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97억 2,400만원임.

사업비는 동절기 영향으로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2025년 사업 진척도를 고려하여 ‘국립묘지 조성(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에서 △97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12,452 | 30,049 | 30,049 | 20,325 | △9,724 | △32.4 |
| 일반회계 | | 12,452 | 30,049 | 30,049 | 20,325 | △9,724 | △32.4 |
| 1 | 국립묘지조성 | 12,452 | 30,049 | 30,049 | 20,325 | △9,724 | △32.4 |
| 합계 | | 12,452 | 30,049 | 30,049 | 20,325 | △9,724 | △32.4 |

주) 총계 기준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광복회 선양 행사: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광복회 선양 행사’** 사업은 독립운동사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단체인 광복회에서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사적지 탐방 및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원(1,666.7%) 증액된 8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5년도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 35,120 | 34,281 | 34,281 | 35,081 | 800 | 2.3 |
|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 5,931 | 5,031 | 5,031 | 5,831 | 800 | 15.9 |
| 광복회 선양 행사 | 648 | 48 | 48 | 848 | 800 | 1,666.7 |

이 사업은 광복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320-01)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부터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에 필요한 보조예산이 신설(6억원)된 후 동년 6월 출범한 광복회 학술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음. 2025년도 본예산에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제2회 추경안에 포함되었음.

2) 세부사업: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보훈단체협력관)

[2025년 광복회 선양 행사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800만원 | ❍ 민간경상보조 : 4,800만원<br>- 춘·추계 사적지 탐방 및 광복회보 발간 사업 : 4,800만원 | 8억 4,800만원 | ❍ 민간경상보조 : 8억 4,800만원<br>- 춘·추계 사적지 탐방 및 광복회보 발간 사업 : 4,800만원<br>-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 8억원 |

자료: 국가보훈부

##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학술연구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이 사업 추경예산의 산출내역에 따르면,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예산(총 8억원)은 ① 학술연구 발표, 콘퍼런스 사업, 독립운동 논문·연구지원(3.5억원), ② 학술집&문헌발간사업(1억원), ③ 교육&홍보 미디어콘텐츠사업(1.5억원), ④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사업(2억원) 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2025년 광복회 선양 행사 사업 추경안 중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예산 산출내역]

| 항목 | 산식 |
|---|---|
| 학술연구 발표, 콘퍼런스 사업, 독립운동 논문·연구지원 | 3.5억원×1식 |
| 학술집&문헌발간사업 | 1억원×1식 |
| 교육&홍보 미디어콘텐츠사업 | 1.5억원×1식 |
|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사업 | 2억원×1식 |
| 계 | 8억원 |

자료: 국가보훈부

또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항목별 집행수량 및 평균 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 집행계획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항목에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액만이 각 1식의 형태로 산출되어 추경안으로 제출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2024년 예산(6억원)에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사업'(2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사실상 2025년 하반기 내에 2024년 예산액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상기한 2024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최초 6개월(2024년 1~6월) 간 집행된 금액은 약 1.5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2024년 광복회 선양 행사 사업 추경안 중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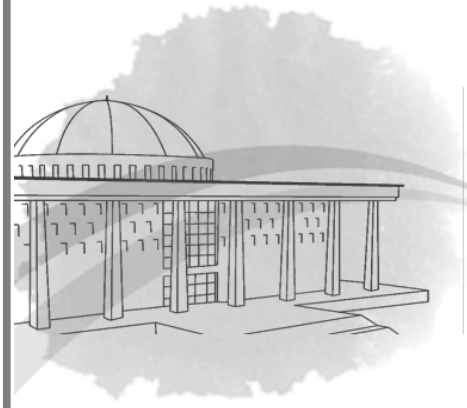
(단위: 원)

| 구분 | 지급일자 | 금액 |
|---|---|---|
| 1차 | 2024. 1. 26. | 27,600,000 |
| 2차 | 2024. 3. 8. | 5,000,000 |
| 3차 | 2024. 4. 18. | 13,341,000 |
| 4차 | 2024. 5. 16. | 75,000,000 |
| 5차 | 2024. 5. 17. | 25,400,000 |
| 6차 | 2024. 6. 13. | 9,870,000 |
| 7차 | 2024. 7. 2. | 24,300,000 |
| 8차 | 2024. 7. 2. | 2,000,000 |
| 9차 | 2024. 7. 2. | 14,630,000 |
| 10차 | 2024. 8. 5. | 58,000,000 |
| 11차 | 2024. 9. 13. | 25,000,000 |
| 12차 | 2024. 9. 13. | 14,000,000 |
| 13차 | 2024. 9. 30. | 40,000,000 |
| 14차 | 2024. 10. 30. | 68,000,000 |
| 15차 | 2024. 10. 30. | 17,000,000 |
| 16차 | 2024. 12. 3. | 12,000,000 |
| 17차 | 2024. 12. 3. | 70,000,000 |
| 18차 | 2024. 12. 3. | 63,859,000 |
| 19차 | 2024. 12. 17. | 35,000,000 |
| 계 | | 600,000,000 |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386조 44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3,326억원(△2.6%) 감소함.

예산은 374조 9,23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3,446억원(△2.7%) 감소한 반면, 기금은 11조 1,218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20억원(0.1%) 증가함.[1)]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3,623,748 | 3,840,185 | 3,852,676 | 3,749,230 | △103,446 | △2.7 |
| 기 금 | 105,930 | 111,068 | 111,098 | 111,218 | 120 | 0.1 |
| 합 계 | 3,729,678 | 3,951,253 | 3,963,774 | 3,860,448 | △103,326 | △2.6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42조 6,511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2,329억원(3.0%) 증가함.

예산은 4조 9,36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반면, 기금은 37조 7,14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조 2,329억원(3.4%)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51,993 | 33,367 | 49,367 | 49,367 | - | - |
| 기 금 | 350,115 | 361,239 | 364,815 | 377,144 | 12,329 | 3.4 |
| 합 계 | 402,108 | 394,605 | 414,182 | 426,511 | 12,329 | 3.0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조 9,574억원(2.7%)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4,408,102 | 4,638,148 | 4,735,886 | 4,858,346 | 122,460 | 2.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0,422 | 139,089 | 146,677 | 153,791 | 7,114 | 4.9 |
| 합계 | 4,538,524 | 4,777,237 | 4,882,563 | 5,012,137 | 129,574 | 2.7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789억원(2.0%)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20,317 | 409,310 | 432,269 | 441,059 | 8,789 | 2.0 |
| 합계 | 320,317 | 409,310 | 432,269 | 441,059 | 8,789 | 2.0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492조 9,681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0조 8,686억원(4.4%) 증가함.[2)]

기금별로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338조 4,10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3조 9,252억원(7.1%) 증가하였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조 3,12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00억원(△1.7%) 감소함.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조 6,04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70억원(△0.6%) 감소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137조 2,89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3조원(△2.1%) 감소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복권기금 | 84,156 | 88,685 | 88,685 | 88,685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기금 | 3,286,068 | 3,048,300 | 3,144,852 | 3,384,104 | 239,252 | 7.1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2,087 | 23,527 | 23,527 | 23,127 | △400 | △1.7 |
| 기후대응기금 | 22,873 | 26,217 | 26,217 | 26,047 | △170 | △0.6 |
| 외국환평형기금 | 2,051,201 | 1,402,894 | 1,402,894 | 1,372,894 | △30,000 | △2.1 |
| 국유재산관리기금 | 32,705 | 34,820 | 34,820 | 34,824 | 4 | 0.0 |
| 합계 | 5,499,090 | 4,624,443 | 4,720,995 | 4,929,681 | 208,686 | 4.4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7개의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운용규모 8,019억원) 제외

## 2. 세입경정 현황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372조 85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382조 4,296억원) 대비 10조 3,446억원(△2.7%) 감액됨.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61조 4,60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1조 8,050억원) 대비 10조 3,446억원(△2.7%)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 6,24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 | | 증감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B-A) | 비율 |
| □ 국세수입 | 3,365,324 | 3,824,296 | 3,824,296 | 3,720,850 | △103,446 | △2.7 |
| ㅇ 일반회계 | 3,261,793 | 3,718,050 | 3,718,050 | 3,614,604 | △103,446 | △2.7 |
| ㅇ 특별회계 | 103,531 | 106,246 | 106,246 | 106,246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5개 세목의 감액과 상속·증여세 1개 세목의 증액으로 구성됨.

감액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4조 6,872억원(△5.3%)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4조 3,095억원(△4.3%),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1,036억원(△7.3%), 개별소비세 9,184억원(△9.5%), 교육세 2,637억원(△4.4%) 순으로 감액되었음.

법인세는 2024년 하반기에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어 제1회 추경 대비 4.7조원을 감액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24.12월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4.3조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등으로 1.1조원,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및 발전연료 탄력세율 인하조치로 0.9조원 감액하였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 | | 제1회 추경 대비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증감률 (B-A/A) |
| 총 국 세 | 3,365,324 | 3,824,296 | 3,824,296 | 3,720,850 | △103,446 | △2.7 |
| ㅇ 소 득 세 | 1,174,180 | 1,268,192 | 1,268,192 | 1,268,192 | - | - |
| · 종합소득세 | 195,265 | 220,582 | 220,582 | 220,582 | - | - |
| · 양도소득세 | 166,852 | 194,116 | 194,116 | 194,116 | - | - |
| · 근로소득세 | 610,491 | 647,310 | 647,310 | 647,310 | - | - |
| ㅇ 법 인 세 | 625,113 | 882,544 | 882,544 | 835,671 | △46,872 | △5.3 |
| ㅇ 상속증여세 | 152,981 | 145,059 | 145,059 | 154,437 | 9,378 | 6.5 |
| ㅇ 부가가치세 | 822,358 | 876,388 | 876,388 | 833,292 | △43,095 | △4.3 |
| ㅇ 개별소비세 | 86,566 | 96,663 | 96,663 | 87,479 | △9,184 | △9.5 |
| ㅇ 증권거래세 | 47,602 | 38,454 | 38,454 | 38,454 | - | - |
| ㅇ 인 지 세 | 8,460 | 8,836 | 8,836 | 8,836 | - | - |
| ㅇ 과년도수입 | 65,334 | 65,156 | 65,156 | 65,156 | - | - |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13,891 | 151,048 | 151,048 | 140,012 | △11,036 | △7.3 |
| ㅇ 관 세 | 69,723 | 84,093 | 84,093 | 84,093 | - | - |
| ㅇ 교 육 세 | 53,738 | 60,402 | 60,402 | 57,765 | △2,637 | △4.4 |
| ㅇ 종합부동산세 | 41,847 | 41,215 | 41,215 | 41,215 | - | - |
| ㅇ 주 세 | 33,282 | 32,093 | 32,093 | 32,093 | - | - |
| ㅇ 농 특 세 | 70,249 | 74,153 | 74,153 | 74,153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 3.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21조 7,474억 9,900만원임.[3)]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4조 9,381억 3,8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7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6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5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에 1조원을 증액하였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청사 건립사업 중 조기준공이 가능한 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사업에 99억원,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99억원,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사업에 196억원,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사업에 5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 (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23,852,050 | 33,979,144 | 34,675,066 | 35,610,986 | 935,920 | 2.7 |
| 1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전출* | *18,262,006* | *28,992,437* | *29,117,031* | *29,388,119* | *271,088* | *0.9* |
| 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 *5,590,044* | *4,986,707* | *5,558,035* | *6,222,867* | *664,832* | *12.0* |
| 복권기금 | | - | 1,285 | 1,285 | 3,855 | 2,570 | 200.0 |
| 3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 - | 1,285 | 1,285 | 3,855 | 2,570 | 2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 | 182,946,627 | 158,135,211 | 167,382,471 | 191,307,690 | 23,925,219 | 14.3 |
| 4 |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포함) | 28,259,942 | 29,977,898 | 30,120,585 | 30,393,459 | 272,874 | 0.9 |

3)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6개(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임.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 (B) | 증액분 (B-A) | (B-A)/A |
| 5 | 지방채 인수(융자) | 2,600,000 | 10,000 | 210,000 | 1,210,000 | 1,000,000 | 476.2 |
| 6 | *일반회계 예탁* | *81,676,517* | *82,765,297* | *91,071,577* | *113,662,227* | *22,590,650* | *24.8* |
| 7 | *기타기금 예탁* | *69,445,731* | *44,477,199* | *45,075,492* | *45,126,362* | *50,870* | *0.1* |
| 8 |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 *964,437* | *904,817* | *904,817* | *915,642* | *10,825* | *1.2* |
| 국유재산관리기금 | | 1,312,661 | 1,438,559 | 1,454,319 | 1,528,748 | 74,429 | 5.1 |
| 9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 5,386 | 12,543 | 17,975 | 27,828 | 9,853 | 54.8 |
| 10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 38,004 | 51,521 | 61,863 | 71,795 | 9,932 | 16.1 |
| 11 |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 16,370 | 17,643 | 17,629 | 37,273 | 19,644 | 111.4 |
| 12 |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 2,901 | 6,852 | 6,852 | 11,852 | 5,000 | 73 |
| 13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1,250,000* | *1,350,000* | 1,350,000 | 1,380,000 | 30,000 | 2.2 |
| 합계 | | 208,111,338 | 193,554,199 | 203,513,141 | 228,451,279 | 24,938,138 | 12.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3조 1,906억 3,9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4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6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는 수원국의 정치·행정상황 변화 등으로 집행지연 가능성이 높은 대개도국차관 중 '중남미차관' 사업에서 △80억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에서 △320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대응기금은 상대국가의 사업승인 관련 법·제도 수립 지연 등으로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사업에서 △170억원을 감액하였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존 비축 부동산 우선 활용 및 비축 부동산 매입 시기 조정 등으로 '비축토지매입' 사업에서 △300억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2,368,162 | 2,648,566 | 2,648,566 | 2,591,566 | △57,000 | △2.2 |
| 1 |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 *1,218,749* | *1,317,379* | *1,317,379* | *1,277,379* | *△40,000* | *△3.0* |
| 2 | *기후대응기금 전출* | *1,149,413* | *1,331,187* | *1,331,187* | *1,314,187* | *△17,000* | *△1.3* |
| 복권기금 | | *160,191* | *155,341* | *140,341* | *137,771* | *△2,570* | *△1.8* |
| 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160,191* | *155,341* | *140,341* | *137,771* | *△2,570* | *△1.8* |
| 대외경제협력기금 | | 652,725 | 813,304 | 586,590 | 546,590 | △40,000 | △6.8 |
| 4 | 중남미차관(융자)(ODA) | 43,864 | 38,089 | 38,089 | 30,089 | △8,000 | △21.0 |
| 5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 608,861 | 775,215 | 548,501 | 516,501 | △32,000 | △5.8 |
| 기후대응기금 | | 38,710 | 30,425 | 30,425 | 13,425 | △17,000 | △55.9 |
| 6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 38,710 | 30,425 | 30,425 | 13,425 | △17,000 | △55.9 |
| 외국환평형기금 | | 72,904,958 | 49,572,373 | 49,572,373 | 46,572,373 | △3,000,000 | △6.1 |
| 7 | *국공채이자상환* | *752,674* | *655,637* | *655,637* | *604,637* | *△51,000* | *△7.8* |
| 8 | *한국은행예치* | *72,152,284* | *48,916,736* | *48,916,736* | *45,967,736* | *△2,949,000* | *△6.0* |
| 국유재산관리기금 | | 1,066,239 | 1,141,185 | 1,141,185 | 1,067,116 | △74,069 | △6.5 |
| 9 | 비축토지매입 | 80,000 | 100,000 | 100,000 | 70,000 | △30,000 | △30.0 |
| 1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86,239* | *1,041,185* | *1,041,185* | *997,116* | *△44,069* | *△4.2* |
| 합계 | | 77,190,985 | 54,361,194 | 54,119,480 | 50,928,841 | △3,190,639 | △6.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 1/4분기에 △0.2%의 역성장이 나타나는 등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국채 추가발행으로 인한 국가채무가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여건이 악화되어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고, 2025년 2차례의 추경 편성에 따른 대응지방비까지 고려할 때,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세입경정: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마련 및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병행할 필요

### 가. 개 요

세입경정은 당해연도 세입이 실제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현실화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 집행예산 부족으로 불용처리하게 됨.[4)]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372조 850억원으로, 제1회 추경(382조 4,296억원) 대비 10조 3,446억원(△2.7%) 감액 편성하였음.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61조 4,604억원으로, 제1회 추경(371조 8,050억원) 대비 10조 3,446억원(△2.7%)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 6,246억원으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경정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 | | 증감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B-A) | 비율 |
| □ 국세수입 | 3,365,324 | 3,824,296 | 3,824,296 | 3,720,850 | △103,446 | △2.7 |
| ○ 일반회계 | 3,261,793 | 3,718,050 | 3,718,050 | 3,614,604 | △103,446 | △2.7 |
| ○ 특별회계 | 103,531 | 106,246 | 106,246 | 106,246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4) 2023년 및 2024년 세입경정 없이 △56.4조원,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타 회계·기금의 가용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불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음.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5개 세목의 감액과 상속·증여세 1개 세목의 증액으로 총 6개 세목임.

감액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4조 6,872억원(△5.3%)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4조 3,095억원(△4.3%),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1,036억원(△7.3%), 개별소비세 9,184억원(△9.5%) 순으로 나타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세수입 전망]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 실적 | 2025년 | | | 제1회 추경 대비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 (B) | 증감액 (B-A) | 증감률 (B-A/A) |
| 총 국 세 | 3,365,324 | 3,824,296 | 3,824,296 | 3,720,850 | △103,446 | △2.7 |
| ○ 소 득 세 | 1,174,180 | 1,268,192 | 1,268,192 | 1,268,192 | - | - |
| · 종합소득세 | 195,265 | 220,582 | 220,582 | 220,582 | - | - |
| · 양도소득세 | 166,852 | 194,116 | 194,116 | 194,116 | - | - |
| · 근로소득세 | 610,491 | 647,310 | 647,310 | 647,310 | - | - |
| ○ 법 인 세 | 625,113 | 882,544 | 882,544 | 835,671 | △46,872 | △5.3 |
| ○ 상속증여세 | 152,981 | 145,059 | 145,059 | 154,437 | 9,378 | 6.5 |
| ○ 부가가치세 | 822,358 | 876,388 | 876,388 | 833,292 | △43,095 | △4.3 |
| ○ 개별소비세 | 86,566 | 96,663 | 96,663 | 87,479 | △9,184 | △9.5 |
| ○ 증권거래세 | 47,602 | 38,454 | 38,454 | 38,454 | - | - |
| ○ 인 지 세 | 8,460 | 8,836 | 8,836 | 8,836 | - | - |
| ○ 과년도수입 | 65,334 | 65,156 | 65,156 | 65,156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13,891 | 151,048 | 151,048 | 140,012 | △11,036 | △7.3 |
| ○ 관 세 | 69,723 | 84,093 | 84,093 | 84,093 | - | - |
| ○ 교 육 세 | 53,738 | 60,402 | 60,402 | 57,765 | △2,637 | △4.4 |
| ○ 종합부동산세 | 41,847 | 41,215 | 41,215 | 41,215 | - | - |
| ○ 주 세 | 33,282 | 32,093 | 32,093 | 32,093 | - | - |
| ○ 농 특 세 | 70,249 | 74,153 | 74,153 | 74,153 | -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법인세는 2024년 법인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5] 되어 법인세 신고세액이 당초 예상보다 하회하였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전망과 원천징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 대비 4.7조원을 감액하였음.

부가가치세는 2024.12월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2025년 부가가치세 실적 부진 등을 반영하여 4.3조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6] 등으로 1.1조원,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및 발전연료 탄력세율 인하조치[7]로 0.9조원 감액하였음.

참고로, 정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는 세목 중 소득세의 경우 최근 월별실적이 등락하고 있어 올해 전망이 불확실하고, 증권거래세는 6월 주식시장 호조세가 상당하여 하반기 세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관세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수입액 전망이 불확실하여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나. 검토의견

**첫째,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2.2%)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0.8%[8])되고, 2025년 1/4분기에 △0.2%의 역성장이 나타나는 등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국채 추가발행에 따른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연도 지출을 위해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하거나 집행예산 부족으로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2023년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56.4조원, 2024년에는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않고, 주택도시기금 등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세출예산의 불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음.

---

5) 2024년 코스피 +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 (상반기) 232% → (하반기) 86%

6)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1~4월) △15/△23 → (5~8월) △10/△15

7) 발전연료/자동차 탄력세율(%): (연중) △15/△30

8)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5)」, 2025.5.29.

이러한 대응방법에 대해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또한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됨에도 전년 대비 15.1조원(4.1%) 증가한 382.4조원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과다편성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수납현황 및 내년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현실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9)]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 2025.5월까지의 세수진도율, 내수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에도 국세수입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음.

[세입경정 세목별 2024년 실적, 2025년 예산 및 추경예산 비교]

(단위: 조원)

| 세 목 | 2024년 실적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제1회 추경 | 2025년 제2회 추경안 | | |
|---|---|---|---|---|---|---|
| | | | | 금액 | 제1회 추경 대비 | 전년대비 |
| **총 국 세** | **336.5** | **382.4** | **382.4** | **372.1** | **△10.3** | **35.6** |
| 법인세 | 62.5 | 88.3 | 88.3 | 83.6 | △4.7 | 21.1 |
| 부가가치세 | 82.2 | 87.6 | 87.6 | 83.3 | △4.3 | 1.1 |
| 상속증여세 | 15.3 | 14.5 | 14.5 | 15.4 | 0.9 | 0.1 |
| 교통세 | 11.4 | 15.1 | 15.1 | 14.0 | △1.1 | 2.6 |
| 개소세 | 8.7 | 9.7 | 9.7 | 8.7 | △0.9 | 0.1 |
| 교육세 | 5.4 | 6.0 | 6.0 | 5.8 | △0.3 | 0.4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실질 2.2%)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0.8%[10)])되고, 2024년 2/4분기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올해 1/4분기에 다시 △0.2%의 역성장이 나타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부족 전망에 따른 세입경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국세수입을 정부안(382.4조원)보다 3.9조원 적은 378.5조원으로 전망하였음 (국회계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2024.10.28.).

10)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5)」, 2025.5.29.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202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 2023 | | | | 2024p | | | | 2025p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 국내총생산 (GDP) | 0.4 (1.3) | 0.7 (1.2) | 0.8 (1.5) | 0.5 (2.2) | 1.2 (3.4) | △0.2 (2.2) | 0.1 (1.4) | 0.1 (1.1) | △0.2 | (0.0) |
| 농 림 어 업 | △2.3 | 1.5 | △1.5 | △5.6 | 4.1 | 2.0 | 0.7 | △1.8 | 4.4 | (4.9) |
| 제 조 업 | 1.6 | 2.5 | 1.7 | 1.6 | 0.9 | 0.9 | 0.0 | 0.1 | △0.6 | (0.4) |
| 건 설 업 | △0.7 | △2.3 | 1.8 | △3.9 | 5.8 | △5.6 | △3.0 | △4.4 | △0.4 | (△12.5) |
| 서 비 스 업[1] | 0.2 | 0.3 | 0.6 | 0.4 | 0.6 | 0.1 | 0.4 | 0.3 | △0.2 | (0.7) |

주 1)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포함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25.6.5.

다만,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10.3조원)과 세출확대(20.2조원)로 19.8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2025년 국가채무는 1,300.6조원(GDP 대비 49.0%)으로 증가하고 2028에는 1,570.1조원(52.5%)까지 증가할 전망이므로, 국가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

|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국가채무 | 2024 ~ 2028계획 | 1,195.8 | 1,273.3[1] | 1,353.9 | 1,432.5 | 1,512.0 |
| | (GDP대비, %) | (47.4) | (48.1) | (49.1) | (49.8) | (50.5) |
| | 2025년 제1회 추경 | 1,195.8 | 1,280.8 | 1,357.7 | 1,436.2 | 1,515.8 |
| | (GDP대비, %) | (47.4) | (48.4) | (49.2) | (50.0) | (50.6)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1,195.8 | 1,300.6 | 1,388.4 | 1,478.4 | 1,570.1 |
| | (GDP대비, %) | (47.4) | (49.0) | (50.3) | (51.4) | (52.5) |
| ※ 명목GDP(2024~2028계획) | | 2,520.5 | 2,646.5 | 2,759.5 | 2,875.0 | 2,993.0 |
| (변경) | | 2,556.9[주2)] | 2,654.0[3)] | 2,759.5 | 2,875.0 | 2,993.0 |

주 1) 2025년 본예산 기준

2) 2024년 GDP 잠정치(한국은행)

3)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월)의 2025년 성장전망 수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둘째, 내수회복 지연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 결손 전망에 따라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는데, 기획재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으로 전망되고,[11] 2025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0조원으로 20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할 전망임.

「국가재정법」[12]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13]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2023~2025년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잠정 | 2025년 전망 |
|---|---|---|---|
| ○ 국세감면액 (A) | 69.8 | 71.4[1)] | 78.0 |
| ○ 국세수입총액[2)] (B) | 370.4 | 364.4 | 412.2 |
| ○ 국세감면율 [A/(A+B)] | 15.8 | 16.3[1)] | 15.9 |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3)] | 14.3 | 14.6 | 15.2 |

주 1) 2024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작성한 2024년 전망치
2)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5.3.

그러나 2023~2025년 국세감면율을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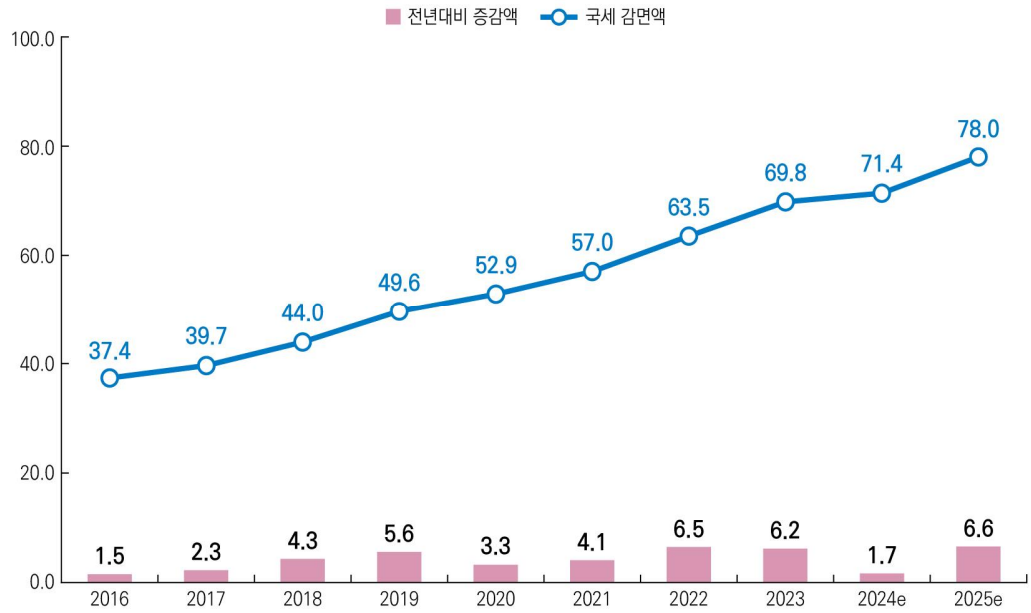
---

11) 2024년 확정적인 국세감면액은 2025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12)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국세감면액 추이: 2016~2025년]




주) 2024년·2025년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된 잠정·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2025.3.28.

정부는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조세지출 특성 보유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수준[14]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인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은 36조 9,999억원 수준임.[15]

14) 〈조세지출 항목의 유형별 구분기준〉

낮음 ← 관리 가능성 → 높음

| 〈구조적 지출〉 | | | 〈잠재적 관리대상〉 | | | 〈적극적 관리대상〉 | | |
|---|---|---|---|---|---|---|---|---|
| 특정성 | 대체 가능성 | 폐지 가능성 | 특정성 | 대체 가능성 | 폐지 가능성 | 특정성 | 대체 가능성 | 폐지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항목 → 정비가 사실상 곤란 | | | ※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고, 특정성·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 | | ※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 | |

15)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 국세감면액 | 697,664 | 100.0 | 714,305 | 100.0 | 780,178 | 100.0 |
| 구조적지출 | 152,630 | 21.9 | 168,204 | 23.5 | 179,044 | 22.9 |
| 잠재적 관리대상 | 210,961 | 30.2 | 216,894 | 30.4 | 228,543 | 29.3 |
| 적극적 관리대상 | 330,442 | 47.4 | 326,690 | 45.7 | 369,999 | 47.4 |
| 경과규정 | 3,631 | 0.5 | 2,517 | 0.4 | 2,591 | 0.3 |

주)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없는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참고로 202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전체 280건 중 65건이며, 2025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총 16.9조원 규모임. 이 중 61건은 적극적 관리대상, 나머지 4건은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2025년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각각 15.1조원, 1.8조원임.[16)]

**셋째, 세입경정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총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등 국세수입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 등으로 총수입은 2025년에 △10.4조원[17)]이 감소하고, 2026년 이후 2028년까지 국세수입 경정(△10.3조원)에 따른 감소효과로 매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2조원 수준의 국세수입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약 5,167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5만명 내외로 감소하며,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전환됨과 동시에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18)]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대한민국조세」, 2025.3.28., 592p.

17) 국세수입 감소 △10.34조원, 기금수입 감소 △0.04조원

18)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24.9.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총수입 | 2024~2028계획 | 612.2 | 651.6주) | 677.7 | 706.4 | 731.5 |
| | ■(+) 세외·기금수입 확대 | - | 1.3 | - | - | - |
| | 2025년 제1회 추경 | 612.2 | 652.8 | 677.7 | 706.4 | 731.5 |
| | ■(-) 국세수입 감소 | - | △10.3 | △10.9 | △11.5 | △12.1 |
| | ■(-) 기금수입 감소 | | △0.04 | - | - | - |
| | 2025년 제2회 추경(안) | 612.2 | 642.4 | 666.8 | 694.9 | 719.4 |

주) 2025년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

이러한 총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국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성장 기조[19]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등 국세수입 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하여 지난 전망(2024.10월)에 비해 0.2%p 하향조정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5.3.).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 <지출증액>

## 2.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2년간의 대규모 세수부족과 2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

### 가. 개 요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조원(476.2%)이 증액된 1조 2,100억원이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지방채 인수 (융자) | 2,600,000 | 2,600,000 | 10,000 | 210,000 | 1,210,000 | 1,000,000 | 476.2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 나. 검토의견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고, 2025년 2차례의 추경 편성에 따른 대응지방비까지 고려할 때,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100억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2025.3월 대규모 산불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목적으로 2,00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번 추경안에서 1조원의 지방채 인수 재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있음.

20) 세부사업: 지방채 인수(융자)(1031-100)(국고국)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재원 감소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 외에 지자체가 자체 부담하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1조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번 추경안에서는 10.3조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21]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2]을 함께 조정하여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은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세의 예산과 결산의 차액에 의한 교부세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올해 감액조정하지 않은 교부세는 결국에는 정산하여야 함.[23]

또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10.4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4.6조원이 각각 감소하여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이미 악화되었고, 올해 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인한 대응지방비 부담은 총 4조 5,788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1)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3)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023~2024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감소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 국세수입 | | | 지방교부세 감소규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규모 |
|---|---|---|---|---|---|
| | 본예산(A) | 결산(B) | 결손(B-A) | | |
| 2023 | 4,004,570 | 3,440,711 | 563,859 | 81,689 | 103,970 |
| 2024 | 3,673,140 | 3,365,324 | 307,816 | 22,363 | 42,524 |
| 합계 | 7,677,710 | 6,806,035 | 871,675 | 104,052 | 146,494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추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 지자체보조금 추경예산안(A) | 2025년 대응지방비 추계(B) | 합계 (A+B) |
|---|---|---|---|
|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 1,015,238 | 864,109 | 1,879,347 |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11,024,775 | 3,714,666 | 14,739,441 |
| 합 계 | 12,040,013 | 4,578,775 | 16,618,788 |

주)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기준으로, 국회 확정 예산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차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2023년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지방채 인수 예산을 2조 6,000억원 편성하였고, 이 중 2조 5,962억원(집행률 99.9%)이 집행되었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2,100억원은 2025.5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음.

## 【기후대응기금】

### <지출감액>

## 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2024년 이월금 및 2025년 투자계획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 가능성 검토 필요

### 가. 개 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중 ‘투자지원’ 내역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설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70억원(△77.3%)이 감액된 50억원이 편성되었음.[1)]

[2025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온실가스 국제감축 | 38,710 | 33,844 | 30,425 | 30,425 | 13,425 | △17,000 | △55.9 |
| 투자지원 | 33,000 | 29,629 | 22,000 | 22,000 | 5,000 | △17,000 | △77.3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탁받아 수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부문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감축설비의 구매, 감리, 설치공사 등 취득설비 투자비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이내의 금액을 지원함.[2)]

---

1) 세부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6131-311)(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2) <지원 대상 예시>

| 발전 | 열 공급 | 연료 교체/효율 | 기타 |
|---|---|---|---|
| 풍력, 태양광, 소수력, 조력, 바이오매스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 태양열, 지열, 폐열회수, 바이오매스 열병합, 소각열 열병합 등 | LNG 연료 교체, 고효율 모터, 교통체계 개선 등 | 시멘트, HFCs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2030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 대비 투자지원금의 비중에 따라 분배량을 산정하는 지분방식과 연간 투자지원금 상환액과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분배량을 산정하는 금액방식을 통해 실적을 산정하게 됨.[3)]

[투자지원 내역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설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회수

ㅇ 투자지원금 기준: 파리협정 6.4조 사업의 등록비 기준에 따른 사업 규모 구분

| 구분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
| 감축량 기준 (tCO2-eq/yr.) | 15,000 톤 이하 | 15,000 톤 초과 30,000 톤 이하 | 50,000 톤 초과 |
| 소요예산 기준 (1년 기준) | 연간 3억원 (= 1.5 만톤 x 20,000원*) | 연간 6억원 (= 3.0 만톤 x 20,000원) | 연간 10억원 (≒ 5.0 만톤 x 20,000원) |
| | * 할당배출권(KAU) 2022년 평균가 22,048원, 3년 평균(2020~2022) 24,546원 | | |
| 총 규모 (10년 기준) | 30억원 | 60억원 | 100억원 |

ㅇ 지원규모: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2년까지)

ㅇ 지원분야: 산업·발전부문*을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 설치투자를 지원하고 그에 상당하는 국제감축실적 회수
* 태양광・바이오매스・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연료전환 등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계측설비 포함)의 구매, 설치공사(설계비 포함),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하는 취득설비 투자비 대상

ㅇ 분배기준: 투자지분방식과 투자금액방식으로 분류
- 지분방식: 총 사업비 대비 투자지원금의 비중에 따라 수탁기관 분배량을 산정
- 금액방식: 연간 투자지원금 상환액과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수탁기관 분배량을 산정

ㅇ 기대효과: 국내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 국제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개도국 시장 진출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국가결정기여를 의미하며, 파리기후변화협정(2015년 채택)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계획임. 참고로, 2030 NDC는 2030년까지 그 나라가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의미함.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실집행 가능규모를 고려하여 17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당초 |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
|---|---|---|---|
| 금액 | 산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 220억원 | ○ 법정민간대행(320-08) : 220억원<br><br>가. 투자지원 (220억원)<br>· 대규모 사업 1건×100억원 + 중규모 사업 2건×60억원 | 50억원 | ○ 법정민간대행(320-08) : 50억원<br><br>가. 투자지원 (50억원)<br>· 올해 실집행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170억원 감액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2024년 이월금 규모가 253억 5,100만원에 달하는 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4년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계획현액 303억 9,400만원 중 한국에너지공단은 50억 4,300만원만 실집행(집행률 14.4%)하여, 2025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253억 5,100만원임.

[2024년 투자지원 내역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현액 (A) | 실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당초 | 수정 | | | | | | |
| 33,000 | 29,629 | 765 | 30,394 | 5,043 | 25,351 | - | 14.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투자지원사업 주요 유치국인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관련 규정 미비 등 사유로 사업승인 및 협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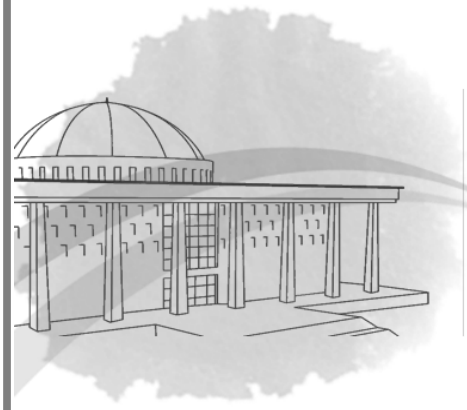
2024년 실집행 이월금 및 2025년 계획액의 집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6월 기준 주요 유치국인 베트남에서는 국제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국내 규정이 마련되었고, 8월에 캄보디아 대상 국제감축 투자사업이 승인되면 실집행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베트남 및 캄보디아 투자사업의 규모가 대규모라 하더라도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원 이내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베트남, 캄보디아 투자액 최대 200억원)인데, 이는 2024년 이월액 253억 5,100만원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4)]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에 대한 2025년 실소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2025년에 감액한 170억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선정·협약 과정에서 사업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확보 시 정부지원금의 20%를 지원하고, 사업승인서(LoA, Letter of Authorization)에 상응하는 문서 확보 시 정부지원금의 100%를 지원하므로, 선정시점(2025년)에 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정부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월금 253억 외에 50억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4,923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3,542 | 4,923 | 4,923 | 4,923 | - | - |
| 합 계 | 3,542 | 4,923 | 4,923 | 4,923 | - | -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102조 5,52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4,334억원(△2.3%) 감소함.

---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943,873 | 1,048,684 | 1,049,858 | 1,025,525 | △24,334 | △2.3 |
| 합 계 | 943,873 | 1,048,684 | 1,049,858 | 1,025,525 | △24,334 | △2.3 |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33억원(△2.1%) 감소함.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3,429 | 3,717 | 3,717 | 3,717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8 | 50 | 50 | 50 | - |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2,322 | 31,020 | 31,020 | 31,020 |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7,923 | 166,636 | 167,793 | 163,460 | △4,333 | △2.6 |
| 합계 | 193,712 | 201,424 | 202,581 | 198,248 | △4,333 | △2.1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8,666억원(△2.4%) 감소함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956,920 | 993,221 | 994,378 | 970,045 | △24,334 | △2.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078 | 3,256 | 3,256 | 3,256 | - |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2,322 | 31,020 | 31,020 | 31,020 |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2,996 | 161,273 | 162,430 | 158,097 | △4,333 | △2.7 |
| 합계 | 1,146,315 | 1,188,770 | 1,191,084 | 1,162,418 | △28,666 | △2.4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2조 8,666억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235억 3,600만원이며, 대상사업 모두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경대-한국복지대의 통합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에 43억원을 증액하고, AI 인재양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12억 8,600만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2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1,957억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2,315,372 | 2,004,991 | 2,004,991 | 2,232,827 | 223,536 | 11.1 |
| 1 | 대학구조개혁지원 | 13,905 | 11,238 | 11,238 | 15,538 | 4,300 | 38.3 |
| 2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524,684 | 522,478 | 522,478 | 523,764 | 1,286 | 0.2 |
| 3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443,765 | 182,700 | 182,700 | 184,950 | 2,250 | 1.2 |
| 4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05,309 | 1,092,909 | 1,092,909 | 1,292,909 | 195,700 (감액별도) | 17.9 |
| 5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327,709 | 195,666 | 195,666 | 215,666 | 20,000 | 10.2 |

주) 총계 기준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3조 901억 6,6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0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2개임.

그 구성내역은 사업비 감액 △3조 675억 6,600만원(98.1%)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감액 △226억원(1.9%)임.

사업비는 내국세 세입 경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개 사업에서 △1조 9,982억 3,500만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24.11.)에 따른 검정심사 책 수 감소로

2) 교육부 소관 2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없음.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 △18억 6,700만원,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등 수혜자 소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4,400억원,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연차별 지원금 교부비율 조정에 따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서 △600억원, 국립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규모를 고려하여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서 △1,342억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2조 6,343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음.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국립대학 인건비’ 1개 사업에서 110(인건비)-01(보수) 226억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98.1%) | | 91,549,866 | 97,061,280 | 97,292,680 | 94,225,114 | △3,067,566 | △3.2 |
| 일반회계 | | 84,621,604 | 88,662,324 | 88,778,024 | 86,344,658 | △2,433,366 | △2.7 |
| 1 | 보통교부금 | 66,338,469 | 69,659,572 | 69,659,572 | 67,732,259 | △1,927,313 | △2.8 |
| 2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600,426 | 743,713 | 743,713 | 726,916 | △16,797 | △2.3 |
| 3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200,142 | 247,905 | 247,905 | 242,306 | △5,599 | △2.3 |
| 4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1,200,852 | 1,067,409 | 1,067,409 | 1,033,814 | △33,595 | △3.2 |
| 5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33,320 | 560,839 | 560,839 | 545,908 | △14,931 | △2.7 |
| 6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5,727 | 5,629 | 5,629 | 3,762 | △1,867 | △33.2 |
| *7*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 *13,501,256* | *14,208,244* | *14,323,944* | *14,022,534* | *△301,410* | *△2.1* |
| *8*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 *2,241,412* | *2,169,013* | *2,169,013* | *2,037,159* | *△131,854* | *△6.1*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6,928,262 | 8,398,956 | 8,514,656 | 7,880,456 | △634,200 | △7.4 |
| 9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4,720,453 | 5,305,047 | 5,420,747 | 4,980,747 | △440,000 | △8.1 |
| 10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1,202,500 | 2,001,000 | 2,001,000 | 1,941,000 | △60,000 | △3.0 |
| 11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05,309 | 1,092,909 | 1,092,909 | 958,709 | △134,200 (증액별도) | △12.3 |
| 인건비 및 경상경비(비중 1.9%) | | 1,825,887 | 1,872,672 | 1,872,672 | 1,850,072 | △22,600 | △1.2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1,825,887 | 1,872,672 | 1,872,672 | 1,850,072 | △22,600 | △1.2 |
| 12 | 국립대학 인건비 | 1,825,887 | 1,872,672 | 1,872,672 | 1,850,072 | △22,600 | △1.2 |
| 합계 | | 93,375,753 | 98,933,952 | 99,165,352 | 96,075,186 | △3,090,166 | △3.1 |

주 1) 총계 기준이며,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2) 사업비, 인건비 및 경상경비 비중은 ’25년 제2회 추경안 기준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이번 추경안에서 의학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국립의대 시설 신·증축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조정(감액)되었으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대교수 증원을 비롯한 제반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은 보수사업 증액분을 전액 공사비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를 설계비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추경이 통과되면 증액분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AI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하여 2025년 9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므로 추경이 통과되면 연구단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편성하였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연간 소요예상액을 과소 추계한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예산 집행단계에서 집행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의대 지원사업: 의대정원 증원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관련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 필요

### 가. 개 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대학의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5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5억원(5.6%) 증액된 1조 1,544억 900만원 편성되었으나, 그 내역사업인 **‘의대여건 개선’** 사업의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42억원(△93.7%) 감액된 90억원이 편성되었음.[3)]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은 37개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6억원(△1.2%) 감액된 1조 8,50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립대 의대교수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200만원(△1.7%) 감액된 1,419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05,309 | 1,092,909 | 1,092,909 | 1,154,409 | 61,500 | 5.6 |
| 의대여건 개선 | - | 143,200 | 143,200 | 9,000 | △134,200 | △93.7 |
| 국립대학 인건비 | 1,852,887 | 1,876,672 | 1,876,672 | 1,850,072 | △22,600 | △1.2 |
| (국립대 의대교수 인건비) | 118,500 | 144,469 | 144,469 | 141,967 | △2,502 | △1.7 |

3) 세부사업: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교육시설담당관)

4) 세부사업: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정책기획관)

##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에서 의학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국립의대 시설 신·증축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조정(감액)되었으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대교수 증원을 비롯한 제반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서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약 5조원(교육부 소관 약 2조원)의 국고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 이와 관련된 교육부 예산으로 6,062억원을 편성하였음.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2024.9. 발표) 중 교육부 예산 부분]

(단위: 억원)

| 사업 내용 | 2025년 예산안 | 총 투자계획 (~2030년) |
|---|---|---|
|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 1,432 | 약 2조원 |
|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 76 | |
|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 1,728 | |
| 의대 교육혁신 지원 | 552 | |
|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 1,445 | |
| 국립대 병원 지원 | 829 | |
| 소 계 | 6,062 | 약 2조원 |

주 1) 교육부 소관 예산만 발췌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합하면 2030년까지 약 5조원 투자계획임.
2)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2024년 기준 1,185억원)는 2025년 예산에는 포함하되,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자료: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9.10.)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는 2025년 4월 2026학년도에 한하여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고, 각 대학은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고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한 상황임.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의대 건물 21개동 신·증축 사업은 향후 의대 정원 논의 결과에 따라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며 2025년 관련 예산 1,342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예산 중 2025년 계획(330명) 대비 미충원된 53명에 대한 1학기 지원분 25억 200만원도 감액하였음.

의대정원 증원계획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2025년 지원 예산 일부를 감축한 것은 일응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시설 리모델링 예산 90억원[5]이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 76억원은 유지하면서 신·증축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단 대규모 중장기사업을 보류하고 향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음.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인력의 경우, 2025년 330명 증원 계획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전년대비 259억 9,000만원 증액하고 증원계획 인원 중 277명(84%)을 상반기에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 미충원 인원 5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나, 교수인력 증원은 시설 신·증축 못지 않게 중장기적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시설 신·증축은 전면 보류하면서 교수인력 증원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체계적인 집행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6]

[2025년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증원 및 현원]

(단위: 명)

| 구분 | 강원대 | 경북대 | 경상대 | 부산대 | 전남대 | 전북대 | 제주대 | 충남대 | 충북대 | 합계 |
|---|---|---|---|---|---|---|---|---|---|---|
| 2025년 증원계획 | 23 | 44 | 44 | 50 | 43 | 32 | 18 | 41 | 35 | 330 |
| 상반기 채용 | 21 | 37 | 43 | 37 | 41 | 15 | 18 | 41 | 24 | 277 |
| 의대교수 현원 | 141 | 194 | 175 | 189 | 232 | 160 | 121 | 190 | 153 | 1.555 |

주) 2025. 3. 1. 기준
자료: 교육부

2025년에는 신임교수 하반기 채용공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획 변경이나 예산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종래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추가 증원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대정원 증원계획 추진경과 및 의학교육 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에 기초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병원 운영, 의대 교육, 수험가 혼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

5) 이번 추경안에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의대여건 개선' 사업예산 1,432억원 중 시설 신·증축 예산 1,342억원은 감액하고, 시설리모델링 예산 90억원은 유지함.

6)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교수 증원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출증액>

## 2. (국립대학 시설) 보수사업: 예산비목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립대학 시설) 보수사업’** 은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57억원(51.5%) 증액된 5,75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 보수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05,309 | 1,092,909 | 1,092,909 | 1,154,409 | 61,500 | 5.6 |
| 보수사업 | 519,463 | 379,650 | 379,650 | 575,350 | 195,700 | 51.5 |

###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현재 전액 공사비 비목으로 편성된 국립대 시설보수예산 추경 증액분 일부를 설계비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추경이 통과되면 증액분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서 3,79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각종 시설 보수소요 중 냉난방기, 수배전반, 외부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옥상방수 5가지 항목의 소요만으로도 2025년 6월 현재 총 1조 2,633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에서 1,957억원 증액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어 보임.

---

7) 세부사업: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정책기획관)

[국립대학 주요 시설보수 소요]

(단위: 백만원)

| 지원 항목 | 내용연수(년) | 내용연수 경과 물량 | 단가 | 총 소요액 | 추경 증액분(안) |
|---|---|---|---|---|---|
| 냉난방기 교체 | 10 | 46,702대 | 5,060천원/대 | 236,312 | |
| 수배전반 교체 | 15 | 1,826면 | 42,000천원/면 | 76,692 | |
| 외부창호 교체 | 20 | 761,012㎡ | 267천원/㎡ | 203,190 | 195,700 |
| 화장실 개선 | 15 | 213,791㎡ | 2,640천원/㎡ | 564,408 | |
| 옥상 방수 | 15 | 1,314,993㎡ | 139천원/㎡ | 182,784 | |
| 소 계 | | | | 1,263,386 | 195,700 |

주) 2025년 6월 20일 기준
자료: 교육부

다만, 보수사업 증액분 전액이 공사비(420-03)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본예산을 비롯한 통상의 보수사업 예산에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용역비 등의 비목도 편성되고, 특히,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일반수용비로도 일정액이 편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증액분 비목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5년 국립대학 시설 보수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예산 비목 | 2025년도 본예산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630,000천원 | 630,000천원 |
| ○ 실시설계비(420-02) | 9,614,000천원 | 9,614,000천원 |
| ○ 공사비(420-03) | 361,891,000천원 | 557,591,000천원<br>(+195,700,000천원) |
| ○ 감리비(420-04) | 1,282,000천원 | 1,282,000천원 |
| ○ 시설부대비(420-05) | 2,893,000천원 | 2,893,000천원 |
| ○ 일반수용비(210-01) | 2,290,000천원 | 2,290,000천원 |
| · 일반보수 일반수용비 | 12,000천원 | 12,000천원 |
| · 산업재해예방 일반수용비 | 2,278,000천원 | 2,278,000천원 |
| ○ 임차료(210-07) | 250,000천원 | 250,000천원 |
| ○ 일반용역비(210-14) | 800,000천원 | 800,000천원 |
| 계 | 379,650백만원 | 575,350백만원 |

자료: 교육부

또한, 2025년 6월 현재 각 대학에 배정된 보수사업 예산 3,788억 5,000만원 중 450억 6,7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1.9%[8]에 불과하므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추가 배정된 예산을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현재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학시설 보수공사가 주로 방학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보수공사가 여름방학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겨울방학으로 미루어져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될 수 있으나, 지나친 예산 이월은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임. 참고로, 2024년 동 사업예산에서 각 대학에 배정된 5,186억 6,300만원 중 3,675억 9,300만원(70.9%)이 연내 실집행되었고, 1,497억 5,100만원(28.8%)은 예산을 교부받은 대학에서 차년도에 집행완료하였으며, 13억 1,900만원(0.3%)은 대학에서 불용처리하였다고 함.

## 3. 4단계 두뇌한국21: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절차 신속 진행 필요

### 가. 개 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AI 등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포함한 전(全) 학문·분야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제고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8,600만원(0.3%) 증액된 5,23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4단계 두뇌한국21 | 524,684 | 522,478 | 522,478 | 523,764 | 1,286 | 0.3 |

이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63개 대학 587개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AI 분야 교육연구단은 13개(2025년 지원금 총 111억 4,800만원)이나, 이를 3개 추가(지원금 12억 8,600만원 증액)하여 16개로 늘리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AI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분이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통과 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AI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가 연간 3,320명에 이른다는 분석[10)]이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AI 교육연구단을 통해 AI 전공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AI 연구 신진인력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는 이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9) 세부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303-300)(인재정책기획관)

10)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9.1.)

다만, 교육부는 3개 교육연구단을 추가선정하여 2025년 9월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추경안에 각 교육연구단별 연간 사업비의 50%를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추경안 통과 후 이 사업 증액분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 추가 공고-접수-선정평가-이의제기-최종 확정에 이르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522,478<br>백만원 | ○ 사업출연금(350-02) : 522,478백만원<br>가. 교육연구단(팀) 지원액 (434,612백만원)<br>-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86,161백만원<br>■ 미래인재 양성사업(12,600명) : 185,674백만원<br>■ 혁신인재 양성사업(6,802명) : 100,487백만원<br>· 석사 3,840명 × 100만원 × 12개월<br>· 박사 2,279명 × 160만원 × 12개월<br>· 박사수료 683명 × 130만원 × 12개월<br>- (사업비 및 간접비) 144,251백만원<br>- (우주분야 교육연구단 추가선정) 4,200백만원<br>(…) | 523,764<br>백만원 | ○ 사업출연금(350-02) : 523,764백만원<br>가. 교육연구단(팀) 지원액 (434,612백만원)<br>-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86,161백만원<br>■ 미래인재 양성사업(12,600명) : 185,674백만원<br>■ 혁신인재 양성사업(6,802명) : 100,487백만원<br>· 석사 3,840명 × 100만원 × 12개월<br>· 박사 2,279명 × 160만원 × 12개월<br>· 박사수료 683명 × 130만원 × 12개월<br>- (사업비 및 간접비) 144,251백만원<br>- (우주분야 교육연구단 추가선정) 4,200백만원<br>- (AI 전문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br>· 3개 × AI분야 지원액 857.6백만원<br>× 50%* = 1,286백만원<br>(…) |

자료: 교육부

참고로, 2024년 상반기 진행된 혁신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성과평가)에서 AI분야 교육연구단 중 하위 4개 연구단이 탈락하였고, 1개 연구단은 기타 사정으로 협약해지되었으며, 이에 2024년 하반기에는 2025년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5개 연구단을 재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총 11개 팀이 지원(경쟁률 2.2:1)하였고, 재선정절차는 2024년 8월 공고부터 2025년 2월 최종 결과 확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음.

물론, 혁신인재양성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 2024년 재선정절차에 비하여 이번에는 그 대상이 적어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연구계획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세출감액>

## 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감액편성된 국가장학금 집행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 가. 개 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00억원(△8.1%) 감액된 4조 9,80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4,720,453 | 5,305,047 | 5,420,747 | 4,980,747 | △440,000 | △8.1 |
| 국가장학금 지원 | 4,097,498 | 4,485,299 | 4,600,999 | 4,270,999 | △330,000 | △7.2 |
| 국가장학금(1유형) | 2,658,851 | 3,029,187 | 3,108,787 | 2,967,387 | △141,400 | △4.5 |
| 국가장학금(다자녀) | 1,005,649 | 1,113,776 | 1,149,876 | 1,091,276 | △58,600 | △4.6 |
| 국가장학금(2유형) | 350,000 | 260,000 | 260,000 | 130,000 | △130,000 | △50.0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469,125 | 627,442 | 627,442 | 527,442 | △100,000 | △15.9 |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 | 34,435 | 34,435 | 24,435 | △10,000 | △29.0 |

이 사업은 2025년 1회 추경에서 1,15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4,400억원이 감액되었는바, 구체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지원예산에서 2,000억원,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등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예산에서 1,3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예산에서 1,000억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예산에서 100억원을 각각 감액되었음.

11) 세부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 나. 검토의견

**국가장학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예산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연간 소요예상액을 과소 추계한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예산 집행단계에서 집행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5년 1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실집행률, 등록금 동결대학 감소(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2025년 대학의 근로지 발굴 및 운영 현황(근로장학금의 경우)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맞춤형 국가장학금에서 예견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예산을 4,400억원 감액 편성하였다고 함.

[국가장학금 지원예산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본예산 | 1회 추경 (변동액) | 2회 추경(안) (변동액) | 2회 추경 감액사유 |
|---|---|---|---|---|
|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 4,142,963 | 4,258,663 (115,700) | 4,064,663 (△200,000) | - 2025년 1학기 지원금 규모<br>- 매년 휴학 등 학적변동으로 2학기 지원실적 감소 경향<br>-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실집행률 93.4%[12] |
| 국가장학금 (2유형) | 260,000 | 260,000 (-) | 130,000 (△130,000) | - 등록금 동결 등 사업참여 대학 감소<br>* 2024년 233개교→2025년 73개교(전년 대비 68.7% 감소) |
| 대학생 근로장학금 | 627,442 | 627,442 (-) | 527,442 (△100,000) | - 2025년 대학의 근로지 발굴 및 운영 현황[13]<br>- 최근 3개년(2021~2023년) 동사업 실집행률: 86.2%[14] |
| 주거안정 장학금 | 34,435 | 34,435 (-) | 24,435 (△10,000) | - 1학기 지원결과 및 2학기 신청현황 감안[15] |

자료: 교육부

다만, 이 중에서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의 2025년 연간 소요액에 대한 교육부 추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2025년 1학기 지원금은 2조 499억 5,100만원[16]으로

12)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사업의 불용액(실집행률)은 2022년 2,950억원(92.8%), 2023년 3,422억원(91.0%), 2024년 1,414억원(96.5%)이었음.

13) 다만,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2025년 1학기 실집행 실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추이를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음.

14)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불용액(실집행률)은 2021년 500억원(86.4%), 2022년 838억원(79.9%), 2023년 286억원(92.4%)이었으며, 2024년 실집행액은 2025년 6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함.

15)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총 90,635명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선발요건(기초·차상위, 미혼, 원거리 거주, 재학·성적요건 등) 충족인원은 10,598명이었고, 이 중 400명은 학적 변동, 타 주거지원 수혜 희망 등으로 미지원함에 따라, 현재 10,198명에게 월평균 17.5만원을 지원중이며(연간 지원 시 214.2억원 소요), 2025년 2학기 신청자는 2025년 6월 18일 현재 74,130명(2025년 1학기 동기간 신청인원(67,201명 대비 약 10% 증가)이라고 함.

만일, 2학기에도 동일 액수가 지원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총 4조 999억 200만원에 이르나, 이번 추경안에서 사업예산이 4조 646억 6,300만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부족액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매년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해 1학기 장학금 지원금보다 2학기 장학금 지원금이 적었으므로[17]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나, 2025년 1회 추경에서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이 1,157억원 증액되었을 당시 교육부는 이를 재원으로 2025년 2학기부터 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므로,[18] 2학기 장학금 단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2025년 2학기 지원금액은 예년과 달리 1학기 지원금액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임.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연도별 학기별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 1학기(A) | 2학기(B) | 차액(A-B) | 총 지급액 |
|---|---|---|---|---|
| 2022 | 1,774,027 | 1,657,653 | 116,375 | 3,431,680 |
| 2023 | 1,699,374 | 1,590,111 | 109,263 | 3,289,485 |
| 2024 | 1,848,480 | 1,715,778 | 132,702 | 3,564,258 |
| 2025 | 2,049,951 | - | - | - |

주) 구간별 장학금 지원단가는 2022년 1학기와 2024년도 1학기에 각각 인상되었으며, 2022년~2024년 중 1학기와 2학기 장학금 단가가 다른 적은 없었음.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16)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지원액은 국가장학금(1유형) 1조 4,979억 6,009만원, 국가장학금(다자녀) 지원액은 5,519억 9,042만원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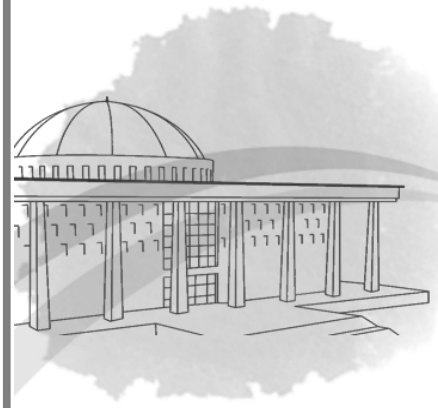
17)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는 2학기 지원금이 1학기에 비해 평균 1,194억원 적었음.

18) 교육부에서 밝힌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의 2025년 2학기 단가 인상계획(구간별 단가(인상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만원)

| 구분 |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
|---|---|---|---|---|---|---|---|---|---|---|---|
| Ⅰ유형 | | 전액 | 600(+30) | | | 440(+20) | | | 360(+10) | | 100 |
| 다자녀 | 첫째,둘째 | | 610(+40) | | | 505(+25) | | | 465(+15) | | 135 |
| | 셋째이상 | | 전액 | | | | | | | | 200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9조 6,49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80,628 | 81,736 | 81,736 | 81,736 | - | - |
| 기 금 | 14,477 | 14,758 | 14,758 | 14,758 | - | - |
| 합 계 | 95,105 | 96,494 | 96,494 | 96,494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21조 9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57억원(1.0%) 증가함.

예산은 18조 9,44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57억원(1.1%) 증가한 반면, 기금은 2조 658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57,100 | 169,298 | 187,385 | 189,442 | 2,057 | 1.1 |
| 기 금 | 22,182 | 19,669 | 20,658 | 20,658 | - | - |
| 합 계 | 179,283 | 188,967 | 208,042 | 210,099 | 2,057 | 1.0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7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12조 7,561억원임.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3,768 | 3,923 | 3,923 | 3,923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3 | 120 | 120 | 120 | - | - |
| 국립중앙과학관 | 380 | 407 | 407 | 407 | - | - |
| 국립과천과학관 | 395 | 401 | 401 | 401 | - | - |
| 우편사업특별회계 | 54,396 | 53,784 | 53,784 | 53,784 | - | -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59,408 | 57,868 | 57,868 | 57,868 | - |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10,616 | 11,059 | 11,059 | 11,059 | - | - |
| 합계 | 129,065 | 127,561 | 127,561 | 127,561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10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57억원(0.8%) 증가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75,504 | 85,931 | 103,918 | 105,835 | 1,917 | 1.8 |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3,560 | 4,258 | 4,258 | 4,258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872 | 4,207 | 4,207 | 4,207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431 | 9,204 | 9,304 | 9,443 | 140 | 1.5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79 | 1,092 | 1,092 | 1,092 | - | - |
| 국립중앙과학관 | 380 | 407 | 407 | 407 | - | - |
| 국립과천과학관 | 395 | 401 | 401 | 401 | - | - |
| 우편사업특별회계 | 54,396 | 53,784 | 53,784 | 53,784 | - | -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59,408 | 57,868 | 57,868 | 57,868 | - |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10,616 | 11,059 | 11,059 | 11,059 | - | - |
| 합계 | 216,041 | 228,209 | 246,296 | 248,353 | 2,057 | 0.8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057억 1,1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 분야의 AX가속화 실현을 위해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에 300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AI 혁신펀드’ 사업에 1,000억원을 신규 증액하였음.

한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관리하고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 긴급 대응지원을 통한 국가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에 6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106,923 | 104,045 | 154,745 | 346,496 | 191,751 | 123.9 |
| 1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 25,985 | 19,490 | 19,490 | 26,230 | 6,740 | 34.6 |
| 2 | 인터넷 경로보안 고도화 | - | - | - | 3,011 | 3,011 | 순증 |
| 3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 62,125 | 57,885 | 64,585 | 73,585 | 9,000 | 13.9 |
| 4 |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 | - | - | 5,000 | 5,000 | 순증 |
| 5 |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 (닥터앤서3.0) | - | 2,300 | 2,300 | 10,300 | 8,000 | 347.8 |
| 6 | AI혁신펀드 | - | - | - | 100,000 | 100,000 | 순증 |
| 7 | 공공AX프로젝트 | - | - | - | 30,000 | 30,000 | 순증 |
| 8 | AI 반도체 실증 지원 | 18,813 | 24,370 | 68,370 | 98,370 | 30,000 | 43.9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99,901 | 99,702 | 99,702 | 113,662 | 13,960 | 14.0 |
| 9 | 디지털역량강화교육 | 35,685 | 32,085 | 32,085 | 38,665 | 6,580 | 20.5 |
| 10 | 지역디지털인재양성 | 54,216 | 57,617 | 57,617 | 60,997 | 3,380 | 5.9 |
| 11 |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 10,000 | 10,000 | 10,000 | 14,000 | 4,000 | 40.0 |
| 합계 | | 206,824 | 203,747 | 254,447 | 460,158 | 205,711 | 80.8 |

주 1) 총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중 일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충실하게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추진 시 관련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과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본예산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사업 일정에 비추어볼 때, 현재 계획 중인 추경안을 활용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이 연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혁신펀드’ 사업 추진 시 자펀드 결성 이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성할 계획인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처를 모색할 예정이므로, 투자 시 지원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정보보호 강화 관련 사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신규)’ 사업,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신규)’ 사업 및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음.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사업은 대규모 인터넷 장애 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표준 기술인 라우팅 인증체계(Resource Public Key Infrastructure: RPKI)[2]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 인터넷망의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30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 - | - | - | 3,011 | 3,011 | 순증 |

2) RPKI는 인터넷주소자원(IP주소, AS번호) 정보를 PKI* 기술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라우터**의 경로 데이터 교환 시 인증서와 수신된 전파 내용을 비교하여 악의적인 경로 전파를 검증·차단하는 국제표준 기술을 의미함.
* 공개 키 인프라(PKI)는 암호 시스템의 일종으로,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공개키/비밀키)를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에 기반한 보안 인프라·구조를 의미
** 라우터란 통신을 위해 독립적인 통신망 간 최적·최단의 접속 경로를 탐색하는 네트워크 연결 기기를 의미

3) 세부사업: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2033-414)(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 등 정보보호 제도 운영을 지원하며,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억 4,000만원(34.6%) 증액된 26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4)]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고위험 취약점 관리’**는 기존 보안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인프라를 대상으로 고위험 취약점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에 적합한 고위험 산업군 인증기준 개발, 심사체계 고도화를 통해 ISMS 인증기업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10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은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제품·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4,000만원(136.1%) 증액된 5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 25,985 | 19,490 | 19,490 | 26,230 | 6,740 | 34.6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 2,635 | 1,777 | 1,777 | 4,277 | 2,500 | 140.7 |
| 고위험 취약점 관리 | - | - | - | 2,500 | 2,500 | 순증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 2,136 | 1,495 | 1,495 | 2,495 | 1,000 | 66.9 |
|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 - | - | - | 1,000 | 1,000 | 순증 |
| ICT중소기업 안전망 확충 | 8,890 | 5,716 | 5,716 | 8,956 | 3,240 | 56.7 |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 2,380 | 2,380 | 2,380 | 5,620 | 3,240 | 136.1 |

4) 세부사업: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분야 침해사고 대응 업무절차에 AI를 도입하여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최적화·자동화하여 사고분석 및 대응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5년도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 | - | - | 5,000 | 5,000 | 순증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은 사이버 위협(악성코드, 보안취약점 등)을 능동적으로 탐지·조치하고 적극적인 침해사고 대응·복구 및 신종 보안위협 대응, 보안점검 등을 통해 디지털체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0억원(13.9%) 증액된 79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6)]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은 국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탐지, 대국민 해킹메일 확인서비스, 디도스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억원(17.9%) 증액된 32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은 24시간 365일 인터넷 이상징후 모니터링, 인터넷침해대응 기반시설 보호 및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원(61.8%) 증액된 104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5) 세부사업: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2332-324)(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6) 세부사업: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332-302)(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2025년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 62,125 | 57,885 | 64,585 | 79,585 | 9,000 | 13.9 |
|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운영 | 35,132 | 36,099 | 40,099 | 49,099 | 9,000 | 18.3 |
|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 | 22,583 | 23,884 | 27,884 | 32,884 | 5,000 | 17.9 |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 6,471 | 6,471 | 6,471 | 10,471 | 4,000 | 61.8 |

이 사업들은 ① 국내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② 국내 정보보호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응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추경안에 편성된 정보보호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목적 | 사업명 | 추경안 | 사업내용 |
|---|---|---|---|
| 제도개선 지원 |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 3,011 | 라우팅 인증체계(RPKI) 및 DNS 관리체계 도입 |
|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 | |
| | 고위험 취약점 관리 | 2,500 | 고위험 취약점 정보 수집·분석 체계 도입 |
| |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 1,000 | 이동통신사에 적합한 고위험 산업군 인증기준 개발, 심사체계 고도화 |
|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 3,240 | 초광역상황실 운영체계 도입 |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5,000 | AI 모델 개발 및 도입을 통한 인터넷침해대응 업무 고도화 지원 |
|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 |
| |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 | 5,000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지원 |
|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 4,000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장비 구입 |

주) 추경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액수만 표시한 것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중 일부는 법률 개정 소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충실하게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추진 시 관련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은 대체로 세부사업, 내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 하부 단위에서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것인데,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률 개정 소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사업은 SKT가 정부의 공인된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하면서, ISMS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사회적 논란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에 적합한 고위험 산업군 인증기준을 개발·도입하려는 것임.

그러나 고위험 산업군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고시만으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은 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과 국내 정보침해 사고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및 신속한 대응 지원을 통한 국민과 기업 보호 등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①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사업은 국내에 RPKI 체계 도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3년 세계적으로 RPKI가 보급된 이후 전세계의 RPKI 도입률은 꾸준히 상승해왔음. 그러다가 2024년에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RPKI 도입 확대를 추진

면서 RPKI의 글로벌 도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RPKI 특성상 RPKI 인증을 받지 않은 IP대역을 후순위 처리하여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도 RPKI 체계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PKI 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시급성, 특히 2024년 초에 실시된 미국의 RPKI 도입 확대 정책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7)]

②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은 디도스대응시스템과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장비 도입 이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장비 노후화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디도스 공격 대응 지원과 침해사고 대응 및 모니터링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노후 장비 교체와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그러나 교체 대상 장비들의 경우 도입 이후 9년 ~ 15년 가량이 지난 상태로 내용연수를 이미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국내 정보침해 사고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

이와 같이 일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 그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2025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라우터 인증 OECD 꼴찌인데 예산 0원…보급 확대해야」(연합뉴스, 2024.9.8.)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2.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위험 산업군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에 적합한 고위험 산업군 인증기준 개발, 심사체계 고도화를 통해 ISMS 인증기업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5년도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 25,985 | 19,490 | 19,490 | 26,230 | 6,740 | 34.6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 2,136 | 1,495 | 1,495 | 2,495 | 1,000 | 66.9 |
|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 - | - | - | 1,000 | 1,000 | 순증 |

이 사업은 정부의 공인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을 받은 SKT가 2025년 4월 19일에 해킹을 당하면서 SKT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현행 ISMS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여 고위험 산업군을 위한 ISMS 인증기준 및 심사체계를 개발·도입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8) 세부사업: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요]

| |
|---|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br>・내용: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br>・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br>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br>③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예산 전액을 출연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관 내에 별도의 연구반을 구성하여 고위험 산업군 특화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예산안 산출 내역]

| |
|---|
| ·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 10억원<br>- 통신사 특화 ISMS 인증기준 개발 : 3억원×1회=3억원<br>- 기술 심사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3억 5,000만원×2개=7억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시 고위험 산업군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사업을 통하여 SKT, KT, LG U+ 등 통신사에 특화된 ISMS 인증기준 및 심사체계를 개발할 계획임.

SKT 해킹사고 발생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긴급 현안점검 추진 경과를 보면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긴급 현안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도 현안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볼 때, 고위험 산업군을 통신사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9)]

9) 「과기정통부, 주요 통신사 및 플랫폼사 대상 직접 보안점검 실시」(2025.5.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참고자료)

오히려 ISMS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규모나 보안사고 발생 시 국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산업군의 범위를 설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고위험 산업군에 적합한 ISMS 인증기준과 심사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판단기준을 먼저 개발한 후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과 가이드라인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고위험 산업군 ISMS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일정(안)]

| 구분 | 추진 내용 |
|---|---|
| '25.7월 | 고위험 산업군 특화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반 등 구성 |
| '25.8월 | 고위험 산업군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인증산출물 등의 데이터 분석 |
| '25.9 ~ 10월 | 고위험 산업군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반 등 운영 |
| '25.11 ~ 12월 | 고위험 산업군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등 진행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 소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산업군에 적합한 ISMS 인증 세부점검 항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ISMS 인증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인증 시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제47조의7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10)]

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같은 조 제4항에서 인증기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특정 산업군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고위험 산업군에 대하여만 강화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에 대한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시 제·개정없이, 개발 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인증기준 내 세부 점검항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적용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은 ISMS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5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고시 개정 과정의 입법예고 절차를 통하여 수범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통신사 등 특정 고위험 사업군에 대한 ISMS 인증 시 다른 사업군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은 고시에서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717호,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11]

---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추진 시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 소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준 개발 후 도입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717호,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 신·구조문대비표 중 관련 내용 발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 ③ (생 략)<br><br>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br><br>④ ----------. 이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 3.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예산 연내 활용 필요

## 가. 개 요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은 질병 발생 후 환자가 병원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회복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기반의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0억원(347.8%) 증액된 103억원이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 (닥터앤서3.0) | - | 2,300 | 2,300 | 10,300 | 8,000 | 347.8 |

이 사업은 앞서 수행된 닥터앤서 1.0과 2.0의 후속사업으로, 앞서 닥터앤서 1.0과 2.0은 AI 기술을 의료기관의 진료를 보조하는데 활용하였으나, 3.0은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닥터앤서 사업 간 비교]

| 구분 | 닥터앤서 1.0 | 닥터앤서 2.0 | 닥터앤서3.0 |
|---|---|---|---|
| 기간/ 예산(국비) | 2018 ~ 2021. 3 (3년) / 총 364억원 | 2021 ~ 2024 (4년) / 총 327억 7,900만원 | 2025 ~ 2028 (4년) / ’25년 기준 23억원 |
| 사업 목적 | 환자의 상태 분석, 이상 검출 등 진단보조 및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해법(AI솔루션) 개발 ➠ 의료인을 위한 서비스 | | 치료·수술 후, 병원·가정에서 지속적 예후관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개발 ➠ 환자·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
| 대상 질환 | 심뇌혈관, 심장질환 등 8개 질환 (21개 의료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개발) | 고혈압, 우울증, 당뇨 등 12개 질환 (24개 의료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개발) | (예시) 수술, 병원 치료 이후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다빈도질환 등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세부사업: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2602-337)(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본예산 23억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전액 교부하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고를 거쳐 ICT기업[13](필수), 의료기관(필수), 연구기관・대학(선택)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였음.

[2025년도 본예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 현황]

| 구분 | 추진 내용 |
|---|---|
| '25.3.31.~5.7. |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
| '25.7월 첫 주 예정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 협약체결일~'25.12.31. | 신규과제 사업수행 |
| '26.1월 초 | 신규과제 사업결과 보고 |
| '26.1월 중 | 결과평가 |
| '26.1분기 내 | 신규과제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자가 선정되면 수술, 병원 치료 이후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다빈도질환 등의 질병이 발병한 후에 일상에서 통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AI 예후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임.

[연구개발 및 실증 절차]

| 의료기관 | | ICT 기업 | | 의료기관 | | ICT 기업 | | 국내・외 의료기관 |
|---|---|---|---|---|---|---|---|---|
| 의료 데이터 확보 | → | AI 솔루션 개발 | → (식약처 허가) | 시범적용 | → (개선사항 도출) | AI 솔루션 보완 | → | 실증 및 레퍼런스 확보 |

자료: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 공모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공고를 거쳐 컨소시엄 2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10개 이상의 질환에 대한 AI 솔루션 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13) 참고로 의료기관이 AI 솔루션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ICT기업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다른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함.

[본예산과 추경안 과제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 본예산 | 추경안 |
|---|---|---|
| 컨소시엄 수 | 1개 | 2개 |
| 과업내용 | 질병 발생 후 환자가 병원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회복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기반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실증<br>- 3개 질환(계통) 대상 | 질병 발생 후 환자가 병원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회복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기반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실증<br>- 10개 이상 질환(계통) 대상 |
| 2025년 국비 지원액 (과제당) | 21억 8,500만원 이내<br>※ 현재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과 적정사업비 심의·조정 중(7월 1주 협약 체결 예정) | 38억원 이내 |
| 총 국비 지원액 (과제당) | 4년 간 87억 4,000만원 이내 | 4년 간 152억원 이내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본예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 일정에 비추어볼 때, 현재 계획 중인 추경안을 활용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어 예산이 연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에서 사업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5년 7월 초에 과제를 공고하고 8월 중으로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통해 12월까지 과제수행 기간을 부여한 후, 차년도 1월에 결과 보고를 받을 계획임.

[2025년 제2회 추경안을 활용한 사업 추진 일정(안)]

| 구분 | 추진 내용 |
|---|---|
| '25.6~7월 | 추경 사항(과업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수정 공고(안) 마련<br>※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고(안)의 객관성·정교성 확보 예정 |
| '25.7~8월 | 추경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
| '25.8월 | 추경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 협약체결일~'25.12.31. | 추경 신규과제 사업수행 |
| '26.1월 | 추경 신규과제 사업결과 보고 |
| '26.1분기 | 추경 신규과제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예산 활용을 위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일정은 본예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일정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첫째, 추경안 과제의 경우 그 지원 규모가 본예산 과제 87억 4,000만원 대비 64억 6,000만원(74%)이 증가한 152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과업의 범위도 확대될 필요가 있어 기존 공고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공고 준비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획한 대로 7월 초에 즉시 공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14)]

둘째,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한 시간과 의료데이터 확보 및 실증 계획 등을 포함한 과제 추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과제 지원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나, 추경안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과제 공고일부터 협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을 본예산 과제 대비 축소(3개월→최대 2개월)하였으므로, 실제 수행기관 선정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될 우려가 있음.

셋째, 사업수행자의 과업수행 기간을 약 4개월로 부여하고 있는데, 본예산 과제보다 추경안 과제의 과업 내용을 확대할 예정임에도 과업수행기간은 축소(6개월→약 4개월)하고 있어 사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이 계획한 시점(연말)에 완료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연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고문 및 평가계획을 검토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규과제 공고를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임.

# 4. 공공AX 프로젝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 투입의 성과 도출 필요

## 가. 개 요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16]

[2025년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공공AX 프로젝트 | - | - | - | 30,000 | 30,000 | 순증 |

이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 중인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17]과 유사한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을 증액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추경안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15) 세부사업: 공공AX 프로젝트(2602-364)(인공지능기반정책관)

16) AI 대전환(AI Transformaion: AX)은 AI의 단순한 도입을 넘어서 AI 기반의 업무·경영 구조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AI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도구’라면, AX는 ‘AI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총체적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함.

17) 정보통신진흥기금: AI산업육성(2602-301) - 부처협업 기반 AI확산(내역사업)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및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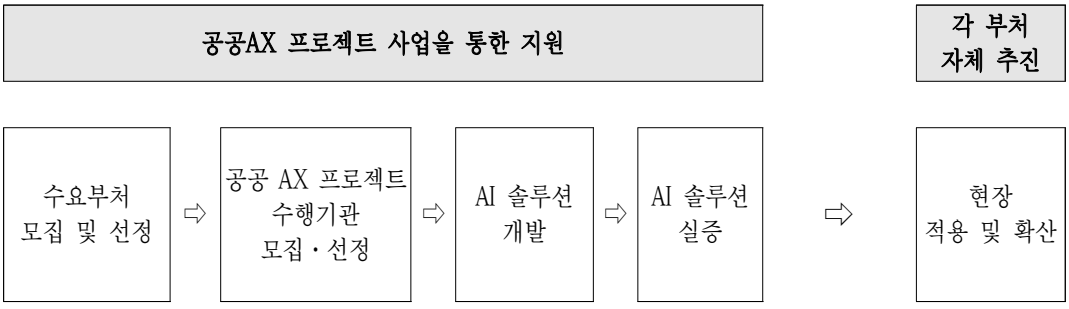
| 구분 | 공공AX프로젝트 |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사업<br>(2025년도 본예산 신규과제) |
|---|---|---|
| 과제 수 | 20개 | 10개 |
| 과업내용 | 공공분야 수요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AI 솔루션 개발·실증 | 공공분야 수요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AI 솔루션 개발·실증 |
| 2025년 국비 지원액<br>(과제별) | 15억원 | 10억원 |
| 총 국비 지원액<br>(과제별) | 30억원 | 20억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액 전액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출연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에 AI 솔루션 도입 수요조사를 거쳐 공공혁신 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부처 수요를 선별하여 해당 부처와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한 후,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수행자(ICT기업)를 선정하여 AI 솔루션 개발 및 부처 대상 실증을 수행하게 됨.

각 부처는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이후 이를 부처 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AI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게 됨.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2025년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 추진 일정]

| 구분 | 추진 내용 |
|---|---|
| ’24.11.29~’25.1.9. | 각 부처별 수요조사 |
| ’25.1.15~’25.2.10. | 부처수요 선정 |
| ’25.2.11.~3.17. | 과제기획 |
| ’25.3.18.~4.18. | 수행기관 공고 |
| ’25.4.28.~5.1. | 수행기관 선정평가 |
| ~ ’25.5.29.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 ’25.7.15. | 중간보고 |
| ’25.12월 2주 | 결과보고서 제출 |
| ’25.12월 3주 | 결과평가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과정에서 사업이 예상일정보다 지연되어 연내에 예산 투입을 통한 성과 도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에서 사업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부처 수요조사, 과제기획, 과제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과정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바, 이는 연내에 중간보고가 가능한 수준까지 과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 구조의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을 철저하게 검토·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추진 일정(안)]

| 구분 | 추진 내용 |
|---|---|
| '25. 7월 1주 | 전담기관(NIPA) 협약체결 |
| '25. 7월 2주 ~ 4주 (약 2주) | 부처 수요조사 |
| '25. 7월 4주 ~ 5주 | 부처수요 선정 |
| '25. 7월 5주 ~ 8월 2주 | 과제 기획 |
| '25. 8월 2주 ~ 9월 1주 | 수행기관 공고 |
| '25. 9월 2주 ~ 9월 3주 | 수행기관 선정평가 |
| '25. 9월 3주 ~ 9월5주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 '25. 12월 중 | 중간보고 |
| '26. 3월 초 | 결과보고서 제출 |
| '26. 3월 중 | 결과평가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부처 수요조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2주 내로 완료할 계획이나, ①과제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부처수요가 발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②수요부처가 AI 솔루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므로 각 부처의 AI 솔루션 실증을 위한 인프라 보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③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을 통해 올해 초에 이미 10개의 부처수요가 과제로 반영된 상황으로, 과제로 기획할 만큼 공공혁신 효과가 크고 파급력 있는 부처 수요 발굴이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기획을 3주 내로 완료할 계획이나, ① 기존 부처 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경우에도 과제 기획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과제(20억 → 30억)를 더 많이 기획(10개 → 20개)해야 하는 상황인 점, ② 과제기획 단계에서 부처수요의 구체화 및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개발된 AI 솔루션의 최종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제기획이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제 기획 과정에서는 더 장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예산 투입의 성과(중간보고 등)가 연내에 도출되지 못하게 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5. AI 혁신펀드 사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 시점을 앞당길 필요 등

## 가. 개 요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특화펀드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AI 대전환을 견인할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8)]

[2025년도 AI 혁신펀드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AI 혁신펀드 | - | - | - | 100,000 | 100,000 | 순증 |

이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 중인 ‘AI 혁신펀드’ 사업(사업코드: 2602-334, 이하 구분을 위하여 “AI 혁신펀드 사업(정진기금)”이라 함)과 유사한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AI 혁신펀드 사업(정진기금)을 증액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추경안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AI 혁신펀드 조성(안) 주요내용]

- 펀드 조성규모 : 2,0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1,00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존속/투자기간 : 8년/4년
- 주요 내용

| 출자예산 | 결성 목표액 | 정부 출자비율 | 선정 운용사수 |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
|---|---|---|---|---|
| 1,000억원 | 2,000억원 | 50% | 1 | 1,000억원 |
| | | | 2 | 400억원 |
| | | | 1 | 200억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세부사업: AI 혁신펀드(2602-363)(인공지능기반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 예산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출자 및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거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여 조합(자펀드)을 결성하고, AI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AI 혁신펀드 사업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로 AI 혁신펀드 사업(정진기금)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AI 혁신펀드 사업(정진기금) 추진 현황]

| 사업 추진 내용 | 본예산 활용 일정(안) | 제1회 추경예산 활용 일정(안) |
|---|---|---|
|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 2025년 2월 26일 | 2025년 5월 30일 |
| AI 혁신펀드 모태펀드 출자 | 2025년 3월 17일 | 2025년 6월 19일 |
| 자펀드 운용사 선정 | 2025년 5월 30일 | 2025년 9월 예정 |
| 자펀드 결성 | 2025년 8월 이후 | **2025년 12월 예정**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펀드 결성 이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성할 계획인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처를 모색할 예정이므로, 투자 시 지원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에서 사업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중에 AI 혁신펀드 모태펀드 출자와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10월 중으로 완료한 후 자펀드는 2026년 1월 이후에 결성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을 계획하고 있음.

[AI 혁신펀드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내용 | 일정(안) |
|---|---|
|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 2025년 7월 예정 |
| AI 혁신펀드 모태펀드 출자 | 2025년 7월 예정 |
| 자펀드 운용사 선정 | 2025년 10월 예정 |
| 자펀드 결성 | 2026년 1월~ 예정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은 일정은 AI 혁신펀드 사업(정진기금)의 추진 현황과 비교했을 때 각 단계별로 비슷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단계인 자펀드 결성 시점이 2026년 1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연내에 예산 투입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사업이 AI 분야의 기업에 대한 조속한 투자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연내에 예산투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2,400억원)이 편성[19]되어 있는데, 이 펀드는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할

19)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지원내용 및 예산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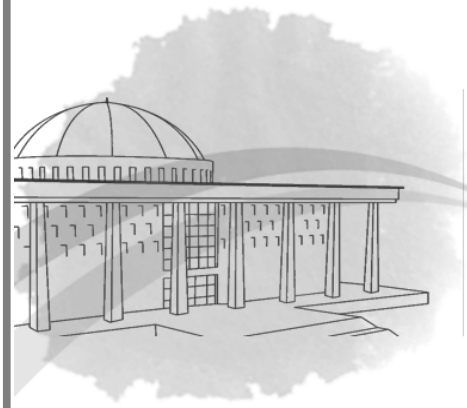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 |
|---|
| ·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br>- (지원내용)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되, 지원사업 참여 기업 투자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망 기업 대상 집중 지원 유도<br>- (산출근거) 2,400억원* = 기업당 평균 20억원 투자 X 200개사 X 60% 출자<br>* AI융합 1,200억원, 딥테크 1,200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예정으로, 이 사업이 AI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고려하면 두 펀드의 지원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인 AI 혁신펀드에 대한 자펀드가 결성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와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3,33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2,773 | 2,737 | 2,737 | 2,737 | - | - |
| 기 금 | 1,160 | 597 | 597 | 597 | - | - |
| 합 계 | 3,933 | 3,334 | 3,334 | 3,334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4조 2,34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5억원(△1.4%) 감소함.

예산은 4조 1,77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5억원(△1.4%) 감소하고, 기금은 57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40,298 | 42,218 | 42,381 | 41,776 | △605 | △1.4 |
| 기 금 | 1,607 | 570 | 570 | 570 | - | - |
| 합 계 | 41,905 | 42,788 | 42,951 | 42,346 | △605 | △1.4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2,773 | 2,773 | 2,773 | 2,773 | - | - |
| 합계 | 2,773 | 2,773 | 2,773 | 2,773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5억원(△1.4%) 감소함.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40,298 | 42,218 | 42,381 | 41,776 | △605 | △1.4 |
| 합계 | 40,298 | 42,218 | 42,381 | 41,776 | △605 | △1.4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으로만 편성되어 있음. 총 감액 규모(총지출 기준)는 △605억 600만원으로, 그 구성내역은 사업비 감액 △605억 600만원(100.0%)임.[2)]

협력국 사업추진여건, 사업수행자 선정 지연 등 사업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베트남(ODA)’ 사업 등 5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280억원,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 및 PKO 예산 분담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ODA)’ 등 2개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에서 △258억 8,900만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2026년 개최로 순연됨에 따라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에서 △66억 1,7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서 △605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0%) | | 706,279 | 753,029 | 753,029 | 692,523 | △60,506 | △8.0 |
| 일반회계 | | 706,279 | 753,029 | 753,029 | 692,523 | △60,506 | △8.0 |
| 1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 | 6,854 | 6,854 | 237 | △6,617 | △96.5 |
| 2 |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 107,284 | 123,580 | 123,580 | 114,191 | △9,389 | △7.6 |
| 3 | 유엔 PKO예산 분담금 납부(ODA) | 212,377 | 216,784 | 216,784 | 200,284 | △16,500 | △7.6 |
| 4 | 베트남(ODA) | 49,646 | 57,293 | 57,293 | 52,293 | △5,000 | △8.7 |
| 5 |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 62,841 | 83,648 | 83,648 | 78,648 | △5,000 | △6.0 |
| 6 |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 187,826 | 178,966 | 178,966 | 173,966 | △5,000 | △2.8 |
| 7 | 탄자니아(ODA) | 18,927 | 17,931 | 17,931 | 9,931 | △8,000 | △44.6 |
| 8 | 글로벌연수(ODA) | 67,378 | 67,973 | 67,973 | 62,973 | △5,000 | △7.4 |
| 합계 | | 706,279 | 753,029 | 753,029 | 692,523 | △60,506 | △8.0 |

주) 총계 기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외교부 소관 1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없음.

첫째, ‘국가별 협력사업’은 감액안이 제출된 사업 외에 2024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란 사업은 최근 악화된 현지 정세를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순연개최 결정에 따라 불용이 확정된 내역사업이 감액되었으므로 감액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감액된 예산은 2026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외교부는 차년도 회의일정 및 국가별 참석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확정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국가별 협력사업(ODA): 2024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 가. 개 요

**‘국가별 협력사업(ODA)’** 사업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하여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0억원(△2.8%) 감액된 7,96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국가별 협력사업(ODA)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3개 세부사업) | 275,641 | 307,548 | 307,548 | 297,548 | △10,000 | △3.3 |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8개 세부사업) | 306,614 | 302,087 | 302,087 | 289,087 | △13,000 | △4.3 |
|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5개 세부사업) | 73,671 | 94,432 | 94,432 | 94,432 | - | - |
|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5개 세부사업) | 133,274 | 115,139 | 115,139 | 115,139 | - | - |
| 합계 | 789,200 | 819,206 | 819,206 | 796,206 | △23,000 | △2.8 |

국가별 협력사업(ODA)은 외교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교부하는 사업출연금으로 집행되며, 2025년도 본예산은 총 44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단위사업: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2431)(개발협력국),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개발협력국), 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 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는 수원국의 정부조직 개편, 약정서 검토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입찰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협력국 2개국(베트남, 탄자니아)의 6개 내역사업,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의 3개 내역사업 및 사업효과성 제고비가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가별 협력사업(ODA)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 | 감액 사유 |
|---|---|---|---|---|---|
| □ **베트남(ODA)** | **57,293** | **52,293** | **△5,000** | **△8.7** | |
| ■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22-'26 / 1,200만불) | 4,271 | 1,271 | △3,000 | 70.2 | ○ **(수원국 조직개편으로 과업순연)** 베트남 지방정부 개편에 따라, 사업부처가 꽝찌성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서 꽝찌성 보건국(DOH)으로 변경되면서 시공 관련 절차 지연되어 금년도 계획 대비 순연이 불가피한바 감액 신청 |
| ■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습지 생태계 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사업 ('24-'28 / 1,200만불) | 2,355 | 355 | △2,000 | 84.9 | ○ **(수원국 조직개편으로 과업순연)** 수원기관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천연자원환경부(MONRE)와 통합 추진 중으로 베트남 측 체계 구축 및 행정절차 지연과 이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사업 순연이 불가피하여 감액 신청 |
| □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 **83,648** | **78,648** | **△5,000** | **△6.0** | |
| ■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23-'27 / 977만불) | 3,433 | 2,433 | △1,000 | 29.1 | ○ **(수원국 현지 시공 입찰 지연으로 과업 순연)** 당초 사업수행기관 선정 입찰 유찰로 인한 재입찰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전반 지연 발생하였고, 입찰 및 착공 현지 입찰 절차에 따라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감액 신청 |
| ■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22-'27 / 1,000만불) | 3,380 | 2,380 | △1,000 | 29.6 | ○ **(수원국 분담사항 변경 내부절차 지연으로 과업 순연)** 시공 예산 증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부족예산을 수원기관이 분담토록 협의의사록(R/D) 수정 체결 및 추가 예산 확보 절차 진행으로 사업일정이 순연되어 감액 신청 |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 | 감액 사유 |
|---|---|---|---|---|---|
| ■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업효과성제고비 | 18,219 | 15,219 | △3,000 | 16.5 | ○ 금년 아태지역 예비조사, 심층기획조사 본사업 착수 전 조사, 사후관리사업의 전년 대비 규모 축소 및 건설관리(CM) 파견 지연 예상으로 감액 신청 |
| **□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 **178,966** | **173,966** | **△5,000** | **△2.8** | |
| ■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24-'28 / 1200만불) | 2,710 | 1,210 | △1,500 | 55.4 | ○ **(수원국측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과업 순연)** 수원국 관계기관의 건물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건축 설계, 착공 등이 순연되었고, 4분기 건축 과업(설계) 착수를 위해 수원기관 변경 등 검토 중 |
| ■ 아프리카지역 사업효과성제고비 | 10,951 | 7,451 | △3,500 | 32.0 | ○ 금년 아프리카 예비조사, 심층기획조사 본사업 착수 전 조사, 사후관리사업의 전년 대비 규모 축소 및 건설관리(CM) 파견 지연 예상으로 감액 신청 |
| **□ 탄자니아(ODA)** | **17,931** | **9,931** | **△8,000** | **△44.6** | |
| ■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 (GoT-HoMIS) 확산 사업 ('21-'25 / 620만불) | 3,085 | 1,485 | △1,600 | 51.9 | ○ **(사업 신속 추진에 따른 계획 대비 조기 사업 완료)** 2024년 하반기 사업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비 일부를 조기 집행하고 2025년 중 조기 완료 예정으로 24년 기집행분에 대한 집행이 불요하여 감액 신청 |
| ■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22-'27 / 600만불) | 3,278 | 878 | △2,400 | 73.2 | ○ **(수원국측 검토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순연)** 수원국측 사업구성요소 및 협정문안 검토 지연으로 MoU 체결('23.10)이 1년 반 이상 지연되었고, '25년 1분기 사업 착수 이후에도 계획된 센터 구축 방안이 변경되면서 일정이 추가로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5년 종료에서 2027년 종료로 사업을 2년 연장하고 금년 사업비 일부 감액 신청 |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 | 감액 사유 |
|---|---|---|---|---|---|
| ■ 탄자니아 중학교 STEM 모델학교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중등교육 증진사업 ('23-'27 / 1,000만불) | 4,725 | 2,125 | △2,600 | 55.0 | ○ **(사업수행기관 약정서 검토 지연에 따른 약정 체결 지연 및 과업 순연)** 수원국 요청에 따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변경 및 약정 체결 협의 등으로 인해 착수 및 공정 지연이 발생하여 금년도 사업비 일부 감액 신청 |
| ■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 ('25-'28 / 500만불) | 1,690 | 290 | △1,400 | 82.8 | ○ **(PMC 선금 집행에 따른 사업 잔액 감액 신청)** 집행계획 수립(2025.6.) 이후 2분기 중 MoU 체결 예정이고, 입찰은 4분기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PMC 용역비 선금만 집행 가능하여 미집행 잔액 감액 신청 |
| 계 | 337,838 | 314,838 | △23,000 | △6.8 | |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감액안이 제출된 사업 외에 2024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72건 중 집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이 35건(49.3%)이었는데, 이 중 15건의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0%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하여 2025년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필리핀 팔라완 지역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자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및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수확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가치사슬 강화사업'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 조정되고 집행액이 없었으나, 2025년에도 본예산의 절반 정도가 감액 조정되어 집행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임.

[2024년 신규사업 중 2025년 6월까지 집행률이 0%인 사업]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한국국제협력단 | | | | | | 2024년도 집행부진사유 |
|---|---|---|---|---|---|---|---|
| | 2024 | | | 2025 | | | |
|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
|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 ('24-'28 / 1,470만불) | 347 | 9 | - | 700 | 700 | - | [협의의사록 지연] 베트남 정부의 사업 검토 및 승인 지연으로 아직 협의의사록(R/D) 체결 전 |
|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 체계 개선사업 ('24-'27 / 500만불) | 347 | - | - | 200 | 200 | - | [협의의사록 지연] 수원환경 변화로 사업내용 변경 협의함에 따라 집행 부진 |
|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 ('24-'28 / 850만불) | 347 | - | - | 1,275 | 1,275 | - | [기타] 신정부 내각 수립 이후 수원기관 조직정비 미비로 사업착수 지연 |
| **필리핀 팔라완 지역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자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24-'28 / 1,000만불)** | **347** | **1** | **-** | **1,020** | **520** | **-** | [협의의사록 지연] 수원기관과의 분담사항 협의 및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순연 |
|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체계 현대화 ('24-'27 / 1,000만불) | 346 | - | - | 323 | 323 | - | [기타] 방글라데시 현지 시위 발생 및 정세 불안정으로 주재국 내 사업 공식승인절차(TAPP, RD) 지연 |
| 라오스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24-'29 / 500만불) | 346 | 2 | - | 1,300 | 1,300 | - |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기획조사 결과 및 수원국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로 인한 사업범위 최종 확정 지연되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 완료 |
|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24-'28 / 431만불) | 350 | 31 | - | 750 | 750 | - | [협의의사록 지연] 수원기관과의 RD 협의 장기화로 집행계획 수립 및 GA 체결 지연 |
|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4-'28 / 850만불) | 346 | - | - | 525 | 525 | - | [협의의사록 지연] 스리랑카 정부와의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 지연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한국국제협력단 | | | | | | 2024년도 집행부진사유 |
|---|---|---|---|---|---|---|---|
| | 2024 | | | 2025 | | | |
|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
|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UNICEF) ('24-'27 / 600만불) | 1,417 | 34 | - | 1,388 | 1,388 | - | [협의의사록 지연] 수원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른 국제기구 약정체결 지연 |
|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24-'28 / 1250만불) | 800 | 3 | - | 250 | 250 | - | [협의의사록 지연] 2024년 수원국 대선에 따른 정부 교체로 사업 착수 논의 지연되었으며 2025.2월 기획조사가 완료 |
|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24-'27 / 600만불) | 500 | - | - | 250 | 250 | - | [협의의사록 지연] 수원국 정세불안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기획조사 추진 및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 케냐 청년 생산적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산업훈련청 아띠리버 센터 역량강화사업 ('24-'28 / 700만불) | 346 | - | - | 50 | 50 | - | [협의의사록 지연] 케냐 정부와 정부간 무상원조 기본약정 체결 행정절차 지연 |
|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수확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사업 ('24-'27 / 600만불)** | **346** | **-** | **-** | **668** | **238** | **-** |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기획조사 이후 수원국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획조사(2차) 실시가 불가피하였는 바,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불가하여 사업 착수 지연 |
|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 ('24-'27 / 650만불) | 346 | - | - | 790 | 790 | - |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기획조사 결과 사업범위 축소 및 사업비 감액 발생, 이에 2024년도 3차('24.12.)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착수 순연 불가피 |
| 타지키스탄 시설원예농업 현대화 기반 구축 사업 ('24-'29 / 800만불) | 346 | - | - | 1,266 | 1,266 | - |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기획조사를 통해 수원기관이 당초 제안한 사업후보대상지의 적합성(부지 접근성, 기반시설 유무, 토지 소유권 등)을 재검토하였고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였는 바, 이에 2024년도 3차('24.12.) 사업계획변경 절차 진행하여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착수 불가 |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또한 2024년 계속사업 중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0%인 3건의 사업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계속사업 중 2025년 6월까지 집행률이 0%인 사업]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한국국제협력단 | | | | | | 2024년도 집행부진사유 |
|---|---|---|---|---|---|---|---|
| | 2024 | | | 2025 | | | |
|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
|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23-'26 / 930만불) | 1,500 | 41 | - | 1,247 | 747 | - | [협의의사록 지연] 사업비 적정성 검토 조치 및 시스템 기능점수 재산정, 수원국 자체 시스템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제기에 따른 협의의사록 체결 연기 요청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
|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23-'26 / 880만불) | 1,486 | 2 | - | 150 | 150 | - |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수원기관의 과업범위 조정 요청에 따른 추가 기획조사로 집행계획 수립 및 RD 체결 지연 되었으나, '24년 12월 RD 체결 완료 |
|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21-'25 / 200만불) | 670 | - | - | 250 | 250 | - | [협의의사록 지연] 사업 교환각서 검토 및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사업 착수 지연 |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둘째, 이란 사업은 최근 악화된 현지 정세를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6월 13일,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외교부는 6월 17일에 '중동 지역 정세 악화 관련 신변안전 주의'를 공지하여 이란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이란에 대한 협력사업은 총 2건이고, 2025년 6월까지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음. 6월 24일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아직 현지 정세가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2025년 예산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2025년 대이란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한국국제협력단 | | | | | |
|---|---|---|---|---|---|---|
| | 2024 | | | 2025 | | |
|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본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 이란 국립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UNESCO) ('17-'28 / 750만불) | 1,824 | 1,981 | 1,974 | 2,927 | 2,927 | - |
|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을 위한 통합적 성생식 보건 및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UNFPA) ('23-'28 / 500만불) | 3,534 | 3,452 | 3,452 | 1,324 | 1,324 | - |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 【일반회계】

### <세출 감액>

## 2.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차년도 회의일정 및 국가별 참석 조기 확정을 위해 적극적 협의 필요

### 가. 개 요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 1,700만원(△96.5%) 감액된 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 | 6,854 | 6,854 | 237 | △6,617 | △96.5 |
| 준비기획단 운영 | - | 746 | 746 | - | △746 | △100.0 |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 - | 237 | 237 | 237 | - | - |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 - | 5,871 | 5,871 | - | △5,871 | △100.0 |

2024년 6월, 정부는 부존자원과 성장 잠재력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면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68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4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동일

4) 세부사업: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134-402)(동북·중앙아시아국)

하게 의결되어 확정되었음.

[2024년 6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발표 이후 추진 현황]

| 일자 | 내용 |
|---|---|
| 2024. 6. 18. | 제27회 국무회의「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결과」의결 |
| 2024. 7. 10. | 동북·중앙아시아국장 주재 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 관련 관계부처회의 개최 |
| 2024. 8. 27.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68.54억원)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 2024. 12. 10.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의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예산 68.54억원 확정) |
| 2024. 3.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순연개최 결정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9월 제출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획안]

- **회의명**: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2025년, 한국
- **주요 일정(안)**
  - (1일차) 환영 만찬 / (2일차) ▲정상회의 ▲공식 오찬 ▲양자회담 등
  - 부대행사 : ▲시민 참여 문화 행사 ▲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등 관계부처 부대행사 개최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 관계부처 분야별 약 13개 행사 개최
- **예산**(정부안 기준): 약 68억 5,400만원
- **홍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 제고
  - 방송,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 활용
- **기대효과**
  -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심화
  - 2023년 5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및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협의체 가동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자료: 외교부

이후 외교부는 2025년 9월 또는 9월 이후 개최를 예정하여 각국에 참석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타 국제회의 참석 및 각국 국내행사 등으로 일정 조율이 불가하여 2026년으로 순연개최가 결정되었음.

순연개최 결정에 따라 외교부는 정상회의 개최 예산 중 불용이 확정된 두 내역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

[2025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비교]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 **준비기획단 운영**: 746백만원<br>- 기획단 보조인력 205백만원<br>- 소모품 및 홍보지원 18백만원<br>- 사무실 등 임차료 372백만원<br>- 시설장비유지비 50백만원<br>- 관리용역비 4.8백만원<br>- 기획단 업무협의 5백만원<br>- 기타 91.2백만원 | | ❍ **준비기획단 운영**: 순감(△746백만원) |
| 68억<br>5,400만원 |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237백만원<br>- 소모품 및 유인물 등 60백만원<br>- 회의·행사 관련 임차료 24백만원<br>- 국내·국외여비 103백만원<br>- 실무·고위급 협의 등 개최 50백만원 | 2억<br>3,700만원 |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좌동 |
| |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5,871백만원<br>- 유인물 제작 및 통역비 등 311백만원<br>- 사무실 및 차량 등 임차 23.5백만원<br>- 행사대행용역 5,500백만원<br>- 국내·국외여비 20백만원 | |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br>: 순감(△5,871백만원) |

자료: 외교부

## 나. 검토의견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순연개최에 따라 불용이 확정된 내역사업이 감액되었으므로 감액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감액된 예산은 2026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외교부는 차년도 회의일정 및 국가별 참석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확정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순연개최가 결정된 2025년 3월까지 회의일정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준비기획단 출범, 회의대행업체 선정 등 준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5년 예산은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전무하였고, 올해에는 불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두 내역사업-‘준비기획단 운영’ 및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감액된 예산은 향후 2026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B) | 이·전용 등 (C) | 예산현액 (D=A±B±C) | 집행액 (E) | 집행률 (E/D) | 제2회 추경안 (F) | 증감 (F-A)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 | | | | | |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6,854 | 6,854 | - | - | 6,854 | - | - | 237 | △6,617 |
| 준비기획단 운영 | 746 | 746 | - | - | 746 | - | - | - | △746 |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 237 | 237 | - | - | 237 | - | - | 237 | - |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 5,871 | 5,871 | - | - | 5,871 | - | - | - | △5,871 |

자료: 외교부

한편 외교부는 내역사업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의 예산 2억 3,700만원은 감액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은 제18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및 같은 계기에 이루어지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양자회담 등 올해 하반기 중 계획된 장관급 회의 및 차관급 정책협의회 참석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내역사업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 ]

○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 및 수수료·자문료 등) 6,000만원
- 임차료(회의·행사 관련 임차) 2,400만원
- 여비(관계부처 업무협의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전협의 출장) 1억 300만원
- 사업추진비(각종 업무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5,000만원

○ **향후 집행계획**

: 차년도 한-중앙아 정상회의 일정 및 성과사업 등 협의를 위한 하반기 각급 교류·협의 시 집행 예정
- (정상급) 카자흐스탄, 금년 하반기 고위인사 방한 희망 중
- (장관급) △ 제18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11월말, 우즈벡) 및 동 계기 중앙아 5개국과의 양자회담
  △ 제2차 한-우즈벡 외교장관 전략대화(11월말, 우즈벡)
  △ 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 접촉 등
- (기 타)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

자료: 외교부

이 회의에서 차년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도 협의될 예정이므로, 외교부는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참가국의 일정 조율 불가로 순연되었음을 고려하여, 차년도 회의일정 및 국가별 참석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확정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45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4 | 15 | 15 | 15 | - | - |
| 기 금 | 436 | 439 | 439 | 439 | - | - |
| 합 계 | 450 | 454 | 454 | 454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8,59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00억원(△16.5%) 감소함.

예산은 2,28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반면, 기금은 6,308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700억원(△21.2%) 감소함.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2,220 | 2,289 | 2,289 | 2,289 | - | - |
| 기 금 | 8,745 | 8,008 | 8,008 | 6,308 | △1,700 | △21.2 |
| 합 계 | 10,965 | 10,297 | 10,297 | 8,597 | △1,700 | △16.5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14 | 15 | 15 | 15 | - | - |
| 합계 | 14 | 15 | 15 | 15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220 | 3,289 | 3,289 | 3,289 | - | - |
| 합계 | 3,220 | 3,289 | 3,289 | 3,289 | - | -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조 2,738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700억원(△11.8%) 감소함.

[2025년도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남북협력기금 | 15,841 | 14,438 | 14,438 | 12,738 | △1,700 | △11.8 |
| 합계 | 15,841 | 14,438 | 14,438 | 12,738 | △1,700 | △11.8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통일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700억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보전지출 사업으로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0억 4,0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비 감액에 따른 공자기금 이자상환 감소분만큼 여유자금운용계획 증액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에 20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남북협력기금 | 108,576 | 89,479 | 89,479 | 91,519 | 2,040 | 2.3 |
|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108,576* | *89,479* | *89,479* | *91,519* | *2,040* | *2.3* |
| 합계 | 108,576 | 89,479 | 89,479 | 91,519 | 2,040 | 2.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3개 세부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어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1,700억원이고, 1개 세부사업은 총지출에 제외되는 내부거래 지출, 1개 세부사업은 총수입에 제외되는 정부내부수입임.

총 감액규모는 1,700억원(총계 기준)으로, 그 구성내역은 사업비 감액 △1,700억원(100%)임.

현 남북관계 상황 및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생협력지원’ 사업에서 △878억 4,400만원, ‘경협기반(무상)’ 사업에서 △513억 2,500만원, ‘경협기반(융자)’ 사업에서 △308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음.

사업비 1,700억원 감액에 따라 수입부문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사업에서 신규예수 감액분만큼 1,700억원을 감액하였음.

2) 통일부 소관 1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1개(남북협력기금)임.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지출인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사업은 사업비 감액 1,700억원으로 인해 그 감액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그 이자상환 예상액 감소분을 20억 4,000만원 감액하였음.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 | | | | |
| 남북협력기금 | | 701,480 | 637,585 | 637,585 | 467,585 | △170,000 | △26.7 |
| 1 | 민생협력지원 | 475,314 | 475,885 | 475,885 | 388,041 | △87,844 | △18.5 |
| 2 | 경협기반(무상) | 127,152 | 102,649 | 102,649 | 51,324 | △51,325 | △50.0 |
| 3 | 경협기반(융자) | 99,014 | 59,051 | 59,051 | 28,220 | △30,831 | △52.2 |
| 합계 | | 701,480 | 637,585 | 637,585 | 467,585 | △170,000 | △26.7 |
| 수입부문 | | 1,356,476 | 1,211,853 | 1,211,853 | 1,041,853 | △170,000 | △14.0 |
| 남북협력기금 | | 1,356,476 | 1,211,853 | 1,211,853 | 1,041,853 | △170,000 | △14.0 |
| *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1,356,476* | *1,211,853* | *1,211,853* | *1,041,853* | *△170,000* | *△14.0* |
| 합계 | | 1,356,476 | 1,211,853 | 1,211,853 | 1,041,853 | △170,000 | △14.0 |
| 내부거래지출 | | 76,209 | 93,337 | 93,337 | 91,297 | △2,040 | △2.2 |
| 남북협력기금 | | 76,209 | 93,337 | 93,337 | 91,297 | △2,040 | △2.2 |
| *5*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 *76,209* | *93,337* | *93,337* | *91,297* | *△2,040* | *△2.2* |
| 합계 | | 76,209 | 93,337 | 93,337 | 91,297 | △2,040 | △2.2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 국방위원회



# 국방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2조 9,73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8,415 | 15,879 | 15,879 | 15,879 | - | - |
| 기 금 | 14,108 | 13,857 | 13,857 | 13,857 | - | - |
| 합 계 | 22,523 | 29,736 | 29,736 | 29,736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51조 2,32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23억원(0.3%) 증가함.

예산은 45조 6,15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23억원(0.3%) 증가하고, 기금은 5조 6,17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429,905 | 454,731 | 454,731 | 456,154 | 1,423 | 0.3 |
| 기 금 | 51,110 | 56,170 | 56,170 | 56,170 | - | - |
| 합 계 | 481,015 | 510,901 | 510,901 | 512,324 | 1,423 | 0.3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국방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2,418 | 3,294 | 3,294 | 3,294 | - | - |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5,767 | 15,003 | 15,003 | 15,003 | - | - |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6,426 | 5,721 | 5,721 | 5,721 | - | - |
| 합계 | 14,611 | 24,018 | 24,018 | 24,018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23억원(0.3%) 증가함.

[2025년도 국방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417,712 | 434,007 | 434,007 | 435,430 | 1,423 | 0.3 |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5,767 | 15,003 | 15,003 | 15,003 | - | - |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6,426 | 5,721 | 5,721 | 5,721 | - | - |
| 합계 | 429,905 | 454,731 | 454,731 | 456,154 | 1,423 | 0.3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422억 6,000만원임.[2)]

그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227억 6,0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병영생활관 사업이 113억 1,600만원,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이 526억 5,500만원,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이 105억 6,900만원, 정비 및 보급시설 사업이 198억 7,400만원, 일반지원시설이 622억 2,100만원, 경계 및 작전시설이 248억 9,500만원, 그리고 시설유지관리 사업이 412억 3,000만원 증액되었음.

[2025년도 국방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3,591,518 | 3,540,216 | 3,540,216 | 3,762,976 | 222,760 | 6.3 |
| 1 | 병영생활관 | 311,859 | 258,979 | 258,979 | 270,295 | 11,316 | 4.4 |
| 2 | 병영기본지원시설 | 222,541 | 214,418 | 214,418 | 267,073 | 52,655 | 24.6 |
| 3 | 관사 및 간부숙소 | 525,977 | 786,292 | 786,292 | 796,861 | 10,569 | 1.3 |
| 4 | 정비 및 보급시설 | 313,355 | 394,076 | 394,076 | 413,950 | 19,874 | 5.0 |
| 5 | 일반지원시설 | 791,975 | 522,654 | 522,654 | 584,875 | 62,221 | 11.9 |
| 6 | 경계 및 작전시설 | - | 241,615 | 241,615 | 266,510 | 24,895 | 10.3 |
| 7 | 시설유지관리 | 1,425,811 | 1,122,182 | 1,122,182 | 1,163,412 | 41,230 | 3.7 |
| 합계 | | 3,591,518 | 3,540,216 | 3,540,216 | 3,762,976 | 222,760 | 6.3 |

주 1) 총계 기준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805억원임.

총 감액규모는 805억원(총계 기준)으로, 그 구성내역은 인건비 감액 및 건강보험부담금 감액임.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은 현재 집행실적 고려 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1개 사업에서 110-01목(보수) 597억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에서 320-09목(고용

2) 국방부 소관 2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없음.

부담금) 208억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국방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인건비 및 경상경비(비중 100.0%) | | 3,736,341 | 4,190,598 | 4,190,598 | 4,110,098 | △80,500 | △1.9 |
| 일반회계 | | 3,736,341 | 4,190,598 | 4,190,598 | 4,110,098 | △80,500 | △1.9 |
| 1 | 병인건비 | 3,265,526 | 3,709,274 | 3,709,274 | 3,649,574 | △59,700 | △1.6 |
| 2 | 건강보험부담금 | 470,815 | 481,324 | 481,324 | 460,524 | △20,800 | △4.3 |
| 합계 | | 3,736,341 | 4,190,598 | 4,190,598 | 4,110,098 | △80,500 | △1.9 |

주) 총계 기준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병영생활관 등 4개 시설사업은 3년 평균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실화 및 집행률 제고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국방시설 사업: 병영생활관 등 4개 시설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국방부 시설사업은 일반회계에 총 2,227억 6,000만원(7개 세부사업)이 증액되었음.

[2025년 국방시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별 구분 | 2025년 제2회추경안 | 내역사업 | | |
|---|---|---|---|---|
| | | 내역사업수 | 2025년 내역사업별 본예산 | 2025년 제2회추경안 증액분 |
| 병영생활관 | 270,295 | 3 | 17,364 | 11,316 |
| 병영기본지원시설 | 267,073 | 25 | 4,310 | 52,655 |
| 관사 및 간부숙소 | 796,861 | 8 | 29,893 | 10,569 |
| 정비 및 보급시설 | 413,950 | 17 | 24,433 | 19,874 |
| 일반지원시설 | 584,875 | 20 | 46,788 | 62,221 |
| 경계 및 작전시설 | 266,510 | 4 | 23,599 | 24,895 |
| 시설유지관리 | 1,163,412 | 20 | 9,101 | 41,230 |
| **합 계** | **3,762,976** | **97** | **155,488** | **222,760** |

자료: 국방부

세부적으로 임시숙영시설 확대를 위해 병영생활관 사업에 113억 1,600만원, 연병장 개선을 위해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에 526억 5,500만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에 105억 6,900만원, 군 장비 성능유지를 위해 정비 및

보급시설 사업에 198억 7,400만원,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지원시설 사업에 622억 2,100만원, 활주로 보강 등을 위해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에 248억 9,500만원,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유지관리 사업에 412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2025년 제2회추경안 | 추경안 증액분 | 주요내용 |
|---|---|---|---|
| 병영생활관 | 270,295 | 11,316 | • KF-21 전력화에 따라 조기 확보가 필요한 병영생활관, '25년 부족 편성 임시숙영시설 확대 |
| 병영기본지원시설 | 267,073 | 52,655 | •병 복무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 인입 및 체력향상을 위한 연병장 개선 |
| 관사 및 간부숙소 | 796,861 | 10,569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부숙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
| 정비 및 보급시설 | 413,950 | 19,874 | •군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고, 창고 및 탄약고 신축 등 |
| 일반지원시설 | 584,875 | 62,221 |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 보강, 기지 생존성 확보를 위한 전기시설개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설 신축 등 |
| 경계 및 작전시설 | 266,510 | 24,895 | •군 본연의 임무인 경계작전 유지를 위한 활주로 보강 등 |
| 시설유지관리 | 1,163,412 | 41,230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비 및 부족한 보수비 확대 |
| **소계** | **3,762,976** | **222,760** | |

자료: 국방부

## 나. 검토의견

**병영생활관 등 4개 시설사업은 3년 평균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실화 및 집행률 제고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집행 가능한 군사시설 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공정률 향상을 위한 계속사업비가 739억 2,100만원이고, 금년 내 조기 준공을 위한 계속사업비가 169억 300만원이며, 단년도 완료를 위한 신규사업비가 1,319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성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성격별 구분 | 2025년 내역사업 | | |
|---|---|---|---|
| | 내역 사업수 | 내역사업별 본예산 | 추경안 증액분 |
| - 계속사업 : 연부액 추가 반영 (공정률 향상) | 28 | 109,723 | 73,921 |
| - 계속사업 : 연부액 추가 반영 (금년 내 조기 준공) | 16 | 45,765 | 16,903 |
| **계속사업 소계** | **44** | **155,488** | **90,824** |
| - 신규사업 : 단년도 사업 | 53 | - | 131,936 |
| **신규사업 소계** | **53** | **-** | **131,936** |
| **합 계** | **97** | **155,488** | **222,760** |

자료: 국방부

이중 계속사업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공정률 향상과 조기 준공을 모색하고자 제2회 추경안으로 편성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속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공사건명 | 2025년 추경안 | 추경안 증액분 |
|---|---|---|---|
| 병영생활관 | 육군 병영생활관 임시숙영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 270,295 | 11,316 |
| 병영기본지원시설 | 3군단3포병여단여단본부상수도인입 등 2개 사업 | 267,073 | 10,805 |
| 관사 및 간부숙소 | 군단 직할부대 간부숙소 신축 등 8개 사업 | 796,861 | 10,569 |
| 정비 및 보급시설 | 다목적 격납고 등 16개 사업 | 413,950 | 19,646 |
| 일반지원시설 | 공작사 우주작전전대 신축 등 7개 사업 | 584,875 | 9,474 |
| 경계 및 작전시설 | 18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 등 3개 사업 | 266,510 | 24,711 |
| 시설유지관리 | 시설물검사비 등 5개 사업 | 1,163,412 | 4,303 |
| **계** | | | **90,824** |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계속사업 중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일반지원시설, 시설유지관리 등 시설분야 주요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 등 미집행 금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음.

[추경안으로 편성된 계속사업 중 연도별 미집행 금액 과다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공사건명 | 2025년 제2회추경안 | 추경안 증액분 |
|---|---|---|---|
| 병영생활관 | 육군 병영생활관 임시숙영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 270,295 | 11,316 |
| 관사 및 간부숙소 | 군단 직할부대 간부숙소 신축 등 8개 사업 | 795,861 | 10,569 |
| 일반지원시설 | 공작사 우주작전전대 신축 등 7개 사업 | 584,875 | 9,474 |
| 시설유지관리 | 시설물검사비 등 5개 사업 | 1,163,412 | 4,303 |
| **계** | | **2,814,443** | **35,662** |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별 이·전용(감) 및 불용액을 포함한 3년 평균 미집행 금액을 보면, 병영생활관 사업이 468억 7,100만원,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이 199억 2,300만원, 일반지원시설 사업이 541억 3,900만원, 마지막으로 시설유지관리 사업이 563억 9,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병영생활관 등 4개 사업 미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병영생활관 | 관사 및 간부숙소 | 일반지원시설 | 시설유지관리 |
|---|---|---|---|---|---|
| 2022년 | 이·전용(감액) | - | 6,629 | - | - |
| | 불용액 | 13,801 | 9,558 | 44,379 | 34,428 |
| | **미집행액 계** | **13,801** | **16,187** | **44,379** | **34,428** |
| 2023년 | 이·전용(감액) | 23,673 | 546 | 32,384 | 7,229 |
| | 불용액 | 15,117 | 19,589 | 40,053 | 45,910 |
| | **미집행액 계** | **38,790** | **20,135** | **72,437** | **53,139** |
| 2024년 | 이·전용(감액) | 72,913 | 11,130 | 17,909 | 42,248 |
| | 불용액 | 15,109 | 12,318 | 27,691 | 39,381 |
| | **미집행액 계** | **88,022** | **23,448** | **45,600** | **81,629** |
| **3년 평균** | **이·전용(감액)** | **32,195** | **6,102** | **16,764** | **16,492** |
| | **불용액** | **14,676** | **13,822** | **37,374** | **39,906** |
| | **미집행액 계** | **46,871** | **19,923** | **54,139** | **56,399** |
| **제2회 추경안 증액분** | | **11,316** | **10,569** | **9,473** | **4,303** |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89조[3]에 따라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편성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적시성, 긴급성, 불가피성, 구체성,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함.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영생활관 등 4개 시설사업은 3년 평균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사업의 내실화 및 집행률 제고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2. 병영생활관: 본예산의 임시숙영시설 감리비 중 자체감리를 고려한 집행 필요

### 가. 개 요

**‘병영생활관’** 사업은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함으로써 장병들의 기본권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억 1,600만원(4.4%) 증액된 2,70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병영생활관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병영생활관 | 311,859 | 258,979 | 258,979 | 270,295 | 11,316 | 4.4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병영생활관 사업은 육군병영생활관을 포함하여 3개 내역사업에 11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부적으로 공군의 16비 병영통합 생활관 신축과 교육사 군수1학교 병교육생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14억 9,800만원과 1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육군 병영생활관 임시숙영시설 설치에 7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4) 세부사업: 병영생활관(2531-301)(군사시설기획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병영생활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군 구분 | 하위사업 | 공사건명 |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 기 투자액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추가소요 |
|---|---|---|---|---|---|---|---|
| 병영생활관(3) | | | | 52,127 | 524 | 17,364 | 11,316 |
| 공군 | 해공군/국직병영생활관 | 16비병영통합생활관신축 | '24~'28 | 15,573 | 228 | 343 | 1,498 |
| 공군 | 교육생생활관 | 교육사군수1학교병교육생생활관(818동)리모델링 | '23~'28 | 19,995 | 296 | 462 | 1,968 |
| 육군 | 육군병영생활관 | 병영생활관 임시숙영시설 설치 | '25 | 16,559 | - | 16,559 | 7,850 |

자료: 국방부

[2025년 병영생활관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589억 7,900만원 | ○ 육군병영생활관 65,454백만원<br>가. 계속비 : 61,610백만원(56동×10,728백만원×10.3%)<br>나. 신규 : 3,844백만원(25동×8,565백만원×1.8%)<br>○ 해공군/국직병영생활관 68,250백만원<br>가. 계속비 : 66,908백만원(68동×6,882백만원×14.3%)<br>나. 신규 : 1,342백만원(10동×7,282백만원×1.8%)<br>○ GOP소초병영생활관 27,050백만원<br>가. 계속비 : 23,491백만원(45동×8,087백만원×6.5%)<br>나. 신규 : 3,559백만원(25동×7,572백만원×1.9%)<br>○ 교육생생활관 98,225백만원<br>가. 계속비 : 98,176백만원(42동×17,476백만원×13.4%)<br>나. 신규 : 49백만원(1동×2,710백만원×1.8%) | 2,702억 9,500만원 | ○ 육군병영생활관 73,304백만원<br>가. 계속비 : 69,460백만원(56동×10,868백만원×11.4%)<br>나. 신규 : 3,844백만원(25동×8,565백만원×1.8%)<br>○ 해공군/국직병영생활관 69,748백만원<br>가. 계속비 : 68,406백만원(68동×6,882백만원×14.6%)<br>나. 신규 : 1,342백만원(10동×7,282백만원×1.8%)<br>○ GOP소초병영생활관 27,050백만원<br>가. 계속비 : 23,491백만원(45동×8,087백만원×6.5%)<br>나. 신규 : 3,559백만원(25동×7,572백만원×1.9%)<br>○ 교육생생활관 100,193백만원<br>가. 계속비 : 100,144백만원(42동×17,755백만원×13.4%)<br>나. 신규 : 49백만원(1동×2,710백만원×1.8%) |

자료: 국방부

##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제대별로 감리를 위해 대보수 감독관 등의 명칭으로 2~3명을 공무직으로 고용하여 일부 임시숙영시설의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감리비는 이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중 육군 병영생활관 임시숙영시설 설치 사업을 보면, 대상사업은 9사단 전차대대 병영생활관 등 15개 사업에 시설공사비 7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임시숙영시설은 병영생활관 본공사 추진 전 병사들이 임시로 숙박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본공사 계약 전 약 4~6개월 전에 사업이 시작되어야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임시숙영시설을 2025년도 추경안에 반영하였음.

[ 2025년 제2회 추경안 임시숙영시설 집행 대상사업(15개 사업) ]

| 착수 연도 | 전력 단위 | 사업명 | 임시시설 설계현황 | 본공사 추진 현황 (2025. 5월 말) |
|---|---|---|---|---|
| 2024년 | 1군단 | 9사단 전차대대 병영생활관 | 6월말 | 설계 60% |
| 2024년 | 1군단 | 9사단 89방공진지 병영생활관 | 6월말 | 설계 60% |
| 2024년 | 1군단 | 701특공연대 1대대 병영생활관 | 6월말 | 설계 60% |
| 2024년 | 1군단 | 701특공연대 3대대 병영생활관 | 6월말 | 설계 60% |
| 2024년 | 1군단 | 701특공연대 2대대 병영생활관 | 6월말 | 설계 60% |
| 2024년 | 1군단 | 1사단 12-3대대 병영생활관 | 6월말 | 설계 60% |
| 2024년 | 1군단 | 25사단 71여단본부 병영생활관 | 6월말 | 설계 60% |
| 2024년 | 3군단 | 22사단 55여단 건봉산대대 소초병영생활관 | 6월말 |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 진행 |
| 2024년 | 2작전사 | 35사단 105-3대대 병영생활관 | 완료 | 설계 60% |
| 2024년 | 2작전사 | 50사단 신병교육대 B동 개수 | 완료 | 설계 60% |
| 2024년 | 교육사 | 종군교 2수송교육연대 병영생활관 | 완료 | 설계 80% |
| 2024년 | 5군단 | 5포병여단 5000-2사격대 병영생활관 | 완료 | 설계 60% |
| 2024년 | 3군단 | 22사단 포병여단 제진포대 병영생활관 | 완료 |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 진행 |
| 2024년 | 3군단 | 12사단 수색대대 화랑작전중대 | 완료 |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 진행 |
| 2024년 | 2군단 | 15사단 38여단 삼천봉소초/전자전기지 | 완료 | 설계 60% |

자료: 국방부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세목구분 | 물량 (요율) | 세목별 총액 | ~2024 기투자 | 2025예산(안) | | |
|---|---|---|---|---|---|---|
| | | | | 2025편성 | 2025추경 | 2026이후 |
| 시설공사비 | 15개부대 | 7,850 | - | 14,638 | 7,850 | - |
| 기본조사설계비 | 1.88% | - | - | - | - | - |
| 실시설계비 | 2.82% | - | - | 739 | - | - |
| 감리비 | 10.73% | - | - | 1,182 | - | - |
| 시설부대비 | 0.36% | - | - | - | - | - |
| 계 | - | 7,850 | - | 16,559 | 7,850 | - |

자료: 국방부

또한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임시숙영시설 예산을 보면, 설계비 7억 3,889만원, 공사비 146억 3,800만원, 감리비 11억 8,225만원 등 총 165억 5,915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임시숙영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소계 | 설계비 | 공사비 | | | 감리비 |
|---|---|---|---|---|---|---|
| | | | 편성 | 집행 | 잔액 | |
| 소계 | 16,559,155 | 738,894 | 14,638,008 | 13,313,264 | 1,324,744 | 1,182,253 |
| 병영생활관 | 6,070,966 | 214,622 | 5,512,937 | 5,506,614 | 6,323 | 343,407 |
| GOP소초 | 4,815,595 | 183,161 | 4,339,371 | 4,243,305 | 96,066 | 293,063 |
| 교육생생활관 | 2,801,886 | 123,977 | 2,479,546 | 2,479,407 | 139 | 198,363 |
| 병영식당 | 2,870,708 | 217,134 | 2,306,154 | 1,083,938 | 1,222,216 | 347,420 |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제대별로 감리를 위해 대보수 감독관 등의 명칭으로 2~3명을 공무직으로 고용하여 일부 임시숙영시설의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감리비는 이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1,631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3,068 | 1,631 | 1,631 | 1,631 | - | - |
| 합 계 | 3,068 | 1,631 | 1,631 | 1,631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84조 1,07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9,352억원(14.9%) 증가함.

---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724,474 | 720,839 | 731,725 | 841,078 | 109,352 | 14.9 |
| 합 계 | 724,474 | 720,839 | 731,725 | 841,078 | 109,352 | 14.9 |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2,955 | 1,434 | 1,434 | 1,434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3 | 197 | 197 | 197 | - | - |
| 합계 | 3,068 | 1,631 | 1,631 | 1,631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9,352억원(14.9%) 증가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697,588 | 697,209 | 703,818 | 806,806 | 102,988 | 14.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885 | 23,631 | 27,907 | 34,272 | 6,364 | 22.8 |
| 합계 | 724,474 | 720,839 | 731,725 | 841,078 | 109,352 | 14.9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0조 9,352억 1,900만원임.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0조 9,513억 1,1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0조 2,966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6,000억원을 증액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추모행사 운영을 위해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에 15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 정비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에 525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16,881 | 8,578 | 8,578 | 10,307,389 | 10,298,811 | 803.4 |
| 1 | 민생회복 소비쿠폰 | - | - | - | 10,296,667 | 10,296,667 | 순증 |
| 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 16,787 | 8,033 | 8,033 | 8,633 | 600 | 7.5 |
| 3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 | 94 | 545 | 545 | 2,089 | 1,544 | 283.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1,169,667 | 874,154 | 1,291,832 | 1,944,332 | 652,500 | 50.5 |
| 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300,000 | - | 400,000 | 1,000,000 | 600,000 | 47.0 |
| 5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 869,667 | 874,154 | 891,832 | 944,332 | 52,500 | 5.9 |
| 합계 | | 1,186,548 | 882,732 | 1,300,410 | 12,251,721 | 10,951,311 | 842.1 |

주) 총계 기준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160억 9,200만원임.

총 감액규모는 160억 9,200만원으로, 그 구성내역은 사업비 감액 △160억 9,200만원(100.0%)임.

사업비는 실집행 부진·이월예산 과다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사업에서 △160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0%) | | 71,544 | 60,655 | 60655 | 44,563 | △16,092 | △26.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71,544 | 60,655 | 60655 | 44,563 | △16,092 | △26.5 |
| 1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 71,544 | 60,655 | 60655 | 44,563 | △16,092 | △26.5 |
| 합계 | | 71,544 | 60,655 | 60655 | 44,563 | △16,092 | △26.5 |

주) 총계 기준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진작·경영안정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필요가 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수도권 일반자치단체에는 5%,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에는 8%의 할인율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차등을 두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국비 차등지원의 근거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민생회복 소비쿠폰(신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철저 등

### 가. 개 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10조 2,966억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

[2025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민생회복 소비쿠폰 | - | - | - | 10,296,667 | 10,296,667 | 순증 |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위한 지원금 10조 2,417억원, 발행비용 및 인건비·홍보비 등 지원을 위한 446억 2,200만원 등이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지원될 예정임.

그 외 전담 콜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210-15목) 9억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14억 9,000만원 및 자산취득비(430-01목) 75억 7,9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2) 세부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350-301)(지방재정경제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세출(목-세목) | 금액 | 산출내역 |
|---|---|---|
| 민생회복 소비쿠폰<br>(330-01목) | 10,241,700 | ・{①(511.7만명×15만원)+②(4,295.9만명×25만원)+③(37.9만명×40만원)+<br>④(271.4만명×50만원)×78.18%}+{⑤(411.4만명×2만원)x80%} |
| 발행비용 및<br>인건비・홍보비 등 지원<br>(330-01목) | 44,622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쿠폰 총 금액의 20%)의 1% +<br>(선불카드) 5,117만명×10%×1장당 1,300원×78.18% : 25,699<br>・전국 3,491개 읍면동 지원금 업무보조 인력: 17,256<br>・PC・노트북 등 장비 임차료 5주분: 784<br>・226개 시군구 홍보×5백만원×78.13% : 883 |
| 일반수용비<br>(210-01목) | 100 | ・TF 및 사업운영: 50<br>・긴급재난지원금 홍보: 50 |
| 관리용역비<br>(210-15목) | 900 | ・전담 콜센터 운영비 |
| 민간위탁사업비<br>(320-02목) | 1,490 | ・민생회복소비쿠폰 시스템 구축 |
| 국내여비<br>(220-01목) | 16 |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점검 출동여비: 10회×1.6백만원 |
| 사업추진비<br>(240-01목) | 60 | ・범정부 TF 및 사업운영점검 추진: 120회×0.5백만원 |
| 연구용역비<br>(260-01목) | 200 | ・긴급재난지원금 성과분석 연구용역: 200백만원 |
| 자산취득비<br>(430-01목) | 7,579 | ・지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HW/SW 도입비 |
| **합계** | 10,296,667 | - |

자료: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이라는 측면에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하 ‘2020년 재난지원금’이라고 함)・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2021년 국민지원금’이라고 함) 등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원대상・지원단가・지급방식・지급수단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

지원금 기준[3] 예산규모를 보면, 2020년 재난지원금 예산은 14.2조원(국비 12.4조원)으로 편성되었고, 2021년 국민지원금 예산은 10.8조원(국비 8.5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은 13.1조원(국비 10.3조원)으로 편성되었음.

지원대상 및 지급방식을 보면, 2020년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구별로 차등지원(40~100만원)되었고, 2021년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가구구성원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개인별로 균등(25만원) 지원되었으며,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개인별로 차등지원(15~52만원)될 예정임.

3) 발행비용 등 운영비 제외

지원단가를 보면 2020년 재난지원금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되었으나, 2021년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가구구성원 개인에게 균등지급되었고,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 외 기타 기준(한부모 가정・인구감소지역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될 예정임.

지급수단을 보면, 2020년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선불식・모바일)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으로도 지급되었으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시에는 현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선불식・모바일)으로 지급될 예정임.

[재난지원금(2020년)·국민지원금(2021년)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2025년) 개요]

| 구분 | 재난지원금 (2020년) | 국민지원금 (2021년) |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년) |
|---|---|---|---|
| 지원대상 | 전 국민<br>(2,171만 가구) |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br>(1,856만 가구) | 전 국민<br>(5,116.9만명) |
| 예산규모주) | 14.3조원<br>(국비 12.4조원 + 지방비 1.9조원) | 10.8조원<br>(국비 8.5조원 + 지방비 2.3조원) | 13.1조원<br>(국비 10.3조원 + 지방비 2.8조원) |
| 지급단위 | 가구별 지급<br>※ 세대주에게 지급 | 개인별 지급<br>※ 성인은 당사자/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 | 개인별 지급<br>※ 상세한 지급방식은 미정 |
| 지원단가 |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지급**<br>-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br>-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296만명) 등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br>- 상위 10% 15만원, 10%~차상위 25만원, 한부모・차상위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br>※ 인구감소지역 2만원 추가지급(부산・대구 제외) |
| 지급수단 등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br>**※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신청 없이 현금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

주) 발행비용 등 지원금 외 비용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나. 검토의견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진작·경영안정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필요가 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4] 이는 전 국민의 소비여력을 보강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실제로, 유사사업인 2020년 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은 소비진작·경영안정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성이 분석된 바 있어,[5] 유사한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6]

[2020년 재난지원금·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사례(한국개발연구원)]

| 구분 | 주요내용 |
|---|---|
| 2020년 재난지원금 | **(소비진작 효과)**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5.11.~6.21.) 전년동기 대비 약 7.3% 증가<br>**(효과크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코로나 확산 둔화 효과 등 배제)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 ~ 36.1% 수준<br>**(경영안정 효과)** 체감경기지표(BSI 등)의 점진적 개선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 기여 |
| 2021년 국민지원금 | **(소비진작 효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021년 9월 카드 매출액은 전월 대비 약 2조 5,789억원 증가, 2019년 대비 추산된 증가규모는 약 2조 8,651억원 수준<br>**(효과크기)**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후 3개월간(2021년 9월~12월) 지급효과가 지급금액 대비 약 19.2~36.8%로 추정.<br>**(경영안정 효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직후 소비지출전망(CSI) 및 대면업종 위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상승함. 또한, 대부분의업종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의 체감경기 및 향후 전망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재구성

이상의 소비진작·경영안정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속한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6.19.), 「행정안전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대책 본격 추진」

5) 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2020.12.),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2022.6.)

6) 다만, 대조군 확보 없이 수행된 2020년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정방식·측정지표 및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편차가 확인되고 있으며, 추정된 효과에 코로나19 추세 변화에 따른 이연·보복소비,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 및 타부처 지원금의 영향 등이 중첩되어 있음. 또한, 2021년 국민지원금은 선별지원 특성상 대조군이 존재하여 효과추정이 비교적 엄밀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가구소득 기준(하위 80%) 선별지원을 수행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내용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분석결과는 신중히 수용되어야 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예산확정과 실제 지급 사이의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과거 유사사업들과는 사업내용에서 차이가 있음.[7] 유사사업인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시 예산확정일(추경안 본회의 의결일)과 최초 신청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만 45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가구소득기준(하위 80%)으로 선별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구단위 소득산정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임.[8]

[2020년 재난지원금·2021년 국민지원금 예산확정일·최초 신청일 현황]

| 구분 | 지급방식 | 예산확정일 (A) | 최초 온라인 지급 신청일 (B) | 시차 (B-A) |
|---|---|---|---|---|
| 2020년 재난지원금 | 전국민 | 2020.4.30. | 2020.5.11.[1] | 만11일 |
| 2021년 국민지원금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지원 | 2021.7.24. | 2021.9.6.[2] | 만45일 |
|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 개인소득 기준 상위 10% 내/외 차등지원 | - | - | - |

주 1) 신용·체크카드의 온라인 지급 신청일 기준
2) 신용·체크카드 및 지류를 제외한 지역상품권의 온라인 지급 신청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등 재구성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소득 기준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하여 차등지급이 수행될 예정이므로, 개인별 소득기준 확정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9]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및 인플레이션 발생 측면에서의 우려도 제기[10][11]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7) 2020년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수행하여, 개인별로는 균등지원이 수행되었고, 2021년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대해서만 선별지원을 수행하였음.

8) 또한, 2021년 국민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사용기한의 설정에도 지급된 지원금이 사용되는 데 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급 개시 후 약 두달 간(9.6.~10.31.) 현금 및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8조 3,656억원(90.7%)이 사용되었음.

9) 행정안전부는 소득산정기간을 고려하여 1차·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나, 지급일정은 추후 확정 예정임.

10) 동아일보(2025.6.23.), KDI “코로나 지원금 30% 소비창출”… 소비쿠폰 ‘내수 불씨’ 전망
(출처: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50623030221001)

11) 파이낸셜뉴스(2025.6.25.),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0.32%p↑...상임위 공백에 속도 변수
(출처: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501.20250625145944001)

**둘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자산상태를 미반영하는 데 따른 차등지급의 형평성 논란 및 지급시차 발생에 따른 효과성 분산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이, 상위 10% 미만에서 차상위계층 기준 대비 소득이 높은 국민에게는 25만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임.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국민에게는 40만원이,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부산·대구 소재 자치구들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별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단위: 만명)

| 구분 | 지원인원[1] | 지원금액 | 기준 |
|---|---|---|---|
| 상위10% | 511.7 | 15만원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
| 상위10%~차상위 | 4,295.9 | 25만원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 한부모·차상위 | 37.9 | 40만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 72% 이하<br>(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 기초수급자 | 271.4 | 5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중위소득 대비 32%~50% 이하 + 부양의무자 조건 충족 |
| 인구감소지역[2] | 411.4 | +2만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
| 합계 | 5,116.9 | - | - |

주 1) 2025년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등 5개구(58.8만명)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추경안 기준 소득기준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예정인 바, 현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지표만으로 산정[12]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하여 산정[13]되므로 소득 여건의 동일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4] 가령,

1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 보수외소득월액×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율

1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건강보험료율)+{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14) 가령, 직장가입자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배기량 1,600cc 이상의 자동차나 전·월세로 임차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음.

직장인가입자가 고액자산을 보유하고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음.

가구소득 하위 80%가 지급대상이었던 2021년 국민지원금에서는 보유 자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액자산가구[15]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액자산가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16]

다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액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우선 지급되고, 2차로 지급시 소득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게 10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임. 금액 기준, 전체 13.2조원 중 8.5조원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4.6조원은 시차를 두고 지급될 예정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계획(안)]

| 구분 | 소득상위10% | 소득상위10%<br>~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br>한부모가정 | 기초수급자 | 인구<br>감소지역주) | 지원규모<br>(국비) |
|---|---|---|---|---|---|---|
| 1차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2만원 추가 | 8.5조원<br>(6.6조원) |
| 2차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4.6조원<br>(3.6조원) |
| 합계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2만원 추가 | 13.2조원<br>(10.3조원) |

주)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제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시 1차 2만원 추가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기준을 산정함에 따라,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17]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산출하는 데만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18] 직장인 가입자의 자산상태 반영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있을 예정이어서 1차 지급과 2차 지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5) 가구원의 전년도(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범정부 T/F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17) 지급대상 중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및 기초수급자는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기확정 가능

18) 중앙일보(2025.6.22.). "내가 왜 상위 10%" ...코로나 이어 민생지원금도 '선별 논란'
(출처: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250622174723002)

행정안전부는 1·2차 지급일정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분할지급되는 경우 시차로 인해 소비진작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하여, 소득기준 산정 작업을 신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거 사용기한·지역 및 업종 등의 제한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시 다양한 지급수단이 고려되었고 사용기한(4개월 이내), 지역(관할 지자체) 및 일부 업종에 대해 사용제한이 부가되었음.

[2020년 재난지원금·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수단별 사용제한 내역]

| 구분 | 지급수단 | 사용 기한 | 지역 제한 | 업종 등 제한 |
|---|---|---|---|---|
| 2020년 재난지원금 | 신용·체크카드<br>선불카드 | 4개월 이내 | 거주 지역이 포함된<br>시·도 전체 | 백화점, 대형마트,<br>유흥업종 제한[2] |
| | 지역사랑상품권 | 5년[1]<br>(3개월 권장) | 거주 지역이 포함된<br>시·도 전체 | 백화점, 대형마트,<br>유흥업종 제한 |
| | 현금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2021년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br>선불카드 | 4개월 이내 | 거주 지역이 포함된<br>시·도 전체 | 「지역사랑상품권법」상<br>사행산업, 불법행위산업<br>및 非중소기업 등[3] |
| | 지역사랑상품권 | 5년<br>(3개월 권장) | 거주 지역이 포함된<br>시·도 전체 | 「지역사랑상품권법」상<br>사행산업, 불법행위산업<br>및 非중소기업 등 |
| | 현금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신용·체크카드<br>선불카드 | 미정 | 미정 | 미정 |
| | 지역사랑상품권 | 미정 | 미정 | 미정 |
| | 현금 | 미정 | 미정 | 미정 |

주 1)「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으로 규정됨
2) 당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기준
3) 기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 포함
자료:「2020 행정안전백서」,「2021 행정안전백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한, 업종 등 제한기준이 달랐고, 현금은 사실상 제한 없이 지급되었음. 그 결과 지급수단별로 사용제한 내역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용이 제한되었음에도 사용액의 36.5%가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카드가맹점에서 사용되었음.

이에 2021년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모든 지급수단에 「지역사랑상품권법」상 가맹점 등록제한 규정[19]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음.[20] 이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조례 등에 따른 가맹점 제한 규정보다도 엄격한 것이어서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21]

따라서, 2021년 국민지원금에서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준으로 사용제한을 설정할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제한 설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경안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예정이나, 사용 기한·지역 제한 및 업종 등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향후 범부처 TF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나 과거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사용처 제한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20)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2023.2.), 11쪽

21) 실제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하락하기도 하였음(2022년 실집행액 7,854억 9,500만원(실집행률 98.5%) → 2023년 실집행액 2,851억 2,900만원(실집행률 80.5%)).

**넷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지방비 매칭 형태로 추진되는 바, 자치단체별 재정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비와 매칭되는 형태로 지원되며, 국고보조율은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에 대해서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보조율을 70%로 하향조정하고 있음.[22)]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별 지원단가]

(단위: 만명, 억원, %)

| 구분 | 지원인원[1)] | 지원금액 | 총소요 (A) | 국비 (B) | 국비 비율[3)] (B/A) |
|---|---|---|---|---|---|
| 상위10% | 511.7 | 15만원 | 7,675 | 6,001 | 78.2 |
| 상위10%~차상위 | 4,295.9 | 25만원 | 107,398 | 83,964 | 78.2 |
| 한부모・차상위 | 37.9 | 40만원 | 1,516 | 1,185 | 78.2 |
| 기초수급자 | 271.4 | 50만원 | 13,570 | 10,609 | 78.2 |
| 인구감소지역[2)] | 411.4 | +2만원 | 823 | 658 | 80.0 |
| 합계 | 5,116.9 | - | 130,982 | 102,417 | 78.2 |

주 1) 2025년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등 5개구(58.8만명) 제외
3) 서울시 70%, 나머지 자치단체 8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차등지원될 예정이므로, 이들 계층이 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추가지급 수요로 가중되는 자치단체별 지방비 부담액이 재정력에 비례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음.

가령, 2023년 기준 세종은 추가지급대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3.2% 수준이지만 재정자립도는 47.6%로 평균(40.1%)을 상회하며, 전북은 추가지급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10.9% 수준이나 재정자립도는 23.0%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에도 양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80%)이 적용될 예정임.

22)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지원금액 합계는 13조 982억원이며, 이중 21.8%에 해당하는 2조 8,565억원이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함.

[시·도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지급 수요 및 재정력 비교]

(단위: 명, %, 억원)

| 시도 | 추가지급 수요[1] | | | 재정력[2] | |
|---|---|---|---|---|---|
| | 인구수 (A) | 추가지급대상자수 (B) | 비중 (B/A) | 예산규모 | 재정자립도[3] |
| 전국 | 51,325,329 | 3,561,461 | 6.9 | 5,074,008 | 40.1 |
| 서울 | 9,386,034 | 573,204 | 6.1 | 819,232 | 64.1 |
| 부산 | 3,293,362 | 310,881 | 9.4 | 278,643 | 43.0 |
| 대구 | 2,374,960 | 211,137 | 8.9 | 185,420 | 42.5 |
| 인천 | 2,997,410 | 239,301 | 8.0 | 244,429 | 49.1 |
| 광주 | 1,419,237 | 133,477 | 9.4 | 117,999 | 37.3 |
| 대전 | 1,442,216 | 109,002 | 7.6 | 117,991 | 40.1 |
| 울산 | 1,103,661 | 62,415 | 5.7 | 95,172 | 44.2 |
| 세종 | 386,525 | 12,310 | 3.2 | 27,069 | 47.6 |
| 경기 | 13,630,821 | 668,406 | 4.9 | 1,008,752 | 53.1 |
| 강원 | 1,527,807 | 123,365 | 8.1 | 248,895 | 22.3 |
| 충북 | 1,593,469 | 114,110 | 7.2 | 211,728 | 29.0 |
| 충남 | 2,130,119 | 132,436 | 6.2 | 283,752 | 31.4 |
| 전북 | 1,754,757 | 191,997 | 10.9 | 259,813 | 23.0 |
| 전남 | 1,804,217 | 161,316 | 8.9 | 325,022 | 22.1 |
| 경북 | 2,554,324 | 215,787 | 8.4 | 401,327 | 23.1 |
| 경남 | 3,251,158 | 251,786 | 7.7 | 362,834 | 30.9 |
| 제주 | 675,252 | 50,531 | 7.5 | 85,931 | 34.1 |

주 1) 인구 수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원 및 기초수급자 수 합계는 2023년 12월 기준
2) 2023년 세출결산(순계) 기준
3) 2014년 세입과목 개편(잉여금·이월금·전입금·예탁금·예수금 세외수입에서 제외) 후 기준
자료: KOSIS, 지방재정365

이처럼 재정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 외 모든 지역에 같은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될 경우 인구 수에 비해 추가지급대상자의 수가 많은데 재정력은 약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지원수준을 다층화하여 재정부담이 재정력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세출증액>

##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수도권·비수도권 국비 차등지원의 타당성 검토

### 가. 개 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00억원(150.0%) 증액된 1조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300,000 | - | 400,000 | 1,000,000 | 600,000 | 150.0 |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제2회 추경안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제1회 추경·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비교]

| 2025년도 제1회 추경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000억원 |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경상보조 399,600백만원<br>❍ 현장 방문 및 점검: 10백만원<br>* 125천원 × 4명 × 20회<br>❍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10백만원<br>❍ 사업추진비: 13백만원<br>* 30,000원 × 433명 + 10천원<br>❍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연구용역: 300백만원 | 6,000억원 |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경상보조<br>: 600,000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23) 세부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지역경제지원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은 2020년에 최초로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발행 규모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2020년 본예산 최초 지원 이후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국비지원 현황]

(단위: 개, %)

| 연도 | 지자체수 | 총 발행규모 (A) | 정부지원액 | |
|---|---|---|---|---|
| | | | 국비지원액(B)[1] | 국비지원액 비중(B/A) |
| 2020 | 185 | 13조 3,216억원 | 6,689억원 | 5.0 |
| 2021 | 187 | 23조 5,871억원 | 1조 2,522억원 | 5.3 |
| 2022 | 188 | 27조 2,196억원 | 7,050억원 | 2.6 |
| 2023 | 190 | 20조 9,418억원 | 3,522억원 | 1.7 |
| 2024 | 190 | 17조 5,769억원 | 2,998억원 | 1.7 |
| 2025 | 190 | 미집계 | 3,996억원[2] | 미집계 |
| | | 8조원[3] | 6,000억원 | 7.5 |

주 1) 전체 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만 기재
2) 제2회 추경안 기준
3) 제2회 추경안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발행규모의 추정치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까지는 지원기준이 동일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원기준을 다각화하여 정책사업 할인비용·재난대응할인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 추가지원을 수행하였음. 다만, 2025년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일반 할인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임.

[2024·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기준]

| 구분 | 자치단체 유형 | 2024년 (3,000억원) | 2025년 제1회 추경 (4,000억원) | 2025년 제2회 추경안 (6,000억원) |
|---|---|---|---|---|
| 일반할인비용 지원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미지원 | 미지원 | 2% |
| | 일반자치단체 | 2% | 2% | 수도권: 5%, 비수도권: 8% |
| | 인구감소지역 | 5% | 5% | 10% |
| 정책사업 할인비용 지원 | 착한가격업소 상품권 할인 지역 | 3% | - | - |
| | 지역문제해결 관련 가맹점 할인지역 | 2% | - | - |
| 재난대응 할인비용 지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최대 10% | 최대 10% | - |

자료:「202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은 수도권 일반자치단체[24]에 5%,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에 8%의 국비 지원율을 설정하여 차등을 두었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재정력·인구감소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추경안의 지원기준을 보면, 2025년 제1회 추경에서는 같은 할인율(2%)이 지원되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반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5%와 8%의 할인율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국비지원 기준]

| 구분 | 자치단체 유형 | 2025년 제1회 추경 (4,000억원) | 2025년 제2회 추경안 (6,000억원) |
|---|---|---|---|
| 일반할인비용 지원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미지원 | 2% |
| | 일반자치단체 | 2% | 수도권: 5%, 비수도권: 8% |
| | 인구감소지역 | 5% | 10% |
| 재난대응 할인비용 지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최대 10% | - |

주) 자치단체별 할인율의 일부를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25]된 것으로, 서울과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수도권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국비차등 지원의 근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반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력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위기 수준에 따른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취지상 차등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6]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는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지원기준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4)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및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제외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26)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재정력이 양호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이 적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위기 수준이 높은 지역이 지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국비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소방청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4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43 | 46 | 46 | 46 | - | - |
| 합 계 | 43 | 46 | 46 | 46 | - | - |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3,45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원(1.9%) 증가함.

---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3,404 | 3,311 | 3,390 | 3,456 | 66 | 1.9 |
| 합 계 | 3,404 | 3,311 | 3,390 | 3,456 | 66 | 1.9 |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43 | 46 | 46 | 46 | - | - |
| 합계 | 43 | 46 | 46 | 46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원(1.9%) 증가함.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404 | 3,311 | 3,390 | 3,456 | 66 | 1.9 |
| 합계 | 3,404 | 3,311 | 3,390 | 3,456 | 66 | 1.9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이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66억 4,900만원임.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66억 4,9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개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 환경에 따른 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년의 공사 기간(2022~2025년)을 거쳐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1,335억원 → 1,401억원)에 따른 2025년 마무리 공사비 반영으로 민생경기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66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71,298 | 62,418 | 62,418 | 69,067 | 6,649 | 10.7 |
| 1 | 국립소방병원 건립 | 71,298 | 62,418 | 62,418 | 69,067 | 6,649 | 10.7 |

주) 총계 기준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국립소방병원 건립: 차질없는 개원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노력 필요

### 가. 개 요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 전담기관을 충청북도 음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 4,900만원(10.7%) 증액된 69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5년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국립소방병원 | 71,298 | 62,418 | 62,418 | 69,067 | 6,649 | 10.7 |

현재 소방병원은 302개 병상, 19개 진료과목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5년 7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세부사업: 국립소방병원건립(1131-305)(기획조정관)

[2025년도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및 공사장]

| 조감도 | 공사장 전경 |
|---|---|
|  |  |

자료: 소방청

증액된 66억 4,900만원은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마무리 공사비로, 비탈면 보강,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설계변경 사항 등을 포함한 금액임.

[2024~2025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총사업비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변경 | | | | | |
|---|---|---|---|---|---|---|
| | 조정 | 조정금액 | | | 조정사유 | 주요내용 |
| | | 현행 | 순증 | 조정후 | | |
| 2024 (8월) | 자율 4차 | 133,477 | 1,004 | 134,481 | 비탈면 보강 | · 비탈면 보강 : 1,004백만원 |
| 2024 (12월) | 자율 5차 | 134,481 | 1,397 | 135,878 | 물가 변동 등 | · 안전시설 보강(시스템비계) : 611백만원<br>· 물가변동 등 : 762백만원<br>· 관급자재비 변동 : 24백만원 |
| 2025 (3월) | 자율 6차 | 135,878 | 893 | 136,771 | 관급자재비 변경, 안전시설 보강 | · 관급자재비 변경 : 84백만원<br>· 안전시설 보강(시스템비계) : 776백만원 |
| 2025 (4월) | 협의 2차 | 136,771 | 3,355 | 140,126 | 설계변경 등 | · 민원반영(의료환경) : 106백만원<br>· 환경개선(자동세륜기) : 50백만원<br>· 안전시설 보강(잭서포트) : 25백만원<br>· 단순설계 변경 (가설계단, 소방공사 등) : 2,347백만원<br>· 시설부대비: 6백만원 |

자료: 소방청

## 나. 검토의견

**소방청은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원 후 차질없는 진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의 국립소방병원 개원일정에 따르면 2025년 9월 인력배치 이후 2026년 1월에 시범진료가 예정되어 있음.

[2025~2026년 국립소방병원 개원일정]

<table>
<tr><th colspan="5">2025년</th><th colspan="5">2026년</th></tr>
<tr><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2월</th><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r>
<tr><td>공사<br>준공</td><td>건축물<br>사용승인</td><td>제규정<br>시행</td><td>인력<br>배치<br>(1단계)</td><td>의료기관<br>개설</td><td colspan="2">일부 진료</td><td>인력<br>배치<br>(2단계)</td><td colspan="2">외래진료</td><td>개원<br>(실제<br>운영)</td></tr>
<tr><td></td><td></td><td></td><td>모의<br>진료</td><td>허가<br>취득</td><td colspan="2">시범진료<br>준비</td><td colspan="3">시범진료</td><td>개원</td></tr>
</table>

자료: 소방청

계획대로 시범진료 및 병원의 실제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방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충원 계획」에 따르면, 2025년 8명, 2026년에 41명의 의료진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충원 계획(진료과목별)]

(단위: 명)

| 연번 | 진료과목 | 정원 | 현원(충원계획) | |
|---|---|---|---|---|
| | | | 2025년 9월 | 2026년 3월 |
| 1 | 소화기내과 | 3 | 1 | 2 |
| 2 | 호흡기내과 | 1 | - | 1 |
| 3 | 순환기내과 | 3 | - | 3 |
| 4 | 내분비내과 | 1 | - | 1 |
| 5 | 감염내과 | 1 | - | 1 |
| 6 | 신장내과 | 1 | - | 1 |
| 7 | 외과 | 4 | 1 | 3 |
| 8 | 정형외과 | 3 | - | 3 |
| 9 | 신경외과 | 2 | - | 2 |
| 10 | 성형외과 | 2 | - | 2 |
| 11 | 신경과 | 3 | - | 3 |

(단위: 명)

| 연번 | 진료과목 | 정원 | 현원(충원계획) | |
|---|---|---|---|---|
| | | | 2025년 9월 | 2026년 3월 |
| 12 | 정신건강의학과 | 2 | - | 2 |
| 13 | 산부인과 | 1 | 1 | - |
| 14 | 소아청소년과 | 2 | 1 | 1 |
| 15 | 이비인후과 | 1 | - | 1 |
| 16 | 재활의학과 | 2 | - | 2 |
| 17 | 가정의학과 | 1 | - | 1 |
| 18 | 응급의학과 | 4 | - | 4 |
| 19 | 마취통증의학과 | 3 | 1 | 2 |
| 20 | 영상의학과 | 4 | 1 | 3 |
| 21 | 진단검사의학과 | 1 | 1 | - |
| 22 | 치과 | - | - | - |
| 23 | 직업환경의학과 | 1 | - | 1 |
| 24 | 입원의학과 | 2 | - | 2 |
| 25 | 병원장(진료과 유동적) | 1 | 1 | - |
| 합 계 | | 48 | 2,032 | 2,067 |

주1) 의사 정원은 「국립소방병원 의료·운영계획 연구용역」에 근거하며, 2026년 충원 인력은 2026년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2025년 충원은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진료과 선발을 우선으로 함
자료: 소방청

2025년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국립소방병원 의사 인건비 예산의 경우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의사 1인당 약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3)]

소방청은 임금 외에도 충북 음성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주여건 제공(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기숙사 건립 검토)을 계획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또는 기업체 등의 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3) 이와 같은 인건비 수준은 서울대병원에서 다른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의 연봉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유사 병원인 경찰병원(약 6,000~7,000만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보임.

〈 2025년 서울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한 의사의 연봉 현황 〉

| 구분 | 파견지 | 진료과 | 연봉 | 교통여건 |
|---|---|---|---|---|
| 서울대 병원 | 인천적십자 | 응급의학과 | 3.5억원 | 수도권 |
| | 서산의료원 | 순환기내과 | 4.0억원 | 수도권 및 광역시외 |
| | | 신경과 | 3.8억원 | |
| | | 가정의학과 | 3.1억원 | |

자료: 소방청

추가로 서울대병원에서 파견하는 임상교수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상교수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진료 교수 신분으로 파견하거나 서울대병원 의사를 순환 파견하도록 서울대병원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충분한 의료인 인건비 예산이 미확보될 경우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진료과목별로 운영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소방청은 향후 예정대로 병원이 개원하여 소방관들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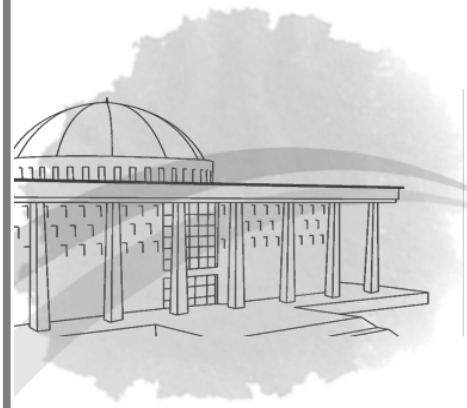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4) 특히 화상 환자에 대해 소방청은 급성기 화상환자는 진료과 안정화 이후 치료가 가능하므로 개원초기에는 중증 및 급성기 화상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화상전문병원 등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하였고, 화상외과 전문의와 화상분야 경력을 지닌 간호직 등의 채용을 추진하며 화상진료 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화상전문병원과의 위탁교육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화상치료 단계별 진료과 >

| 구분 | 치료단계 | | |
|---|---|---|---|
| | 급성기 | 아급성기 | 만성기 |
| 주진료과 | (화상)외과 | (화상)외과, 재활의학과 |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

자료: 소방청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4조 10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2억원(0.6%) 증가함.

예산은 1,323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고, 기금은 3조 8,78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52억원(0.7%) 증가함.[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989 | 1,323 | 1,323 | 1,323 | - | - |
| 기 금 | 38,858 | 38,532 | 38,532 | 38,784 | 252 | 0.7 |
| 합 계 | 39,847 | 39,855 | 39,855 | 40,107 | 252 | 0.6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7조 2,52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93억원(1.2%) 증가함.

예산은 3조 9,073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69억원(2.3%) 증가하고, 기금은 3조 3,45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4억원(0.1%) 증가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36,960 | 37,718 | 38,204 | 39,073 | 869 | 2.3 |
| 기 금 | 32,584 | 32,954 | 33,430 | 33,454 | 24 | 0.1 |
| 합 계 | 69,545 | 70,672 | 71,634 | 72,527 | 893 | 1.2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768 | 1,074 | 1,074 | 1,074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 1,180 | 1,201 | 1,201 | 1,201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98 | 213 | 213 | 213 | - | - |
| 합계 | 2,146 | 2,488 | 2,488 | 2,488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69억원(2.2%) 증가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3,472 | 32,932 | 33,418 | 34,287 | 869 | 2.6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 1,180 | 1,201 | 1,201 | 1,201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868 | 5,061 | 5,061 | 5,061 | - | - |
| 합계 | 38,520 | 39,194 | 39,680 | 40,549 | 869 | 2.2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5조 5,09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62억원(0.5%)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3조 382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0억원(0.03%) 증가함.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776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00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언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08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조 7,142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영화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1,189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52억원(26.9%) 증가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국민체육진흥기금 | 34,051 | 30,372 | 30,372 | 30,382 | 10 | 0.03 |
| 문화예술진흥기금 | 5,798 | 5,776 | 5,776 | 5,776 | - | - |
| 지역신문발전기금 | 98 | 100 | 100 | 100 | - | - |
| 언론진흥기금 | 480 | 508 | 508 | 508 |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6,222 | 17,142 | 17,142 | 17,142 | - | - |
| 영화발전기금 | 1,378 | 937 | 937 | 1,189 | 252 | 26.9 |
| 합계 | 58,027 | 54,835 | 54,835 | 55,097 | 262 | 0.5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131억 2500만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860억 6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6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1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산업 투자재원 확충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영화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에 850억원을 증액하고, K-콘텐츠 기업의 인공지능(AI)기술 기반 글로벌기업 도약을 위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신기술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민 여행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에 236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260억원을 증액하였음. 이 외에도 공연·전시·영화 관람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에 100억원, ‘영화정책 지원’ 사업에 27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370,131 | 332,150 | 348,650 | 458,650 | 115,000 | 33.0 |
| 1 | K-콘텐츠 펀드 출자 | 340,000 | 295,000 | 295,000 | 380,000 | 85,000 | 28.8 |
| 2 | 신기술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 30,131 | 37,150 | 53,650 | 78,650 | 30,000 (감액 별도) | 55.9 |
| 국민체육진흥기금 | | 720,344 | 731,282 | 731,282 | 841,609 | 110,327 | 15.1 |
| 3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20,344 | 131,282 | 131,282 | 157,282 | 26,000 | 19.8 |
| 4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600,000* | *600,000* | *600,000* | *684,327* | *84,327* | *14.1* |
| 문화예술진흥기금 | | 274,545 | 280,581 | 280,581 | 290,581 | 10,000 | 3.6 |
| 5 | 문화예술향유지원 | 274,545 | 280,581 | 280,581 | 290,581 | 10,000 | 3.6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4개(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임.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관광진흥개발기금 | | 86,171 | 42,780 | 81,860 | 105,439 | 23,579 | 28.8 |
| 6 | 국내관광 역량강화 | 86,171 | 42,780 | 81,860 | 105,439 | 23,579 | 28.8 |
| 영화발전기금 | | 17,454 | 16,496 | 16,496 | 43,596 | 27,100 | 164.3 |
| 7 | 영화정책 지원 | 17,454 | 16,496 | 16,496 | 43,596 | 27,100 | 164.3 |
| 합계 | | 1,468,645 | 1,403,289 | 1,458,869 | 1,739,875 | 286,006 | 19.6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1,728억 8,1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4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4개임.

총 감액규모는 1,728억 8,100만원(총계 기준)으로, 그 구성내역은 사업비 감액 △1,728억 8,100만원(100.0%)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사일정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서 △50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127억원,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서 △104억원, 스포츠기업의 경영악화,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에서 △843억원 등 8개 사업에서 △1,728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1,471,695 | 1,320,979 | 1,289,799 | 1,146,918 | △172,881 | △13.4 |
| 일반회계 | | 103,334 | 134,894 | 151,394 | 153,338 | △28,056 | △18.5 |
| 1 | 신기술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 30,131 | 37,150 | 53,650 | 78,650 | △5,000 (증액별도) | △9.3 |
| 2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43,179 | 60,020 | 60,020 | 47,351 | △12,669 | △21.1 |
| 3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 30,024 | 37,724 | 37,724 | 27,337 | △10,387 | △27.5 |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국민체육진흥기금 | 907,351 | 623,587 | 614,987 | 505,672 | △109,315 | △17.8 |
| 4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 163,730 | 248,057 | 248,057 | 163,730 | △84,327 | △34.0 |
|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743,621* | *375,530* | *366,930* | *341,942* | *△24,988* | *△6.8* |
| 문화예술진흥기금 | 93,516 | 98,073 | 98,073 | 88,073 | △10,000 | △10.2 |
|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3,516* | *98,073* | *98,073* | *88,073* | *△10,000* | *△10.2* |
| 관광진흥개발기금 | 306,874 | 442,305 | 403,225 | 379,646 | △23,579 | △11.7 |
|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06,874* | *442,305* | *403,225* | *379,646* | *△23,579* | *△19.5* |
| 영화발전기금 | 60,620 | 22,120 | 22,120 | 20,189 | △1,931 | △11.7 |
|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60,620* | *22,120* | *22,120* | *20,189* | *△1,931* | *△19.5* |
| 합계 | 1,471,695 | 1,320,979 | 1,289,799 | 1,146,918 | △172,881 | △13.4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기존 펀드의 결성 상황과 투자여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연 및 미술전시 분야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매출액 증가, 신규소비자 유입 확대 및 내수진작 효과 등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수혜가 일부 소비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사업이 당초 편성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고령층의 제로페이 이용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매칭 지방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기존 펀드 결성 상황 및 투자여력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0억원(29.3%) 증액된 2,650억원이 편성되었음.[3)]

[2024년도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K-콘텐츠 펀드 출자 | 340,000 | 295,000 | 295,000 | 380,000 | 85,000 | 28.8 |
|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 270,000 | 205,000 | 205,000 | 265,000 | 60,000 | 29.3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본예산 2,050억원에 재출자액 95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200억원 규모의 12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1,002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

3) 세부사업: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2025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050억원 | ❍ 일반출자금 : 2,050억원<br>(재출자 950억원 포함 총 3000억원 출자로 5200억원 자펀드 조성)<br>- 수출펀드 900억원 출자<br>- IP 펀드 900억원 출자<br>- 콘텐츠 육성 펀드 150억원 출자<br>- 신기술 펀드 450억원 출자<br>- 문화일반펀드 600억원 출자 | 2,650억원 | ❍ 일반출자금 : 2,650억원<br>(재출자 950억원 포함 총 3600억원 출자로 6,202억원 자펀드 조성)<br>- 수출펀드 900억원 출자<br>- IP 펀드 900억원 출자<br>- 콘텐츠 육성 펀드 150억원 출자<br>- 신기술 펀드 850억원 출자<br>- 문화일반펀드 800억원 출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기존 펀드의 결성 상황과 투자여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는 정부재정으로 결성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로, 모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게 되면, 자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자펀드 결성은 ① 출자사업 공고, ② 운용사 선정, ③ 민간 출자자 유치, ④ 자펀드 결성의 절차로 진행되고, 자펀드가 결성되면 운용사는 펀드 운용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바, 펀드 출자사업의 목적인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자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최근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라 출자가 이루어진 당해연도(1차년도)에 조속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5년 본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인 12개 자펀드 모두 6월말 현재 자펀드 결성 전으로 투자실적이 없음.

[2025년 출자액 3,000억원(본예산 2,050억원 + 재출자액 950억원)의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 연번 | 결성규모 | | | 출자일 (문체부→ 한국벤처투자) |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1차) | 자펀드 운용사 선정일 | 비고 |
|---|---|---|---|---|---|---|---|---|
| | | 정부 출자금 | 민간 | 결성 목표액 | | | | |
| 수출 | 1 | 225 | 150 | 375 | '25.2.25. (615억원), '25.3.20. (1,435억원) | '25.2.3. ~ 2.26. | '25.4.24. | 자펀드 결성 진행 중 |
| | 2 | 225 | 150 | 375 | | | | |
| | 3 | 225 | 150 | 375 | | | | |
| | 4 | 225 | 225 | 450 | | | | |
| IP | 5 | 300 | 200 | 500 | | | | |
| | 6 | 300 | 200 | 500 | | | | |
| | 7 | 300 | 200 | 500 | | | | |
| 신기술 | 8 | 225 | 150 | 375 | | | | |
| | 9 | 225 | 150 | 375 | | | | |
| 문화 일반 | 10 | 300 | 300 | 600 | | | | |
| | 11 | 300 | 300 | 600 | | | | |
| 콘텐츠 육성 | 12 | 150 | 100 | 250 | | | 미선정 | 운용사 심의 탈락으로 재공고 중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아직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2025년 출자액의 결성목표액을 포함하는 경우, 2025년 3월말 기준 문화계정에는 약 1조 3,625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임.

[2021년~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문화계정 결성규모 및 투자여력 현황]

(단위: 억원, %)

| 계정 | 출자연도 | 정부출자 | 민간 | 결성총액 | 투자집행액 | 투자소진율 | 투자여력 |
|---|---|---|---|---|---|---|---|
| 문화 | 2021 | 1,540 | 1,341 | 2,881 | 2,156 | 74.8 | 437 |
| | 2022 | 1,741 | 947 | 2,688 | 1,924 | 71.6 | 495 |
| | 2023 | 2,175 | 2,311 | 4,486 | 1,700 | 37.9 | 2,337 |
| | 2024 | 3,700 | 3,493 | 7,193 | 798 | 11.1 | 5,676 |
| | 2025 | 3,000 | 2,200 | 5,200 | - | - | 4,680 |
| | 계 | 12,156 | 10,292 | 22,448 | 6,578 | 29.3 | 13,625 |

주 1) 2025년 3월말 기준임

2) 2025년은 운용사 선정시 결성목표액으로 현재 조성 진행중임

3) 투자여력은 자펀드 결성규모(2025년은 결성목표액)에서 旣 투자액과 펀드 운용비(운용사 보수 등으로 청산 시 확정되며, 통상 자펀드 결성액의 10% 이상 규모임. 이 표에서는 10%로 가정)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외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4] 및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5]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을 통해 2025년 연내 총 6,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바, 문화계정의 투자여력 1조 3,625억원과 더하면 콘텐츠 분야 펀드의 투자여력은 약 2조원에 달하게 됨.

그럼에도 문화계정에 추가 출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기업 중 45.3%가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연간 자금조달갭이 2.9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 AI 등 신기술로 인해 콘텐츠 산업이 급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설명함. 또한 문화계정의 경우 투자기간 경과율을 고려했을 때 연도별로 오히려 빠르거나 유사한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 입장임.[6]

그러나 최근 5년간 문화계정의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을 살펴보면, 결성총액이 2020~2022년 2,000억원대에서 2023년 4,486억원, 2024년 7,19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20년에 2,118억원이었던 연간 투자집행액은 2024년에도 2,829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계속 2,000억원대에 그치고 있어, 문화계정 내 기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 중인 금액이 202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여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당초 5년간('24~'28) 정부 출자 1,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9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었음. 이에 1차년도인 2024년에는 정부 출자 8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원)과 민간 출자 1,200억원으로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6,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예정이었으나, 모펀드 및 자펀드 조성이 지연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목표결성액을 현실화함에 따라, 현재 2025년 12월 말까지 4,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 한편, 2차년도인 2025년에는 정부 출자 2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1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억원)과 민간 출자 200억원으로 4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자펀드 조성 단계에서 800억원 규모의 민간 출자를 모집하여 총 1,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바, 1~2차년도의 목표결성액을 더하면 2025년 연내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을 통해 총 5,2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

5)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은 외국 금융기관 등 해외 출자자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하여 정부 출자액의 최소 1배수 이상을 주목적 투자에 사용하는 펀드를 조성하려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정부 출자 400억원을 바탕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역외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6) 2021년~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기간 경과율 대비 소진율

(단위: 억원, %)

| 출자 연도 | 정부 출자금 | 민간 | 결성총액 | 투자 집행액 | 투자 소진율 | 투자여력 | 투자기간 경과율(평균) | 경과율 - 소진율 |
|---|---|---|---|---|---|---|---|---|
| 2021 | 1,540 | 1,341 | 2,881 | 2,156 | 74.8 | 437 | 78.6 | 3.8 |
| 2022 | 1,741 | 947 | 2,688 | 1,924 | 71.6 | 495 | 69.3 | -2.3 |
| 2023 | 2,175 | 2,311 | 4,486 | 1,700 | 37.9 | 2,337 | 36.4 | -1.5 |
| 2024 | 3,700 | 3,493 | 7,193 | 798 | 11.1 | 5,676 | 12.3 | 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문화계정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결성규모 | 정부 출자금 | 1,460 | 1,540 | 1,741 | 2,175 | 3,700 |
| | 민간 | 978 | 1,341 | 947 | 2,311 | 3,493 |
| | 결성 총액 | 2,438 | 2,881 | 2,688 | 4,486 | 7,193 |
| 투자집행액 | | 2,118 | 2,450 | 2,287 | 2,559 | 2,829 |

주 1) 결성규모는 해당연도에 선정된 펀드 기준으로 작성
2) 투자집행액은 각 계정별 해당연도에 집행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벤처투자

또한 현재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및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에서 조성 중인 펀드 규모 6,200억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진흥기금】

### <지출증액>

## 2. 문화예술향유지원: 형평성 제고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

### 가. 개 요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00억원(3.6%)이 증액된 2,90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문화예술향유지원 | 275,149 | 274,544 | 280,581 | 280,581 | 290,581 | 10,000 | 3.6 |
| 공연예술쿠폰 지원 | - | - | - | - | 5,100 | 5,100 | 순증 |
| 미술관전시 관람료 지원 | - | - | - | - | 4,900 | 4,900 | 순증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 (1) 공연예술쿠폰 지원 사업 개요

내역사업인 **‘공연예술쿠폰 지원’**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공연시장 소비 촉진의 마중물로서 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 분야 티켓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을 50만장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변경안은 5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할인쿠폰 발행비 50억원 및 운영·홍보비 1억원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경상보조할 계획임.

7) 세부사업: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예술정책관)

[2025년 공연예술쿠폰 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공연예술쿠폰 지원: (당초) 0원 → (변경안) 51억원, 순증<br>- 공연할인쿠폰발행비 50억원 (1만원 × 50만장) + 사업운영・홍보비 1억원<br>* '24공연예술조사 결과 공연 평균티켓가격(4.3만원)의 23%인 쿠폰지원금 1만원 지원으로 공연소비 유도<br>** '24년 동기간 공연예술장르 티켓판매수 531만장(8월 155만, 9월 113만, 10월 133만, 11월 130만)의 9.4% 규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5개 온라인 티켓예매처를 선정하여[8] 7월 중 예매처별 시스템개발[9] 및 사전홍보를 추진한 후 8월부터 11월까지 공연예술쿠폰을 발행할 계획으로, 소비자는 각 티켓예매처에서 공연예약 시 1인 2매 한도로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공연예술쿠폰 지원 사업 개요]

| |
|---|
| ○ 지원 내용: 온라인 티켓예매처에서 공연예약 시 1만원(정액) 지원<br>○ 대상 공연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서커스/마술(대중음악, 대중무용 제외)<br>○ 발행 기간: '25년 8~11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9월), 대한민국은 공연중(10~11월) 등 연계)<br>○ 지원 제한: 5개 온라인 티켓예매처, 예매처별 1인 2매 한도 제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 미술관전시관람료 지원 사업 개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미술관전시관람료 지원'**은 미술향유 기반 확대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전시 할인쿠폰 3천원권을 160만장 발행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변경안은 4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관람료 지원비 48억원 및 운영・홍보비 1억원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경상보조할 계획임.

[2025년 미술관전시관람료 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미술전시관람료 지원: (당초) 0원 → (변경안) 49억원, 순증<br>- 전시관람료 지원 48억원 (3천원 × 160만장) + 사업운영・홍보비 1억원<br>* '24미술시장조사 결과 '23년 기준 유료 전시 평균 관람료는 10,413원으로, 해당 관람료의 1/3수준으로 책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에 5개 온라인 티켓예매처와의 협약 및 사전홍보를 추진한 후 8

8)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 홍보 노력, 시장점유율, 보안환경, 수수료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티켓예매처 5곳을 선정할 계획임.

9)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기 집행 및 개인정보 보안을 고려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없이 예매처별 기존 쿠폰 발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쿠폰 발행 기능을 자체 구현하고(예매처 별도 예산지원 없음),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연계할 예정임.

월부터 11월까지 미술전시 할인쿠폰을 발행할 계획으로, 소비자는 각 티켓예매처에서 전시 예매 시 1인 2매 한도로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미술전시관람료 지원 사업 개요]

| |
|---|
| ○ 지원 내용: 온라인 주요 예매처를 통해 미술전시 할인쿠폰 3천원권 160만장 발급<br>○ 대상 전시: 미술관, 전시공간(화랑, 문예회관, 미디어아트 전용 전시관) 등에서 진행되는 시각예술 전시, 비엔날레·아트페어 등의 전시행사 * 대규모 전시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산업 박람회 등은 제외<br>○ 발행 기간: '25년 8~11월<br>○ 지원 제한: 예매처별 1인당 2매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공연 및 미술전시 분야 할인쿠폰 사업은 2020년~2021년에 추진된 바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시 집행이 저조하여 소비촉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할인쿠폰 사업을 통한 매출액 증가, 신규 소비자 유입 확대 및 내수진작 효과 등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문화·여가활동 수요를 진작시켜 내수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경 및 기금변경을 통해 공연 및 미술전시에 대한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와 높지 않은 수요로 2020년 계획했던 물량을 대부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으로 남은 예산을 이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사용된 쿠폰 물량이 목표 대비 10% 내외에 그쳐 예산의 약 80%가 불용되었음.

[2020~2021년 공연 및 미술전시 할인쿠폰 집행실적]

| 구분 | 발행기간 | 쿠폰 물량(장) | | | 예산(백만원) | | | |
|---|---|---|---|---|---|---|---|---|
| | | 목표 (A) | 집행 (B) | 집행률 (B/A) | 예산액 (a)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불용액 |
| 공연 | '20.10.22.~11.23., '21.5.18.~12.5. | 1,800,000 | 201,780 | 11.2% | 15,880 | 3,054 | 19.2% | 12,826 |
| 미술 | '20.10.22.~11.22., '21.11.1.~12.5. | 1,600,000 | 111,005 | 7.4% | 5,200 | 1,013 | 19.5% | 4,18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직까지 공연 및 미술전시 분야 할인쿠폰 사업의 소비촉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매출액 증가, 신규소비자 유입 확대 및 내수진작 효과 등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공연 및 미술전시 할인쿠폰의 수혜가 일부 소비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효과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미술전시 할인쿠폰을 5개 온라인 티켓예매처를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배정된 쿠폰이 소진되면 이후 사용하려던 소비자는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그런데 각 쿠폰 모두 5개 온라인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총 10매를 발급할 수 있음에 따라, 공연 할인쿠폰은 1인이 최대 10만원, 미술전시 할인쿠폰은 1인이 최대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공연 및 미술전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빨리 신청하는 일부 소비층에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공연시설 및 미술관 등 전시공간이 주거지 인근에 없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지역 간 정책혜택의 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음.[1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이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지급물량의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는 등 정책효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 실제 2020~2021년 공연 할인쿠폰의 지역별 발급 비중을 보면, 서울 지역이 85.5%를 차지하고 있음.

<2020~2021년 공연 할인쿠폰 지역별 발급 비중>

(단위: %)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라 | 경상 | 제주 | 합계 |
|---|---|---|---|---|---|---|---|---|---|---|---|---|---|---|---|
| 비중 | 85.5 | 1.9 | 2.4 | 1.1 | 0.4 | 2.2 | 0.4 | 0.1 | 3.5 | 0.3 | 0.5 | 0.7 | 0.9 | 0.1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 <지출증액>

## 3. 국내관광 역량 강화: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

### 가. 개 요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관광 수요의 균형적 분산과 국내여행 총량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여행가는 달 캠페인 및 숙박할인권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235억 7,900만원(28.8%)이 증액된 1,05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 (A) | 변경안 (B) | 증감 (B-A) | (B-A)/A |
| 국내관광 역량 강화 | 53,129 | 86,171 | 42,780 | 81,860 | 105,439 | 23,579 | 28.8 |
| 국내관광 캠페인 | 10,424 | 37,466 | 8,194 | 39,774 | 54,453 | 14,679 | 36.9 |
| 숙박할인권 지원 | - | 25,495 | - | 31,580 | 46,259 | 14,679 | 46.5 |
| 국민관광지원 | 34,700 | 40,770 | 34,386 | 34,386 | 43,286 | 8,900 | 25.9 |
| 근로자 휴가 지원 | 9,900 | 15,900 | 7,000 | 7,000 | 15,900 | 8,900 | 127.1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내내역사업인 **‘숙박할인권 지원’**은 지역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5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추가 배포하기 위해 146억 7,900만원(46.5%)이 증액된 46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11) 세부사업: 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관광정책국)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숙박할인권 지원: (당초) 0원 → (기금변경) 31,580백만원 → (변경안) 46,259백만원, 14,679백만원 증<br>- 숙박할인권 지원: 8만장×5만원+84만장×3만원+8만장×2만원=30,800백만원(총 100만장) (기금변경)<br>→ 8만장×5만원+129만장×3만원+13만장×2만원=45,300백만원(총 150만장) (변경안)<br>- 사업운영비: 780백만원(기금변경) → 959백만원(변경안)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 지원’**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8.5만명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89억원(127.1%)이 증액된 159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근로자 휴가 지원: (당초) 7,000백만원 → (변경안) 15,900백만원, 8,900백만원 증<br>- 정부지원금: 100,000원×6.5만명(당초) → 100,000원×15만명(변경안)<br>- 사업 운영·관리: 174백만원(당초) → 324백만원(변경안)<br>- 홍보 및 참여 모집: 326백만원(당초) → 576백만원(변경안)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편성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당초 계획에는 45,000명에 대해 숙박할인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의 일환으로 총 373억원을 계획변경하여 숙박할인권 130만장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61,000명에 대해 숙박할인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민생안정대책 등의 일환으로 총 254억 9,500만원을 계획변경하여 95만장의 숙박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12)]

12) 2023년~2024년 숙박할인권 지원을 위한 당초 예산은 내역사업 ‘국내관광 캠페인’의 다른 내내역사업인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편성되었음.

[2023년~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예산 | 403억원<br>(본예산 30억* + 기금변경 373억) | 282억원<br>(본예산 27억* + 기금변경 255억) | 463억원<br>(기금변경 316억 + 추경 147억) |
| 당초 수량 | 4.5만장 | 6.1만장 | - |
| 지원 수량 | 130만장 | 95만장 | 150만장 |
| 적용 | 전국 숙박시설 | 비수도권 숙박시설(서울・인천・경기 제외) | |

주) 숙박할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 2023년 13억 5,000만원, 2024년 1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내내역사업 '여행가는 달 캠페인' 예산을 활용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에는 당초 예산편성 없이 6월 기준 총 315억 8,000만원을 계획변경하여 숙박할인권 100만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안에 5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추가로 배포하기 위한 예산 146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음.

다음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13]이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자부담 20만원에 기업분담금 10만원과 정부분담금 10만원을 합한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포인트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됨.[14]

지원규모는 2020년 9.6만명에서 2024년 14.3만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던 2021년~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기금변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현액 (A) | 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지원규모 |
|---|---|---|---|---|---|---|---|---|---|
| | 당초 | 수정 | | | | | | | |
| 2020년 | 8,500 | 16,000 | 3,430 | 19,430 | 9,203 | 8,770 | 1,457 | 47.4 | 9.6만명 |
| 2021년 | 11,000 | - | 8,770 | 19,770 | 7,328 | 7,381 | 5,061 | 37.1 | 8.6만명 |
| 2022년 | 11,000 | - | 7,381 | 18,381 | 13,492 | 1,955 | 2,934 | 73.4 | 10.1만명 |
| 2023년 | 9,900 | 14,900 | 1,956 | 16,855 | 15,185 | 891 | 779 | 90.1 | 14.1만명 |
| 2024년 | 9,900 | 15,900 | 891 | 16,791 | 14,233 | 807 | 1,751 | 84.8 | 14.3만명 |

주) 2020년~2024년의 지원규모는 계획 기준이 아닌 실제 지원 실적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3) 참여대상: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속 근로자 및 소상공인

14) 참여절차: 참여신청(기업) → 참여근로자 확정(관광공사) → 분담금 적립(근로자・기업・정부) → 국내여행 경비 적립금 포인트로 사용(근로자)

2025년 당초 계획에는 예년보다 축소된 7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안에 2024년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89억원을 반영하였음.

비록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이 두 사업의 증액 소요분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편성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지출증액>

## 4.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제로페이 이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2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20,344 | 120,344 | 131,282 | 131,282 | 157,282 | 26,000 | 19.8 |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 - | - | - | - | 26,000 | 26,000 | 순증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2025년도 변경안 260억원 중 245억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70%)로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15억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운영비임.

[2025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당초) 0원 → (변경안) 260억원, 순증 |
| - 사업비 245억원 (70만회 × 5만원 ×70%) + 운영비 15억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5) 세부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체육국)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개요]

| |
|---|
| ○ 추진목적: 노인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br>○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 70만회 이용<br>*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자 약 700만명의 10% 상당<br>**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br>○ 지원금액: 5만원 * 사용처: 체육시설<br>○ 총 예 산: 350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105억원/ 7:3 매칭)<br>* 운영비(홈페이지·콜센터 구축, 제로페이 수수료, 홍보비, 서류검토 용역 등 약 15억원) 별도 편성 필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고령층의 제로페이 이용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매칭 지방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별 예산을 고려하여[16]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한 후, 체력단련시설·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 체육관련 시설로 등록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상품권 5만원권(모바일)을 선정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 철차]

|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대상자 선정 | ③ 상품권 지급 | ④ 대금 정산 |
|---|---|---|---|---|
| 주체 | 기초연금수급자 | 공단 | 제로페이 → 선정자 | 공단, 지자체 → 제로페이 |
| 방식 |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및 전화신청 (연금수급 증명서 첨부, 제출) | 지자체별 예산 고려, 최종 선정 후 SMS 발송 통보 | '스포츠시설상품권' 5만원권 지급(모바일) | (지자체) 선정자 사용금액 납부 (공단) 제로페이 수수료 납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

16)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별 기초연금수급자 인원 비율로 예산 및 지원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 확정 후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임.

하지 않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 미신청 및 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에 어르신 대상 상담직원을 약 20여명 추가하여 어르신 전용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콜센터에서 본인확인 후 상담직원이 대리 신청도 지원하거나 기초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7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고려하면,[17]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이 제로페이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70:30으로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매칭 지방비가 신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18]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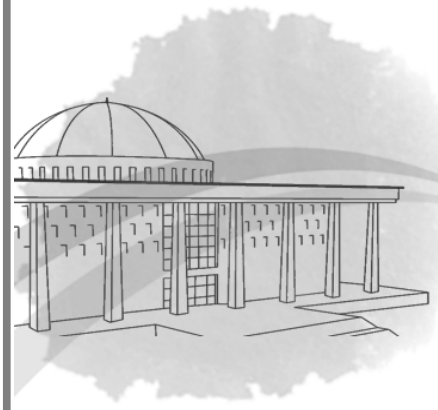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17) 문체부는 70만명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1차 모집한 후(2개월 이내 미사용 시 소멸), 예산 잔액분(미달인원+미사용인원)에 한하여 기존 이용자를 포함하여 2차 이용자를 모집할 계획임.

18) 이용료 신청 및 사용 일정(안)

| |
|---|
| ○ 신청/접수 기간 : 추경예산 확정·지방비 매칭 후 즉시, 약 7~8월 중순<br>○ 선정/통지 기간 : 신청/접수 마감 후 7일 이내<br>○ 지원금 지급 기간 : 선정/통지 후 3일 이내<br>○ 지원금 사용 기간 : 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내<br>- 1차 모집 : '25.9~10월 사용, 미사용 시 소멸<br>- 2차 모집(예산잔액분: 미달인원+미사용인원) : '25.11~12월 사용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13조 52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84,635 | 81,592 | 81,592 | 81,592 | - | - |
| 기 금 | 50,421 | 48,932 | 48,932 | 48,932 | - | - |
| 합 계 | 135,056 | 130,524 | 130,524 | 130,524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youme0803@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19조 1,40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62억원(1.0%) 증가함.

예산은 10조 8,38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38억원(1.3%) 증가하고, 기금은 8조 3,022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24억원(0.5%) 증가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98,963 | 104,819 | 106,947 | 108,385 | 1,438 | 1.3 |
| 기 금 | 84,429 | 82,598 | 82,598 | 83,022 | 424 | 0.5 |
| 합 계 | 183,392 | 187,417 | 189,545 | 191,407 | 1,862 | 1.0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98억원(1.0%) 증가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44,906 | 140,055 | 142,684 | 144,182 | 1,498 | 1.0 |
| 합계 | 144,906 | 140,055 | 142,684 | 144,182 | 1,498 | 1.0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86억원(1.5%) 증가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58,042 | 58,042 | 75,222 | 77,071 | 1,849 | 2.5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특별회계 | 127,994 | 127,994 | 124,942 | 126,029 | 1,087 | 0.9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953 | 7,953 | 13,648 | 13,898 | 250 | 1.8 |
| 합계 | 193,989 | 193,989 | 213,812 | 216,998 | 3,186 | 1.5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3조 1,233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29억원(1.4%)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조 6,18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02억원(0.8%) 증가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5,053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27억원(4.7%) 증가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4,196 | 25,978 | 25,978 | 26,180 | 202 | 0.8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5,886 | 4,826 | 4,826 | 5,053 | 227 | 4.7 |
| 합계 | 30,082 | 30,804 | 30,804 | 31,233 | 429 | 1.4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액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3,965억원임.

증액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6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4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홍수·태풍·가뭄·지진 등 재해발생에 따른 농경지 보호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에 1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원을 증액하였음.

안정적 먹거리 공급 등을 위한 산란계 시설 개선 및 대설·산불 피해 축사 신·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224억원을 증액하였음.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매입하는 식품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2,645,122 | 3,901,579 | 4,164,476 | 4,349,295 | 184,819 | 4.4 |
| *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전출* | 2,645,122 | 3,901,579 | 4,164,476 | 4,349,295 | 184,819 | 4.4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1,042,800 | 1,682,892 | 1,685,289 | 1,829,044 | 143,755 | 8.5 |
| 2 | 농촌용수개발 | 251,348 | 235,682 | 235,682 | 257,882 | 22,200 | 9.4 |
| 3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43,400 | 57,908 | 57,908 | 72,908 | 15,000 | 25.9 |
| 4 | 수리시설개보수 | 746,169 | 761,734 | 761,734 | 843,289 | 81,555 | 10.7 |
| *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 1,883 | 627,568 | 629,965 | 654,965 | 25,000 | 4.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453,525 | 485,164 | 485,164 | 510,164 | 25,000 | 5.2 |
| 6 | 배수개선 | 453,525 | 485,164 | 485,164 | 510,164 | 25,000 | 5.2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99,995 | 95,959 | 95,959 | 118,631 | 22,672 | 23.6 |
| 7 | 축사시설현대화(융자) | 99,995 | 95,959 | 95,959 | 118,359 | 22,400 | 23.3 |
| *8* |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 | | 272 | 272 | 순증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160,563 | 179,255 | 179,255 | 199,498 | 20,243 | 11.3 |
| 9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144,633 | 163,368 | 163,368 | 183,368 | 20,000 | 12.2 |
| *10* |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15,930 | 15,887 | 15,887 | 16,130 | 243 | 1.5 |
| 합계 | | 3,948,480 | 6,344,849 | 6,610,143 | 7,006,632 | 396,489 | 6.0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들의 회계·기금의 재정건전성 고려 시,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적 증액소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축사시설개선사업(융자)의 연례적인 사업비 집행 부진 및 농특회계에 편성된 이차보전사업으로도 융자지원되고 있는 점, 기금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회계·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재원 강구방안 검토 필요

### 가.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편성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848억 1,900만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및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429억 1,500만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2억 4,300만원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226억 7,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원전입 내역]

(단위: 백만원, %)

| 회계·기금명 | 항목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2,645,122 | 3,901,579 | 4,164,476 | 4,349,295 | **184,819** | 4.4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기금예수금 (94-943) | 13,300 | - | - | 20,243 | **20,243** | 순증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기금예수금 (94-943) | - | - | - | 22,672 | **22,672** | 순증 |

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전입금 1,848억 1,900만원에는 배수개선 사업이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50억원이 포함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증액사업들이 편성된 회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적 증액소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편성된 세출(지출) 사업들은 세입(수입)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자체재원 부족으로 타 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을 받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편성되어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결산 기준으로 2022년 15조 275억 5,100만원에서 2024년 13조 7,078억 8,800만원으로 총세입규모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022년 1조 2,618억 8,500만원에서 2024년 2조 7,038억 2,200만원,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는 4조 3,402억 9,500만원(제1차 추경대비 1,848억 1,900만원 증액)으로 급증하였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연도별 총세입 규모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결산액 | 2023년 결산액 | 2024년 결산액 | 2025년 | |
|---|---|---|---|---|---|
| | | |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안 |
| 총세입 | 15,027,551 | 14,242,220 | 13,707,888 | 14,268,419 | 14,418,174 |
| -일반회계 전입금 | 1,261,885 | 2,824,926 | 2,703,822 | 4,164,476 | 4,349,295 |
| -농지관리기금 전입금 | 203,533 | 171,797 | 171,797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결산 기준으로 2022년 2조 7,667억 6,800만원에서 2024년 2조 1,998억 9,200만원으로 총기금수입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출사업 증액 필요시 일반회계전입금(2024년 11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2022년 2,1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2022년 3,797억 5,800만원, 2024년 133억원)을 전입받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202억 4,300만원[2]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편성하였고, 이에 예수이자상환액 2억 4,3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예수이자상환액이 당초 158억 8,700만원에서 161억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음.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계획변경안 수입산출 근거: 202억 4,300만원 = 식품외식종합자금 200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2억 4,300만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연도별 타회계전입금·공자기금예수금 및 예수이자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결산액 | 2023년 결산액 | 2024년 결산액 | 2025년 | |
|---|---|---|---|---|---|
| | | | | 당초계획액 | 수정계획안 |
| 총수입 | 2,766,768 | 2,188,578 | 2,199,892 | 2,597,796 | 2,618,039 |
| -일반회계 전입금 | - | - | 11,500 | - | - |
| -특별회계 전입금 | 210,000 | - | | - | - |
| -기금예수금 | 379,758 | - | 13,300 | | 20,243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3,236 | 15,211 | 15,930 | 15,887 | 16,13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경우, 결산 기준으로 2022년 5,326억 1,600만원에서 2024년 3,655억 4,200만원으로 총기금수입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출사업 증액 필요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2022년 48억 4,700만원)을 지원받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226억 7,200만원[3] 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편성하였고, 이에 예수이자상환액 2억 7,200만원이 신규로 증액편성되었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연도별 타회계전입금·공자기금예수금 및 예수이자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결산액 | 2023년 결산액 | 2024년 결산액 | 2025년 | |
|---|---|---|---|---|---|
| | | | | 당초계획액 | 수정계획안 |
| 총수입 | 532,616 | 426,199 | 365,542 | 482,612 | 505,284 |
| -특별회계 전입금 | 4,847 | - | - | - | |
| -기금예수금 | - | - | - | - | 22,672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 | - | - | - | 27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편성된 집중호우 및 가뭄 등 재해피해 예방(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중소식품기업 경영비 부담완화(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사업)와 축산물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축사시설현대화 융자사업) 등을 위한 사업들의 경우, 민생안정 및 취약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계획변경안 수입산출 근거: 226억 7,200만원 = 축사시설현대화 224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2억 7,200만원

계층 지원, 재난피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은 인정됨.

다만, ①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총세입(수입)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 ③자체재원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전입금 증가, 공자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의무으로 인한 기금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④ 세수부족 전망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세입재원 발굴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 사업예산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고, 직접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세출(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추경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체재원 강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기간 내에 효율적 사업추진 필요

### 가.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회 추경안에는 노후된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용수공급 확보 등 홍수·가뭄 등의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들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4031-306),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농촌용수개발(4046-300) 등 3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수개선(4031-300) 1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임.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농특, 4031-306)사업의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억원(25.9%) 증액된 72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4], 수리시설개보수(농특, 4038-700)사업은 815억 5,500만원(10.7%) 증액된 8,43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5], 농촌용수개발(농특, 4046-300)사업은 222억원(9.4%) 증액된 2,57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6]. 또한 배수개선(지특, 4031-300)사업은 250억원(5.1%) 증액된 5,10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7]

[제2회 추경안에 증액편성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 회계명 | 사업명 | 2024년 예산 | 2025년 | | | | |
|---|---|---|---|---|---|---|---|
| | | | 본예산 | 제1회추경(A) | 제2회추경(B) | 증감(B-A) | (B-A)/A |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4031-306) | 43,000 | 57,908 | 57,908 | 72,908 | 15,000 | 25.9 |
| | 수리시설개보수 (4038-700) | 746,169 | 761,734 | 761,734 | 843,289 | 81,555 | 10.7 |
| | 농촌용수개발 (4046-300) | 251,348 | 235,682 | 235,682 | 257,882 | 22,200 | 9.4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배수개선 (4031-300) | 453,525 | 485,164 | 485,164 | 510,164 | 25,000 | 5.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4) 세부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4031-306)(식량정책관실)

5) 세부사업: 수리시설개보수(4038-700)(식량정책관실)

6) 세부사업: 농촌용수개발(4046-300)(식량정책관실)

7) 세부사업: 배수개선(4031-300)(식량정책관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현재 공사중인 계속사업 지구들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조기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임.

[제2회 추경안에 증액편성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들의 계속지구 지원단가 인상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5년도 추경안 |
|---|---|---|---|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031-306) | 국가관리방조제 | 계속 18지구×**1,737백만원** | 계속 18지구×**2,570백만원** |
| 수리시설개보수 (4038-700) | 수원공개보수 | 계속 149지구×**1,260백만원** | 계속 149지구×**1,394백만원** |
| | 용·배수로 개보수 | 계속 146지구×**900만원** | 계속 149지구×**1,321백만원** |
| 농촌용수개발 (4046-300)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계속 23지구×**3,852만원** | 계속 23지구×**4,165만원** |
|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계속 1지구×**5,000백만원** | 계속 1지구×**20,000백만원** |
| 배수개선 (4031-300) | - | 계속 183지구×**2,000백만원** | 계속 183지구×**2,137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 나. 검토의견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세입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받은 만큼,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추경안 편성사업인 '배수개선(4031-300)',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농촌용수개발(4046-300)'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들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사업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었음.

[연도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내역 및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사업명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
| 2022년 | 농업재해보험(1031-300) | 632,413 | 632,413 | 552,413 | 80,000 |
| |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5) | 291,367 | 294,374 | 244,458 | 49,250 |
| | **배수개선(4031-300)** | **375,590** | **360,590** | **310,590** | **50,000** |
| |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 **651,009** | **651,009** | **582,009** | **69,000** |
| | **농촌용수개발(4046-300)** | **283,900** | **283,900** | **228,900** | **55,000** |
| | 합 계 | 2,234,279 | 2,222,286 | 1,918,370 | 303,250 |
| 2023년 | 농업재해보험(1031-300) | 730,922 | 810,922 | 726,447 | 84,475 |
| |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5) | 451,942 | 500,711 | 462,922 | 34,768 |
| | **배수개선(4031-300)** | **370,306** | **420,306** | **348,375** | **71,931** |
| |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 **651,832** | **720,832** | **593,423** | **127,409** |
| | **농촌용수개발(4046-300)** | **282,200** | **337,200** | **281,383** | **55,817** |
| | 합 계 | 2,487,202 | 2,789,971 | 2,412,550 | 374,400 |
| 2024년 | 농업재해보험(1031-300) | 657,104 | 741,579 | 711,892 | 29,687 |
| |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5) | 557,722 | 592,490 | 403,661 | 188,829 |
| | **배수개선(4031-300)** | **453,525** | **525,456** | **419,747** | **105,709** |
| | **수리시설개보수(4038-700)** | **746,169** | **873,578** | **694,085** | **174,000** |
| | **농촌용수개발(4046-300)** | **251,348** | **307,165** | **243,865** | **56,000** |
| | 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4034-308) | 14,606 | 14,606 | 12,315 | 2,291 |
| | 합 계 | 2,680,474 | 3,054,874 | 2,485,565 | 556,516 |

주) 배수개선(4031-300) 사업은 2025년 예산편성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다음연도 1~3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들은 국지성 집중호우 및 홍수·가뭄 등의 재해로부터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업이므로 타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어야 했음에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왔던 점은 적절하지 않음.

이번 추경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은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들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출증액>

## 3. 축사시설개선(융자):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224억원(25.4%)이 증액된 1,10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축사시설개선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축사시설 현대화(융자) | 99,995 | 80,964 | 95,959 | 110,959 | 133,359 | 22,400 | 20.2 |
| 축사시설 개선 | 51,200 | 54,527 | 67,946 | 88,219 | 110,619 | 22,400 | 25.4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자제 전용 5,27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000백만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대설(2024년 11월), 산불(2025년 3월) 등 특별재난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안정지원(50개소 추가 지원)을 통한 축산물 수급안정 및 산란계 사육면적기준 확대(2025년 9월)의 연착륙을 위한 케이지 교체 지원(12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증액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세부사업: 축사시설현대화(융자, 3760-332)(축산정책관실)

[2025년 축사시설개선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계획 |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882억<br>1,900만원 | ❍ 축사시설개선 : 88,219백만원<br>-시설현대화(일반) : **200개소** × 2억원 × 융자80%=32,000백만원<br>-시설현대화(산란계): **30개소** × 15억원 × 융자80%=36,000백만원<br>-자체 전용 5,273백만원<br>-전년도 이월액 15,000백만원 | 1,106억<br>1,900만원 | ❍ 축사시설개선: 110,619백만원<br>-시설현대화(일반) : **250개소** × 2억원 × 융자80%=39,946백만원<br>-시설현대화(산란계): **42개소** × 15억원 × 융자80%=50,400백만원<br>-자체 전용 5,273백만원<br>-전년도 이월액 15,000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축사시설개선사업(융자)의 연례적인 사업비 집행 부진 및 농특회계에 편성된 이차보전사업으로도 융자지원되고 있는 점, 기금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축사시설개선사업(융자)의 2023년~2025년 5월까지의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3년 계획액 484억원 중 186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8.5%)되었고, 2024년 계획액 545억 2,700만원 중 394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3%)되었으며, 2025년 현계획액 882억 1,900만원 중 5월말 기준 61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0%)에 불과함.

[축사시설개선사업(융자) 연도별 계획액 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5월 | |
|---|---|---|---|---|---|---|
| | 계획액 | 실집행액<br>(집행률) | 계획액 | 실집행액<br>(집행률) | 현계획액 | 실집행액<br>(집행률) |
| 축사시설개선 | 48,400 | 18,620<br>**(38.5%)** | 54,527 | 39,427<br>**(72.3%)** | 88,219 | 6,180<br>**(7.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신·개축 및 중장비 시공 등 장기간에 걸쳐 축사 준공 후 해당 농장을 담보로 융자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폭설·폭우·산불 등 특별재난이나 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공사지연이 발생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업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전년도 10-12월에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에 노력중 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 사업은 일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포기와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되면서 공사지연이 잦은 점, 사업대상자 자부담으로 축사 준공 이후 이를 담보로 융자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수행체계상 상당 부분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확정적이며, 2025년 5월까지의 사업비 집행률이 7.0%로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축사시설개선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뿐만 아니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1038-301)'으로도 편성되어 융자지원되고 있는 점[9], 이 사업이 편성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총수입규모 감소 및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증가 등 기금재정건전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동시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 시설현대화자금(축사시설) (농어촌구조개선특회계, 이차보전사업 내 편성) | | | | 축사시설현대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편성) | | | |
|---|---|---|---|---|---|---|---|
| 예산액 | | 대상자 | 금리 및 거치기간 | 계획액 | | 대상자 | 금리 및 거치기간 |
| 2024 | 2025 | | | 2024 | 2025 | | |
| 54,300 (11,472) | 49,000 (11,070) | 축산업농가 | 고정 2.0% (소규모 1.0%), 5년거치10년상환 | 80,964 | 110,959 | 2014년 이전부터 축산업 영위한 중·소규모농가 | 고정 1.0%, 5년 거치 10년 상환 |

주) 이차보전은 융자규모 기준으로 작성, 이차보전 예산액은 ( )에 기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이차보전사업(농특에 편성)으로 융자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은 신규진입 청년농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편성된 축사시설현대화 융자자금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결산 기준 2022년 5,326억 1,600만원→ 2023년 4,261억 9,900만원→2024년 3,655억 4,200만원으로 총기금수입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지출사업 증액 필요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2022년 48억 4,700만원), 2025년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226억 7,200만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편성하였고, 이에 예수이자상환액(지출) 243억원이 신규로 증액편성되는 등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 의무지출이 매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1조 3,449억원으로, 예산은 6,559억원, 기금은 6,89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2,804 | 6,559 | 6,559 | 6,559 | - | - |
| 기 금 | 6,265 | 6,890 | 6,890 | 6,890 | - | - |
| 합 계 | 9,069 | 13,449 | 13,449 | 13,449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6조 8,93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6억원(1.2%) 증가함.

예산은 6조 97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6억원(1.4%)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7,95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58,779 | 59,881 | 60,143 | 60,979 | 836 | 1.4 |
| 기 금 | 8,100 | 7,956 | 7,956 | 7,956 | - | - |
| 합 계 | 66,879 | 67,837 | 68,099 | 68,935 | 836 | 1.2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6억원(1.9%) 증가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533 | 4,231 | 4,231 | 4,231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19 | 321 | 321 | 321 | -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531 | 17,715 | 17,715 | 18,141 | 426 | 2.7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7 | 38 | 38 | 38 | -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39 | 50 | 50 | 50 | - | - |
| 합계 | 18,498 | 22,357 | 22,357 | 22,783 | 426 | 1.9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2억원(1.7%) 증가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4,471 | 34,203 | 34,265 | 34,691 | 426 | 1.2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6,799 | 16,711 | 17,211 | 17,622 | 410 | 2.4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531 | 17,715 | 17,736 | 18,162 | 426 | 2.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038 | 6,392 | 6,392 | 6,392 | -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633 | 618 | 618 | 618 | - | - |
| 합계 | 74,472 | 75,639 | 76,222 | 77,059 | 1,262 | 1.7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7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262억 3,0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6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1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산식품산업육성’ 사업은 마른김 공장의 안정적 가공 능력을 확보하고 생산품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김 건조기 노후설비 교체 지원 사업에 60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어항’ 사업은 태풍 대비 시설물 피해예방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270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거도항 복구’ 사업은 대형 태풍 내습으로 파손된 방파제의 조속한 복구·보강을 위하여 80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일반항’ 사업은 흑산도항 개발사업 및 통영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140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은 국가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의 노후 손상된 항만시설을 적기에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79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은 군산내항의 침수피해 방지, 울산신항 동방파제 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205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1,569,280 | 1,577,962 | 1,577,962 | 1,620,545 | 42,583 | 2.7 |
| 1 |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전출* | *1,569,280* | *1,577,962* | *1,577,962* | *1,620,545* | *42,583* | *2.7*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335,134 | 358,049 | 358,049 | 399,113 | 41,064 | 11.5 |
| 2 | 수산식품산업육성 | 7,174 | 4,213 | 4,213 | 10,213 | 6,000 | 142.4 |
| 3 | 국가어항 | 306,328 | 337,786 | 337,786 | 364,850 | 27,064 | 8.0 |
| 4 | 가거도항 복구 | 21,632 | 16,050 | 16,050 | 24,050 | 8,000 | 49.8 |
| 교통시설특별회계 | | 300,241 | 272,135 | 272,135 | 314,718 | 42,583 | 63.4 |
| 5 | 일반항 | 69,614 | 98,779 | 98,779 | 112,833 | 14,054 | 14.2 |
| 6 |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 131,191 | 125,376 | 125,376 | 133,318 | 7,942 | 6.3 |
| 7 | 재해안전항만구축 | 99,436 | 47,980 | 47,980 | 68,567 | 20,587 | 42.9 |
| 합계 | | 635,375 | 630,184 | 630,184 | 713,831 | 126,230 | 13.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은 본격적인 물김 생산 시기 이전에 김 건조기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추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나,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은 추경안에 반영된 13개 내역사업 중 3개 사업이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는 등 추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의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하여 추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비 등이 연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세출증액>

## 1.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본격적인 물김 생산 시기 이전에 장비 도입 완료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은 마른김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마른김 공장의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은 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

[2025년도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수산식품산업육성 | 7,174 | 4,213 | 4,213 | 10,213 | 6,000 | 142.4 |
| 가공설비지원 | 2,134 | 2,134 | 2,134 | 8,134 | 6,000 | 281.2 |
|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 - | - | - | 6,000 | 6,000 | 순증 |

이 사업은 노후된 김 건조기의 교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40%임.

[2025년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60억원** |
| - 20개소×10억원(김 건조기 단가)×보조율 30% |

자료: 해양수산부

2) 세부사업: 수산식품산업육성(2832-313)(수산정책실)

## 나. 검토의견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은 본격적인 물김 생산 시기 이전에 김 건조기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물김 생산량 및 폐기량을 보면 2024년까지는 매년 약 50만톤 정도가 생산되었으나, 2025년에는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약 72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폐기량은 2024년까지는 2,000톤대 이하였으나 2025년에 5,989톤으로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폐기율도 0.83%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음.

[최근 5년 물김 생산량 및 폐기량]

(단위: 톤, %)

| 연도 | 물김 생산량(A) | 물김 폐기량(B) | 폐기율(B/A) |
|---|---|---|---|
| 2021년산 | 554,632 | 1,452 | 0.26 |
| 2022년산 | 575,634 | 2,317 | 0.40 |
| 2023년산 | 507,938 | 1,412 | 0.28 |
| 2024년산 | 534,859 | 54 | 0.01 |
| 2025년산 | 718,447 | 5,989 | 0.83 |

주) 연도별 생산량은 전년 10월부터 해당연도 5월까지의 생산량을 의미함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물김 폐기량 증가는 물김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마른김 건조기의 노후화로 마른김 생산 능력이 저하된 것에도 기인함.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마른김 공장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5년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후 김 건조기 교체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14개 마른김 가공업체에서 보유 중인 김 건조기 중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수는 총 84개임.

[지방자치단체 대상 김 건조기 교체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

| 구분 | 전남 | 충남 | 전북 | 경기 | 기타 | 합계 |
|---|---|---|---|---|---|---|
| 가공업체 수 | 247 | 52 | 8 | 1 | 6 | 314 |
| 교체대상 (10년 이상) 김 건조기 수 | 57 | 21 | 5 | 1 | - | 84 |

주) 기타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임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선적으로 2025년에 김 건조기 20대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6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공모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또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른김 건조기 제작 및 설치에도 통상 8~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도 연내 김 건조기의 도입이 완료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실집행단계에서 예산의 일부 이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025년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 향후 추진 일정]

| |
|---|
| 추경 확정 → 지방비 추경 예산 확보(9월) → 사업대상자 선정(10월) → 김 건조기 주문 계약 및 착수금 지급(11월) → 김 건조기 제작('25년 11월~'26년 5월) → 김 건조기 설치('26년 6월~8월) → 생산현장 적용('26년 10월)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김 건조기는 제작 및 설치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도입하여 사용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차년도 물김의 주 생산시기(2026년 10월~2027년 5월)를 고려하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2025년 내 김 건조기의 발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이 사업은 추경 확정 이후 지방비 확보, 사업대상자 선정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등 일부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김 건조기가 물김의 주 생산시기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물김 생산시기인 2026년 10월 이전에 김 건조기의 도입이 완료되어 마른김 공장의 생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 <세출증액>

## 2.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해수면 상승 및 해일 내습 등 기상악화 시 항만배후부지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상·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 군산 장미동 전면 해역에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 8,700만원(253.9%) 증액된 14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재해안전항만 구축 | 99,436 | 47,980 | 47,980 | 68,567 | 20,587 | 42.9 |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 10,528 | 4,131 | 4,131 | 14,618 | 10,487 | 253.9 |

이 사업은 해수면 상승 및 해일 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항만배후부지에 투명 방호벽 및 차수판(물막이) 등을 설치하고, 친수공간 및 해양경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가 직접 수행함.

3) 세부사업: 재해안전항만 구축(5063-302)(항만국)

[투명방호벽 및 차수판]

| 투명 방호벽(강화유리) | 차수판(스테인레스) |
|---|---|
|  |  |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2020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1년부터 설계비 등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2025년 6월 기준 총사업비는 317억 2,700만원이고 2025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 공사비 및 감리비 104억 8,7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음.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 | | | | | 비 고 |
|---|---|---|---|---|---|---|
| | 계 | 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 부대비 | |
| 2021년(1년차) | 1,615 | 1,615 | - | - | -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2022년(2년차) | 425 | 425 | - | - | - | |
| 2023년(3년차) | 10,054 | - | 9,357 | 670 | 27 | 침수방지시설 설치 |
| 2024년(4년차) | 5,015 | - | 4,197 | 796 | 22 | |
| 2025년(5년차) 본예산 | 4,131 | - | 3,870 | 248 | 13 | |
| 2025년 제2회 추경 | 10,487 | - | 9,301 | 1,186 | - | |
| 합계 | 31,727 | 2,040 | 26,725 | 2,900 | 62 | - |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예산액 및 추경안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 나. 검토의견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추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나,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4년은 특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47.6%이며 연도 중 이·전용으로 39억 3,400만원이 감액되고 28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그리고 2025년 5월말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률도 7.5%에 불과한데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추경으로 104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 2021 | 2,400 | 2,400 | - | - | - | 2,400 | 1,615 | 67.3 | 67.3 | 425 | 360 |
| 2022 | 2,500 | 2,500 | 425 | △2,410 | - | 515 | 425 | 17.0 | 82.5 | 50 | 40 |
| 2023 | 11,730 | 11,730 | 50 | - | - | 11,780 | 10,054 | 85.7 | 85.3 | 1,525 | 201 |
| 2024 | 10,528 | 10,528 | 1,525 | △3,934 | - | 8,119 | 5,015 | 47.6 | 61.8 | 234 | 2,870 |
| 2025 (5월말) | 4,131 | 4,131 | 234 | - | - | 4,365 | 310 | 7.5 | 7.1 | - | -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1년~2022년은 사업 초기로 설계 및 공사 발주 등에 당초 계획 대비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2024년은 사업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도 저조하였으나 2024년 11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하였음.

[사업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 관련 경과]

| |
|---|
| 사업 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를 위한 설명회 개최('23. 8월) → 공사 추진을 위한 조치방안 설명회('24. 1월) →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공고('24. 2월) → 행정대집행 계고('24. 3월) → 지장물 이전 방안 협의회 개최('24. 8월) → 지장물 이전 및 철거 완료('24. 11월) |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2025년에는 공사업체의 자금 사정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4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추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2025년 내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이 사업은 공사 구간 내 일부 구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함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나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2025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사업 대상지 내 일부 지역에 지장물 철거 이후 발생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연내 준공을 위해서 폐기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이 5월 완료되어 7월 중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연내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공사비 등이 연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은 노후·손상된 국가관리 무역항 및 국가관리 연안항의 항만시설을 적기 유지보수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9억 4,200만원(6.3%) 증액된 1,33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 131,191 | 125,376 | 125,376 | 133,318 | 7,942 | 6.3 |
| 부산항 신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 3,771 | 3,949 | 3,949 | 4,949 | 1,000 | 25.3 |
| 인천신항 항만시설 (임항도로 등) 유지보수 | 2,233 | 2,150 | 2,150 | 3,260 | 1,110 | 51.6 |
| 인천남북항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 1,958 | 2,000 | 2,000 | 3,034 | 1,034 | 51.7 |
| 광양항 임항교통시설 유지관리 | 1,778 | 2,559 | 2,559 | 3,481 | 922 | 36.0 |
| 군장항 유지준설 | - | 6,815 | 6,815 | 7,930 | 1,115 | 16.4 |
| 군산항 조명시설 보수공사 | - | 213 | 213 | 525 | 312 | 146.5 |
| 군산항 임항창고 등 보수공사 | - | 213 | 213 | 519 | 306 | 143.7 |
| 군산항 항만시설 보수보강 | - | 543 | 543 | 743 | 200 | 36.8 |
| 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 | 343 | 1,013 | 1,013 | 1,183 | 170 | 16.8 |
| 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 115 | 643 | 643 | 883 | 240 | 37.3 |
| 울릉(사동·도동)항 정비 | 50 | 509 | 509 | 759 | 250 | 49.1 |
|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 | 1,003 | 1,003 | 1,158 | 155 | 15.5 |
|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포장공사 | - | 1,607 | 1,607 | 2,735 | 1,128 | 70.2 |

4) 세부사업: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5060-300)(항만국)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각 해양지방수산청)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추경안에는 노후·손상된 항만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를 위하여 부산항 신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총 13개 내역사업에 공사비 등 사업비 79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① 공사비(420-03): 78억 100만원 증액
- (산출) 부산항 신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10억원
인천신항 항만시설(임항도로 등) 유지보수 11억 1,000만원
인천남북항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10억 3,400만원
광양항 임항교통시설 유지관리 9억 2,200만원
군장항 유지준설 10억원
군산항 조명시설 보수공사 3억원
군산항 임항창고 등 보수공사 3억원
군산항 항만시설 보수보강 2억원
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 1억 7,000만원
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2억 4,000만원
울릉(사동·도동)항 정비 2억 5,000만원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억 5,400만원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포장공사 11억 2,100만원

② 감리비(420-04): 1억 3,100만원 증액
- (산출) 군장항 유지준설공사 1억 1,500만원
군산항 조명시설 보수공사 1,100만원
군산항 임항창고 등 보수공사 500만원

③ 시설부대비(420-05): 1,000만원 증액
- (산출) 군산항 조명시설 보수공사 100만원
군산항 임항창고 등 보수공사 100만원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100만원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포장공사 7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 나. 검토의견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은 추경안에 반영된 13개 내역사업 중 3개 사업이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는 등 추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의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하여 추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비 등이 연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에서 추경안에 증액편성된 13개 내역사업의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3개 사업이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

[추경안에 증액된 13개 내역사업의 집행실적(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부산항 신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 3,949 | 3,949 | - | - | 3,949 | 3,949 | 100 | 100 |
| 인천신항 항만시설(임항도로 등) 유지보수 | 2,150 | 2,150 | - | - | 2,150 | 2,150 | 100 | 100 |
| 인천남북항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 2,000 | 2,000 | - | - | 2,000 | 2,000 | 100 | 100 |
| 광양항 임항교통시설 유지관리 | 2,559 | 2,559 | - | - | 2,559 | 2,559 | 100 | 100 |
| 군장항 유지준설 | 6,815 | 6,815 | - | 402 | 7,217 | 3,820 | 56.1 | 52.9 |
| 군산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 213 | 213 | - | - | 213 | 147 | 69.0 | 69.0 |
| 군산항 임항창고 등 유지보수 | 213 | 213 | - | - | 213 | 117 | 54.9 | 54.9 |
| 군산항 항만시설 보수보강 | 543 | 543 | - | - | 543 | 458 | 84.3 | 84.3 |
| **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 | **1,013** | **1,013** | **1** | **-** | **1,014** | **-** | **-** | **-** |
| **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 **643** | **643** | **1** | **-** | **644** | **-** | **-** | **-** |
| 울릉(사동·도동)항 정비 | 509 | 509 | - | - | 509 | 373 | 73.2 | 73.2 |

| 사업명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1,003 | 1,003 | - | - | 1,003 | 457 | 45.6 | 45.6 |
|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포장공사** | **1,607** | **1,607** | **-** | **-** | **1,607**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우선 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당초 2024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5년 3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내부검토 등으로 설계용역의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 계약 등이 순연되어 2025년 8월에야 착공할 예정임.

[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 대비 실적(2025년 5월말 기준)]

| 사업절차 | 최초 추진 계획 | 실제 추진 현황 |
|---|---|---|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4년 3월 | '24년 3월 |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4년 12월 | '25년 5월 |
| 공사 발주 | '25년 1월 | '25년 6월 예정 |
| 공사계약 체결 | '25년 3월 | '25년 8월 예정 |
| 공사 착공 | '25년 3월 | '25년 8월 예정 |
| 공사 준공 | '27년 12월 | - |

자료: 해양수산부

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도 2024년 신규사업으로 당초 2024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5년 3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설계용역이 지연되면서 2025년 7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예정임에 따라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없음.

[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 추진 계획 대비 실적(2025년 5월말 기준)]

| 사업절차 | 최초 추진 계획 | 실제 추진 현황 |
|---|---|---|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4년 7월 | '24년 7월 |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4년 12월 | '25년 3월 |
| 공사 발주 | '25년 1월 | '25년 4월 |
| 공사계약 체결 | '25년 3월 | '25년 7월 예정 |
| 공사 착공 | '25년 3월 | '25년 7월 예정 |
| 공사 준공 | '27년 12월 | - |

자료: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포장공사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4년 정밀점검용역 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포함하여 시행함에 따라 2024년에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공사 발주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5년 6월에 공사계약 후 착공하였음.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포장공사 사업 추진 계획 대비 실적(2025년 5월말 기준)]

| 사업절차 | 최초 추진 계획 | 실제 추진 현황 | 비 고 |
|---|---|---|---|
| 실시설계 | '24년 12월 | '24년 12월 | '24년 정밀점검용역 시 설계 포함 시행 |
| 공사 발주 | '25년 1월 | '25년 2월 | |
| 공사계약 체결 | '25년 3월 | '25년 6월 | |
| 공사 착공 | '25년 3월 | '25년 6월 | |
| 공사 준공 | '26년 9월 | - | 추경 확정 시 '25년 12월 준공 예정 |

자료: 해양수산부

이 3개 사업은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저조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설계 및 공사 발주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공사계약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지보수 사업의 특성상 공사 계약 이후에는 사업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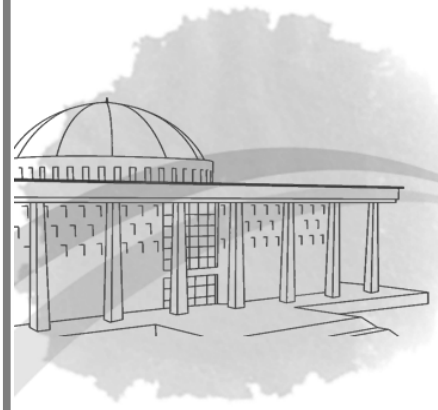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그러나 추경으로 공사비 등이 증액되면 이와 관련하여 업체와 공사비 등 관련 계약 변경을 해야 함에 따라 계약변경 관련 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그리고 평택당진항 항만시설물 포장공사 사업은 당초 2026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추경으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가 추가 확보되면 준공시기를 앞당겨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공시기가 늦추어지고 사업비가 일부 이월될 가능성도 있음.

한편 이 사업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풍수해 대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총액) 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할 것' 을 시정요구(제도개선) 하였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추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비 등이 연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6조 9,46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27,087 | 26,970 | 26,970 | 26,970 | - | - |
| 기 금 | 47,505 | 42,490 | 42,490 | 42,490 | - | - |
| 합 계 | 74,592 | 69,460 | 69,460 | 69,460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12조 9,10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956억원(4.0%) 증가함.

예산은 10조 97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7억원(0.3%) 증가하고, 기금은 2조 8,13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640억원(19.7%)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90,651 | 90,841 | 100,655 | 100,972 | 317 | 0.3 |
| 기 금 | 24,537 | 23,494 | 23,494 | 28,134 | 4,640 | 19.7 |
| 합 계 | 115,188 | 114,336 | 124,149 | 129,105 | 4,956 | 4.0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852억원(△5.5%) 감소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1,579 | 1,888 | 1,888 | 1,888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62,161 | 60,702 | 62,892 | 58,040 | △4,852 | △7.7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및공급망 안정화특별회계 | 21,655 | 22,843 | 22,843 | 22,843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08 | 530 | 530 | 530 | - | - |
| 합계 | 86,103 | 85,693 | 88,153 | 83,301 | △4,852 | △5.5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7억원(0.3%)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55,455 | 60,843 | 67,543 | 67,823 | 280 | 0.4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8,075 | 24,836 | 27,027 | 27,027 | - | - |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17,390 | 18,228 | 18,228 | 18,228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260 | 11,879 | 12,835 | 12,872 | 37 | 0.3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9 | 57 | 57 | 57 | - | - |
| 합계 | 113,339 | 115,843 | 125,690 | 126,006 | 317 | 0.3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20조 6,008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35억원(0.01%)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전력산업기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3조 8,78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35억원(0.1%)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전력산업기반기금 | 45,010 | 38,752 | 38,752 | 38,787 | 35 | 0.1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2,024 | 2,352 | 2,352 | 2,352 | - |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92,907 | 104,062 | 104,062 | 104,062 | - | - |
| 무역보험기금 | 55,510 | 57,807 | 60,807 | 60,807 | - | - |
| 합계 | 195,450 | 202,973 | 205,973 | 206,008 | 35 | 0.01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으로만 편성되어 있고, 총 증액규모는 4,956억원임.[2)]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기업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에서 37억원, 수요 맞춤형 AI 솔루션 실증·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에 128억원 및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3,261억원 등 총 12개 사업에서 4,956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3,260,552 | 2,665,452 | 2,665,452 | 2,700,618 | 35,166 | 1.3 |
| 일반회계 | | 370,867 | 379,832 | 379,832 | 407,838 | 28,006 | 7.4 |
| 1 |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 6,980 | 6,631 | 6,631 | 10,931 | 4,300 | 64.8 |
| 2 |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 42,612 | 43,911 | 43,911 | 47,501 | 3,590 | 8.2 |
| 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321,275 | 329,290 | 329,290 | 334,406 | 5,116 | 1.6 |
| 4 |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 - | - | - | 12,800 | 12,800 | 순증 |
| 5 |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 자율랩기술개발사업(R&D) | - | - | - | 2,200 | 2,200 | 순증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3,665 | 3,665 | 순증 |
| 6 | 지역산업위기대응 | - | - | - | 3,665 | 3,665 | 순증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2,889,685 | 2,285,620 | 2,285,620 | 2,289,115 | 3,495 | 0.2 |
| 7 | 전력효율향상 | 163,374 | 104,329 | 104,329 | 430,432 | 326,103 | 312.6 |
| 8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67,489 | 156,373 | 156,373 | 168,212 | 11,839 | 7.6 |
| 9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369,280 | 326,300 | 326,300 | 426,300 | 100,000 | 30.6 |
| 10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사업지원 | 20,000 | 1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 |
| 11 | 차세대태양전지실증사업(R&D) | 1,000 | 3,500 | 3,500 | 4,500 | 1,000 | 28.6 |
| 12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8,463 | 18,336 | 18,336 | 33,336 | 15,000 | 81.8 |
| 1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전출* | *1,307,376* | *1,242,635* | *1,242,635* | *757,434* | *△485,201* | *△39.0* |
| 1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100,000* | *100,000* | *100,000* | *391,259* | *291,259* | *291.3* |
| 15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166,976* | *109,714* | *109,714* | *19,714* | *△90,000* | *△82.0* |
| 1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585,727* | *214,433* | *214,433* | *37,928* | *△176,505* | *△82.3* |
| 합계 | | 3,260,552 | 2,665,452 | 2,665,452 | 2,700,618 | 35,166 | 1.3 |

주 1)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1개(전력산업기반기금)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 사업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중에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만약 이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될 경우 보다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서 추경안으로 편성된 시스템 개발 및 행정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 사업의 인프라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에서 과거에 위법 또는 부적정 대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업체의 자격요건 및 대출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함께 지원 대상 시설의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도 대출 목적 외 유용 및 허위설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신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유념할 필요

### 가. 개 요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은 업종별 산업AI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제조기업(산업AI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솔루션 실증·확산 및 산업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128억원이 신규편성되었음.[3)]

[2025년도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 - | - | - | 12,800 | 12,800 | 순증 |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이고,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업종별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6개 업종에 대하여 총 30개 컨소시엄에 126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3) 세부사업: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3174-498)(산업정책실)

[2025년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128억원 | ○ 사업출연금(350-02) : 126억원<br>- 6개 업종 x 솔루션 도입 21억원(5개 컨소시엄 x 4억 2,000원) = 126억원<br>○ 기관운영출연금(350-01) : 2억원<br>- 128억원 x 1.57% = 2억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업종별 5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될 경우 기존 AI 모델을 특화된 AI 솔루션으로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의 50%를 수요기업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됨.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 계획(안)]

| |
|---|
| ㅇ 대상: 업종별 5개 컨소시엄* × 6개 업종 = 총 30개 컨소시엄<br>*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이 큰 과제(중견기업 참여) 우선 지원<br>ㅇ 지원조건: 출연(국비 50%, 수요기업 자부담 50%, 전담기관 KIAT)<br>ㅇ 세부내용: ① 수요(제조)기업별 데이터 확보·정형화·가공<br>② 현장 데이터 기반의 미세조정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적용<br>ㅇ 기대효과: 기업 데이터 학습, 현장 실증을 통해 기존 AI 모델을 산업 특화된 AI 솔루션으로 개발<br>→ 해당 산업 내 다른 기업으로 확산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는 AI 솔루션 지원 분야를 고려하여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 등이 큰 과제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6개 업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다만 이 과정에서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는 AI 솔루션 지원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기술개발(R&D), 제조데이터표준 인공지능활용제품 전주기탄소중립지원 기술개발(R&D), 디자인

산업진흥 세부사업에서 각각 산업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관련 산업 및 디자인 부문에 대하여 AI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AI 솔루션 실증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신규 여부 | 내용 | 지원분야 |
|---|---|---|---|---|
| 산업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기술개발(R&D) | 3,200 | 신규사업 | 산업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솔루션을 신규 데이터를 통해 실증하고 유사 분야 AI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확산 | 안전, 품질, 설비, 환경·에너지, 공정물류 등 |
| 제조데이터표준 인공지능활용제품 전주기탄소중립지원 기술개발(R&D) | 3,500 | 신규사업 | AAS 표준 기반 상호 호환·연계되는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운영 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관리 통합 플랫폼 및 탄소 저감 AI 솔루션 개발 | 탄소 저감기술 개발 및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
| 디자인산업진흥 | 4,250 | 계속사업 (2024년 신규) | 디자인·설계에서부터 제품경험 및 고객서비스 대응에까지 디자인 산업 內 AI 솔루션 개발·실증 인프라 수요 증대 | 디자인 산업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산업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기술개발(R&D)’ 사업은 안전, 품질, 설비, 환경·에너지, 공정물류 등 전 산업 공통 요소별 데이터 처리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조데이터표준 인공지능활용제품 전주기탄소중립지원 기술개발(R&D)’ 사업은 AI 시뮬레이터를 통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및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분야는 산업적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부문으로서 이 사업이 지원하게 될 6개 업종에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 2.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신규): 보다 철저한 과제관리 필요

### 가. 개 요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 사업은 AI 및 로봇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제조 및 효능 검증을 위한 핵심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22억원이 신규편성되었음.[4)]

[2025년도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 | - | - | - | 2,200 | 2,200 | 순증 |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담기관이고, ‘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과 ‘AI 기반 표적 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내역사업에 대하여 각각 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에는 3개월을 지원하고, 2029년까지 지원될 예정임.

[2025년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22억원 | ㅇ 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br>· (신규) 4개 × 11억 3,000만원 × 3/12개월 = 11억 3,000만원<br>ㅇ AI 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br>· (신규) 4개 × 10억 7,000만원 × 3/12개월 = 10억 7,000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세부사업: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3651-321)(산업정책실)

##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중에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만약 이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될 경우 보다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계획하였고, 수요조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내역사업별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5][6]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 사업 추진경위]

| 추진경과 | | 세부 내용 |
|---|---|---|
| 사업 기획방향 설정 | 2024.10~ 2024.12 | ㅇ (정책・경제・사회・기술분석) 국내・외 AI 신약개발, 의약품제조 자동화, 차세대 모달리티 관련 정책적, 산업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 분석<br>ㅇ (전문가 의견수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br>ㅇ (기존 및 유사사업 분석) 기존 유사사업의 추진내용, 성과 분석 |
| ⇩ | | |
| 추진전략 및 내역사업 도출 | 2025.1~ 2025.2 | ㅇ 대내외 환경의 SWOT 분석기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br>ㅇ 사업 추진방향 기반의 내역사업(안) 도출 |
| ⇩ | | |
| 수요조사 | 2025.3.12~ 2025.3.18 | ㅇ AI, 신약개발 등 관련 전문가, 관련 기업 대상 수요조사 실시 |
| ⇩ | | |
| 전문가위원회 | 2025.3~ 2025.4 | ㅇ AI, 신약개발 등 관련 전문가, 관련 기업 대상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부과제 수요 발굴 및 세부내용 구성<br>ㅇ 전문위,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수요기술에 대해 검토 |
| ⇩ | | |
| 내역사업별 세부과제 도출 | 2025.4 | ㅇ 내역사업에 대한 세부과제 최종 도출 및 세부 내용 기획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중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산의 배분 및 조정내역 등을 마련한 뒤,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7)]

여기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의미하며,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R&D 사업을 의미함.[8)]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차년도 정부안을 편성하게 됨.[9)]

---

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내역

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 · 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과정]

| 내역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예산의 배분·조정 등 |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 자문회의 심의 결과 제출 |
|---|---|---|---|---|
| 일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매년 6월 중 | 매년 6월 중 | 매년 6월 30일까지 |
| 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br>→<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br>→<br>기획재정부 장관 |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4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 | | |

자료:「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이러한 예산안 편성 절차를 두는 것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R&D 과제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조정하여 중복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 중장기 R&D 전략 또는 자문회의에서 설정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기초·응용·사업화 등 전 주기에 걸친 R&D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함임.

일단, 이 사업은 우선 AI 및 로봇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제조 및 효능 검증을 위한 핵심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임.[10)]

그러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2025년 6월 23일로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6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어,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적인 수요조사 및 전문가 위원회만 거친 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신약개발 및 차세대 모달리티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고, 해외 의약품 제조 서비스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한 편성이 필요하였다는 입장임.

하지만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편성의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부처 단위에서 독자적인 신규 R&D 과제가 추진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및 조정에 있어

10) 이 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2029년까지 연구가 수행되므로 연도로 계산하면 5년이 소요되지만,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는 불확실함)

효율성·전문성·정합성 확보라는「과학기술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만약 이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될 경우 보다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세출증액>

## 3. 지역산업위기대응(신규): 보전금리 적정성 검토 및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은 산업위기지역의 위기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차보전(중소·중견기업), 기업지원(기술 고도화·사업화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36억 6,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11)]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지역산업위기대응 | - | - | - | 3,665 | 3,665 | 순증 |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이고, 위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질금리를 낮춰 기업의 이자부담 완화 등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등 13억 4,000만원과 산업위기극복을 위해 지자체·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출연금 등 23억 2,500만원이 계획됨.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36억 6,500만원 |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 13억 4,000만원<br>가. 이차보전(이차보전금 320-05) : 11억 4,000만원<br>· 대출원금 1,140억원×3.0%p보전×4/12개월<br>나. 기관운영출연금(350-01) : 2억원<br>· 이차보전사업 지원기업 신청접수·평가·관리, 현장실태 조사 등 사업운영비 |

11) 세부사업: 지역산업위기대응(3362-357)(지역경제정책관)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 ㅇ 맞춤형 지원 : 23억 2,500만원<br>가. 기업지원 (사업출연금 350-02) : 22억 5,000만원<br>· 기술고도화지원 : 13억 5,000만원<br>· 사업화지원 : 4억 5,000만원<br>· 컨설팅 : 4억 5,000만원<br>나. 기관운영출연금(350-01) : 7,500만원<br>· 기업지원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집행·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운영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차보전 지원 내역사업에서 기업 유형과 무관하게 3.0%p로 설정된 보전금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설정하였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내역사업은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분야와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하여 3.0%p의 보전금리를 지원하는 것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내역사업 세부계획]

ㅇ 대상: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분야(전후방 포함) 중소·중견기업
ㅇ 한도/금리: 기업당 5억원(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3.0%p
ㅇ 요건: 신규 대출(대환대출 제외)에 대해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31일까지 이차보전 지원
* (예) 여수(지정기간: 2025.5.1.~2027.4.30.) 중소기업이 2027.2.28일에 신규대출한 경우 10개월 분의 (2027.3~12월) 이차보전(이후 지원종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적용되는 대출이자율 중 3.0%p를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수요기업은 나머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됨을 의미함.

이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높여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금리를 최대한 흡수하려 하고, 수요기업은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보전금리를 제외한 부분만 부담하므

로 높은 대출금리에 둔감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용할 때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에 수행한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에서는 보전금리가 5.5%p였으나, 실제 이루어진 541건의 대출 중 246건(45.5%)의 대출금리가 6.0%를 초과하였고, 최대 대출금리는 9.04%로 나타났던 사례가 있음.[12)13)]

[2024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대출금리 분포 현황]

(단위: 건)

| 합계 | 대출금리 | | | | | |
|---|---|---|---|---|---|---|
| | 4.0~5.0 | 5.0~6.0 | 6.0~7.0 | 7.0~ | 최솟값 | 최댓값 |
| 541 | 3 | 292 | 208 | 38 | 4.71% | 9.0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또한 이 사업은 기업유형별 구분 없이 보전금리가 3.0%p로 설정되어 타 이차보전 사업에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전금리에 비해 지원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수행 이차보전사업 보전금리 현황]

| 사업명 | 대출건수 | 평균 대출금리 | 보전금리 |
|---|---|---|---|
| 친환경차 보급촉진 위한 이차보전 | 37건 | 5.49% | **중소기업 2.0%p**<br>**중견기업 1.5%p**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 | - | - | 대기업 2.0%p<br>**중견기업 2.75%p**<br>**중소기업 3.0%p** |

주)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높은 보전금리와 도덕적 해이가 결합하는 경우 그 수혜가 금융기관에 귀결되어 지역산업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사업목적이 금융기관의 수익 증대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12) 일반회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3174-412), 2024년도 예산액 130억원

13)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도 R&D 예산액 감액 이후 R&D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일괄 3.0%p의 보전금리를 기업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설정하였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4]

14)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인 중견기업 비율이 10% 미만으로써, 그 비율이 25%에 달하는 친환경차 이차보전 사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전금리에 차등을 두지 않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화 지원이 홍보 및 마케팅 중심의 간접적 지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매출 창출 및 시장 진입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지원 이후 실제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화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맞춤형 지원 내역사업은 기업 수요조사 및 검토 후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래 표에 제시된 기업지원의 종류를 참고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기술적, 사업화 측면에서의 기업지원 종류]

| 구 분 | 지원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 생산제품 및 R&D 제품 보완, 신제품 개발(사업다각화 등), 제품 공정개선 등을 위한 재료구입, 금형제작, 가공비용 등 지원 |
| | 제품 고도화 |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고도화 업그레이드 제작 지원 |
| | 특허 및 인증 취득 지원 | 국내외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br>물품, 제품, 공정, 경영, 사업다각화 분야 등 관련 국내외 규격/인증지원 |
| | 설계/해석 및 디자인 지원 | 제품 2D 설계, 3D 모델링 및 제품디자인 지원 등 |
| | 장비활용 지원 | 위기업종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활용 연계 |
| | 기술이전 확산 | 기술이전 정보 발굴·분석,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유망상품의 사업화 촉진 |
| 사업화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br>(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비 등) |
| | 시장정보 조사 지원 |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시장 정보 조사비 및 분석 자료비 지원 |
| | 마케팅 지원 | 홍보물, 홍보동영상, 회사/제품 소개 자료 등 제작비용 지원,<br>기업맞춤형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지원 |
| | 바이어 초청 지원 | 유력 바이어 초청 및 방문지원(항공료, 숙박비 및 교통비, 행사장 임차비, 통역비 등) |
| 컨설팅 | 사전컨설팅 |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현장방문형 맞춤형 컨설팅 |
| | 심화컨설팅 | 현장방문 기술자문 및 지도, 기업기술로드맵 작성지원 |

주) 해당 자료는 '맞춤형 지원 내역사업'의 세부계획이 아닌, 기업지원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예시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중 사업화지원의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시장정보 및 분석 자료비 지원, 홍보물 등 제작비용 지원, 유력 바이어 초청을 위한 항공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화 지원은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세부 프로그램은 홍보 또는 마케팅 중심의 간접지원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사업화 지원이 내실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제품 고도화, 초기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사업화 추진과 연결되는 지원이 보다 적절할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이후 실제 시장에 진입 여부, 납품 계약 체결 실적 및 매출 창출 등 정량화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이 단기적인 마케팅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 <지출증액>

## 4.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신규): 기존 사업의 인프라를 적극 참고하여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3,261억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전력효율향상 | 163,374 | 163,374 | 104,329 | 104,329 | 430,432 | 326,103 | 312.6 |
|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 - | - | - | - | 326,103 | 326,103 | 순증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변경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만건의 예측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1건당 12만 9,000원(평균)씩 총 3,100억원의 환급금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고객센터 및 서류 검토 등 161억 300만원의 운영비가 계획됨.

15) 세부사업: 전력효율향상(5145-302)(에너지정책실)

[2025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 3,261억 300만원 | ○ 민간경상보조(320-01) : 3,261억 300만원<br>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사업비 및 운영비<br>- 사업비: 12.9만원/건 * 241만건 = 3,100억원<br>- 환급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 161억 300만원<br><br>* 시스템 개발(55억원), 고객센터 운영(45억원), 신청서류 검토(50억원), 제수수료 및 홍보비용(11억 300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이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대상인 총 40개 품목 중 1~5등급 제도가 적용되는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품목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하되 개인별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2025년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5년(재원 소진시까지)
-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 받으며, 환급은 신청 순으로 처리됨

ㅇ 운영체계: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 한국에너지공단(사업운영)

ㅇ 환급대상: 전 국민

ㅇ 환급규모: 대상 품목 구매가격의 10% (개인별 30만원 한도)

ㅇ 지원품목: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대상인 총 40개 품목 중 1~5등급 제도 적용 중인 11개 품목

| 품 목 | | 등급 | 적용기준일 | 품 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
| 1. 냉장고 | | 1 | 2018.4.1 | 7. 공기청정기 | 1 | 2018.1.1 |
| 2. 김치냉장고 | | 1 | 2017.7.1 | 8. TV | 1 | 2018.1.1 |
| 3. 에어컨 | 벽걸이 | 1 | 2018.10.1 | 9. 제습기 | 1 | 2016.10.1 |
| | 그 외 | 1~3 | | | | |
| 4. 세탁기 | 일반 | 1~2 | 2018.7.1 | 10. 의류건조기 | 1 | 2020.3.1 |
| | 드럼 | 1 | | | | |
| 5. 전기밥솥 | | 1 | 2018.4.1 | 11. 식기세척기 | 1 | 2025.1.1 |
| 6. 진공청소기(유선) | | 1~3 | 2019.1.1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으로 편성된 시스템 개발 및 행정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 사업의 인프라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전제품 환급신청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55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도 신청서류 검토 50억원, 고객센터 운영 45억원 및 수수료와 홍보비용에 1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는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 사업을 별도의 신청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 개발 및 고객센터를 운용함에 있어 한국전력공사가 운영 중인 플랫폼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전력공사가 운영 중인 플랫폼을 살펴보면, 대상자 확인 등 사업신청부터 지원품목 확인, 부정청구에 대한 조치, 고객센터 등의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16]

[한국전력공사가 운영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 홈페이지]




자료: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자체자금으로 수행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 사업은 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번 환급 사업과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 품목은 동일함.

16) 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한국전력공사 수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5년 2월 17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2025년 사업 조기 종료)

ㅇ 환급대상: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

ㅇ 환급규모: 125억 2000만원

|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 | 지원비율 |
|---|---|
|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30% 환급(30만원 한도) |
| 3자녀 이상 가구,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 15% 환급(30만원 한도) |

ㅇ 지원품목: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대상인 총 40개 품목 중 1~5등급 제도 적용 중인 11개 품목

| 품 목 | | 등급 | 적용기준일 | 품 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
| 1. 냉장고 | | 1 | 2018.4.1 | 7. 공기청정기 | 1 | 2018.1.1 |
| 2. 김치냉장고 | | 1 | 2017.7.1 | 8. TV | 1 | 2018.1.1 |
| 3. 에어컨 | 벽걸이 | 1 | 2018.10.1 | 9. 제습기 | 1 | 2016.10.1 |
| | 그 외 | 1~3 | | | | |
| 4. 세탁기 | 일반 | 1~2 | 2018.7.1 | 10. 의류건조기 | 1 | 2020.3.1 |
| | 드럼 | 1 | | | | |
| 5. 전기밥솥 | | 1 | 2018.4.1 | 11. 식기세척기 | 1 | 2025.1.1 |
| 6. 진공청소기(유선) | | 1~3 | 2019.1.1 | | | |

자료: 한국전력공사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화면의 문구, 항목, 배너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가전제품 모델번호로 에너지효율등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연계하는 등 협업을 통해 시스템 개발비의 일부는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신청서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및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조치를 이미 설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한 이력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기존 한국전력공사의 운영 경험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수행 후 생산자 측면 뿐만 아니라 수혜자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 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과와 한계 및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된 전례가 있는데, 2019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자금과 합하여 300억원의 예산 중 259억 3,800만원을 환급하고, 2020년에는 제1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0억원의 예산 중 2,840억 3,800만원을 환급하였음.[17)]

[2019~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추진실적]

| 구분 | 예산 | 실적 |
|---|---|---|
| 2019년 | 300억원<br>(전력기금 178억원, 한전 122억원) | ㅁ 1차 (2019.8.~10.)<br>ㅇ 지원대상: 복지할인가구<br>ㅇ 환급비율/한도: 10% / 20만원 (가구별)<br>ㅇ 지원건수: 14,261건<br>ㅇ 환급금액: 16억 2,000만원 |
| | | ㅁ 2차 (2019.11.~12.)<br>ㅇ 지원대상: 전 국민<br>ㅇ 환급비율/한도: 10% / 20만원 (개인별)<br>ㅇ 지원건수: 19만 6,605건<br>ㅇ 환급금액: 243억 1,800만원 |
| 2020년 | 3,000억원<br>(제1회 추경 1,500억원,<br>제3회 추경 1,500억원) | ㅇ 지원대상: 전 국민<br>ㅇ 지원건수: 220만 6,357건<br>ㅇ 환급비율/한도: 10% / 30만원 (개인별)<br>ㅇ 환급금액: 2,840억 3,800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2019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채택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 수행된 이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는 크게 이하 3가지로 요약됨.[18)]

17) 이를 통한 가전제품 구매액은 총 3조 237억 7,900만원으로 나타났고, 국내 주요 가전업체 7곳은 사업 시행기간(2020년 4월 ~ 2020년 10월) 동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배 증가(1조 8,715억원 → 4조 1,58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18) 구체적인 결과는 본 검토의견 <별첨> 참조

[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의 경제적 효과]

| 연번 | 경제적 효과의 구체적 내용 |
|---|---|
| 1 | 상위 2개 가전제품 제조사의 판매액이 이 사업을 통한 전체 가전제품 판매액의 81.5%를 차지함 |
| 2 | 대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실적이 전체 건 중 65.6%, 전체 금액 중 80.0%임 |
| 3 | 대기업 제품 생산에 투입된 중소협력사들의 수혜를 고려할 때, 중소 및 중견기업이 얻은 실질적인 혜택은 실질 수혜규모 중 64.1%로 과반임 |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은 향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한계를 환류하기 위함인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지원조건 및 대상은 2020년과 거의 모든 측면에서 유사함.[19)]

따라서 2020년 수행하였던 사업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번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조사의 방향을 넓히고 이를 차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에 이루어진 조사는 생산자 측면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소비자 혜택의 귀착 또는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결과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우선, 소비자 혜택의 귀착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고효율 가전제품은 고가 제품인 경우가 많아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구매 자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특히,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것처럼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반 소비자층의 조기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는 수혜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또한 이 사업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30만원을 한도로 책정하고 있어, 한 가구 내에서 복수의 신청자가 존재할 경우 사실상 중복지원이 가능한 구조임. 이는 제도상 불법은 아닐지라도, 경제적 혜택이 역진적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측면이 있음.

19) 이번 추경에는 2020년과 달리 지원대상 가전제품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추가되었으며, 그 외 모든 조건 및 지원대상이 동일함.

다음으로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업과 같은 현금성 환급 방식의 사업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사후 검증체계가 미흡할 경우 부정수급, 중복 환급, 불법 리베이트 등 악용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환수 조치가 곤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을 수행한 이후, 가전제품 제조사 측면 뿐만 아니라 수혜자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과와 한계 및 형평성 문제를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별첨: 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요약>**

① 가전제품 제조사 중 상위 2개사에 대한 환급액이 총 2,289억 6,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0.6%를 차지하는데, 상위 2개사의 가전제품 판매액은 2조 4,658억원으로 이는 이 사업을 통한 가전제품 판매액 3조 238억원의 81.5%를 차지하였음.

[2020년 환급실적 상위 2개사에 대한 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제조사 | 환급건수 | 환급금액 | 동 환급사업을 통한 가전제품 구매액 |
|---|---|---|---|
| A | 762,858 | 116,891 | 1,236,209 |
| B | 679,663 | 112,072 | 1,229,602 |
| 합계 | 1,442,521 | 228,963 | 2,465,811 |
| 2020년 전체 | 2,206,357 | 284,038 | 3,023,8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품목별 및 기업규모별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대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65.6%, 금액 기준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순으로 환급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2020년 품목별 및 기업규모별 환급실적]

(단위: 건, 백만원)

| 품목 | 대기업 | | 중견 · 중소 | | 합 계 | |
|---|---|---|---|---|---|---|
| | 환급건수 | 환급금액 | 환급건수 | 환급금액 | 환급건수 | 환급금액 |
| 냉장고 | 339,327 | 72,742 | 33,932 | 1,531 | 373,259 | 74,273 |
| 김치냉장고 | 103,760 | 21,252 | 156,057 | 23,169 | 259,817 | 44,421 |
| 에어컨 | 89,856 | 19,932 | 124,223 | 13,390 | 214,079 | 33,322 |
| 일반세탁기 | 162,244 | 12,950 | 6,211 | 296 | 168,455 | 13,246 |
| 드럼세탁기 | 283,127 | 43,782 | 1,037 | 141 | 284,164 | 43,923 |
| 냉온수기 | 16,189 | 1,778 | 8,572 | 943 | 24,761 | 2,722 |
| 전기밥솥 | - | - | 290,562 | 9,925 | 290,562 | 9,925 |
| 진공청소기(유선) | 29,022 | 585 | 941 | 31 | 29,963 | 616 |
| 공기청정기 | 10,454 | 1,028 | 17,012 | 809 | 27,466 | 1,837 |
| TV | 245,397 | 34,364 | 36,939 | 1,210 | 282,336 | 35,574 |
| 제습기 | 46,018 | 2,306 | 83,930 | 3,168 | 129,948 | 5,474 |
| 의류건조기 | 121,547 | 18,705 | - | - | 121,547 | 18,705 |
| 합 계 | 1,446,941 | 229,425 | 759,416 | 54,613 | 2,206,357 | 284,03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③ 대기업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소협력사들의 수혜도 상당히 발생하였는데, 대기업 제품 구매액 2조 4,704억 8,200만원 중 1조 3,834억 7,000만원(56.0%)이 중소협력사가 얻은 수혜규모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제품판매액과 합하면 중소 및 중견기업이 얻은 실질적인 혜택이 1조 9,368억원(64.1%)으로 측정되었음.

[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 수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 대기업 제품 구매 | | | 중소·중견 제품구매 | 중소·중견기업 실질적 혜택 |
|---|---|---|---|---|---|---|
| | | 대기업 | 중소협력사 | 계 | | |
| 매출 원가 | 비중 | 35.9 (44%) | 45.8 (56%) | 81.7 (100%) | 18.3 | **64.1** |
| | 금액 | 1,087,012 (44%) | 1,383,470 (56%) | 2,470,482 (100%) | 553,297 | **1,936,76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위법 및 부적정 대출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가. 개 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중 ‘생산 및 시설자금’ 내역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시설 및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0억원(30.8%) 증액된 4,243억원이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 369,280 | 369,280 | 326,300 | 326,300 | 426,300 | 100,000 | 30.6 |
| 생산 및 시설자금 | 361,280 | 361,280 | 324,300 | 324,300 | 424,300 | 100,000 | 30.8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변경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태양광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됨.

[2025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당초 |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
|---|---|---|---|
| 금액 | 산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 3,243억원 | ○ 기타 민간융자금(450-04) : 3,243억원<br>가. 태양광 시설자금(2,323억원)<br>· 12억 4,100만원/MW × 234MW (목표량) × 80%(평균융자율)<br>나. 풍력 및 기타 시설자금(생산자금 포함) (920억원) | 4,243억원 | ○ 기타 민간융자금(450-04) : 4,243억원<br>**가. 태양광 시설자금(3,323억원)**<br>**· 12억 4,100만원/MW × 334.7MW (목표량) × 80%(평균융자율)**<br>나. 풍력 및 기타 시설자금(생산자금 포함) (920억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에너지정책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할 계획임.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300억원을 한도로 하여 태양광 분야의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개요]

○ 융자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3년물 국고채 대표금리-1.25%p)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

○ 지원내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

<table>
<tr><th colspan="2">자금 용도</th><th>지원내용</th><th>사업자당<br>지원한도</th><th>총사업비 대비<br>지원비율 한도</th></tr>
<tr><td rowspan="4">시설<br>자금</td><td>풍력 분야</td><td rowspan="4">발전설비 설치 자금(발전소 등)<br><br>- 태양광분야 지원대상<br>(상시) RE100, 마을태양광<br>(정기) 산업시설·도심·농어촌지역</td><td>750억원</td><td rowspan="5">· 개인·협동조합, 중소기업 : 75%<br><br>· 중견기업 : 55%<br><br>· RE100 대기업 : 35%</td></tr>
<tr><td>태양광 분야</td><td>300억원</td></tr>
<tr><td>바이오 분야</td><td>100억원</td></tr>
<tr><td>기타 에너지원</td><td>150억원</td></tr>
<tr><td colspan="2">생산 자금</td><td rowspan="2">발전설비 생산시설<br>설치에 필요한 자금</td><td>300억원</td></tr>
<tr><td colspan="2">바이오 분야</td><td>100억원</td></tr>
<tr><td colspan="2">운전자금</td><td>발전설비 생산 중소기업<br>사업 운영 자금</td><td>10억원</td><td></td></tr>
</table>

○ 소요예산: 1,000억원(4,242억원(예측 수요) - 3,243억원(2025년 본예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이 사업에서 위법 또는 부적정 대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업체의 자격요건 및 대출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함께 지원 대상 시설의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도 대출 목적 외 유용 및 허위설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이 2018~2022년(5년) 약 12조원이 투입되었으나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2022년(1차) 및 2023년(2차)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음.

추진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사유로 위법 또는 부적정 대출을 받았음을 발표하였고,[21] 그 결과 총 6,745억원(1차 1,847억원, 2차 4,898억원)이 위법하고 적절하지 못한 대출로 확인되었음.

[2022~2023년 1·2차 점검 결과 위법 및 부적정 대출 금액]

(단위: 억원)

| 사업명(위반 및 부적정 사유) | 1차 | 2차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불법계약 및 하도급)** | **1,847** |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허위세금계산서 등)** | **-** | **4,898**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보조금 부정수급 등) | 327 | 574 |
| 전력분야 R&D | - | 266 |
| 기타 | 442 | 86 |

자료: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보도자료(2022.9.13. 및 2023.7.3.)

위반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가짜 세금계산서로 발전설비 비용을 부풀려서 신청한 사례, ②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음에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하여 태양광 설치를 명목으로 대출받은 사례, ③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고 지원받은 사례 및 ④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허위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 신청한 사례로 구분됨.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1,000억원은 태양광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금인데, 2022년 1차 점검결과 적발된 1,129건 중 99.7%인 1,126건이 태양광 설치 관련 대출 사례라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21) 2019~2021년 간 대출받은 6,607건의 전체 사례에 대하여 대출금 총 1조 1,325억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설치업체의 자격요건 및 대출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함께 지원 대상 시설의 현장확인 및 서류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도 대출 목적 외 유용 및 허위설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9조 4,10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14억원(△0.9%) 감소함.

예산은 2,70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반면, 기금은 9조 1,40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814억원(△0.9%) 감소함.[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2,135 | 2,708 | 2,708 | 2,708 | - | - |
| 기 금 | 82,253 | 92,214 | 92,214 | 91,400 | △814 | △0.9 |
| 합 계 | 84,688 | 94,922 | 94,922 | 94,108 | △814 | △0.9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21조 66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905억원(4.9%) 증가함.

예산은 4조 21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0억원(2.0%) 증가하고, 기금은 17조 442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9,125억원(5.7%)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35,004 | 36,372 | 39,438 | 40,218 | 780 | 2.0 |
| 기 금 | 117,205 | 116,116 | 161,317 | 170,442 | 9,125 | 5.7 |
| 합 계 | 152,209 | 152,488 | 200,755 | 210,660 | 9,905 | 4.9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70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1,952 | 2,498 | 2,498 | 2,498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3 | 210 | 210 | 210 | - | - |
| 합계 | 2,135 | 2,708 | 2,708 | 2,708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9조 7,551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405억원(9.4%)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61,936 | 61,716 | 84,641 | 93,046 | 8,405 | 9.9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731 | 357 | 357 | 357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931 | 4,148 | 4,148 | 4,148 | - | - |
| 합계 | 66,598 | 66,221 | 89,146 | 97,551 | 8,405 | 9.4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27조 4,63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9,119억원(3.4%)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조 7,09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6,500억원(5.4%) 증가하고, 기술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3조 3,780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조 3,75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619억원(2.4%)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114,101 | 115,595 | 120,595 | 127,095 | 6,500 | 5.4 |
| 기술보증기금 | 31,543 | 33,080 | 33,780 | 33,780 |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75,085 | 70,860 | 111,136 | 113,755 | 2,619 | 2.4 |
| 합계 | 220,729 | 219,535 | 265,511 | 274,630 | 9,119 | 3.4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조 7,524억 6,000만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조 8,030억 6,0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8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2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해 AI트랙을 신설하는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2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한편, 창업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 지원을 통해 딥테크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도록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하고, 핵심 도메인 AI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 공공기관 등 혁신 주체와 AI 스타트업 간 AX 협업을 추진하고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증액하는 등 창업사업화지원에 총 540억원을 증액하였음.

AI·반도체 산업 등 초격차 10대 분야 영위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을 2,000억원 추가 반영하고, 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확용 확산을 위해 재도약촉진(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지자체 주도 하에 기업과 협업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도입 및 확산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AI 등 딥테크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음.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에 2,813억원을 증액하여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및 저리 특례보증 전환과 폐업기업의 분할상환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원상복구비 상한을 확대 지원하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171억원 등 소상공인재기지원에 263억원을 증액하고,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점포에 필요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에 5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2개(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3,737,602 | 3,624,508 | 5,637,211 | 6,477,741 | 840,530 | 14.9 |
| 1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219,054 | 236,076 | 262,923 | 286,923 | 24,000 | 9.1 |
| 2 | 창업사업화지원 | 359,131 | 403,567 | 403,567 | 457,567 | 54,000 | 13.4 |
| 3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 *1,524,368* | *1,457,941* | *1,457,941* | *1,907,941* | *450,000* | *30.9* |
| 4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 *1,635,049* | *1,526,924* | *3,512,780* | *3,825,310* | *312,530* | *8.9*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2,509,359 | 2,177,349 | 2,177,349 | 2,827,349 | 650,000 | 29.9 |
| 5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2,047,800 | 1,635,800 | 1,635,800 | 1,835,800 | 200,000 | 12.2 |
| 6 | 재도약촉진 | 11,559 | 41,549 | 41,549 | 91,549 | 50,000 | 120.3 |
| 7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450,000 | 500,000 | 500,000 | 900,000 | 400,000 | 8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441,278 | 597,931 | 980,756 | 1,293,286 | 312,530 | 31.9 |
| 8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125,354 | 210,940 | 544,377 | 825,646 | 281,269 | 51.7 |
| 9 | 소상공인재기지원 | 179,594 | 274,806 | 324,194 | 350,455 | 26,261 | 8.1 |
| 10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 136,330 | 112,185 | 112,185 | 117,185 | 5,000 | 4.5 |
| 합계 | | 6,688,239 | 6,399,788 | 8,795,316 | 10,598,376 | 1,803,060 | 20.5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506억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1개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재도전특별자금의 신청 저조로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에서 500억원을 감액하였음.

총지출에 제외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은 정책자금 감액과 연동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로 이에 따른 이자 납부금액도 6억원 감액하였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4,235,056 | 4,353,056 | 4,860,556 | 4,809,956 | △50,600 | △1.0 |
| 1 | 소상공인지원(융자) | 3,710,000 | 3,770,000 | 4,270,000 | 4,220,000 | △50,000 | △1.2 |
| 2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525,056* | *583,056* | *590,556* | *589,956* | *△600* | *△0.1* |
| 합계 | | 4,235,056 | 4,353,056 | 4,860,556 | 4,809,956 | △50,600 | △1.0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AI·딥테크 분야 펀드 확대는 시의적절하나,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 시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의 단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일반회계 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종전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및 이차보전 사업들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저조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설계하고 장기·저금리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은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책자금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상환연장 심사·현장실사의 지체로 인해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후속사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 가. 개 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0억원(9.1%) 증액된 1,429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내역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증감률 (B-A)/A |
| 창업사업화 지원 | 377,656 | 403,567 | 403,567 | 457,567 | 54,000 | 13.4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 103,096 | 130,996 | 130,996 | 142,996 | 12,000 | 9.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딥테크 분야[4)]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초격차 분야 중에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우량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화자금 등 창업자금과 R&D 지원,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함.[5)]

---

3)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5132-401)(창업정책관)

4) 딥테크(deep tech) 분야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로서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술분야를 의미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 등이 있음.

이 사업은 그 중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창업 후 10년이 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우량 기업에게 매년 2억원(평균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종료 후에는 매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추가 후속지원도 제공함. 특히 다른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직접적인 사업화자금 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수출바우처 등 다른 창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심사 간소화 및 가점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연계지원하고 있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 개요]

○ (개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내 스타트업
○ (지원실적) 2025년 669개사 (①AI 등 핵심 분야 90개사 + ②10대 분야 579개사)

| 구분 | | 2025년 | |
|---|---|---|---|
| | | 물량(개사) | 예산(백만원) |
| ①AI 등 핵심 분야 | AI 스타트업 | 30 | 3,900 |
| | 팹리스 스타트업 | 30 | 8,400 |
| | 대기업 링크업 | 30 | 6,000 |
| | 소계 | 90 | 18,300 |
| ②10대 분야 (기본+후속) | 기본 | 549 | 97,722 |
| | 후속 | 30 | 15,000 |
| | 소 계 | 579 | 112,722 |
| 총계 | | 669 | 130,996 |

○ (추진체계) 총 3단계로 지원, 단계별 평가를 통해 매출액 등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상위 10% 이내 스타트업은 다음 단계 지원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자금 및 연계 지원

| 구 분 | | 지원 내용 |
|---|---|---|
| ①핵심분야 (Pre-초격차) | | ※ 기술사업화 지원<br>(기술사업화) AX, 팹리스 분야 1년간 평균 1.9억원 특화 지원<br>(링크업) 바이오 등 4개 분야 1년간 최대 2억원 개방형 혁신 지원 |
| ②10대 분야 (초격차+Post) | | ※ 기술사업화 지원 + 정책자금 등 연계 지원 |
| | 기본 | (기술사업화) 3년간 최대 6억원 (R&D) 2년간 최대 6억원<br>* 정책자금, 보증, 펀드, 수출 등 연계 지원 |
| | 후속 | (스케일업 사업화) 2년간 최대 10억원<br>* 기본 지원 스타트업 중 매출 등에서 우수 성과 달성 기업 대상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동 사업은 2020~2022년 ‘BIG3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사업’,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분야) 사업’,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지원분야가 각각 3개, 5개, 10개로 확대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공지능 전환(AX)와 관련하여 핵심 AX 도메인 스타트업 50개사, 범용적으로 활용성 높은 과제에 대한 AX 컨소시엄 40개사, 국내 LLM 관련 기업 및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는 AI 링크업 30개사에 대해 1개사 당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의 AX 스타트업 육성 관련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①도메인 AX | 경제·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메인(바이오, 금융, 스마트 농업 등) AX 스타트업 특화 지원(50개사, 총 50억원) |
| ②AX 컨소시엄 | 기업, 언론 등 다양한 도메인 기업 간 체결한 범용 활성이 높은 AX 컨소시엄 과제 선별, 사업화 지원(40개사, 총 40억원) |
| ③AI 링크업 | 국내 LLM 활용 B2B 협업 및 글로벌 대기업 등과 AX 스타트업 간 특정 제품 등에 버티칼 AI 탑재 협업 등 추진(30개사, 총 30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309억 9,600만원 | ◦ 민간보조금(320-01): 1,309억 9,600만원<br>- 기술사업화자금 (1,126억 9,600만원)<br>· 기본지원 1억 7,800만원 x 549개사 = 976억 9,600만원<br>· 후속지원 5억원 x 30개사 = 150억원<br>- 핵심 분야 특화지원프로그램(183억원)<br>· AI 스타트업 1억 3,000만원 x 30개사 = 39억원<br>· 팹리스 스타트업 2억 8,000만원 x 30개사 = 84억원<br>· 대기업 등 협업 2억원 x 30개사 = 60억원 | 1,429억 9,600만원 | ◦ 민간보조금(320-01) : 1,429억 9,600만원<br>- 기술사업화자금 (1,126억 9,600만원)<br>· 기본지원 1억 7,800만원 x 549개사 = 976억 9,600만원<br>· 후속지원 5억원 x 30개사 = 150억원<br>- 핵심 분야 특화지원프로그램 (183억원)<br>· AI 스타트업 1억 3,000만원 x 30개사 = 39억원<br>· 팹리스 스타트업 2억 8,000만원 x 30개사 = 84억원<br>· 대기업 등 협업 2억원 x 30개사 = 60억원<br>- 인공지능 대전환(AX) 스타트업 전략 육성(120억원)<br>· 핵심 AX 도메인 스타트업 육성: 1억원 x 50개사 = 50억원<br>· AX 컨소시엄 지원 : 1억원 x 40개사 = 40억원<br>· AI 링크업(협업): 1억원 x 30개사 = 30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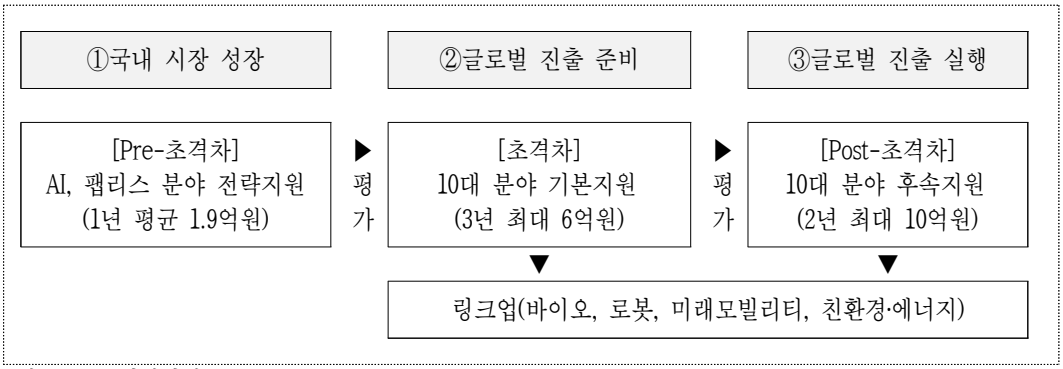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하반기 AX 스타트업 및 컨소시엄 등의 지원사업 종료 후 우수 기업에 대하여 2026년 후속 지원사업 연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개편하면서, ① AI·팹리스 분야 등 핵심분야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 창업기업을 1년간 지원하고, ② 이후 기존 10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3년간 최대 6억원 지원하며, ③ 우수기업에 대해 후속지원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 지원하고 있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개요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상반기 핵심 분야 특화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I 스타트업 30개사를 선정하여 각 1억 3,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도메인 AX 분야 경쟁률은 53.8:1, AX 컨소시엄 분야 경쟁률은 9.3: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6)]

[2025년도 본예산 AI 스타트업 관련 핵심 분야 특화 지원프로그램 개요]

| 구 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
| 도메인 AX | sLLM, 제조, 바이오, 콘텐츠 등 고성장 4대 분야 AX 스타트업 선발 및 기술사업화자금 등 특화지원 | 5개사<br>(6억 5,000만원) |
| AX 컨소시엄 | 기업, 언론 등 다양한 도메인 기업 간 체결한 범용 활성이 높은 AX 컨소시엄 과제 선별, 사업화 지원 | 15개사<br>(19억 5,000만원) |
| 지역 산업<br>AX 프로젝트 |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기술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프로젝트 협업 지원 | 10개사<br>(13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지역 산업 AX 프로젝트는 2025년 2~5월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부터 AI 협업 과제 수요 발굴에 2~3개월이 소요되어 6월 19일 사업이 공고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사업수요가 많아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분야에 대해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진행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신청수요를 고려할 때 집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에 이미 한 차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추경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즉시 사업공고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함. 또한 신규사업인 AI 링크업 분야도 국내 LLM 대기업과 사전에 협업과제를 발굴함에 따라 즉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임.

다만 이 사업은 핵심분야 지원, 10대 분야 기본 지원, 10대 분야 후속 지원 순으로 기존 지원의 종료 후 우수기업에 대해 다음 지원 단계의 패키지 지원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2025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 사업 종료 후 우수기업에 대해 2026년 10대 분야 기본 지원이 가능한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음.[7)]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 지원 우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2025년 말 사업이 종료되어 2026년 1월까지 우수기업 선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AX 스타트업 및 컨소시엄 등에 대한 증액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내 지원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신속히 사업을 공고하는 등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연말 지원사업 종료 및 차년도 우수기업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단순 사업화자금 보조금 지원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및 수출바우처 연계지원 등 창업기업에 대한 복합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계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계지원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503개 지원 기업 중 정책자금 융자 지원기업은 73개사(14.5%), 기술보증 지원기업은 199개사(39.6%) 및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은 79개사(15.7%)로, R&D 지원을 제외한 연계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7) 참고로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10대 분야 기본 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하였음.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 구 분 | 전체 지원기업 (A) | 정책자금 융자 | | | 기술보증 | | |
|---|---|---|---|---|---|---|---|
| | | 지원기업 (B1) | 지원율 (B1/A) | 평균 지원액 | 지원기업 (B2) | 지원율 (B2/A) | 평균 지원액 |
| 시스템반도체 | 66 | 3 | 4.5 | 300 | 24 | 36.4 | 1,233 |
| 바이오헬스 | 156 | 14 | 9.0 | 517 | 66 | 42.3 | 1,364 |
| 미래 모빌리티 | 91 | 22 | 24.2 | 978 | 35 | 38.5 | 1,164 |
| 친환경에너지 | 55 | 11 | 20.0 | 969 | 23 | 41.8 | 1,512 |
| 로봇 | 57 | 16 | 28.1 | 256 | 27 | 47.4 | 1,201 |
| 빅데이터・AI | 35 | 2 | 5.7 | 625 | 11 | 31.4 | 1,911 |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21 | 2 | 9.5 | 200 | 7 | 33.3 | 964 |
| 우주항공・해양 | 12 | 3 | 25.0 | 233 | 4 | 33.3 | 874 |
| 차세대원전 | 5 | - | - | - | 1 | 20.0 | 200 |
| 양자기술 | 5 | - | - | - | 1 | 20.0 | 1,235 |
| 계 | 503 | 73 | 14.5 | 458 | 199 | 39.6 | 1,308 |
| 구 분 | 전체 지원기업 (A) | R&D 지원 | | | 수출바우처 | | |
| | | 지원기업 (B3) | 지원율 (B3/A) | 평균 지원액 | 지원기업 (B4) | 지원율 (B4/A) | 평균 지원액 |
| 시스템반도체 | 66 | 50 | 75.8 | 432 | 9 | 13.6 | 31.6 |
| 바이오헬스 | 156 | 91 | 58.3 | 823 | 18 | 11.5 | 39.5 |
| 미래 모빌리티 | 91 | 59 | 64.8 | 928 | 12 | 13.2 | 33.8 |
| 친환경에너지 | 55 | 41 | 74.5 | 512 | 11 | 20.0 | 34.6 |
| 로봇 | 57 | 40 | 70.2 | 422 | 16 | 28.1 | 36.1 |
| 빅데이터・AI | 35 | 27 | 77.1 | 555 | 7 | 20.0 | 30.8 |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21 | 8 | 38.1 | 304 | 5 | 23.8 | 32.6 |
| 우주항공・해양 | 12 | 5 | 41.7 | 462 | 1 | 8.3 | 45.0 |
| 차세대원전 | 5 | 3 | 60.0 | 270 | - | - | - |
| 양자기술 | 5 | 3 | 60.0 | 424 | - | - | - |
| 계 | 503 | 327 | 65.0 | 5,132 | 79 | 15.7 | 35.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 창업패키지: 창업지원 관련 민간 컨설팅에 대한 지속적 점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창업패키지’** 사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0억원(25.9%) 증액된 2,04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창업패키지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증감률 (B-A)/A |
| 창업사업화 지원 | 377,656 | 403,567 | 403,567 | 457,567 | 54,000 | 13.4 |
| 창업패키지 | 188,560 | 162,255 | 162,255 | 204,255 | 42,000 | 25.9 |

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창업 이전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를 위한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되고, 각 단계별 사업화자금 및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8)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5132-401)(창업정책관)

[창업패키지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업력(예비, 초기, 도약) 기준으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체계 운영
- 예비창업패키지(창업이전)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 창업도약패키지(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과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투자유치 등)을 제공

[창업패키지별 업력 구분 및 사업화자금 지원액]

|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
|---|---|---|---|
| 업력 구분 | 창업 이전 | 업력 3년 이내 |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
| 최대 사업화자금 지원액 | 1억원 | 1억원 | 3억원 |
| 평균 사업화자금 지원액 | 5,000만원 | 7,000만원 | 1억 3,500만원 |

○ 추진절차:
- 모집공고(중기부) → 신청·접수(K-startup) → 평가·선정(주관기관·창진원) → 사업수행(창업기업) → 최종평가(주관기관·창진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딥테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딥테크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창업단계별로는 ①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82명에 대한 지원금 53억 5,000만원을, ②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222개사에 대한 지원금 206억 5,000만원을, ③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100개사에 대해 16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5년 창업패키지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622억 5,500만원 | ◦ 사업출연금(350-02): 1,622억 5,500만원<br>- 예비창업패키지 (490억원)<br>· 6,550만원 x 748명 = 490억원<br>- 초기창업패키지 (455억원)<br>· 9,300만원 x 490개사 = 455억원<br>- 창업도약패키지 (592억 5,500만원)<br>· 1억 6,000만원 x 373개사 = 592억 5,500만원<br>- 창업성장패키지 (85억원)<br>· 85억원 x 1식 = 85억원 | 2,042억 5,500만원 | ◦ 사업출연금(350-02): 2,042억 5,500만원<br>- 예비창업패키지 (543억 5,400만원)<br>·(일반) 6,550만원 x 748명 = 490억원<br>·(딥테크) 6,550만원 x 82명 = 53억 5,400만원<br>- 초기창업패키지 (661억 4,600만원)<br>·(일반) 9,300만원 x 490개사 = 455억원<br>·(딥테크) 9,300만원 x 222개사 = 206억 4,600만원<br>- 창업도약패키지 (752억 5,500만원)<br>·(일반) 1억 6,000만원 x 373개사 = 592억 5,500만원<br>·(딥테크) 1억 6,000만원 x 100개사 = 160억원<br>라. 창업성장패키지 (85억원)<br>· 85억원 x 1식 = 85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창업패키지에 대한 민간 컨설팅 등으로 인해 실제 창업의사가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간컨설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 도약기(창업 3~7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각종 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창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증액을 통해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에 대해 단계별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경기 진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이와 같이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패키지 선정을 위한 유료 컨설팅 및 과제 대행 등에 대해 문제시한 바 있고,[9][10]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통해 역량 있고 진정성 있는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해명한 바 있었음.[11]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험이 적은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과물을 도출하기 사실상 어려워 상대적으로 간략한 수준의 계획서 또는 성과물을 요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모두 갖추지 못한 예비창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외주용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우수사례 제공 또는 첨삭 등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제물까지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평가위원 신분을 활용한 컨설팅 홍보 등이 일부 플랫폼에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원자가 우수사례를 단순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업자의 컨설팅 또는 대리과제 수행 서비스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사업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2]

---

9) 한국경제, "수백만원 컨설팅 · 매출 뻥튀기…'진흙탕' 된 창업지원금 쟁탈전", 2024.3.6.

10) 전자신문, "컨설팅 받고 창업지원금 1억원 손쉽게... 브로커 다시 기승", 2024.10.24.

1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설명자료) 중기부는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통해 역량있고 진정성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4.3.7.

12)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위원 신분을 활용한 컨설팅 광고 모니터링 및 조치를 시작하는 한편,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를 '계획·설명'에서 '실행·검증' 중심으로 변경하여 브로커 개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평가위원 신분을 활용한 컨설팅에 대한 실태점검(2024.5.~6), 서약서를 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패키지 사업예산 증액 시 딥테크 유망 창업기업을 확대하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사업역량과 진실성 있는 사업태도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한편, 창업지원사업 관련 민간컨설팅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입(2024.7.~)하였고, 2025년에는 상시 신고채널 운영, 협업 캠페인, 서약서 근거 홍보물 삭제요청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반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함.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지출증액>

## 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병행 필요

### 가. 개 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4,000억원(80.0%)이 증액된 9,000억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 450,000 | 450,000 | 500,000 | 500,000 | 900,000 | 400,000 | 80.0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예산인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고, 민간자본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가 이루어지며, 자펀드는 조성 후 약 4년간 투자되고 5~8년간 운용된 후 청산됨.

2025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스타트업코리아, 지역펀드 등 8개 분야에 대해 5,0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은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신설) 2,400억원과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신설) 1,600억원을 합하여 4,000억원을 추가 증액하려는 것임.

13) 세부사업: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창업벤처혁신실)

[2025년 모태조합 출자 자펀드 분야별 출자계획]

(단위: 억원)

| 계정명 | 분야명 | 당초 계획 | 제2회 추경안 | 투자 내용 |
|---|---|---|---|---|
| 중진 | 스타트업코리아 | 1,500 | 좌동 | 초격차 10대 분야 관련 딥테크 스타트업, K-글로벌 등 |
| | 지역 | 2,000 | 좌동 | 지역혁신 기업, 규제자유특구 등 |
| | 글로벌 | 700 | 좌동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
| | M&A | 200 | 좌동 | 기업승계 등 M&A 목적 투자 |
| | 재도약 | 100 | 좌동 | 재창업기업, 사업전환기업 등 재도약 기업 지원 |
| | 여성기업 | 100 | 좌동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여성인 기업 등 |
| | LP 첫걸음펀드 | 200 | 좌동 |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투자자 등의 벤처투자 유도 |
| |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 **-** | **2,400** |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등** |
| |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 **-** | **1,600**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 |
| 청년 | 청년창업 | 200 | 좌동 | 대표이사가 만39세 이하인 청년기업 등 |
| 계 | | 5,000 | 9,000 (+4,000)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창업기업 200개사에 평균적으로 20억원을 투자하려는 것이고,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벤처기업 32개 사에 평균적으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투자 지원을 통해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및 스케일업 펀드 개요]

□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및 스케일업 펀드 개요

○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2,400억원

- (지원내용)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유망기업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유도함
- (산출근거) 2,400억원 = 기업당 평균 20억원 투자 × 200개사 × 60% 출자(자펀드 결성액 4,000억원)
  * AI융합 1,200억원, 딥테크 1,200억원

○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1,600억원

- (지원내용)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업 등을 선별[1] 하여 대규모 투자(기업당 평균 100억원)를 지원함**

1) NEXT UNICORN Pool : 딥테크·글로벌TIPS 성공기업, 초격차 1,000+ 선정기업, 아기·예비유니콘 등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VC가 추천한 우수기업

2) AI·딥테크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되, NEXT UNICORN Pool에 30% 이상 투자

- (산출근거) 1,600억원 = 기업당 평균 100억원 투자 × 32개사 × 50% 출자(자펀드 결성액 3,200억원)
  * AI융합 800억원, 딥테크 800억원

□ 추진일정(안)

○ 출자 공고(추경 통과 즉시) → 운용사 선정(8월) → 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11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AI·딥테크 분야 펀드 확대는 시의적절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 시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벤처투자의 자금원인 벤처펀드의 결성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부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합하여 811개 10조 5,550억원의 벤처펀드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2021년 17조 8,481억원의 59.1% 수준으로 202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0~2024년 벤처투자펀드 결성 실적]

(단위: 억원, 개)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대비(%) |
|---|---|---|---|---|---|---|
| 결성금액 | 99,859 | 178,481 | 176,401 | 130,328 | 105,550 | △19.0% |
| 벤처투자조합 | 68,645 | 95,490 | 110,634 | 68,031 | 57,571 | △15.4%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1,214 | 82,991 | 65,767 | 62,297 | 47,979 | △23.0% |
| 결성펀드 수 | 650 | 1,198 | 902 | 859 | 811 | △5.6% |
| 벤처투자조합 | 206 | 404 | 380 | 290 | 286 | △1.4%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44 | 794 | 522 | 569 | 525 | △7.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AI·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거나 벤처기업의 규모를 스케일업하기 위해 편성되었는데, AI·딥테크 분야의 벤처투자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지원 방향으로 사료됨.

2020~2024년 벤처투자회사·조합의 벤처투자금액을 살펴보면, 딥테크 10대 분야의 벤처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45.5%에서 2024년 54.8%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2020년 3,435억원에서 2024년 9,69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75.1%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2020~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금액]

(단위: 억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比 |
|---|---|---|---|---|---|---|
| 바이오 헬스케어 | 13,176 | 19,210 | 12,203 | 10,368 | 12,140 | 17.1% |
| AI | 3,435 | 7,087 | 5,802 | 5,536 | 9,694 | 75.1% |
| 클라우드·네트워크 | 1,833 | 6,979 | 6,495 | 4,647 | 6,927 | 49.1% |
| 시스템 반도체 | 1,323 | 3,552 | 3,450 | 4,033 | 6,441 | 59.7% |
| 친환경 기술 | 1,334 | 2,138 | 2,759 | 3,847 | 4,459 | 15.9% |
| 로봇 | 279 | 1,410 | 911 | 2,180 | 3,031 | 39.0% |
| 미래형 모빌리티 | 671 | 2,398 | 3,431 | 2,759 | 2,305 | △16.5% |
| 우주항공 | 227 | 627 | 1,352 | 887 | 1,708 | 92.5% |
| 양자기술 | 25 | 47 | - | 147 | 118 | △20.1% |
| 차세대원전 | - | - | - | - | 135 | - |
| 계(중복제거) | 19,591 | 34,876 | 30,020 | 27,168 | 36,324 | 33.7% |
| 벤처투자 내 비중 | 45.5% | 45.4% | 44.4% | 50.3% | 54.8% | - |
| 전체 벤처투자 규모 | 43,045 | 76,802 | 67,640 | 53,977 | 66,315 | 22.9%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I 분야 벤처투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인공지능 SW 개발 및 공급 분야에 185건 6,605억원, 인공지능 구축·관리 관련 정보서비스에 89건 3,880억원, 인공지능 연산·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 9건 1,655억원으로 총 249건 9,694억원을 투자하였음. 특히 2024년 벤처투자실적은 2023년 대비 건수로는 22%, 투자액으로는 75.1%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20~2024년 AI 분야 벤처투자 세부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比 |
|---|---|---|---|---|---|---|---|
| ❶ 인공지능 SW 개발 및 공급 | 금액 | 2,821 | 6,114 | 4,555 | 4,731 | 6,605 | 39.6% |
| | 기업 | 96 | 132 | 148 | 161 | 185 | 14.9% |
| ❷ 인공지능 구축·관리 관련 정보 서비스 | 금액 | 1,674 | 3,085 | 2,586 | 1,814 | 3,880 | 113.9% |
| | 기업 | 43 | 63 | 67 | 59 | 89 | 50.8% |
| ❸ 인공지능 연산·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 | 금액 | 91 | 761 | 392 | 423 | 1,655 | 290.9% |
| | 기업 | 3 | 5 | 3 | 7 | 9 | 28.6% |
| 계(중복제거) | 금액 | 3,435 | 7,087 | 5,802 | 5,536 | 9,694 | 75.1% |
| | 기업 | 122 | 165 | 194 | 204 | 249 | 22.1% |

주) AI 세부 분류는 2023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과기부·SW정책연구소)의 분류 인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 시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재원을 조달하여 조속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한책임투자자(LP)[14] 모집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벤처펀드 결성액의 출자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벤처투자펀드 결성액 10조 5,550억원 중 모태펀드는 1조 3,516억원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 9.8%, 2022년 8.5%, 2023년 7.5%로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가 반전된 것임.

이는 민간부문의 투자 비중이 2021년 80.9%, 2022년 81.9%, 2023년 83.3%로 상승하다가 2024년 77.0%으로 크게 하락한 것과 맞물려, 벤처펀드 조성 시 정부 정책자금이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을 유도하지 못하고 투자의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함.

14) 유한책임투자자(LP: Limited Partner)란 투자한 금액만큼만 리스크와 책임을 지는 투자자로, 펀드에 자신의 자금을 제공하고 펀드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음.

[2020~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의 출자자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대비(%) |
|---|---|---|---|---|---|---|---|
| 정책금융 | 금액 | 25,947 | 34,045 | 31,951 | 21,770 | 24,226 | 11.3% |
| | 비중 | 26.0% | 19.1% | 18.1% | 16.7% | 23.0% | - |
| **모태펀드** | **금액** | **13,252** | **17,457** | **15,063** | **9,805** | **13,516** | **37.8%** |
| | **비중** | **13.3%** | **9.8%** | **8.5%** | **7.5%** | **12.8%** | **-** |
| 성장금융 | 금액 | 5,463 | 8,856 | 9,849 | 3,553 | 4,058 | 14.2% |
| | 비중 | 5.5% | 5.0% | 5.6% | 2.7% | 3.8% | - |
| 산업은행 | 금액 | 3,598 | 4,061 | 3,674 | 4,421 | 3,235 | △26.8% |
| | 비중 | 3.6% | 2.3% | 2.1% | 3.4% | 3.1% | - |
| 기타 | 금액 | 3,634 | 3,671 | 3,365 | 3,991 | 3,418 | △14.4% |
| | 비중 | 3.6% | 2.1% | 1.9% | 3.1% | 3.2% | - |
| 민간부문 | 금액 | 73,912 | 144,436 | 144,450 | 108,558 | 81,324 | △25.1% |
| | 비중 | 74.0% | 80.9% | 81.9% | 83.3% | 77.0% | - |
| 개인 | 금액 | 8,299 | 28,874 | 23,042 | 14,383 | 10,999 | △23.5% |
| | 비중 | 8.3% | 16.2% | 13.1% | 11.0% | 10.4% | - |
| 일반법인 | 금액 | 18,243 | 39,955 | 36,582 | 27,225 | 23,152 | △15.0% |
| | 비중 | 18.3% | 22.4% | 20.7% | 20.9% | 21.9% | - |
| 금융기관 (산은 제외) | 금액 | 23,312 | 44,890 | 49,021 | 42,205 | 28,721 | △31.9% |
| | 비중 | 23.3% | 25.2% | 27.8% | 32.4% | 27.2% | - |
| 연기금 및 공제회 | 금액 | 11,224 | 6,867 | 13,268 | 7,459 | 3,265 | △56.2% |
| | 비중 | 11.2% | 3.8% | 7.5% | 5.7% | 3.1% | - |
| VC | 금액 | 9,820 | 20,594 | 18,751 | 13,697 | 12,009 | △12.3% |
| | 비중 | 9.8% | 11.5% | 10.6% | 10.5% | 11.4% | - |
| 기타단체 및 외국인 | 금액 | 3,014 | 3,256 | 3,785 | 3,588 | 3,178 | △11.4% |
| | 비중 | 3.0% | 1.8% | 2.1% | 2.8% | 3.0% | - |
| 합계 | | 99,859 | 178,481 | 176,401 | 130,328 | 105,550 | △19.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정부는 2024년 10월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산업자본, 연기금, 일반국민 등 투자주체별로 벤처투자

참여경로를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모험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은행권의 정책목적 벤처펀드 투자 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400→100%), 연기금 등 최초 기관 출자자 대상 'LP 첫걸음 펀드' 조성,[15]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 유도(기금운용평가 가점 배정) 등임.

그러나 2025년 5월 정부의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자 확충을 위한 중점과제 7개 중 1개에 대해서만 이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중점과제는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임.

[벤처투자 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현황(발췌)]

| **1.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br>**2 국내 투자자 확충** | | | |
|---|---|---|---|
| 1 | 은행권이 정책목적 벤처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 금융위 | 정상추진 |
| 2 | 딥테크 밸류업 펀드 도입 | 중기부 | 정상추진 |
| 3 |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 공정위 | 정상추진 |
| 4 | 가칭상생협력 모펀드 조성 | 중기부 | 정상추진 |
| 5 | LP 첫걸음 펀드 신설 | 중기부 | 정상추진 |
| 6 |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 기재부 | 이행완료<br>(2025.2월) |
| 7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지속 조성(~2027년 3조원) | 중기부 | 정상추진 |

자료: 관계 부처 합동,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2025.5.

2025년 6월 현재,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LP첫걸음펀드의 최초 출자자 참여의향이 저조함에 따라 LP첫걸음펀드의 자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16] 2025년 3월까지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는 부동산에 기초한 리츠 상품으로 이루어져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벤처투자는 전무한 상황임.[17][18]

15) LP첫걸음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투자자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모태펀드는 LP첫걸음펀드에 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고, 투자 분야는 최초 출자자가 자유롭게 선정함.
LP첫걸음펀드는 최초 출자자의 시장 진입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우선해 자펀드 결성액의 10% 이내 손실을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과 최초 출자자 출자지분의 30% 이내에서 최초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함. 또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수익을 이전하는 '초과수익이전' 옵션과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30% 이내에서 모태펀드의 출자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콜옵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음.

16) 이데일리, "짙은 불확실성... LP첫걸음펀드, 출자자 모을 수 있을까", 2025.4.7.

17)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2025년도 3월 연기금투자풀 월간성과평가보고서", 2025.5.20.

18) 참고로, 연기금투자풀의 벤처투자 시 기금운용평가 시 가점 부여는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벤처투자에 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조합 사업예산 증액을 통해 AI·딥테크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과제의 조속한 이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더벨,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 가점 무용지물... 3년째 실적 제로”, 2020.1.9.)

## 4.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일반회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 검토 필요

내역사업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역별 산·학·연·관 합동 사업단을 통해 지역의 주력(특화) 산업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활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재도약촉진 | 10,779 | 11,559 | 41,549 | 41,549 | 91,549 | 50,000 | 120.3 |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 - | - | - | - | 50,000 | 50,000 | 순증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AI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7개 지역 AI사업단에 국비 500억원(국비:지방비:자부담=6:2:2)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AI 전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 (사업근거)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 및 제74조,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제4조
- (지원대상) 6~7개 지역 AI사업단(AI 솔루션 개발기업, 수요 중소기업, 지자체, TP 등 지역 혁신기관, 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
- (지원내용)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AI 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활용·확산 사업 지원
- (수행주체)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세부사업: 재도약촉진(5161-302)(지역기업정책관)

| |
|---|
| ○ 예산 산출 근거<br>- (사업규모) 국비 500억원(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6 : 2 : 2)<br>*2025년 총 사업비 833억 = 국비 500억원 + 지방비 및 자부담 333억원<br>- (세부산출근거) 7개 지역 AI 사업단 × 약 70억원<br><br>□ 추진일정(안)<br>○ 세부계획 마련(2025.7월) → 사업공고 등 본격 사업 착수(2025.8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로 관련 예산 498억원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AI사업단을 갖추어 AI 솔루션 개발·보급, 산학연 연계, AI 인력 양성, 학습 데이터 확보 및 AI 규제해소·대응 등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는 재정만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AI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임.

## 나. 검토의견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의 단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일반회계 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협력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과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기금 내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에는 3개 지역에 대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중소 제조기업의 AI·제조데이터 도입·활용 지원체계를 2025~2027년 3년간 구축하려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60억원 편성한 바 있음.[20]

20) 세부사업: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2111-3120)(지역기업정책관)

이 사업은 2022~2024년에는 경기도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경기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및 AI플랫폼·솔루션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였고, 2025년~2027년에는 충북·대구·울산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1)]

[일반회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개요]

◦ (목적) 제조AI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중소 제조기업의 AI·제조데이터 도입·활용 지원체계 마련
◦ (규모) 3개 지역 제조AI센터 지원
◦ (지원조건) 출연(국비 최대 50%, 지방비·민간 50%)
- (국비) 클라우드 등 기초인프라 구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비용
- (지방비) 지원과제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운영 및 성과확산 등 비용
- (민간부담금) 기업지원(AI솔루션 개발 및 적용 등) 비용
◦ (지원기간 및 금액) 1개 센터당 3년, 총 60억원(지방비 제외)
◦ (추진체계) 중기부, 지자체 및 운영기관(컨소시엄) 역할 분담

| 구 분 | 주요 역할 |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br>■ 사업관리기준 및 운영지침 확정 |
|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전담기관) |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br>■ 신규 및 완료 평가계획(안) 수립·시행<br>■ 사업 진도 및 성과관리 |
| 지방자치단체 | ■ 지자체 內 제조AI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예산매칭 등 지원) |
| 컨소시엄 (수행기관) | ■ 제조AI센터 구축, 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br>-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br>- 제조AI센터 운영 및 활성화, 성과확산 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1) 2025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테크노파크 등),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11개 컨소시엄이 신청하여 평가 상위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음.

[2025년 지역 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추진현황]

○ (선정방식) 공모를 통해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신청) 총 11개 신청(경쟁률 3.7:1)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2025.3.13 ~ 4.14

| 신청지역 | 수도·강원권(2) | 충청권(3) | 영남권(5) | 호남권(1) | 합계 |
|---|---|---|---|---|---|
| | 인천, 강원 | 충남, 충북, 대전 |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 전남 | 11개 |

○ (평가결과) 산학 전문가 6명으로 평가팀을 구성, 지역특화 프로그램 우수성, 지자체 적극성, 사업 준비도 등 현장발표 후 종합평가
- 평가절차: 서류평가(4.16, 재무상태, 현물계상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확인(4월말, 기구축 인프라·운영조직 확인) → 대면평가(5.12~14, 발표·질답 60분)
- 평가결과: 대구·충북·울산이 상위 3개 지역으로 평가되어 최종 선정
○ 향후 일정: 사업수행(수행기관, ~2025.12.) → 2차년 사업수행여부 결정 평가(스마트제조추진단, 12월말) → 2차년도 사업수행(2026.1.~)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및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비교]

| 구 분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
|---|---|---|
| 목 적 | 지역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 지원분야 | 제 조 | 제조, 비제조(서비스 등) |
| 지원내용 | 제조AI센터 구축, 데이터셋,<br>AI 솔루션 실증 | 인프라(센터, 장비), AI 솔루션<br>도입(데이터), AI 인력양성(교육) 등 |
| 추진방식 | 기정원, 지역 TP 주도 | 중진공, 지자체 주도 |
|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사업기간 | 3년 | 2년(2025년 제2회 추경안, 2026년 미정) |
| 지원규모 | 제조AI센터 3개소(연간 20억원 수준) | 7개 내외 지자체(연간 70억원 수준) |
| 사업예산<br>(2025년) | 60억원 | 500억원 |
| 사업방식 | 데이터 확보를 통한 솔루션 실증<br>(소규모 순차적 지원) | 기존 AI 솔루션을 미세조정하여<br>중소기업에 보급(대규모 신속 전환)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두 사업은 ① 사업목적 측면에서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인공지능(Manufacturing AI)을 접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유사하며, ② 사업내용 측면에서 지역산업 특화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AI 솔루션을 구축 및 활용하며 다른 중소기업 등에게 보급하는 내용이 중복되며, ③ 추진방식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화산업 및 인공지능 접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AI 센터 또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및 네트워킹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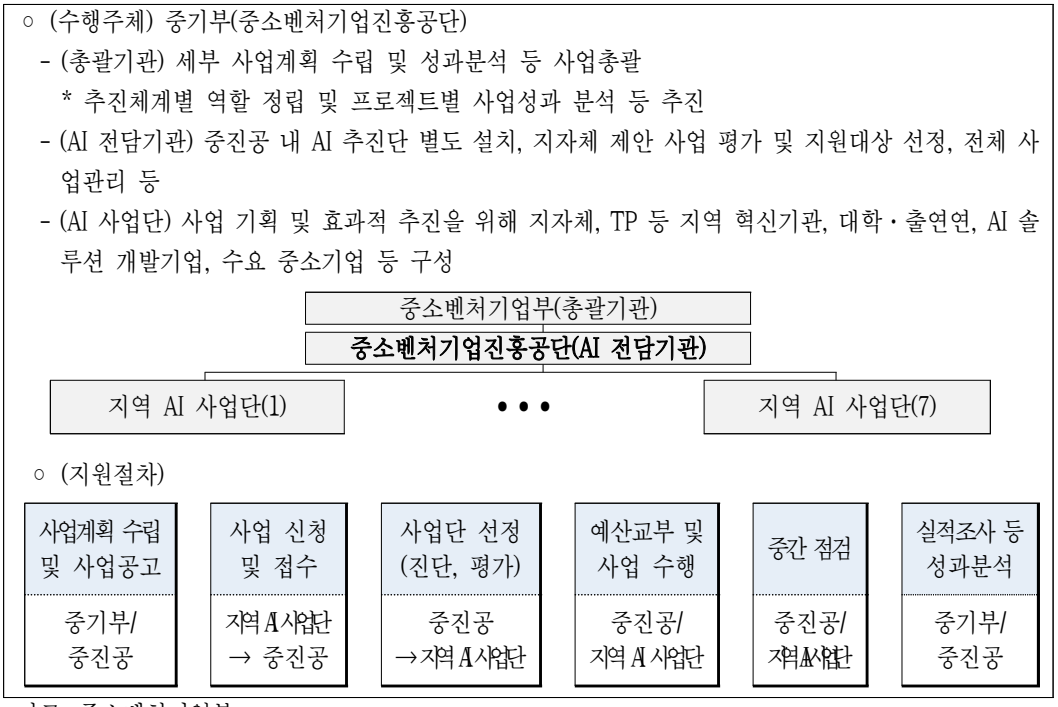
다만 두 사업은 전담기관, 사업기간 및 국비 지원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회계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먼저 전담기관 측면에서 인공지능 전환 등에 대한 사업경험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신규 사업단을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제조혁신 및 제조AX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업계획 수립, 성과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고 시범사업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가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AI 추진단을 신규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제안사업을 평가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

도록 계획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자금 및 수출바우처·글로벌협력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공지능 및 제조혁신 관련 사업수행 경험 역시 없는 상황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추진방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달리 일반회계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제조혁신 및 제조AX를 전담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인프라 및 제조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2~2024년 동안 경기도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수행 경험을 쌓은 바 있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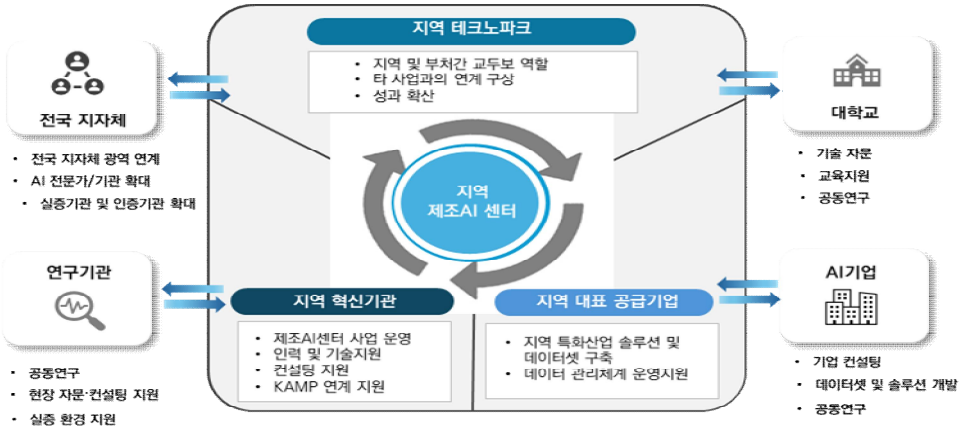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개)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예산 및 목표 물량 | | | |
|---|---|---|---|---|---|---|
| | | | 2024년 | | 2025년 | |
| | | | 예산 | 지원기업 | 예산 | 지원기업 |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인 | 제조혁신 구축 | 선도형제조혁신 | 172,111 | 844 | 186,541 | 982 |
| | | 제조혁신자동화 | 32,040 | 675 | 32,625 | 675 |
|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1,500 | 1,500 | 2,000 | 2,000 |
| | | 소계 | 205,651 | 3,019 | 221,166 | 3,657 |
| |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 | 11,910 | 1,651 | 11,910 | 2,306 |
| |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 | 1,493 | 58종 | 3,000 | 194종 |
| | 소계 | | 219,054 | | 236,076 | |
| 데이터 인프라구축 | 데이터 인프라 구축 | | 4,000 | 클라우드 임차 | 3,186 | 클라우드 임차 |
| | 데이터 거래지원 | | 2,900 | 100 | 2,650 | 50 |
| | 소계 | | 6,900 | | 5,836 | |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 | | 2,000 | 1개소 | 6,000 | 3개소 |

주) 2025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이를 통해 구축하는 지역특화 제조 인공지능 센터는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 및 제조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으로, 지역 특화 플랫폼 구축, 주력 산업 맞춤형 제조인공지능(AI) 솔루션 보급, 지역 혁신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특화 제조AI 센터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사업기간 측면에서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단년도 보조사업 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 특화 데이터 구축 및 해당 데이터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으로의 인공지능 솔루션의 확대·보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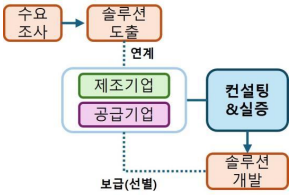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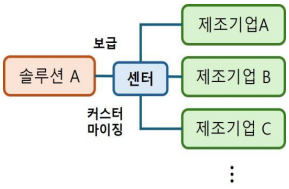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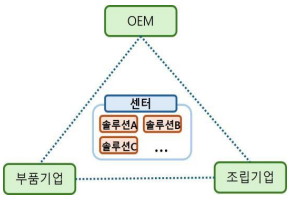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학습데이터의 확보·공유, AI 솔루션 개발·보급, 산학연 연계 및 AI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라면 일반회계 사업과 같이 단계별로 제조AI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여 AI 솔루션의 도출·적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예시)]

| 분야 | 세부내용 |
|---|---|
| AI 솔루션 개발・보급 | ■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역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활용, AI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 산학연 연계, AI 인력양성 | ■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인력교류, 도메인 특화 AI 융합인력 양성・교육, 기업 재직자 AI 활용역량 강화, AI 전문인력 파견 등 |
| 학습 데이터 확보・공유 | ■ 지역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공유, 데이터 전문기업-수요 기업 연계, 지역 산업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활용 |
| AI 규제해소 및 대응 | ■ AI 규제 대응 컨설팅 및 법제 검토, AI 규제 특례 및 실증 지원, AI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전 진단 서비스 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단계별 제조AI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요]

| 구 분 |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 | |
|---|---|---|---|
| | (1단계) 솔루션 확보 | (2단계) 우수 솔루션 보급 | (3단계) 기업간 협업 솔루션 |
| 제조AI 센터 역할 | ① 기업 수요조사<br>② 공급기업-제조기업 매칭 | ③ 사업 운영·기획<br>④ 현장 기술 지원 | ⑤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br>⑥ 성과 확산 |
| 지원 시스템 개요 |  |  |  |
| 주요 목적 | 지역 맞춤형 솔루션 실증·개발 | 우수 솔루션 현장 적용 및 확산 | 가치사슬 내 현안 해결 |
| 주요 특징 | 표준 적용, 스타트업 중심 지원 | 범부처 우수기업 연계 | 데이터 공유·교환 실증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두 사업을 비교하여 볼 때, 전담기관의 산업·제조·인공지능 관련 전문성,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단계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22)]

22)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 지역조직이 없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달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본부 및 지부, 연수원 등이 있어 중소기업 현장에 보다 밀착 접근이 가능하고, 다수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26년도 예산안에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동 사업 예산을 500억원 이상 편성할 계획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지출증액>

## 5.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신규): 홍보 강화 등 사업대상자의 신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은 코로나 피해 등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2,812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125,354 | 125,354 | 210,940 | 544,377 | 825,646 | 281,269 | 51.7 |
|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 - | - | - | - | 281,269 | 281,269 | 순증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폐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이차보전과 보증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출감소·신용점수 하락 등을 겪은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받은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7년(거치 1년 및 분할상환 6년) 장기 특례보증으로 전환하면서 3.4%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재정으로 이차보전을 1%p 지원하고 보증료율의 절반인 0.4%를 지원함.

23) 세부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글로벌성장정책관)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기업으로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15년(거치기간 2년)으로 확대하고 2.7%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증료율 0.9%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코로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보증지원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서민경제 유지 발전에 기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지원대상) 2020.4~2025.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중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① (코로나 피해기업) 2020.4~2025.6월까지 보증부 대출 이용* 기업
  * ① 매출감소 ② 신용점수 100점 이상 하락 등
  ② (폐업기업) 정상 상환 중이며,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폐업개인사업자(단, 해당 보증 이용시 사업자보증 제한)
- (지원내용)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코로나 기간(2020.4~2025.6월) 중 지원받은 보증부 대출을 장기(7년)·저리(1%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
  ② (폐업기업) 기존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7년 → 15년까지로 연장(거치기간 2년)하여 폐업 후 상환부담 완화
  * 기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 지원

○ (우대사항)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및 이차보전 지원
① (코로나 피해기업) 보증기간(7년, 거치1년 + 분할상환6년), 금리(3.4%* 수준)
* 은행권 우대금리(CD금리+1.8%p, 4.4%)-이차보전 1%p
→ 2025.5월 10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금리 평균 5.94% 대비 △2.5%p 혜택

① 장기분할 상환 : 7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이차보전 지원: 1%p의 이자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
③ 보증료 지원 : 보증기간 확대(5년→7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의 50%(0.4%)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 (※특례보증 고정보증료율(0.8%)의 50%)

② (폐업기업) 보증기간(現 7년 → 15년, 거치2년), 금리(2.7%* 수준)
* 은행권 우대금리(CD금리+0.1%p, 2.7%)로 금융위와 협의 중(2024.12월 금융위 旣발표)
→ 2025.5월 10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금리 평균 5.94% 대비 △3.2%p 혜택

① 장기분할상환: 15년 분할상환을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② 보증료 지원: 보증기간 확대(7년→15년)에 따른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 납부보증료(0.9%) 전액을 정부 재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

○ (수행주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원절차) 사업출연금은 신보중앙회에 교부한 후 용도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에 재교부한 후 정산

| 특례보증 취급 기준 마련 등 시행 준비 (2025.하반기) | 특례보증 시행 (2025.하반기) | 출연금 지급 및 정산* (2026.1월 중) | 사업 종료 (2026.하반기) |
|---|---|---|---|

* 보증실행 실적에 따라 사업 중 분기별 정산 시행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의 예산은 2,812억 6,900만원으로, ① 코로나 피해 기업의 경우 재보증재원 1,500억원, 이차보전(6개월분) 52억 5,000만원, 보증료 220억 5,000만원으로 총 1,773억원이 편성되고, ② 폐업기업의 경우 재보증재원 750억원, 보증료 289억 6,900만원으로 총 1,039억 6,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세부편성내역]

○ (사업규모) 2,812억 6,900만원 (코로나 피해기업: 1,773억원, 폐업기업: 1,039억 6,900만원)

○ (세부산출근거)

- (코로나 피해 기업) 1,773억원

❶(재)보증재원 1,500억원, ❷이차보전 52.5억원(6개월)*, ❸보증료 220.5억원

* 이차보전(연 105억원)은 2025~2031년 매년 소요 발생(총 735억원 = 105억원×7년)

(단위: 억원, 배, %)

|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료율(운용배수) | 필요재원 |
|---|---|---|---|
| ❶ 보증재원 | - | 7배수* | 1,500 |
| ❷ 이차보전 | | 1.0%p | 52.5 |
| ❸ 보증료 | | 0.4% | 220.5 |
| 계 | 10,500 | | 1,773 |

* 2024.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율: 5.75% / 중·저신용자 대상 대위변제율 19.3~27.6%

- (폐업기업) 1,039.69억원

❶(재)보증재원 750.0억원, ❷보증료 289.69억원

(단위: 억원, 배, %)

|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료율(운용배수) | 필요재원 |
|---|---|---|---|
| ❶ 보증재원 | - | 5배* | 750 |
| ❷ 보증료 | | 0.9% | 289.69 |
| 계 | 3,750 | | 1,039.69 |

* 現 지역신보 사고율·대위변제율을 고려하여 운용배수 산정

① 최근 지역신보 대위변제율: (2023) 3.87%, (2024) 5.66%, (2025.4) 5.75%

② 중저신용 특례보증 대위변제율: (2025.3월) 2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 및 이차보전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였던 종전 사업들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저조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설계하고 장기·저금리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폐업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재정이 투입되었던 종전 사업들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음.

먼저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5.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저리대출에 대해 보증(대출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말부터 시행하여 2024년 말까지 시행되었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환보증 공급액 8조 5,000억원을 목표로 출연금 6,800억원, 2023년도 예산은 대환보증 공급액 1조원을 목표로 출연금 8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말 기준 누적 보증공급액은 1조 6,601억원, 보증잔액은 1조 4,652억원이며 이는 각각 목표 공급액 9조 5,000억원의 17.5%, 15.4%에 불과함. 운용배수 역시 2.5배로 매우 낮은 상황임.

[2024년 분기별 대환보증 공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4분기 | 2024년 2/4분기 | 2024년 3/4분기 | 2024년 4/4분기 |
|---|---|---|---|---|
| 기초 기본재산 | 715,853 | 693,059 | 681,033 | 621,849 |
| 기초 보증잔액 | 1,127,564 | 1,203,609 | 1,354,375 | 1,426,811 |
| 보증공급 건수 | 2,038 | 4,134 | 2,306 | 1,784 |
| 대환대출 공급 규모 | 115,326 | 212,086 | 125,626 | 96,643 |
| 대환보증 공급 실적 | 103,793 | 190,877 | 113,063 | 86,979 |
| 대환보증 해지 실적 | 28,756 | 40,792 | 41,553 | 58,941 |
| 대환보증 공급실적(누계) | 1,269,166 | 1,460,043 | 1,573,106 | 1,660,085 |
| 대위변제액 | 21,662 | 32,178 | 32,125 | 37,714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4분기 | 2024년 2/4분기 | 2024년 3/4분기 | 2024년 4/4분기 |
|---|---|---|---|---|
| 기말 보증잔액 | 1,203,609 | 1,354,375 | 1,426,811 | 1,465,161 |
| 기말 기본재산 | 693,059 | 681,033 | 621,849 | 586,177 |
| 대위변제율 | 7.2 | 9.5 | 8.9 | 10.2 |
| 운용배수 | 1.7 | 2.0 | 2.3 | 2.5 |

주 1) 해지실적 = 주채무상환 + 대위변제 + 연장/갱신 해지 포함
2) 기중 대위변제율은 기말 보증잔액 대비 분기별 대위변제액 기준 연간 환산한 수치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와 같이 소상공인 대환보증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 및 의결을 마친 이후 2023년 2회, 2024년 1회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사업내용을 변경한 바 있음.[24)]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비은행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의 5~7%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지원금액 산정기준) 2023.12.31. 기준, 금리구간별 차등 지원

|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 일괄 적용 (적용금리: 5.0~5.5%→4.5~5.0%) | 적용금리와 5% 간 차액 (적용금리: 5.5~6.5%→5.0%) | 모든 금리에 1.5% 일괄 적용 (적용금리: 6.5~7.0%→5.0~5.5%) |

○ (개별 한도) 1년 이상 이자 납입 차주 1년치 금액 일시 지급, 1인당 대출액 1억원 한도・ 최대 지원금액 150만원
○ (사업규모) 공급규모 2,970억원 내외(예산 3,000억원)
○ (지원절차) ① (기업)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에 지원금 신청, ② (금융기관) 기업에 이자차액 지급, ③ (금융기관) 협회・중앙회에 지원금액 통지, ④ (협회・중앙회) 취합된 금융기관별 지원금액 중진공에 통지, ⑤ (중진공) 협회・중앙회에 지원금 지급, ⑥ (협회・중앙회) 금융기관에 지원금 보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4) 2023년 3월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삭제되었고, 지원액이 2배로 확대되었으며, 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또한, 2023년 8월에는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당 2,000만원까지 저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2024년 3월에는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된 2023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보증료율이나 적용금리가 인하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 당시 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혜택이 지원되어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 실제 지원실적은 26만 4,242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113억 5,000만원(2024년 4사분기 신청분 포함)이 지원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수요가 과다 추계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사업의 업권별 환급·정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번 | 여신업체 명 | 이자환급 신청건수 | 2024년 여신업체의 이자환급액 (1/4~4/4분기) | 2024년 여신업체의 중진공 정산액 (1/4~3/4분기) | 2025년 여신업체의 중진공 정산예정액 (4/4분기) |
|---|---|---|---|---|---|
| 1 | 농협중앙회 | 112,212 | 92,508 | 78,503 | 14,139 |
| 2 | 산림조합중앙회 | 3,912 | 3,400 | 2,855 | 524 |
| 3 | 새마을금고중앙회 | 40,052 | 39,987 | 30,923 | 9,076 |
| 4 | 수협중앙회 | 13,718 | 12,697 | 11,761 | 923 |
| 5 | 신협중앙회 | 37,708 | 32,473 | 27,369 | 5,042 |
| 6 | 여신협회 | 52,628 | 26,582 | 20,210 | 6,131 |
| 7 | 저축은행중앙회 | 4,012 | 3,703 | 2,369 | 1,350 |
| | 소계 | 264,242 | 211,350 | 173,991 | 37,185 |

주 1) 동 사업은 여신업체가 이자환급을 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회·중앙회에 기지급금을 보전하고, 분기별 정산결과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2) 4/4분기분에 대해서는 2025년 1/4분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회·중앙회에 보전하며, 정산절차 후 실제 지급액은 정산예정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분할상환 특례보증이 지원되므로, 종전의 유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신청으로 인해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1조 500억원(운용배수 7배), 3,750억원(운용배수 5배)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인바, 연내 특례보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설계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사업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6.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신규) 등: 분할상환 지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1%p 이차보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25] 2025년도 변경안은 71억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6]

또 다른 내역사업인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은 상환연장 관련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안내 및 전문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45억 6,900만원 대비 20억 4,400만원(44.7%) 증액된 66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등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소상공인재기지원 | 166,308 | 179,594 | 274,806 | 324,194 | 350,455 | 26,261 | 8.1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 | - | - | - | 7,123 | 7,123 | 순증 |
|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 | - | - | 4,569 | 4,569 | 6,613 | 2,044 | 44.7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5.7.22. 시행)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 · 기술 · 재무 · 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지원받고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장기분할상환(최대 7년) 및 1%p 금리 감면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경영애로 소상공인 13만 2,000명의 대출잔액 1조 4,246억원에 대해 1%p 이차보전을 6개월 지원하기 위한 예산 71억 2,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입금도 함께 편성되었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정상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

○ 사업내용
- (사업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 (지원대상) 2020.4~2025.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지원받고, 일시적 경영애로(중·저신용자 등)를 겪는 자
- (지원내용) 기존 소상공인 차주가 보유한 소진융자 대출의 장기분할상환(최대 7년) 및 1%p 금리감면 지원

| | | 현재 | 개선 |
|---|---|---|---|
| 상환기간 | | 대출 잔여상환기간 + 5년(60회) | 대출 잔여상환기간 + 7년(84회) |
| 금리 | 일반 소상공인 | 기존 평균 적용금리 + 0.2%p 가산 | 기존 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0.2%p) - 1%p(금리감면 효과) |
| | 30일이하 단기연체 | 기존 평균 적용금리 + 0.4%p 가산 | 기존 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0.4%p) - 1%p(금리감면 효과) |

○ (수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규모: 71억 2,300만원(2025년 금리감면 비용)
- 신청차주 대출잔액 1조 4,246억원 × 1%p × 6개월
○ (추진일정)
-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사업 모집 공고 : 2025.7월중(잠정)
  * 정책자금 관리 시스템 : (6~9월) 금리감면 신규기능 적용을 위한 개발·안정화
  ** 사업운영: (7월) 사업공고하여 소상공인 신청·지원여부 확정 및 장기분할상환스케줄 도출
  (9월) 시스템 수정반영 후 금리감면사업 집행
-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사업 집행 : 2025.9 ~ 12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 사업은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을 위해 필요한 심사·현장실사 인건비, 정책자금 운영시스템 관리비용 등으로, 클라우드 및 라이센스 등 시스템 이용료 2억 1,600만원, 전자약정수수료 등 6억 6,000만원 및 계약직 인건비 11억 6,800만원으로 총 2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사업 개요]

| |
|---|
| ○ 사업개요<br>-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수수료, 운영비<br>○ 사업내용<br>- (사업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등)<br>- (지원내용)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위한 심사·현장실사 인건비, 정책자금 운영시스템 관리비용(전자약정수수료, 채권관리비용, 클라우드 등) 등<br>○ (수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br>○ (사업규모) 20억 4,400만원(수수료・인건비)<br>- 클라우드 및 라이센스 등 시스템 이용료 2억 1,600만원,<br>- 수수료 6억 6,000만원(신청 13.2만건 × 건당 수수료 5,000원)<br>- 인건비 11억 6,800만원(계약직 77명 × 290만원 × 5.2개월)<br>○ (추진일정)<br>-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2025.7.~12월<br>-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교육·사업추진: 2025. 7 ~ 12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책자금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상환연장 심사·현장실사의 지체로 인해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30일 이하 연체이면서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NCB 839점 이하) 경영애로 소상공인 차주를 26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대상인원 중 50%가 신청한다고 가정하여 대출잔액 1조 4,246억원에 대해 1%p 규모의 금리감면을 6개월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심사를 거쳐 분할상환·금리감면 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신청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 중 50%가 이 사업의 분할상환·금리감면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함.[27)]

27)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사업의 지원대상(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을 258만 3,0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89만 5,969명을 지원하여 34.7%만 지원한 바 있음.
또한,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4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부진으로 인해 실제 지원실적은 26만 4,242명에 그친 바 있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사업 예산 세부편성내역]

| |
|---|
| ○ (사업규모) 71억 2,300만원 (2025년 금리감면 비용)<br>- 신청차주 대출잔액 1조 4,246억원 × 1%p × 0.5년<br><br>○ (지원대상) 경영애로 소상공인 약 13만 2,000개사, 대출잔액 1조 4,246억원<br>- (차주 추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①30일 이하 연체*이면서 ②경영애로(중·저신용)**인 차주 26만 5,000개사 (2025.5월말 기준)<br>* 30일 이상 연체차주는 성실차주로 보기 곤란 ⇒ 새출발기금 등 별도 채무조정 활용<br>** 현재 소진공 상환연장 제도 이용조건인 중·저신용 점수(NCB 839점 이하) 적용<br>- (신청률) 경영애로 소상공인 26만 5,000개사의 50%가 신청한다고 가정<br>→ 지원대상은 약 13만 2,000개사, 대출잔액 1조 4,246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상대로 경영애로 소상공인 13만 2,000개사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상당한 사업심사 업무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개선·안정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건수는 총 4만 3,469건으로,[28] 이 사업의 예상수요는 전년도 직접대출의 3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임.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정책자금 관리시스템에 금리감면 신규기능을 적용하도록 기능 개선하는 한편, 7월부터 사업을 공고하여 소상공인 신청·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장기 분할상환 스케줄을 도출하고 9월부터 시스템 수정반영 후 금리감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임.

이는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이전에 소상공인 신청·지원여부가 확정되고 시스템에 분할상환·금리감면을 사후적으로 수정반영하는 것으로, 데이터 이관·입력 등의 작업수행 시 정보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신청 시 경영애로 심사 및 정상화가능성 심사를 수행하는데, 사업신청이 집중될 경우 각종 심사의 지연이 발생하여 실제 약정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28)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이루어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내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혁신성장촉진자금 9,315건,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130건,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만 9,760건,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8건,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자금 1,130건, 재도전특별자금 3,126으로, 직접대출은 총 4만 3,469건 지원되었음.

이 사업은 ‘6개월’ 동안 1%p 금리감면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신청 및 심사를 거쳐 새로운 대출 약정체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금리감면이 적용되어 금리감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히 약정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 사업을 통해 사업수행 인력을 위한 보조인력을 약 77명을 채용하고 7월 말부터 5.2개월간 투입할 계획인데, 사업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소상공인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사업 지원절차]

| 신청, 접수 | 신청 가능여부 확인 | 경영애로 심사 (비대면) | 정상화 가능성 심사 (대면·비대면) | 약정체결 (대면·비대면) |
|---|---|---|---|---|
| ■정책자금 누리집 *취약자) 센터방문 | ■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 시작 | ① 다중채무자<br>② 매출 감소<br>③ 중·저신용 | ■(5천만원이상, 단기연체자) → 대면현장조사<br>■(그 외) → 비대면심사 | ■ 최종 지원결정<br>- 장기분할상환<br>- 금리감면 △1%p<br>*전자약정 체결 |
| 공단 본부 | 공단 본부, 센터 | 공단 본부, 센터 | 지역센터 | 지역센터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평균 대출건수의 3배가 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분할상환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개선, 심사방식 개선 및 탄력적 인력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7.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단가 상승 시 자부담 비율 설정 등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70억 9,400만원(5.8%)이 증액된 3,11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소상공인 재기지원 | 166,308 | 179,594 | 274,806 | 324,194 | 350,455 | 26,261 | 8.1 |
| 희망리턴 패키지 | 151,300 | 168,386 | 245,010 | 294,398 | 311,492 | 17,094 | 5.8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희망리턴패키지는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①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폐업지원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것이고, ② 특화취업지원 사업은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취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직장려 및 취업연계수당을 지급하며, 채용연계를 위해 지역별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며, ③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은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기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임.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지원 사업은 임대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었음.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1,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지원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425억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제2회

29)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상한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171억원이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임대차 점포에 한정)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평(3.3m$^2$) 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② 점포철거비 지원 기수혜자, ③ 유사사업 수혜자, ④ 주거용도 건축물, ⑤ 사업장 이전, ⑥ 지원 제외업종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 ① 신청서류 제출(1차)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점포철거 | ④ 정산서류 제출(2차) | ⑤ 정산서류 검토 | ⑥ 비용지급 | ⑦ 현장점검 |
|---|---|---|---|---|---|---|
| 소상공인 (온라인) | 소진공 (재기플래너)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온라인) | 소진공 (재기플래너) | 소진공 →소상공인 | 공단 (재기플래너)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제1회·제2회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제1회 추경 |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943억 9,800만원 | ○[원스톱폐업지원] 1,757억원<br>-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지원<br>① 사업정리컨설팅: 12,000명×90만원<br>② 점포철거비지원 : 40,613명×400만원<br>③ 법률자문 : 1,500명×60만원,<br>④ 채무조정 : 750명×200만원<br><br>○[특화취업지원] 380.6억원<br>-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교육과정(기초, 특화) 운영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하고, 채용연계를 위한 지역별 파트너쉽 구축<br>① 취업교육 : 10,400건×250만원<br>② 전직장려수당 8,000건×100만원<br>③ 국민취업연계수당 : 2,000명×120만원<br>④ 지역별파트너쉽구축 : 17개소×1억원 | 3,114억 9,200만원 | ○[원스톱폐업지원] 1,927억 4,500만원<br>-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지원<br>① 사업정리컨설팅: 12,000명×90만원<br>② 점포철거비지원 : 40,613명×400만원<br>+8,547명×200만원(추가지원)<br>③ 법률자문 : 1,500명×60만원,<br>④ 채무조정 : 750명×200만원<br><br>○[특화취업지원] 380.6억원<br>-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교육과정(기초, 특화) 운영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하고, 채용연계를 위한 지역별 파트너쉽 구축<br>① 취업교육 : 10,400건×250만원<br>② 전직장려수당 8,000건×100만원<br>③ 국민취업연계수당 : 2,000명×120만원<br>④ 지역별파트너쉽구축 : 17개소×1억원 |

| 2025년도 제1회 추경 |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재기사업화지원] 806.9억원<br>-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전 진단 확대 및 사업화 기본교육,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br>① 경영진단 : 5,500건×125만원<br>② 사업화교육 : 6,250건×125만원<br>③ 사업화지원 : 2,750건×2,000만원<br>④ 사업화PM지원 : 2,750건×400만원 | | ○[재기사업화지원] 806.9억원<br>-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전 진단 확대 및 사업화 기본교육,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br>① 경영진단 : 5,500건×125만원<br>② 사업화교육 : 6,250건×125만원<br>③ 사업화지원 : 2,750건×2,000만원<br>④ 사업화PM지원 : 2,750건×400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점포철거비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단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 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폐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경감하여 취업 또는 재창업으로 신속히 재기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30]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전·사후적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점포철거비 사업의 지원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실제 사업수행 비용에 비해 지원액이 클 경우 비용 과다청구 유인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철거비 지원사업을 사후점검하여 향후 소상공인의 자부담 신설 또는 철거비용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점포철거비 사업의 1평당 지원단가는 2020~2022년 8만원, 2023~2024년 13만원, 2025년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최대한도 역시 2020~2021년 200만원, 2022~2024년 250만원, 2025년 당초 400만원에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600만원으로 상승하였음.

30) 2024년 점포철거비 사업의 수요가 당초 예상 대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0월에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고 목표 2만 2,000건의 134%인 2만 9,533건을 지원하였음.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 건수]

(단위: 건, 백만원, 기준일: 2025.6.5.)

| 연도 | 1평당 지원단가 | 최대 한도 | 총지원액 | 목표지원건수 | 실제지원건수 |
|---|---|---|---|---|---|
| 2020년 | 8만원 | 200만원 | 18,969 | 16,700 | 11,535 |
| 2021년 | 8만원 | 200만원 | 23,508 | 9,750 | 15,679 |
| 2022년 | 8만원 | 250만원 | 30,487 | 14,500 | 16,323 |
| 2023년 | 13만원 | 250만원 | 48,852 | 20,000 | 22,404 |
| 2024년 | 13만원 | 250만원 | 62,439 | 22,000 | 29,535 |
| 2025년 | 20만원 | 400만원 | 43,937 | 40,613 | 14,616 |

주)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건수 33,064건, 지원처리중 18,748건, 지원완료 건수는 14,616건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2만 9,533건 수행되었고,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11만 4,000원이고, 1평당 평균 지원액은 10만 1,000원임.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시·도별 지원실적]

(단위: 건, 천원)

| 구 분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1건당 평균 지원금액 | 1건당 평균 점포규모(평) | 1평당 평균 지원액 |
|---|---|---|---|---|---|
| 서울 | 5,163 | 10,034,385 | 1,944 | 22.42 | 104 |
| 부산 | 2,387 | 4,994,170 | 2,092 | 26.18 | 100 |
| 대구 | 2,340 | 5,120,536 | 2,188 | 27.57 | 102 |
| 인천 | 1,699 | 3,497,733 | 2,059 | 23.92 | 105 |
| 광주 | 892 | 1,946,648 | 2,182 | 30.29 | 93 |
| 대전 | 957 | 2,082,319 | 2,176 | 27.52 | 100 |
| 울산 | 810 | 1,782,645 | 2,201 | 30.21 | 94 |
| 경기 | 7,060 | 14,540,377 | 2,060 | 24.34 | 103 |
| 강원 | 556 | 1,234,832 | 2,221 | 28.94 | 95 |
| 충북 | 1,003 | 2,214,306 | 2,208 | 27.86 | 99 |
| 충남 | 870 | 1,923,425 | 2,211 | 27.59 | 97 |
| 경북 | 1,387 | 3,149,902 | 2,271 | 29.30 | 96 |
| 경남 | 2,149 | 4,770,033 | 2,220 | 27.45 | 100 |
| 전북 | 1,185 | 2,748,989 | 2,320 | 30.19 | 97 |
| 전남 | 553 | 1,261,030 | 2,280 | 32.69 | 87 |
| 제주 | 243 | 557,467 | 2,294 | 34.42 | 83 |
| 세종 | 279 | 580,535 | 2,081 | 22.16 | 110 |
| 합계 | 29,533 | 62,439,332 | 2,114 | 26.04 | 10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1인당, 1평당 최대한도를 적용받는 소상공인과 최대한도에 비해 낮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1만 2,190건은 1인당 지원액이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1인당 지원액이 평균 158만원임. 또한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만 1,396건은 1평당 지원액이 13만원이고, 나머지는 1평당 지원액이 평균 7.9만원임.

2025년부터 평균 지원단가가 1평당 20만원으로, 최대지원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제 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에 비해 지원한도가 큰 경우 점포철거 소상공인과 철거업체는 비용을 과다청구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31)]

만일 소상공인의 과다청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자부담 설정 또는 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의 적정성 사후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사업 종료 후 지원사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부담 비율 설정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 점포철거비 관련 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신청자 정보 사전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예컨대 2024년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고,[32)]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33)]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폐업지원·사업정리 사업 모두 유사사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하고 적발 시 사후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접수 단계에서 관련 사업 지원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음.

---

31) 점포철거의 시장단가는 점포의 소재 위치,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배관·가스 등 설비의 이전 유무 등에 따라 1평당 10만원~50만원으로 상이한 상황임.

32) 서울시, "2024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2024.7.1.

33)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2024.8.22.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사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력을 조회하고 있는 상황임.[34]

2020~2024년 연도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환수실적을 보더라도, 2020~2022년은 전혀 없고 2023년 및 2024년 각 1건에 불과한데,[35] 총 9만 5,474건의 지원실적 중 부정수급 적발·환수가 2건(0.002%)밖에 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점포철거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점포철거비 관련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존 점포 철거비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 수령금에 대한 사후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2024년),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2024년), 서울신보·울산신보(2021년) 등 유관기관 요청에 따라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의견임.

35) 2023년: 1건(24년 적발: 환수 조치완료 ➪ 사유: 허위서류 제출
2024년: 1건(24년 적발: 환수 조치완료 ➪ 사유: 동일장소 재창업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100조 7,57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1)]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0,576 | 13,957 | 13,957 | 13,957 | - | - |
| 기 금 | 913,162 | 993,621 | 993,621 | 993,621 | - | - |
| 합 계 | 923,738 | 1,007,578 | 1,007,578 | 1,007,578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125조 4,84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3억원(△0.02%) 감소함.

예산은 72조 3,42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0억원(△0.1%) 감소한 반면, 기금은 53조 1,42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97억원(0.02%) 증가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741,794 | 723,680 | 723,822 | 723,422 | △400 | △0.1 |
| 기 금 | 486,685 | 531,229 | 531,327 | 531,425 | 97 | 0.02 |
| 합 계 | 1,228,479 | 1,254,909 | 1,255,149 | 1,254,846 | △303 | △0.02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9,439 | 12,798 | 12,798 | 12,798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 | 8 | 8 | 8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70 | 732 | 732 | 732 |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943 | 2,007 | 2,007 | 2,007 | - | - |
| 합계 | 12,061 | 15,544 | 15,544 | 15,544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0억원(△0.1%) 감소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726,288 | 710,048 | 710,189 | 709,686 | △503 | △0.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703 | 16,234 | 16,234 | 16,337 | 103 | 0.6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943 | 2,007 | 2,007 | 2,007 | - | - |
| 합계 | 745,935 | 728,289 | 728,430 | 728,031 | △400 | △0.1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3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82조 7,58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80억원(0.004%)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조 5,48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80억원(0.2%) 증가함.

[2025년도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국민건강증진기금 | 45,581 | 45,405 | 45,405 | 45,485 | 80 | 0.2 |
| 응급의료기금 | 6,617 | 6,401 | 6,401 | 6,401 | - | - |
| 국민연금기금 | 1,667,459 | 1,775,695 | 1,775,695 | 1,775,695 | - | - |
| 합계 | 1,719,657 | 1,827,500 | 1,827,500 | 1,827,580 | 80 | 0.004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320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음.[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4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976억 1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3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1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실제 수급자수가 증가하여 '의료급여'에 1,34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기침체, 각종 사회재난 등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사업에 228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청·중장년의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에 25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9,345,567 | 9,091,258 | 9,092,258 | 9,269,698 | 177,440 | 2.0 |
| 1 |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 - | - | - | 3,300 | 3,300 | 순증 |
| 2 |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 - | - | - | 2,184 | 2,184 | 순증 |
| 3 | 의료급여 | 8,937,713 | 8,688,201 | 8,688,201 | 8,822,328 | 134,127 | 1.5 |
| 4 | 긴급복지 | 358,494 | 350,109 | 350,109 | 373,007 | 22,898 | 6.5 |
| 5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 637 | 628 | 628 | 3,328 | 2,700 | 429.9 |
| 6 | 제약산업 육성 지원 | 32,691 | 36,746 | 37,746 | 41,096 | 3,350 | 8.9 |
| 7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9,418 | 9,418 | 9,418 | 12,452 | 3,034 | 32.2 |
| 8 | 소록도병원관리 | 5,709 | 5,301 | 5,301 | 6,234 | 933 | 17.6 |
| 9 | 보험정책사업관리 | 905 | 855 | 855 | 5,769 | 4,914 | 574.7 |

2) 보건복지부 소관 3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2개(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임.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43,266 | 39,090 | 39,090 | 49,439 | 10,349 | 26.5 |
| 10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3,266 | 39,090 | 39,090 | 49,439 | 10,349 | 26.5 |
| 국민건강증기금 | | 213,700 | 235,058 | 233,299 | 241,349 | 8,050 | 3.5 |
| 11 | 모자보건사업 | 24,450 | 27,643 | 25,929 | 31,338 | 5,409 | 20.9 |
| 1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 50,817 | 56,184 | 56,139 | 58,685 | 2,546 | 4.5 |
| 13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138,433* | *151,231* | *151,231* | *151,326* | *95* | *0.1* |
| 응급의료기금 | | 10,811 | 12,434 | 12,434 | 14,196 | 1,762 | 14.2 |
| 14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10,811 | 12,434 | 12,434 | 14,196 | 1,762 | 14.2 |
| 합계 | | 9,613,344 | 9,377,840 | 9,377,081 | 9,574,682 | 197,601 | 2.1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2,296억 1,4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4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2개임.

주요감액으로는 예산상 물가상승률(2.6%)과 실제 물가상승률(2.3%) 차이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사업에서 63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계 집단행동 지속으로 집행이 부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서 1,235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음.

[2025년도 보건복지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20,424,042 | 22,348,189 | 22,338,365 | 22,108,751 | △229,614 | △1.03 |
| 일반회계 | | 20,404,581 | 22,308,103 | 22,308,103 | 22,080,346 | △227,757 | △1.02 |
| 1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126,733 | 151,041 | 151,041 | 121,043 | △29,998 | △19.9 |
| 2 | 기초연금지급 | 20,201,456 | 21,814,577 | 21,814,577 | 21,750,860 | △63,717 | △0.3 |
| 3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47,249 | 43,355 | 43,355 | 32,874 | △10,481 | △24.2 |
| 4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 29,143 | 299,130 | 299,130 | 175,569 | △123,561 | △41.3 |
| *국민건강증진기금* | | *9,823* | *12,670* | *12,620* | *12,525* | *△95* | *△0.8* |
| *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823* | *12,670* | *12,620* | *12,525* | *△95* | *△0.8* |
| *응급의료기금* | | *9,638* | *27,416* | *17,642* | *15,880* | *△1,762* | *△10.0* |
| *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638* | *27,416* | *17,642* | *15,880* | *△1,762* | *△10.0* |
| 합계 | | 20,424,042 | 22,348,189 | 22,338,365 | 22,108,751 | △229,614 | △1.0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급여에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긴급돌봄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과 단가 선정 미흡, 서비스 이용 데이터 부재 및 지자체별 실집행률 미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경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소 의료 AI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자부담 부과 비율에 따른 기업 선정 방식은 자부담 여력이 큰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의료급여: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가. 개 요

**‘의료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5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41억 2,700만원(1.5%) 증액된 8조 8,22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의료급여 | 8,937,713 | 8,688,201 | 8,688,201 | 8,822,328 | 134,127 | 1.5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기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4)]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중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3) 세부사업: 의료급여(1132-302)(복지정책관)

4)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1·2종 수급자로 구분됨.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등 타법적용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이번 추경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전년대비 6.4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등으로 2025년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내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증액 편성됨.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지자체경상보조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8조 6,860억 6,7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br>: 8,686,067백만원<br>**① 기관부담금(본인부담 제외 진료비) : 8,517,731백만원**<br>**- 기본진료비: 9,115,618**<br>*** 기초 1종 8,077,061 (1,137천명×9,382천원×75.7%)**<br>*** 기초 2종 662,827 (333천명×2,628천원×75.7%)**<br>*** 타법 1종 375,730 (77천명×6,460천원×75.7%)**<br>- 부양의무자 완화: 122,942<br>- 정액수가 개선비: 37,777<br>-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비: 7,364<br>- 재정절감액 : △765,970<br>② 본인부담금지원비: 98,303백만원<br>- 본인부담보상상한금 4,933<br>- 건강생활유지비 92,684<br>- 임신출산 본인부담금 686<br>③ 기타 지원비: 55,759백만원<br>- 장애인보조기기 17,856<br>- 요양비 37,903<br>④ 위탁수수료: 14,254백만원<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671<br>- 국민건강보험공단 5,583<br>⑤ 신고포상금: 20백만원<br>❍ 민간위탁사업비 : 1,092백만원<br>⑥ 사례관리지원단: 1,092백만원<br>❍ 사업운영비 : 1,042백만원<br>⑦ 사업운영비: 1,042백만원 | 8조 8,201억 9,4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br>: 8,820,194백만원<br>**① 기관부담금(본인부담 제외 진료비) : 8,651,858백만원**<br>**- 기본진료비: 9,249,745백만원**<br>*** 기초 1종 8,172,869 (1,151천명×9,382천원×75.7%)**<br>*** 기초 2종 698,206 (351천명×2,628천원×75.7%)**<br>*** 타법 1종 378,669 (77천명×6,460천원×75.7%)**<br>〈 이하 변동 없음〉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의 실질 가용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내 의료급여 예산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1,341억 2,7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 수급자 수 | 계 | 기초1종 | 기초2종 | 타법 |
|---|---|---|---|---|
| '25년 4월 기준 | 1,579,154 | 1,150,756 | 350,964 | 77,434 |
| '25년 예산 편성 | 1,547,279 | 1,137,266 | 333,180 | 76,833 |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재정법」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5)]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무지출 항목으로, 이미 실제 수급자 수가 예산 편성 인원을 초과한 상황이며, 수급권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추경을 통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이러한 재정적 여건 속에서 향후 급격한 경기 변동이나 수급자 급증 등으로 의료급여에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추경 증액분 및 누적적립금만으로는 부족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5)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임.[6)]

[최근 5년간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4월말 기준 |
|---|---|---|---|---|---|
| 예산 편성 기준 | 1,421,711 | 1,537,090 | 1,636,269 | 1,593,947 | 1,547,279 |
| 실제 수급자 수 (연평균 기준) | 1,526,632 | 1,516,507 | 1,524,098 | 1,544,591 | 1,579,154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로, 2024년 12월 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3,395억 6,900만원인데 이 중 2,766억원은 이미 재정절감액[7)]으로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누적적립금은 약 629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추경 소요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임.[8)]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연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2025년의 경우 미지급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임.

7)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당이득 환수,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활용분 등으로 구성

8) 또한,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은 의료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일부 유지될 필요성도 있음.

## 2. 긴급복지: 구체적 예산 추계 및 적기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가. 개 요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2025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8억 9,800만원(6.5%) 증액된 3,730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긴급복지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긴급복지 | 358,494 | 350,109 | 350,109 | 373,007 | 22,898 | 6.5 |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10)]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히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5년 긴급복지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3,501억 900만원 | ❍ 일반수용비(210-01) : 126백만원<br>❍ 일반용역비(210-14) : 120백만원<br>❍ 국내여비(220-01) : 8백만원<br>❍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49,855백만원 | 3,727억 5,300만원 | ❍ 일반수용비(210-01) : 126백만원<br>❍ 일반용역비(210-14) : 120백만원<br>❍ 국내여비(220-01) : 8백만원<br>❍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72,753백만원 |

9) 세부사업: 긴급복지(1133-300)(복지정책관)

10) 국비지원율: 서울 50%, 나머지 지자체 80%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가. 생계지원 : 255,982백만원**<br>**(330,976건×1,011천원×76.5%)**<br>나. 기타지원 : 93,873백만원<br>**・의료지원 : 79,170백만원**<br>**(50,656건×2,043천원×76.5%)**<br>・주거지원 : 2,500백만원<br>(10,431건×313.3천원×76.5%)<br>・시설이용지원 : 59백만원<br>(137건×564.9천원×76.5%)<br>・교육지원 : 84백만원<br>(684건×160.6천원×76.5%)<br>・연료비지원 : 11,871백만원<br>(103,450건×150천원×76.5%)<br>・해산비지원 : 66백만원<br>(123건×700천원×76.5%)<br>・장제비지원 : 100백만원<br>(163건×800천원×76.5%)<br>· 전기요금지원 : 23백만원<br>(114건×264.5천원×76.5%) | | **가. 생계지원 : 276,861백만원**<br>**(357,972건×1,011천원×76.5%)**<br>나. 기타지원 : 95,892백만원<br>**・의료지원 : 81,189백만원**<br>**(51,948건×2,043천원×76.5%)**<br>・주거지원 : 2,500백만원<br>(10,431건×313.3천원×76.5%)<br>・시설이용지원 : 59백만원<br>(137건×564.9천원×76.5%)<br>・교육지원 : 84백만원<br>(684건×160.6천원×76.5%)<br>・연료비지원 : 11,871백만원<br>(103,450건×150천원×76.5%)<br>・해산비지원 : 66백만원<br>(123건×700천원×76.5%)<br>・장제비지원 : 100백만원<br>(163건×800천원×76.5%)<br>· 전기요금지원 : 23백만원<br>(114건×264.5천원×76.5%)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긴급복지 사업은 단기간(4개월)의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소요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추계에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지방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적시 지원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 가능 여부 등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는 긴급복지 예산 중 생계지원 예산 208억 7,900만원 및 의료지원 예산 20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 및 각종 사회재난 등 위기요인 증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은 총 33만 976건의 지원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월평균 29,831건의 실적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총 35만 7,972건의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2만 6,996건에 대한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됨.[12)]

의료지원 사업 역시 본예산 기준 5만 656건의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기간 월평균 4,329건의 실적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5만 1,948건의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1,292건의 추가 지원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음.[13)]

[2025년 추경 긴급복지 사업 산출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산출내역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산출내역 |
|---|---|
| ❍ 생계지원 : 255,982백만원<br>(330,976건×1,011천원×76.5%)<br>❍ 의료지원 : 79,170백만원<br>(50,656건×2,043천원×76.5%) | ❍ 생계지원 : 276,861백만원<br>(357,972건×1,011천원×76.5%)<br>❍ 의료지원 : 81,189백만원<br>(51,948건×2,043천원×76.5%) |

자료: 보건복지부

그동안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14)] 사업 특성상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적시 집행이 핵심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투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추경 증액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우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증액을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의 실적을 단순 연간 실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추계 방식은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예산 추계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즉, 단기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소요를 확대 추산하는 방식은 과대 또는 과소 추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15)]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

11) (경기침체) 실업급여 수급 증가현황('25년) : 614,162명(1월)→684,078명(2월)→710,444명(3월)
(사회재난) 특별법(이태원, 여객기참사) 시행 등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범위 확대, 경북 산불 피해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수요 증가

12) '25.1월~4월까지 총 119,323건(월 평균 29,831건)지원

13) '25.1월~4월까지 총 17,314건(월 평균 4,329건)지원

14)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2021년 93.6%, 2022년 90.7%, 2023년 94.9%, 2024년 98.0%이며, 2025년 4월 말 기준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37.7%, 실집행률은 35.9%임.

15) 참고로, 긴급복지 사업의 최근 4년간 연도별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2021년 67.3만 건, 2022년 49.2만 건, 2023년 51.8만 건, 2024년 49.7만 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음.

다음, 이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50%)로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경을 통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시기 등에 따라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긴급복지의 적시 제공이라는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추계를 통해 증액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다 면밀한 본예산 편성을 통한 추경 소요 최소화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800만원(18.5%) 증액된 4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3,266 | 39,090 | 39,090 | 49,439 | 10,349 | 26.5 |
| 긴급돌봄 지원사업 | 3,500 | 3,500 | 3,500 | 4,148 | 648 | 18.5 |

이 사업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화되는데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면제되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설정하고 있음.

주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2025년 현재 14개 시・도 및 130여개 시・군・구에서 참여하고 있음.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35억원 | ❍ 긴급돌봄 지원사업<br>· 10,000명×500천원×70%=<br>3,500,000천원 | 41억 4,800만원 | ❍ 긴급돌봄 지원사업<br>· 10,000명×500천원×70%<br>=3,500,000천원<br>· **700여 명×1,320천원×70%<br>=648,000천원** |

자료: 보건복지부

16) 세부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사회서비스정책관)

## 나. 검토의견

**긴급돌봄 사업은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본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과 단가 선정의 미흡, 서비스 이용 데이터 부재 및 지자체별 실집행률 미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사업 시행 이후 인지도 상승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17]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미참여 지자체[18]의 신규 참여 의사 등으로 당초 수요 예측과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적시 대응을 위해 6억 4,800만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긴급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나, 이번 추경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첫째, 이번 추경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단순히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규모(35억원)로 편성하는 등 실제 지원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불완전한 예산 추계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형별 지원 시간 및 구성에 따라 단가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별 실제 이용시간, 서비스 유형별 선택 비율 등에 대한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바우처 단가의 경우 A형(기본형, 72시간 돌봄) 기준 132만원부터 D형(통합추가형, 144시간 돌봄 + 방문목욕 8회) 기준 329.6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50만원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17)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24.6.~12.) 1인당 평균 이용금액 약 108만원이었는데, 2025년 4개월간('25.1.~4.) 수기정산 금액을 제외한 전자바우처 기준 1인당 평균 청구금액 약 112만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설명임.

18)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1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실사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낮은 단가인 132만원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추경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됨.

[2024년 및 2025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 2024년도 본예산 산출내역 | 2025년도 본예산 산출내역 |
|---|---|
| ❍ 긴급돌봄 지원사업<br>· 10,000명×500천원×70% = 3,500,000천원 | ❍ 〈좌 동〉 |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 지원 내역]

| 구분 | A형(기본형) | B형(추가지원형) | C형(통합형) | D형(통합추가형) |
|---|---|---|---|---|
| 서비스 유형 | 기본돌봄 72시간 | 기본돌봄 144시간 | 기본돌봄 72시간 +<br>방문목욕 서비스 4회 | 기본돌봄 144시간 +<br>방문목욕 서비스 8회 |
| 바우처 총액 | 1,320,000원 | 2,640,000원 | 1,648,000원 | 3,296,000원 |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서비스 이용 확산 및 지자체 확대 참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이 사업 예산 대부분을 이미 지자체에 모두 교부한 상태인데,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2025년 5월 말 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자체 실집행현황]

(단위: 천원, %)

| 시도명 | 교부액 | 집행액 | 집행률 | 시도명 | 교부액 | 집행액 | 집행률 |
|---|---|---|---|---|---|---|---|
| 부산 | 286,700 | 165,354 | 57.7% | 강원 | 298,200 | 58,665 | 19.7% |
| 대구 | 180,000 | 76,497 | 42.5% | 충북 | 363,000 | 133,720 | 36.8% |
| 인천 | 285,000 | 102,586 | 36.0% | 전북 | 250,000 | 112,154 | 44.9% |
| 광주 | 336,000 | 46,358 | 13.8% | 전남 | 334,000 | 77,585 | 23.2% |
| 대전 | 118,000 | 48,279 | 40.9% | 경북 | 372,000 | 124,669 | 33.5% |
| 울산 | 225,000 | 77,905 | 34.6% | 경남 | 270,000 | 166,003 | 61.5% |
| 세종 | 70,000 | 15,270 | 21.8% | 제주 | 79,900 | 45,010 | 56.3% |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 지자체별 집행 여건이나 사업 추진 실적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일괄 교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만일 집행 가능성과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단계적인 교부 방식이 적용되었더라면, 교부되지 않았을 수 있는 가용 가능 예산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추경 규모는 보다 축소될 여지도 있었다고 보임.

이와 같이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 미비, 비현실적 단가 설정, 실사용 데이터 부재 및 지역 간 집행 편차 고려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본예산 편성시 실질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원 유형별 단가 현실화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정밀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예산 소요를 보다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추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지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민간자본보조 비목으로 변경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산업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초기 학습자와 AI분야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을 통하여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5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5,000만원(278.9%) 증액된 42억 3,400만원이 편성됨.[20]

[2025년도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제약산업 육성·지원 | 32,691 | 36,746 | 36,746 | 41,096 | 3,350 | 8.9 |
|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 1,034 | 884 | 884 | 4,234 | 3,350 | 278.9 |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조율 100%)으로, 주요 편성 사항은 ① AI기반 실험자율화(SDL, Self-Driving Lab) 실습 인프라 구축(25억원), ② AI 기반 신약개발 실험 자동화 기술(SDL) 이론 집중 교육(1억 6,000만원). ③ 후보물질 발굴 멘토링 교육 운영(6억 4,000만원), ④ 제조·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5,000만원)으로 구성됨.

20) 세부사업: 제약산업 육성·지원(3309-300)(보건산업정책국)

[2025년 추경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세부내역]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3,350백만원** |
| - AI기반 신약개발 실험 자율화(SDL) 실습 인프라 구축(2,500백만원) |
| * 장비 도입(장기임대) 15억, 실습공간 구축 5억, 교강사 양성 3억, 커리큘럼 개발 2억 |
| - AI기반 신약개발 실험 자율화(SDL) 이론 집중 교육(160백만원) |
| * 해외 연사 섭외, 강의 운영비, 교육 콘텐츠 제작 등 |
| - 후보물질 발굴 멘토링 교육 운영(640백만원) |
| - 제조·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50백만원) |
| * AI 기반 품질 문서 자동작성 툴 실습 (적격성평가, 변경관리 등), 품질 리스크 분석 지원을 위한 AI 기반 데이터 활용 교육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장비 도입 및 실습공간 구축과 같은 자본형 성적 지출과 경상적 성격의 지원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기본경비 지원 성격의 민간경상보조로 일괄 편성한 것은 지출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비목을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해외 SDL 장비를 도입하여 실습공간을 구축하고, 산업계와 연계 가능한 실습형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실무형 교육 강사 양성을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SDL 교육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 실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비 15억원, 실습공간 구축 5억원, 교사양성 및 커리큘럼 개발 5억원 등 총 2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장비비의 경우 해당 예산 범위에서 장비의 장기임대를 전제로 추진하였으나, 동일 예산으로 장비의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장비 구매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임.[21)]

2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습공간 구축 일정 및 계획은 장비도입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실습공간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2025년 추경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도입예정 장비 목록]

| 구분 | 내 용 |
|---|---|
| 합성 반응기 | 자동 반응 제어(온도, 압력, 교반 등) 기반 시료 취합, 후보물질을 합성하는 고속·병렬 합성 장비 |
| 로봇암 | 다양한 장비 간 물리적 시료 이송 자동화 (SDL 내 workflow 연계를 위한 핵심 요소) |
| 액체 핸들러 | 소량(μL~mL 수준)의 액체를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분주, 혼합 |
| 고체 주입기 | 고체 시약(촉매 등)을 고정밀로 자동 주입하는 고체 핸들링 장비 |
| 정제/분석 | 합성된 후보물질의 불순물은 제거하고 필요한 주성분 양을 정밀 분석 |
| 구조분석(NMR) | 합성한 화합물의 목표 분자 구조 확인 |
| 컴퓨팅 인프라 | 자동화된 실험제어, 분석결과 통합 및 최적화된 분자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모델 구매 |

자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지출 목적에 따라 보조금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지원을 위한 경비는 민간경상보조(320-01)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성격의 경비는 민간자본보조(320-07)로 각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장비 도입(임대→구매) 및 실습공간 구축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한 것은 비목별·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집행지침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간 세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외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출 성격에 따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비목 설정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비 구입과 공간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자부담 기준 보완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의료 AI 개발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30억 3,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22)]

[2025년도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9,418 | 9,418 | 9,418 | 12,452 | 3,034 | 32.2 |
|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 - | - | - | 3,034 | 3,034 | 순증 |

이 사업은 최근 의료 AI 연구개발의 핵심자원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의료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비용(바우처)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를 실시한 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사업자를 공모하는 매칭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23)]

[2025년 추경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세부내역]

| ○ **민간경상보조(320-01) : 3,034백만원** |
|---|
| 가.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
| ・ (대형과제) 400백만원 × 5개 기업 |
| ・ (중형과제) 200백만원 × 5개 기업 |
| ・ (매칭 지원) 2.8백만원 × 2(참여율 100%) × 3개월 × 연구원 2명 |

자료: 보건복지부

22) 세부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3039-311)(첨단의료지원관)

23) (매칭·심의 지원) 수요자(스타트업·중소기업)-공급자(의료데이터 보유 병원) 매칭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데이터 가공·분석) 데이터 가명처리, 라벨링 등 가공과 클라우드 등 안전한 분석환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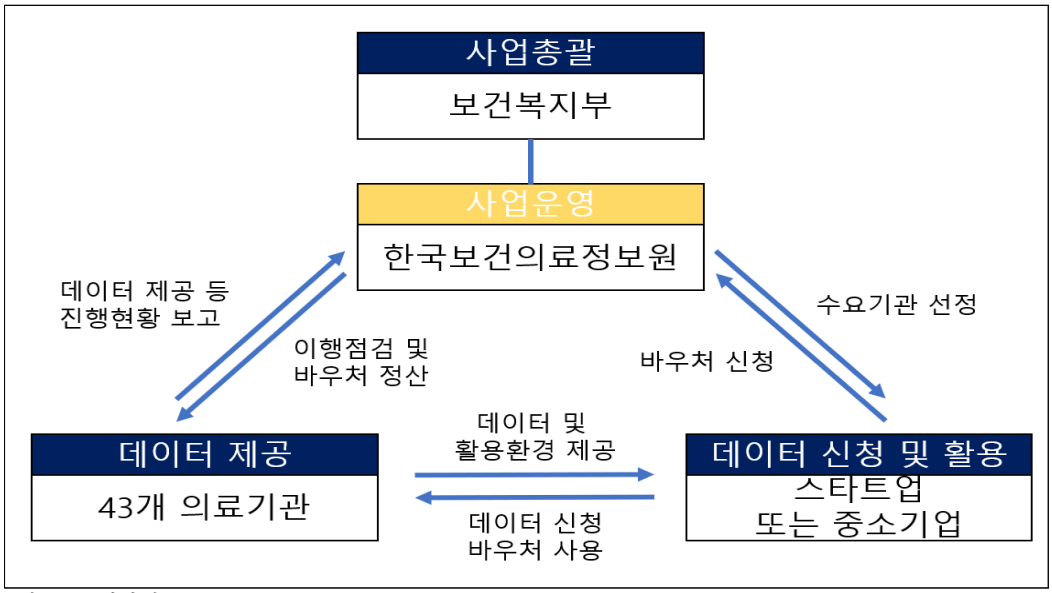
## 나. 검토의견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의료 AI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바, 자부담률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자부담 여력이 큰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 사업은 의료 AI 분야의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민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공, 가명처리, 임상정보 연계 등에 소요되는 실비(데이터 활용 비용)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개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술 등 신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데, 주된 수혜 대상은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추경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다수가 자본력이 취약하여 의료데이터 확보 및 가공 과정에 초기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이 사업은 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부담 도입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과제별 국고보조금의 25% 이상을 자부담으로 제시한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임.[24)]

이와 같은 자부담 부과는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같이 자부담 비율의 하한선만을 설정한 상태에서 지원기업을 선정할 경우 자부담 여력이 큰 기업이 선정과정에서 보다 유리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기업은 사실상 배제될 우려가 있음.

[2025년 추경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수요기관 선정평가 기준(안)]

| |
|---|
| ○ 기술성: 사업분야와 과제의 부합성, 핵심 보유기술의 우수성 등 |
| ○ 시장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등 |
| ○ 수행역량・의지: 연구계획의 구체성, **자부담 비율** 등 |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의료 AI 기업에 대한 마중물으로서의 역할로 작용하고자 하는 추경 편성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보조율을 통일하되, 일정 구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초기 기업 또는 소기업에 대해 자부담률 감면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이 사업은 민간 매칭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25%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기업에서 출자하여야 함.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이 4억원인 경우 기업은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 규모는 5억원이 됨.

# 6. 소록도병원관리: 적기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소록도병원관리’** 사업은 한센인 진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한센인권 회복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3,300만원(17.6%) 증액된 6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5년도 소록도병원관리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소록도병원관리 | 5,709 | 5,301 | 5,301 | 6,234 | 933 | 17.6 |

이 사업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 곰팡이 피해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소록도병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 설계비·공사비 등의 용도로 지출될 예정이며, 정비 대상은 치료병동, 별관 사무동, 원장관사 및 자원봉사회관임.

[2025년 소록도병원관리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6억 7,700만원 | ❍ 실시설계비(420-02)<br>: 115,500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 설계비<br>: 72,813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 설계비: 31,927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설계비: 10,760천원 | 36억 1,000만원 | ❍ 실시설계비(420-02):<br>275,858천원 (증 160,358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 설계비<br>: 72,813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 설계비: 31,927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설계비: 10,760천원 |

25) 세부사업: 소록도병원관리(4533-300)(국립소록도병원)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 | **4. 노후 시설 보수(2차 추경)**<br>**가. 별관 사무동 지붕교체공사 설계: 20,772천원**<br>**나.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 공사 설계: 91,303천원**<br>**다. 병원본관 외벽 교체공사 설계: 16,764천원**<br>**라. 원장관사 보수공사 설계: 31,519천원** |
| | ❍ 공사비(420-03) : 2,502,038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br>: 1,370,064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br>: 1,001,976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br>: 129,998천원 | | ❍ 공사비(420-03)<br>: 3,247,452천원(증 745,414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 1,370,064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br>: 1,001,976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br>: 129,998천원<br>**4. 노후 시설 보수(2차 추경)**<br>**가. 별관 사무동 지붕교체공사 : 274,400천원**<br>**나. 병원본관 외벽 교체공사 : 221,455천원**<br>**다. 원장관사 보수공사 : 249,559천원** |
| | ❍ 감리비(420-04) : 44,090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br>: 28,780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br>: 12,671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br>: 2,639천원 | | ❍ 감리비(420-04)<br>: 65,802천원 (증 21,712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br>: 28,780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br>: 12,671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br>: 2,639천원 |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 시설부대비(420-05) : 15,200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br>: 7,679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br>: 6,585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br>: 2,639천원 | | **4. 노후 시설 보수(2차 추경)**<br>**가. 별관 사무동 지붕교체공사**<br>**: 4,610천원**<br>**나. 병원본관 외벽 교체공사**<br>**: 3,720천원**<br>**다. 원장관사 보수공사**<br>**: 13,382천원**<br>❍ 시설부대비(420-05)<br>: 20,716천원(증 5,516천원)<br>1. 한울센터 내진보강공사<br>: 7,679천원<br>2. 석면제거 및 지붕교체공사<br>: 6,585천원<br>3. 병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br>: 2,639천원<br>**4. 노후시설 보수(2차 추경)**<br>**가. 별관 사무동 지붕교체공사**<br>**: 2,058천원**<br>**나. 병원본관 외벽 교체공사**<br>**: 1,661천원**<br>**다. 원장관사 보수공사**<br>**: 1,797천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으로 추진 예정인 시설물 개보수 공사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입찰 유찰, 사업자 미선정 등 사업 지연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원장 관사의 경우 국가유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필요로 인해 일정 지연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이는 바,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한센인이 입원·생활하고 있는 병동 등 노후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건축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음.

[2025년 추경 소록도병원관리 사업 산출내역]

| 공사명 | 2025년도 추경안 산출내역 |
|---|---|
| 별관 사무동 지붕 교체 공사 | ■ 301,840천원<br>- 실시설계비: 274,400천원 × 7.57% = 20,772천원<br>- 공 사 비: 800㎡ × 343천원 = 274,400천원<br>- 감 리 비: 274,400천원 × 1.68% = 4,610천원<br>- 시설부대비: 274,400천원 × 0.75% = 2,058천원 |
|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 공사 | ■ 91백만 원<br>- 실시설계비(420-02): 1,963,500천원 × 4.65% = 91,303천원<br>* 집행 여건을 감안 '25년 추경은 설계비 91백만 원 반영 |
| 병원본관 외벽 교체 공사 | ■ 243,600천원<br>- 실시설계비: 221,455천원 × 7.57% = 16,764천원<br>- 공 사 비: 221,455천원 × 1식 = 221,455천원<br>- 감 리 비: 221,455천원 × 1.68% = 3,720천원<br>- 시설부대비: 221,455천원 × 0.75% = 1,661천원 |
| 원장관사 보수공사 | ■ 296,257천원<br>- 실시설계비: 249,559천원×12.63%= 31,519천원<br>- 공 사 비: 249,559천원<br>· (가설공사) 850.0㎡×65천원 = 55,250천원<br>· (지붕공사) 442.525㎡×210천원 = 92,930천원<br>· (방수공사) 442.525㎡×150천원 = 66,379천원<br>· (내부마감) 500.0㎡×70천원 = 35,000천원<br>- 감 리 비: 249,559천원×5.24%+305천원 = 13,382천원<br>- 시설부대비: 249,559천원×0.72%= 1,797천원 |

자료: 보건복지부

해당 공사는「국가계약법」등에 따라 설계, 공사 등 각 단계별로 입찰을 실시한 후 추진될 예정인데, 통상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공사는 설계 입찰·계약(15일) → 설계(30일~90일) → 공사 입찰·계약(15일~45일) → 공사 시행(감독) → 준공(검사·검수)의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같이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전제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되거나, 설계지연, 시공사 미선정 등의 사업 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각 공사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 구분 | 설계 (소요일수) | | | ⇒ | 공사 (소요일수) | | | 계 |
|---|---|---|---|---|---|---|---|---|
| 별관 사무동 지붕 교체공사 | 설계 계약(3일) * 수의계약 | → | 실시설계 * 과업기간: 60일 | → | 공사 계약(10일) * 제한경쟁(긴급) | → | 가설공사, 철거, 방수, 지붕공사 *공사기간: 80일 | 153일 |
| 자원봉사 회관 보수·보강 공사 | 설계 계약(10일) * 소액수의 | → | 실시설계 * 과업기간: 90일 | | - | | - | 100일 |
| 병원본관 외벽 교체 공사 | 설계 계약(3일) * 수의계약 | → | 실시설계 * 과업기간: 60일 | → | 공사 계약(10일) * 제한경쟁(긴급) | → | 가설공사, 타일공사 * 공사기간: 80일 | 153일 |
| 원장관사 보수 공사 | 설계 계약(3일) * 수의계약 | → | 실시설계 * 과업기간: 60일 | → | 공사 계약(10일) * 제한경쟁(긴급) | → | 가설공사, 철거, 방수, 지붕공사 * 공사기간: 80일 | 153일 |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원장관사 보수공사의 경우 해당 관사가 1934년에 준공되어 2004년 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27] 국가등록문화재의 개·보수 등 건축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야 착공이 가능한

26) 정식명칭: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원장 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5호, 2004. 2. 6.)

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데,[28] 해당 공사가 현상변경 허가 또는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심사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지연 가능성이 더 높은 측면이 있음.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노후화된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병동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생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일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8)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장 관사 보수가 「문화유산법」 상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향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세출감액>**

# 7.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추경 감액에 따른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2025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7억 1,700만원(△0.3%) 감액된 21조 7,50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2025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기초연금 지급 | 20,201,456 | 21,814,577 | 21,814,577 | 21,750,860 | △63,717 | △0.3 |

당초 2025년도 기초연금 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3,510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음.

이번 추경에서 이 사업의 감액은 기준연금액 감소에 따른 여유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2.6%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준연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물가상승률이 2.3%에 그쳤기 때문임.

[2025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중 기초연금 급여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1조 7,912억 2,2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br>: 21,791,220백만원<br>가. 수급자 수(노인인구의 70%)<br>: 7,360천명 | 21조 7,275억 3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br>: 21,727,503백만원<br>가. 수급자 수(노인인구의 70%)<br>: 7,360천명 |

29) 세부사업: 기초연금 지급(2131-300)(연금정책관)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나. 기준연금액**<br>**: 343,510원(물가상승률 2.6%)**<br>다. 평균 국고보조율<br>: 83.51%( '24년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 등 고려)<br>라. 집행률: 96.9%(전년수준 유지) | | **나. 기준연금액**<br>**: 342,510원(물가상승률 2.3%)**<br>다. 평균 국고보조율<br>: 83.51%( '24년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 등 고려)<br>라. 집행률: 96.9%(전년수준 유지)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시 과도한 물가상승률 적용, 불용액 증가 등을 이유로 5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번 추경은 당시 국회의 감액 조치 및 심사 당시 문제 제기 사항을 고려할 때 감액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법정지출인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집행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1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기초연금 급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부감액 적용 대상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기초연금 예산의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 500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

[2024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4.11.20.) 심사 내용]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감액 | 수정이유 |
|---|---|---|
| 기초연금지급<br>(2131-300) | △50,000 | ○ 최근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이 점차 상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기초연금 급여 예산의 편성 규모에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을 반영할 필요<br>- 또한, 매년 약 1,000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불용액의 50% 상당액인 500억원 감액 필요<br>* 부부감액 수급 비율: 42.9%(2021년), 43.2%(2022년), 43.6%(2023년) |

특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 편성시 적용한 2.6%의 물가상승률이 실제 전망치보다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30] 이는 기초연금 단가 산정의 보수적 추계로 인한 과다 편성 관행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임.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실제 물가상승률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하락함을 근거로 기초연금 급여 예산의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회의 감액 조치 및 심사 당시 문제 제기 사항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한 감액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법정지출 사업으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예비비 또는 재차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사업의 주 대상은 고령층, 저소득층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급 차질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기초연금 예산의 규모와 법정지출로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상황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지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물가상승률, 감액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교한 추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0) 보건복지부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시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적시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5년도 예산 편성시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에 명시된 물가상승률 2.6%를 적용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2조 5,96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5,645 | 15,837 | 15,837 | 15,837 | - | - |
| 기 금 | 11,020 | 10,129 | 10,129 | 10,129 | - | - |
| 합 계 | 26,665 | 25,966 | 25,966 | 25,966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13조 8,94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36억원(△2.1%) 감소함.

예산은 12조 9,21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36억원(△2.3%) 감소하고, 기금은 9,72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25,059 | 129,839 | 132,253 | 129,217 | △3,036 | △2.3 |
| 기 금 | 10,474 | 9,725 | 9,725 | 9,725 | - | - |
| 합 계 | 135,534 | 139,564 | 141,978 | 138,942 | △3,036 | △2.1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28억원(2.1%) 증가함.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139 | 652 | 652 | 652 | - |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70,476 | 73,468 | 75,378 | 77,006 | 1,628 | 2.2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073 | 1,879 | 1,879 | 1,87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7 | 127 | 127 | 127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 | 21 | 21 | - | - | - |
| 합계 | 72,711 | 76,147 | 78,057 | 79,664 | 1,628 | 2.1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38억원(△0.6%) 감소함.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78,748 | 81,873 | 84,288 | 86,555 | 2,267 | 2.7 |
| 환경개선특별회계 | 70,476 | 73,468 | 75,658 | 77,286 | 1,628 | 2.2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0,670 | 32,007 | 32,007 | 26,704 | △5,303 | △16.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974 | 25,967 | 26,810 | 26,880 | 70 | 0.3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80 | 824 | 824 | 824 | - | - |
| 합계 | 199,248 | 214,139 | 219,587 | 218,249 | △1,338 | △0.6 |

주) 총계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337억 5,600만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4,134억 9,4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9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2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집중호우 등 홍수예방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 홍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사업과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각각 418억원, 150억원을 증액하고,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에 71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공공수역 등 수질개선 향상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각각 180억 1,200만원, 57억 8,500만원, 575억 6,600만원 및 70억원 증액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609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음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 정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국립공원 시설 개선·보수 등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에 30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6,492,369 | 6,783,069 | 7,024,513 | 7,251,210 | 226,697 | 3.2 |
| 1 | 국가하천정비 | 662,717 | 679,400 | 701,900 | 743,700 | 41,800 | 6.0 |
| 2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 154,657 | 93,484 | 93,484 | 108,484 | 15,000 | 16.0 |
| 3 | 공업용수도 안정화 | 9,266 | 27,502 | 27,502 | 34,602 | 7,100 | 25.8 |
| *4* |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 | *5,665,729* | *5,982,683* | *6,201,627* | *6,364,424* | *162,797* | *2.6*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2,808,889 | 3,365,407 | 3,449,701 | 3,629,498 | 179,797 | 5.2 |
| 5 | 비점오염저감사업 | 33,866 | 28,786 | 28,786 | 46,798 | 18,012 | 62.6 |
| 6 | 공공폐수처리시설 | 95,645 | 103,166 | 103,166 | 108,951 | 5,785 | 5.6 |

2) 환경부 소관 5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현계획과 동일함.

| | | | | | | | |
|---|---|---|---|---|---|---|---|
| 7 | 하수처리장 설치 | 1,024,060 | 852,741 | 852,741 | 910,307 | 57,566 | 6.8 |
| 8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160,023 | 225,499 | 225,499 | 286,493 | 60,994 | 27.0 |
| 9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213,702 | 145,591 | 145,591 | 176,031 | 30,440 | 20.9 |
| *1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 *1,281,593* | *2,009,624* | *2,093,918* | *2,100,918* | *7,000* | *0.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1,281,593 | 1,626,418 | 1,710,712 | 1,717,712 | 7,000 | 0.4 |
| 11 | 하수관로 정비 | 1,281,593 | 1,626,418 | 1,710,712 | 1,717,712 | 7,000 | 0.4 |
| 합계 | | 10,582,851 | 11,774,894 | 12,184,926 | 12,598,420 | 413,494 | 3.4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5,472억 5,000만원임.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및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각각 △4,672억 2,500만원, △63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등 으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서 각각 △100억원 및 △70억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3,053,695 | 3,191,527 | 3,191,527 | 2,661,277 | △530,250 | △16.6 |
| 1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319,254 | 2,263,104 | 2,263,104 | 1,795,854 | △467,250 | △20.6 |
| 2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 734,441 | 928,423 | 928,423 | 865,423 | △63,000 | △6.8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75,763 | 93,237 | 93,237 | 76,237 | △17,000 | △18.2 |
| 3 |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 | 22,852 | 49,011 | 49,011 | 39,011 | △10,000 | △20.4 |
| 4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52,911 | 44,226 | 44,226 | 37,226 | △7,000 | △15.8 |
| 합계 | | 3,129,458 | 3,284,764 | 3,284,764 | 2,737,514 | △547,250 | △16.7 |

주) 총계 기준

환경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연례적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이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의 조기 정비이므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사업은 수문조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2029년까지 수위관측소 474개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중 50개소가 편성되었는데 우선 건설할 수위관측소 선정 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공사비가 편성된 사업 중 아직 설계단계인 사업이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국가하천정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8억원(5.9%) 증액된 7,437억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국가하천정비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국가하천정비 | 662,717 | 679,400 | 701,900 | 743,700 | 41,800 | 5.9 |
| 국가하천정비(일반) | 556,470 | 450,100 | 472,600 | 485,100 | 12,500 | 2.6 |
| 배수영향구간정비 | 36,780 | 68,800 | 68,800 | 78,300 | 9,500 | 13.8 |
| 승격하천정비 | 10,295 | 53,500 | 53,500 | 56,500 | 3,000 | 5.6 |
|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 30,300 | 60,000 | 60,000 | 76,800 | 16,800 | 28 |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계지구, 구례지구 등 총 15개 지구에 총 41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것임.

3) 세부사업: 국가하천정비(5331-301)(수자원정책관)

[2025년 국가하천정비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지구명 | 2025년도 1회 추경 | 2025년도 2회 추경 | 증액분 |
|---|---|---|---|---|
| 합계 | - | 125,024 | 166,824 | 41,800 |
| 국가하천정비(일반) | 오계지구 | 3,850 | 5,650 | 1,800 |
| | 구례지구 | 5,060 | 6,060 | 1,000 |
| | 선변지구 | 3,313 | 5,013 | 1,700 |
| | 임실2지구 | 4,050 | 5,050 | 1,000 |
| | 적성2지구 | 3,919 | 4,919 | 1,000 |
| | 나주1지구 | 2,769 | 5,769 | 3,000 |
| | 청미지구 | 4,394 | 5,394 | 1,000 |
| | 죽고지구 | 4,570 | 6,570 | 2,000 |
| 배수영향구간정비 | 진위2지구 | 3,264 | 4,264 | 1,000 |
| | 대반·도대천지구 | 3,356 | 4,356 | 1,000 |
| | 서정리천지구 | 2,420 | 3,920 | 1,500 |
| | 천안지구 | 3,390 | 6,390 | 3,000 |
| | 용주지구 | 8,812 | 11,812 | 3,000 |
| 승격하천정비 | 금천지구 | 11,857 | 14,857 | 3,000 |
| 목감천 | 목감천1단계 | 60,000 | 76,800 | 16,800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나. 검토의견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연례적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추경 목적이 공사 중인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한 것이므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15개의 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 중 추가적인 공사를 통하여 전체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하천을 선정하여 제방 보축, 홍수방어벽 건설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것임.

그런데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2023년 및 2024년 소송결과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을 이유로 총 131억 8,000만원을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3년 및 2024년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년도 | ~에서 | ~으로 | 금액 | 사유 |
|---|---|---|---|---|
| 합계 | | | 13,180 | |
| 2023. 07. 11. | 국가하천정비 | 하천편입토지보상 | 4,000 | 소송결과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비 부족분 전용 |
| 2023. 11. 29. | | | 163 | |
| 2024. 02. 22. | 국가하천정비 | 하천편입토지보상 | 1,380 | 소송결과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비 부족분 전용 |
| 2024. 06. 10. | | | 991 | |
| 2024. 09. 13. | | | 3,650 | |
| 2024. 09. 13. | | | 1,539 | |
| 2024. 10. 18. | | | 1,040 | |
| 2024. 10. 28. | | | 417 |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예산 규모가 커서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으로 전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이 홍수 예방이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계속사업의 제방 보축, 홍수방어벽 건설 등을 조기에 수행하여 홍수 예방으로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또한, 2025년 5월말 기준 본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지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전 절차가 완료된 지구이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이 모두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해 내에 본예산과 추경 금액의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률 저조 지구]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지구명 | 2025년 | | |
|---|---|---|---|---|
| | | 본예산 | 집행액(5월말) | 집행률 |
| 국가하천정비(일반) | 청미지구 | 4,394 | 400 | 9.1% |
| 배수영향구간정비 | 대반·도대천지구 | 3,356 | 607 | 18.1% |
| 승격하천정비 | 금천지구 | 11,857 | 804 | 6.8%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반영된 금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지 않고 편성된 집행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올해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수위관측소 선정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사업은 홍수에 취약한 중·소하천에 홍수정보 수집 센서인 수문조사시설을 확충하고 수위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AI홍수예보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홍수예보의 시간적·공간적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억원(158.2%) 증액된 244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AI홍수예보 시설 구축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 154,657 | 93,484 | 93,484 | 108,484 | 15,000 | 16 |
|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 81,849 | 9,479 | 9,479 | 24,479 | 15,000 | 158.2 |

AI홍수예보 시설 구축사업은 홍수예보를 위하여 수위관측소와 AI홍수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4년 말까지 총 933개소의 수위관측소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

2025년에는 수위관측소 구축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수위관측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94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위관측소 50개소를 더 구축하는 것으로 150억원을 증액하였음.

4) 세부사업: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5134-302)(물재해대응과)

[2025년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3,932억 6,700만원 | ❍ AI 수문관측소 구축 : 6,879백만원<br>- 실시설계비 : 235백만원<br>* 1식 × 235백만원<br>- 공사비 : 6,600백만원<br>* 1식 × 6,600백만원<br>- 시설부대비 :44백만원<br>* 1식 × 44백만원<br>❍ AI홍수예보 플랫폼 현행화 : 2,600백만원<br>- 일반연구비 : 2,600백만원 | 6,188억 2,600만원 | ❍ AI 수문관측소 구축 : 6,879백만원<br>- 실시설계비 : 235백만원<br>* 1식 × 235백만원<br>- 공사비 : 6,600백만원<br>* 1식 × 6,600백만원<br>- 시설부대비 :44백만원<br>* 1식 × 44백만원<br>❍ AI홍수예보 플랫폼 현행화 : 2,600백만원<br>- 일반연구비 : 2,600백만원<br>❍ AI 수위관측소 구축 : 15,000백만원<br>- 실시설계비 : 747백만원<br>- 공사비 : 14,393백만원<br>* 50개소 × 2,900백만원<br>- 시설부대비 : 95백만원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5]은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0년에 수립한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에 대하여 2025년에 검토한 결과 물 재해 감시 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한 수위관측소의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변경된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수위관측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4가지 선정 기준에 따라 2029년까지 수위관측소 총 474개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

5)「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수위관측소 부분]

| 구분 | 선정 기준 | 수위관측소 수 (개소) |
|---|---|---|
| 기존 설치·운영 수위관측소 (1974 ~ 2024) | -[6] | 933 |
| 변경된 보고서 내용 (2025. 6. ~) | 합계 | 474 |
| | 과거 홍수 피해 발생 | 459 |
| | 도서지역 | 12 |
| | 접경지역 | 3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나. 검토의견

**AI홍수예보 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우선 설치하려는 수위관측소가 내부 검토 과정 위주로 선정되고 있는데, 시급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위관측소 건설 사업은 1974년부터 추진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2024년까지는 수위관측소의 설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요 하천의 홍수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가 이루어져 왔음.

환경부는 2020년 홍수 발생을 계기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수위관측소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25년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수위관측소 선정 기준 및 향후 건설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74개소의 수위관측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6) (1974 ~ 2020) 주로 규모가 큰 대형하천 위주로 설치
(2021 ~ 2024) 주로 지방하천 위주로 설치

[연도별 수위관측소 설치 하천 기준]

| 1974~2019년 | → | 2020년 | → | 2025년 |
|---|---|---|---|---|
| 규모가 큰 하천 | | 홍수피해로 지방하천에도 필요성 제기 | | 과거 홍수 피해 발생 여부 등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체 474개소 중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시급성이 인정된 50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었고, 앞으로도 내부 논의를 거쳐 매년 일부 수위관측소 건설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이들 474개소는 모두 홍수피해 이력 등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인 만큼, 실제 건설 시기와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내부 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시급성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함.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선정된 50개소의 경우 설치 대상 수위관측소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유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였다고 하나, 선정 과정에서 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50개소의 선정 절차 (2025. 6.)]

|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안 확정 | → | 연내 수위관측소 설치가능 물량 조사 | → | 설치 대상 리스트 송부 | → | 50개소 초안 선정[7] 후 송부 | → |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
|---|---|---|---|---|---|---|---|---|
| 환경부 | | 환경부, 홍수통제소 | | 환경부 → 홍수통제소 | | 홍수통제소 → 환경부 | | 환경부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매년 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각 하천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의견 청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설치의 시급성이 있음에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7) 유역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위정보 제공을 요구한 지점 적극 반영

수위관측소는 홍수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단순히 내부 행정절차에 의하여 선정하기보다는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함.

따라서 환경부는 수위관측소 건설 대상지 선정 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환경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

### <세출감액>

## 3. 스마트하수관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추가 감액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및 지능화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원(△22.6%) 감액된 34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 22,852 | 49,011 | 49,011 | 39,011 | △10,000 | △20.4 |
| 스마트하수관로 | 10,096 | 44,168 | 44,168 | 34,168 | △10,000 | △22.6 |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비의 7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 | | 지원비율 (%) | 법적 근거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안 | | |
| 스마트하수관로 | 보조 | 지자체보조 | 44,168 | 44,168 | 34,168 | 70%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8) 세부사업: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1132-309)(물환경정책관)

[2025년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41억 6,800만원 | ❍ 자치단체자본보조 : 44,168백만원<br>- 스마트하수관로 (44,168백만원)<br>* 도시침수대응 5개소, 하수악취관리 5개소 | 341억 6,800만원 | ❍ 자치단체자본보조 : 34,168백만원<br>- 스마트하수관로 (34,168백만원)<br>* 도시침수대응 5개소, 하수악취관리 5개소 |

자료: 환경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은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의 총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인데,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여전히 초과 편성된 예산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중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은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총사업비가 감액되면서 국비 지원액도 함께 조정되었음.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 진행과정]

| 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총사업비 확정 |
|---|---|---|---|---|
| 날짜 | 2021. 06. | 2022. 02. | 2024. 10. | 2025. 03. |
| 총사업비 | 378억 7,700만원<br>(예상) | - | - | 123억 5,200만원<br>(255억 2,500만원 감액) |
| 국비 지원 | 265억 1,390만원[9]<br>(예상) | - | - | 74억 6,800만원[10]<br>(190억 4,590만원 감액)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9) 총사업비 378억 7,700만원의 70%로 계산

10) 실시설계결과 국비 지원이 아닌 사업을 제외하여 계산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 금액 감액에 대응하여 2025년도 본예산 171억 2,000만원 중 10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그런데 2025년 해당 사업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13억 7,900만원을 포함해 총 184억 9,900만원이며, 2024년 이전에 이미 11억 6,000만원이 집행되어 현재까지 총 196억 5,900만원이 사업에 편성 및 집행된 상황임.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 진행현황]

| 회계연도 | 본예산 | 이월액 | 예산현액 | 실집행액 | 실집행액 + 예산현액 |
|---|---|---|---|---|---|
| 2021 ~ 2024 | - | - | - | 11억 6,000만원 | 196억 5,900만원 |
| 2025 | 171억 2,000만원 | 13억 7,900만원 | 184억 9,900만원 | - |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확정된 총사업비 국비 지원액(74억 6,800만원)보다 121억 9,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0억원을 감액하더라도 여전히 21억 9,100만원이 초과하여 편성되어 있음.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현액 차이]

| 실집행액 + 2025년 예산현액 (A) | 확정된 총사업비 (B) | 총사업비 대비 초과예산 (A - B) |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예산 | 초과예산과 감액 예산 차이 |
|---|---|---|---|---|
| 196억 5,900만원 | 74억 6,800만원 | 121억 9,100만원 | 100억원 | 21억 9,100만원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여전히 확정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초과된 예산에 대한 추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설계 전 공사비 전액 편성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단계와 집행 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공사비 전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대해 국회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11)]

심지어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2021~2023년 회계연도 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집행 부진으로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집행 및 공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스마트하수관로 사업 국회 결산 지적내역]

| 회계연도 | 시정요구명 | 시정요구 지적사항 | 시정요구 유형 |
|---|---|---|---|
| 2021회계연도 결산 |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 집행 관리 강화 | '스마트 하수관로(81억 7,800만원)'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교부금 전액이월로 0%임 | 시정, 제도개선 |
| 2022회계연도 결산 |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함 | 시정 |
| 2023회계연도 결산 |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추가적인 집행지연 방지 필요 | 내역사업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수립한 사업 완료 시점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제도개선 |

이와 같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설계 완료 이전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였고, 결국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의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어 예산액도 감액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더해 군포시와 인천광역시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의 경우 공사비 전액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아직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인데, 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고 착공도 연말로 예상되므로 두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부처별 V),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3~196면]

**9.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

나. 검토의견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2024년 9월말 현재 10개소 중 7개소의 설계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에 잔여 공사비 전액인 44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 5월말 기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 부처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착공예상일 |
|---|---|---|---|---|---|---|---|---|
| | 본예산 | 집행액 | 교부액 (A)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현액 (C=A+B) | 실집행액 (D) | 실집행률 (D/C) | |
| 군포시 | 2,336 | - | - | 235 | 235 | - | - | 2025. 10. |
| 인천광역시 | 2,167 | - | - | 1,250 | 1,250 | - | - | 2025. 11.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설계 전 공사비 편성의 부적절성이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감액에 따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단계 및 집행 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세출증액>

## 4. 폐기물처리시설: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매립,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9억 9,400만원(27.1%) 증액된 2,858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160,023 | 225,499 | 225,499 | 286,493 | 60,994 | 27.0 |
| 폐기물처리시설 | 159,349 | 224,825 | 224,825 | 285,819 | 60,994 | 27.1 |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30~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폐기물처리시설 집행방법]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 | | 지원 비율 (%) | 법적 근거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안 | | |
| 폐기물 처리시설 | 자본보조 | 지자체 | 224,825 | 224,825 | 285,819 | 30~50[13)]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56조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2) 세부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433-306)(자원순환국)

1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계속사업에 편성되었으며, 매립시설인 남원매립정비 1곳에 5억 7,000만원, 소각시설 6곳에 총 552억 9,400백만원을 각각 증액하려는 것임.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세부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사업 | 기간 | 25년 예산 | 잔여 국고 | 추경안 |
|---|---|---|---|---|
| 남원매립정비 | 2025-2027 | 300 | 11,390 | 5,700 |
| 서산소각 | 2018-2026 | 3,380 | 2,766 | 2,766 |
| 김해소각 | 2020-2025 | 15,707 | 3,095 | 3,095 |
| 울산소각 | 2020-2026 | 13,280 | 19,920 | 10,000 |
| 대구소각 | 2020-2026 | 12,133 | 9,433 | 9,433 |
| 목포소각 | 2021-2027 | 13,526 | 18,204 | 15,000 |
| 경남소각 | 2019-2027 | 1,034 | 30,776 | 15,000 |
| 매립 합계 | - | 300 | 11,390 | 5,700 |
| 소각 합계 | - | 59,060 | 84,194 | 55,294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나. 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시설 공사의 조기 추진을 위한 것인데, 남원매립정비사업의 경우 아직 설계단계이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
|---|---|---|
| 26. 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30<br>광역시: 40<br>시 · 군 및 도서지역: 50 | 서울특별시 · 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 · 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7개인데, 서산소각 등 6개 사업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상태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 추가 공사 집행 또는 소각로 사전제작이 가능하므로 연내준공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나, 남원매립정비사업의 경우 아직 설계단계에 불과함.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현재 상황]

| 사업 | 현재 상황 | 추경 효과 |
|---|---|---|
| 남원매립정비 | 설계<br>(2024.12.~2025.10.) | - 연내착공(2025.12월)<br>* 공사비 부족분 반영 |
| 서산소각 | 공사중<br>(2022.11.~2026.6.) | - 연내준공(2025.11월)<br>* 공사비 부족분 반영 |
| 김해소각 | 공사중<br>(2023.01.~2025.12.) | - 연내준공(2025.12월)<br>* 공사비 부족분 반영 |
| 울산소각 | 공사중<br>(2023.05.~2026.10.) | - 공사기간단축(4개월)<br>* 소각로 사전제작 |
| 대구소각 | 공사중<br>(2023.05~2026.05.) | - 공사기간단축(5개월), 2025년 준공<br>* 소각로 사전제작 및 전기공사조기발주 |
| 목포소각 | 공사중<br>(2025.02.~2027.08.) | - 공사기간단축(4개월)<br>* 소각로 사전제작 |
| 경남소각 | 공사중<br>(2024.08~2027.11.) | - 공사기간단축(4개월)<br>* 소각로 사전제작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설계가 2025년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설계가 마무리 된 이후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설계가 길어지거나 설계에 따라 사업비 변동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연내착공이 불가능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공사비 보조금의 이월·불용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해당 사업이 설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내착공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만큼 사업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출감액>

## 5. 무공해차 보급사업: 향후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가. 개 요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에 대한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무공해차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72억 5,000만원(20.6%) 감액된 1조 7,95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4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무공해차 보급 | 2,319,254 | 2,263,104 | 2,263,104 | 1,795,854 | △467,250 | △20.6 |
| 전기자동차 보급 | 1,734,000 | 1,521,770 | 1,521,770 | 1,137,770 | △384,000 | △25.2 |
| 수소차 보급 | 571,350 | 721,830 | 721,830 | 638,580 | △83,250 | △11.5 |

내역사업 중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40억원(△25.2%) 감액된 1조 1,37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 중 **‘수소차 보급’** 사업은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청소차의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32억 5,000만원(△11.5%) 감액된 6,38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14) 세부사업: 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대기환경정책관)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구분 | 차종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 | | 차이 |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 전기승용 | 7,020억원 | 234,000대 x 3백만원 | 5,910억원 | 197,000대 x 3백만원 | 1,110억원 |
| | 전기화물 | 5,460억원 | 54,600대 x 10백만원 | 2,730억원 | 27,300대 x 10백만원 | 2,730억원 |
|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 수소승용 | 2,475억원 | 11,000대 x 22.5백만원 | 1,642억5,000만원 | 7,300대 x 22.5백만원 | 832억 5,000만원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나. 검토의견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지적된 수요 예측 부정확성과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보급 대수를 확대 편성하였고, 실제로 부진한 물량이 예상되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용이 예상되는 물량을 감액한 것임.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예상 대수]

| 구분 | 차종 | 당초 예상 대수 | 실제 집행(예상) 대수 | 차이 |
|---|---|---|---|---|
| 전기차 (자치단체보조) | 전기승용 | 234,000대 | 197,000대 | 37,000대 |
| | 전기화물 | 54,600대 | 27,300대 | 27,000대 |
| 수소차 (자치단체보조) | 수소승용 | 11,000대 | 7,300대 | 3,700대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승용차의 경우, 매년 예산 편성 시 예상한 대수와 실제 집행 대수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기승용차에서만 117,576대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편성과 실집행 차이]

(단위: 대)

| 구분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전기 (자치단체 보조) | 승용 | 예산편성시 예상대수 | 164,500 | 150,640 | 203,000 |
| | | 실집행대수 | 109,413 | 75,207 | 85,424 |
| | | 차이 | 55,087 | 75,433 | 117,576 |
| | 화물 | 예산편성시 예상대수 | 41,000 | 45,500 | 54,600 |
| | | 실집행대수 | 37,302 | 40,054 | 18,044 |
| | | 차이 | 3,698 | 5,446 | 36,556 |
| 수소 승용 (자치단체보조) | | 예산편성시 예상대수 | 17,650 | 16,000 | 6,800 |
| | | 실집행대수 | 10,065 | 4,267 | 2,718 |
| | | 차이 | 7,585 | 11,733 | 4,082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연례적인 불용이 반복됨에 따라, 202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기승용차와 수소승용차에 대한 보급 대수 산정 및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1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오히려 전기승용차를 203,000대에서 234,000대로, 수소승용차를 6,800대에서 11,000대로 각각 늘려서 편성하였고, 결국 집행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되었음.

15)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부처별 V),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3~222면]

**13. 전기차 보급 사업: 전기승용차 예산 조정 필요**

나. 검토의견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차종별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승용차의 집행실적이 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기승용차의 적정 계획물량 검토 및 이에 기반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함.

**14.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실적 및 미교부액 등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나. 검토의견

수소차 전 차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제작사의 생산물량보다도 환경부의 보급계획이 과다함을 고려하여 과다계상된 물량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환경부는 국회 심사단계에서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제 집행 가능 대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출증액>

## 6. 도시침수대응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수관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침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원(2.2%) 증액된 3,20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도시침수대응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하수관로 정비 | 1,281,593 | 1,626,418 | 1,710,712 | 1,717,712 | 7,000 | 0.4 |
| 도시침수대응 사업 | 327,514 | 313,757 | 313,757 | 320,757 | 7,000 | 2.2 |

도시침수대응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수도를 정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70%의 비율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도시침수대응 사업 집행방법]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 | | 지원 비율 (%) | 법적 근거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안 | | |
| 도시침수대응 | 보조 | 지자체보조 | 313,757 | 313,757 | 320,757 | 70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6) 세부사업: 하수관로정비(1132-312)(물환경정책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인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과 삼척시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에 대한 연부액을 증액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서 도시침수 대응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려는 것임.

[2025년 도시침수대응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증액분 | 추경안 | 사업착수 | 사업준공 |
|---|---|---|---|---|---|
|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 | 100 | 5,000 | 5,100 | 2021 | 2028 |
|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 2,718 | 2,000 | 4,718 | 2022 | 2026 |

자료: 환경부

## 나. 검토의견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은 펌프장 부지선정 지연으로 설계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24년 말 재개된 상황이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은 2021년부터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펌프장 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였음.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 회계연도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 이월액 | 예산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2021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2022 | 500 | 1,499 | 1,999 | 1,999 | - | 1,999 | 554 | 1,999 | 554 | 1,445 | - | 27.7 |
| 2023 | - | 300 | 300 | 300 | 1,445 | 1,745 | - | 300 | - | 1,745 | - | - |
| 2024 | - | - | - | - | 1,745 | 1,745 | 618 | - | - | 44 | 1,083 | 35.4 |

이후 2024년 12월에 창원시의 펌프장 부지 선정 협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재개되었고, 2025년 6월 기준 약 90%의 설계 공정률을 달성한 상황임.

추가경정예산은 6월 내 도시침수예방사업의 설계 준공이 완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펌프장 부지 선정 협의를 완료한 지역의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비 50억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려는 것임.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 집행현황]

| 2021년 ~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 2025년 |
|---|---|---|---|
| 기본계획 수립 | 펌프장 부지 미선정으로 설계 중단 | 펌프장 부지 협의 완료 | 기본 및 실시설계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은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토지보상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향후 설계 완료 시기 및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집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사업의 착수는 2021년에 하였으나 2024년까지 설계가 중단되면서 설계 및 공사 착수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준공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설계 결과에 따른 보상 범위와 금액의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한 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토지보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34조 7,38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3,423 | 3,472 | 3,472 | 3,472 | - | - |
| 기 금 | 309,519 | 343,910 | 343,910 | 343,910 | - | - |
| 합 계 | 312,942 | 347,382 | 347,382 | 347,382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37조 2,09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5,837억원(4.4%) 증가함.

예산은 6조 72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75억원(4.4%) 증가하고, 기금은 31조 1,37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조 3,261억원(4.4%)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58,151 | 57,549 | 58,146 | 60,722 | 2,575 | 4.4 |
| 기 금 | 278,674 | 295,903 | 298,109 | 311,370 | 13,261 | 4.4 |
| 합 계 | 336,825 | 353,452 | 356,255 | 372,092 | 15,837 | 4.4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3,235 | 3,254 | 3,254 | 3,254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7 | 218 | 218 | 218 | - | - |
| 합계 | 3,423 | 3,472 | 3,472 | 3,472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75억원(4.0%)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55,520 | 57,183 | 57,480 | 59,605 | 2,125 | 3.7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96 | 866 | 866 | 1,317 | 450 | 52.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39 | 1,229 | 1,529 | 1,529 |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111 | 3,985 | 3,985 | 3,985 | - | - |
| 합계 | 62,365 | 63,263 | 63,860 | 66,436 | 2,575 | 4.0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54조 8,036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고용보험기금 | 234,136 | 276,955 | 276,955 | 276,955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202,950 | 234,181 | 234,181 | 234,181 | - |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20,048 | 21,829 | 21,829 | 21,829 | - |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9,728 | 9,142 | 9,142 | 9,142 | -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5,011 | 5,661 | 5,928 | 5,928 | - | - |
| 합계 | 471,873 | 547,769 | 548,036 | 548,036 | - | -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2,575억 3,800만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조 5,928억 5,6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를 위해 1,652억원을 증액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 1조 2,929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23,888 | 23,420 | 23,420 | 25,637 | 2,217 | 9.5 |
| 1 | 내일배움카드(일반) | 584,906 | 580,161 | 580,161 | 596,161 | 16,000 | 2.8 |
| 2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 6,185 | 9,199 | 9,199 | 11,199 | 2,000 | 21.7 |
| 3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837,516 | 885,130 | 885,130 | 910,880 | 25,750 | 2.9 |
| 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942,515 | 845,709 | 845,709 | 1,010,865 | 165,156 | 19.5 |
| 5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7,676 | 21,789 | 21,789 | 34,561 | 12,772 | 58.6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86,828 | 83,725 | 83,725 | 128,774 | 45,049 | 53.8 |
| 6 | 진폐위로금 | 86,828 | 83,725 | 83,725 | 128,774 | 45,049 | 53.8 |
| 고용보험기금 | | 11,039,396 | 11,036,299 | 11,036,299 | 12,339,299 | 1,303,000 | 11.8 |
| 7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 125,000 | 119,225 | 119,225 | 129,325 | 10,100 | 8.5 |
| 8 | 구직급여 | 10,914,396 | 10,917,074 | 10,917,074 | 12,209,974 | 1,292,900 | 11.8 |
| 임금채권보장기금 | | 40,190 | 70,352 | 70,352 | 78,481 | 8,129 | 11.6 |
| 9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 40,190 | 70,352 | 70,352 | 78,481 | 8,129 | 11.6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471,792 | 481,792 | 481,792 | 496,792 | 15,000 | 3.1 |
| 10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471,792 | 481,792 | 481,792 | 496,792 | 15,000 | 3.1 |
| 합계 | | 14,027,004 | 14,014,156 | 14,014,156 | 15,607,012 | 1,592,856 | 11.4 |

주) 총계 기준

2)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3개(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1조 3,353억 1,8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3개임.

공사비, 감리비 등이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련기술장려사업(숙련기술진흥원추가건립)' 에서 △92억원이 감액되고, 이외 기금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자금의 여유재원 활용에 따라 예치규모가 감액되었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13,281,521 | 17,148,526 | 16,975,747 | 15,640,429 | △1,335,318 | △7.9 |
| 일반회계 | | 40,057 | 33,744 | 33,744 | 24,555 | △9,189 | △27.2 |
| 1 | 숙련기술장려사업 | 40,057 | 33,744 | 33,744 | 24,555 | △9,189 | △27.2 |
| 고용보험기금 | | 5,743,688 | 8,284,165 | 8,268,780 | 6,965,780 | △1,303,000 | △15.8 |
| *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5,743,688* | *8,284,165* | *8,268,780* | *6,965,780* | *△1,303,000* | *△15.8* |
| 임금채권보장기금 | | 325,005 | 280,090 | 129,256 | 121,127 | △8,129 | △6.3 |
| *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25,005* | *280,090* | *129,256* | *121,127* | *△8,129* | *△6.3*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7,172,771 | 8,550,527 | 8,543,967 | 8,528,967 | △15,000 | △0.2 |
| *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7,172,771* | *8,550,527* | *8,543,967* | *8,528,967* | *△15,000* | *△0.2* |
| 합계 | | 13,281,521 | 17,148,526 | 16,975,747 | 15,640,429 | △1,335,318 | △7.9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고용보험가입자 수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예상 인원과 금액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추경안을 산출하였으나, 2025년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증액분에 대한 연내집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취업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1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7만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5월말 기준 2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1만 8,512명이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나, 기존 운영기관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의 내실화와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구직급여 사업은 추경을 통해 1조 2,929억원의 추가 지출을 편성하여 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으나, 60세 이상 수급자와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구직급여의 목적과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인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섯째,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은 폭염 전에 사업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빠르게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나,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생략으로 부적정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기에 수요가 급증하여 이동식에어컨이나 산업용선풍기의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추경 증액분의 연내집행 노력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를 일부 지원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0억원(2.8%) 증액된 9,07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837,516 | 885,130 | 885,130 | 910,880 | 25,750 | 2.9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836,243 | 882,899 | 882,899 | 907,899 | 25,000 | 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4)]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5)]

---

3) 세부사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고용서비스정책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고용노동부는 위 두 법에 근거하여 이 사업을 통해 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분의 80%, ②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6]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부터 보험료 지원금액만큼을 공제하여 부과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개요]

| |
|---|
| ○ (지원기준) ①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②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br>*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br>○ (지원내용)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br>❶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br>*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br>▸(고용보험) 월 최대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br>▸(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범위에서 지원<br>❷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br>*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br>** 월 최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5)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2021년부터는 사중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가입자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도 매해 개선하고 있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사업 개요〉

| 구 분 | 지원 보수 | 지원 수준 | |
|---|---|---|---|
| 2012년 | 월보수 35~125만원 미만 | ▲35만원~105만원 미만: 1/2지원, ▲105만원~125만원 미만: 1/3지원 | |
| 2013년 | 월보수 130만원 미만 | 1~3월 | ▲110만원 미만: 1/2 지원, ▲110만원~130만원 미만: 1/3 지원 |
| | | 4~12월 | ▲130만원 미만: 1/2 일괄지원 |
| 2014년 | 월보수 135만원 미만 | 1/2 일괄지원 | |
| 2015년 | 월보수 140만원 미만 | | |
| 2016~2017년 | 월보수 14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 차등지원 | |
| 2018년 | 월보수 19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기가입자 40%<br>최대지원기간 36개월, 기가입자 ’21년부터 지원중단 | |
| 2019년 | 월보수 210만원 미만 | | |
| 2020년 | 월보수 215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기가입자 30% | |
| 2021년 | 월보수 220만원 미만 | 신규가입 근로자 80%, 예술인·노무제공자 80% | |
| 2022년 | 월보수 230만원 미만 | | |
| 2023년 | 월보수 26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80%<br>(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 |
| 2024~2025년 | 월보수 270만원 미만 | | |

자료: 고용노동부

이번 추경안에서 고용노동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것보다 지원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 증가를 고려하여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8,828억 9,900만원 | ❍ 기타보전금(310-04): 8,601억 3,600만원<br>가. 일반근로자: 8,295억 6,900만원<br>ⓐ고용보험료 지원: 1,419억 5,800만원<br>ⓑ국민연금보험료 지원: 6,876억 1,100만원<br>나. 일용근로자: 132억 7,000만원<br>ⓐ 고용보험료 지원: 112억 4,500만원<br>ⓑ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억 2,600만원<br>다. 예술인: 4억 100만원<br>ⓐ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3억 5,900만원<br>ⓑ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4,200만원<br>라. 노무제공자: 168억 9,600만원<br>ⓐ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34억 6,000만원<br>ⓑ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134억 3,600만원 | 9,078억 9,900만원 | ❍ 기타보전금(310-04): **8,851억 3,600만원**<br>가. 일반근로자: **8,505억 8,000만원**<br>ⓐ 고용보험료 지원: 1,499억 6,700만원<br>ⓑ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7,006억 1,300만원<br>나. 일용근로자: 132억 7,000만원<br>ⓐ 고용보험료 지원: 112억 4,500만원<br>ⓑ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억 2,600만원<br>다. 예술인: **4억 3,800만원**<br>ⓐ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3억 9,600만원<br>ⓑ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4,200만원<br>라. 노무제공자: **208억 4,800만원**<br>ⓐ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46억 3,800만원<br>ⓑ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 162억 1,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고용보험가입자 수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예상 인원과 금액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추경안을 산출하였으나, 2025년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증액분에 대한 연내집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예산액 8,828억 9,900만원 중 2025년 5월말 기준 4,352억 6,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9.3%이나, 이는 연초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일반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118억 3,900만원, 일반근로자 국민연금 372억 2,000만원이 포함(합계 490억 5,900만원)된 집행실적임.

전년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5년 1월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2025년 1~4월 지원실적을 전년도 동기간 실적과 비교하면, 지원금액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전년대비 133억 9,700만원(△5.6%) 감소하였음.[7)]

[2025년 1~4월 유형별 지원금액의 전년대비 변화]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료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 예술인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 일반근로자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 합계 |
|---|---|---|---|---|---|---|---|
| 2024년 (A) | 48,384 | 3,543 | 143 | 6,281 | 238,213 | 665 | 297,230 |
| 2025년 (B) | 47,347 (59,186) | 3,446 | 135 | 7,691 | 224,816 (262,036) | 371 | 283,806 (332,865) |
| B-A | △1,037 (10,802) | △97 | △9 | 1,410 | △13,397 (23,823) | △294 | △13,424 (35,635) |
| (B-A)/A | △2.1 | △2.7 | △6.3 | 22.4 | △5.6 | △44.2 | △4.5 (12.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분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2025년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요건을 직전 6개월 동안 가입이력이 없던 것에서 직전 1년 동안 가입이력이 없던 것으로 강화하고, 지원금 상한액을 월 보수 230만원 수준의 보험료로 설정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7) 2025년 1~4월 간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인원 또한 감소하였으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인원이 증가하여 전체 지원인원은 전년대비 7만 7,879명(△1.8%) 감소하는 수준임.

< 2025년 1~4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유형별 지원인원의 전년 동기간 대비 변화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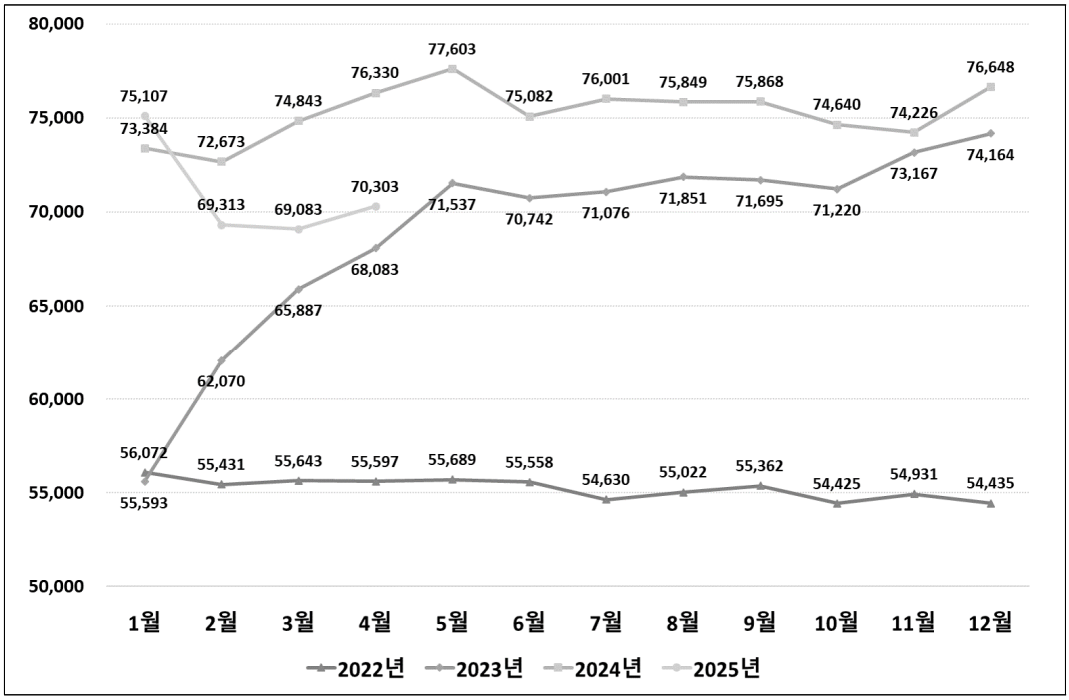
| 구분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료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 예술인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 일반근로자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 합계 |
|---|---|---|---|---|---|---|---|
| 2024년 (A) | 1,736,473 | 357,811 | 10,880 | 481,637 | 1,803,315 | 4,468 | 4,394,584 |
| 2025년 (B) | 1,678,230 | 340,913 | 11,357 | 588,306 | 1,693,431 | 4,468 | 4,316,705 |
| B-A | △58,243 | △16,898 | 477 | 106,669 | △109,884 | - | △77,879 |
| (B-A)/A | △3.4 | △4.7 | 4.4 | 22.1 | △6.1 | - | △1.8 |

주) 2024년 예산 부족으로 2025년도에 지급한 인원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2~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지원금액을 보면, 고용과 실업의 계절성[8]으로 상반기(1~5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증가세가 완화되거나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2022~2024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월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주) 2024년 12월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2025년도에 지연 집행된 금액까지 포함하고, 2025년 1월은 전년도 예산부족분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와 같은 집행패턴 하에서, 2025년 1~4월 지원금액의 전년대비 감소 추세(△4.5%)가 연도 중 계속되어 전년(8,540억 9,000만원)대비 집행액이 4%(약 341억 6,360만원)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추경으로 250억원이 증액될 경우 2024년도 예산 부족분 490억 5,900만원 이상 여유재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추경안의 연내집행 가능성에 대해 ① 2024년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②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③ 맞춤형 홍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인식도를 제고하며 가입 촉진활동 등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8) 고용지표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경제지표임. 연초 신입사원 채용이나 학교 개학의 영향이 있으며, 기온이 오르며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농업 관련 활동이 활발해지는 특징이 있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임금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회복에 기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 후 적극적인 연내집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및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 강화 프로그램 목표의 적극적인 달성 노력 필요

### 가. 개 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51억 5,600만원(19.5%) 증액된 1조 108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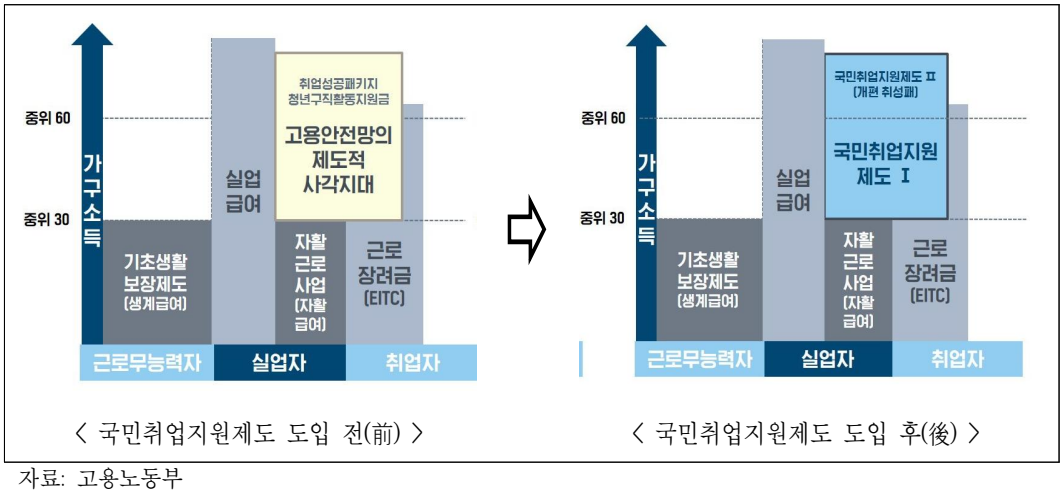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국민취업지원제도 | 942,515 | 845,709 | 845,709 | 1,010,865 | 165,156 | 19.5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 및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9) 세부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10)]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구분 | | | 지원대상 및 요건 | | | | 지원내용 | | |
|---|---|---|---|---|---|---|---|---|---|
| | |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 | |
| | | | | | | |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 1유형 | 요건심사형 | | 15~69세 | 중위소득 60%↓ | 4억원↓ | 2년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 | ○ | × |
| | 선발형 | 청년 | 15~34세 | 중위소득 120%↓ | 5억원↓ | × | | | |
| |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 4억원↓ | 2년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 | | |
| 2유형 | 특정계층 | | 15~69세 | × | × | × | ○ | × | ○ |
| | 청년 | | 15~34세 | × | × | × | | | |
| | 중장년 | | 35~69세 | 중위소득 100%↓ |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증액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참여자를 4만 3,595명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부양가족수당 포함)과 취업성공수당 1,390억 1,300만원 증액,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1만명, 중장년 8,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59억 4,300만원 증액,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56억 3,000만원 증액,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인원 증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145억 7,000만원 증액,[11)] 도합 1,65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0) 1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따라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11) 유형2의 취업지원서비스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추경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은 28,000명(청년 10,000명, 중장년 8,000명, 건설업퇴직자 10,000명)의 인원에게 추가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함.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본예산 | |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8,457억 9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br>❍ 구직촉진수당: 5,597억 5,400만원<br><br>❍ 취업성공수당: 770억 700만원<br><br>〈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br>❍ 참여자 수당: 613억 400만원<br><br>(청년) 496억 3,900만원<br><br>(중장년) 66억 9,300만원<br><br>❍ **민간위탁비: 578억 6,000만원** | 1조 108억 6,5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br>❍ **구직촉진수당: 6,819억 5,500만원**<br>**1,222억 100만원 증액**:<br>50만원(지원단가)×**4만3,595명**×5.4회(평균지급 횟수)+부양가족수당 15만원×5.4회×5,550명<br><br>❍ **취업성공수당: 938억 1,900만원**<br>**168억 1,200만원 증액**:<br>62.5만원(평균단가)×**2만6,900명**<br><br>〈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br>❍ **참여자 수당: 728억 7,700만원**<br><br>**- (청년) 529억 4,000만원**<br>**33억 100만원 증액**:<br>17만원(참여수당)×**1만명**×0.94(IAP수립률) +28.4만원(훈련수당)×**1만명**×0.4(훈련수당수급 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br>**- (중장년) 93억 3,400만원**<br>**26억 4,100만원 증액**:<br>17만원(참여수당)×**8천명**×0.94(IAP수립률) +28.4만원(훈련수당)×**8천명**×0.4(훈련수당수급 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br><br>**- (건설업퇴직자 신설) 56억 3,000만원**<br>**1단계 참여수당: 27억 2,600만원**<br>참여수당:19만원×**1만명**×0.94(IAP 수립률)<br>참여수당 추가:10만원×**1만명**×0.94(IAP 수립률)<br>**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29억 400만원**<br>훈련수당: 28.4만원×**1만명**×0.4(훈련수당 수급 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br>훈련수당 추가: 20만원×**1만명**×0.4(훈련수당 수급 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br>❍ **민간위탁비: 724억 3,000만원**<br>**145억 7,000만원 증액**:<br>청년: 45만원×**1만명**×0.94(IAP수립률)<br>중장년: 50만원×**8천명**×0.94(IAP수립률)<br>건설업 퇴직자: 70만원×**1만명**×0.94(IAP수립률)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취업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1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7만 8,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5월말 기준 2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1만 8,512명이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참여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추가 지원 1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추가인원에 따른 참여수당(15억 9,800만원)과 훈련참여지원수당(17억 400만원), 추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4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추경 산출내역]

가) 1단계 참여수당 170,000원×68,000명×0.94(IAP 수립률)

**(추경) 170,000원×10,000명×0.94(IAP 수립률) = 15억 9,800만원**

나)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이월) 284,000원×40,000명×0.2(이월자 중 금년도 수당 수급비율)×3개월(평균수급횟수)

(신규) 284,000원×55,000명×0.4(신규참여자 중 금년도 수당 수급비율)×3개월(평균수급횟수)

**(추경) 284,000원×10,000명×0.4(훈련수당 수급비율)×1.5개월(평균수급횟수) = 17억 400만원**

다) 민간위탁비

**(추경) 450,000원×10,000명×0.94(IAP수립률) = 42억 3,0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5월말까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참여자의 수급자격 인정 인원 현황을 보면 총 1만 8,512명이 인정되어 목표인 6만 8,000명의 27.2%에 불과하였음.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월평균 약 3,702명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고, 이와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수급자격인정자 수는 4만 4,424명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초 목표한 연내 청년 지원인원인 6만 8,000명에 비해 작은 규모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2021 | 1,650 | 6,407 | 4,342 | 3,342 | 3,163 | 3,493 | 3,289 | 2,803 | 2,583 | 2,457 | 2,312 | 2,044 | 37,885 |
| 2022 | 2,884 | 2,928 | 3,540 | 2,647 | 4,032 | 3,844 | 3,231 | 2,996 | 1,216 | 4,461 | 3,390 | 2,632 | 37,801 |
| 2023 | 2,666 | 2,866 | 3,403 | 3,082 | 4,526 | 4,086 | 3,571 | 3,197 | 2,917 | 3,294 | 3,512 | 2,589 | 39,709 |
| 2024 | 3,149 | 2,664 | 3,012 | 3,244 | 4,262 | 3,772 | 4,266 | 3,268 | 3,112 | 4,130 | 2,746 | 2,634 | 40,259 |
| 2025 | 2,876 | 3,123 | 3,295 | 4,569 | 4,649 | 사업 추진 중 | | | | | | | 18,512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유형 탈락자들이 2유형으로 유입되는 인원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②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7월 이후 하반기에 활성화되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사업이 시작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수급자격 인정인원이 약 4만명 수준에서 유지된 것을 보면, 추경 후 1만명을 추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7만 8,000명분은 목표가 도전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음.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증가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업 퇴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10,000명분의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사업'을 신설하였으나, 사업 대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기존 참여가 많지 않고, 연도 중 사업인원 확대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1~5월 건설업 취업자 수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매달 10만명 이상 감소하여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의 고용상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및 2025년 1~4월 월별 건설업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2024년(A) | 2,089 | 2,077 | 2,117 | 2,098 | 2,070 |
| 2025년(B) | 1,921 | 1,909 | 1,932 | 1,948 | 1,964 |
| A-B | 168<br>(△8.0) | 168<br>(△8.1) | 185<br>(△8.7) | 150<br>(△7.1) | 106<br>(△5.1)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동월 대비 감소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을 제고하고, 상용직 등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1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참여자들에게 ① 취업지원서비스와 ② 취업활동비용[13)]을 지원하고 있음. 신설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원에 ① 건설업 퇴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참여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② 훈련참여수당도 월 최대 20만원을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

어려운 고용여건에 놓인 건설업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기존 건설업 퇴직자의 낮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참여 중이거나, ② 2유형 참여자 중 사업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 사업장(상용)이 건설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임.

현재 두 유형 사업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① 특정계층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49명, ② 유형 참여자 중 사업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 사업장(상용)이 건설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1,028명으로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1만명과 차이가 상당함.

12)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와 유사하게 보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취업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참여수당: 19만원, 훈련참여지원 수당: 1개월 당 28.4만원,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보더라도, 두 유형의 사업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규모는 1만명 보다는 작았음.

[2021~2025년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현황]

(단위: 명)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5월말) |
|---|---|---|---|---|---|
| 특정계층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 115 | 116 | 109 | 108 | 49 |
| 사업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 사업장이 건설관련 업종인 경우 | 2,743 | 1,909 | 2,169 | 2,235 | 1,028 |
| 합계 | 2,858 | 2,025 | 2,278 | 2,343 | 1,077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 홍보를 추진하고, 각종 홍보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소속 기관(실업급여과, 민원실, 근로감독부서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물론 참여수당 10만원의 추가지급과 훈련비 20만원 인상 지급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할 때 1만명 분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의 목표가 도전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4]

1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퇴직 후 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미참여, ②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 ③ 구직급여를 최대한 수급한 이후에도 취업에 실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음. 건설업근로자가 퇴직 후 1일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1달(28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약 180만원을 수급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여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1달분의 수당 77만 4,000원과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남. 이와 같은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건설업 퇴직자들은 구직급여 수급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들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규모 결정 시 구직급여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구직급여 수급 비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A)<br>(건설업 퇴직자 재취업 강화 프로그램) | 구직급여(B) |
|---|---|
| 참여수당: 19만원<br>참여수당(추가): 10만원<br>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000원<br>훈련참여지원수당(추가): 20만원<br>합계: 77만 4,000원 | 6만 4,192원×28일 = 178만 7,376원 |
| 차이(B-A): 101만 3,376원 | |

### (2) 연도 중 사업 확대로 인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건설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에 신설될 예정인데 2유형은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저소득층 제외)하고 있음.

2025년 연초에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는, 민간위탁사업자의 업무담당자 1인당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 수는 100명 이내로 관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위탁사업자가 적정 수준의 인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직원 1인당 85명 내외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현황]

(단위: 개소, 명)

| 연도 | 기관 수[1] | 총 직원 수[2](A) | 평균 직원 수 | 인정자 수[3] | 직원 1인당 담당 인정인원 (B) |
|---|---|---|---|---|---|
| 2021년 | 533 | 2,159 | 4.1 | 183,983 | 85.2 |
| 2022년 | 529 | 2,131 | 4.0 | 156,956 | 73.7 |
| 2023년 | 492 | 2,061 | 4.2 | 173,908 | 84.4 |
| 2024년 | 274 | 2,293 | 8.4 | 192,151 | 83.8 |

주1) 해당년도 초에 약정 체결한 민간위탁기관 수
2) 해당년도 중 가장 마지막에 조사한 담당자(상담사) 현황에 따름('21.10월, '22.8월, '23.8월, '24.12월)
3) 해당년도 내 신규로 수급자격 인정되어 민간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은 전국 258개소로, 별도의 민간위탁기관 추가 확보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연도 중 1만명이 추가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자 1개소당 평균적으로 39명의 추가 인원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2024년 평균직원 수가 8.4명임을 고려할 때 연도 중 직원 1인당 5명의 추가 인원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평균적인 수치 비교로는 관리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요가 많은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15] 기존 민간위탁사업자만으로는 추가되는 인원을 소화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16]

15) 예를들어 2025년 강원도의 경우 전체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민간위탁분(18만 9,000명) 중 약 2.3%인 4,400명(강원지청 1,900명, 강릉지청 800명, 원주지청 1,700명)이 위탁규모로 결정되었으나, 2025년 1~4월 건설업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인 34만 2,978명 중 4.5%인 1만 5,377명이 강원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음.

또한 과도한 사업인원의 증가는 고용노동부와 민간위탁사업자의 한정적인 고용행정 자원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보다 모집에 집중하도록 하여 기존 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 건설업종은 주로 노년층(60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년층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

### <지출증액>

##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의 내실 있는 관리 필요 등

### 가. 개 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01억원(8.5%)이 증액된 1,29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지원 | 125,000 | 125,000 | 119,225 | 119,225 | 129,325 | 10,100 | 8.5 |
| 하이테크형 | 40,000 | 40,000 | 34,000 | 34,000 | 38,000 | 4,000 | 10.5 |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12,200 | 12,200 | 12,200 | 12,200 | 18,300 | 6,100 | 33.3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경우 훈련 인프라(훈련장비 및 시설, 교강사 등)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대학) 등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약체결)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협약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협력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에게 훈련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프라 비용을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17) 세부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53-350)(직업능력정책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사업 개요]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① 하이테크형에서 개당 8억원을 단가로 하여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추가 5개소 설치를 위해 40억원, ② 대중소상생아카데미 프로그램 50개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당 1억 2,200만원을 단가로 하여 총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계획 |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62억원 | ○ 민간경상보조(320-01): 262억원<br><br>가. 하이테크형(산업전환): 140억원<br>-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4억원<br>= 기존25개소×4억원+신규 5개소×8억원<br><br>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22억원<br>- 훈련운영비: 122억원<br>= 100개 프로그램×1억 2,200만원 | 363억원 | ○ 민간경상보조(320-01): 363억원<br><br>가. 하이테크형(산업전환): 180억원<br>-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4억원<br>= 기존25개소×4억원+신규 5개소×8억원<br>*** (추경) 신규 5개소 추가**<br><br>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83억원<br>- 훈련운영비: 122억원<br>= 100개 프로그램×1억 2,200만원<br>*** (추경) 신규 50개 프로그램 추가** |

자료: 고용노동부

하이테크형 사업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형성하여 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전환 훈련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대중소 상생아카데미 사업은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증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에 인증을 받고 대학이나 협회와 같은 수행기관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이 사업을 통해 훈련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첫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나, 기존 운영기관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의 내실화와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최근 철강 및 화학,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서 통상마찰과 급속한 산업전환 등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전환훈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대중소 상생아카데미의 경우 2025년 예산에 반영된 100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4년 기 선정기관에 대해 84개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운영 중이고,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6개 프로그램을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현장의 지속적인 수요로 현재 16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 중으로, 기존 기관에서도 추가 인증 수요가 있어 이번 추경안에서 50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번 추경을 통해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5월말을 기준으로 각 운영기관의 훈련목표인원 대비 모집인원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고,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모집인원이 0명에 해당하는 등 기존사업의 관리가 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5월말 기준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실적]

(단위: 명, %)

| 운영기관 | 선정일 | 훈련업종 | 목표 인원 (A) | 모집 인원 (B) | B/A | 특이사항 |
|---|---|---|---|---|---|---|
|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2024년 기 선정기관으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심사로 승인 | 자동차 | 900 | 60 | 6.7 | 6월부터 정상 추진 중 |
| HD현대중공업 | | 조선 | 2,602 | 692 | 26.6 | - |
| SK에너지 | | 정유·화학 | 4,600 | - | 0.0 | 여름철 장마기간 중 기계의 유지·보수가 어려워 가동이 중단되는 업무 비수기 기간을 활용하여 하반기 훈련 예정 |
| 명신 | | 자동차 | 440 | - | 0.0 | 7월부터 훈련 사업계획 승인 |
| 부산교통공사 | | 철도운전 | 540 | 82 | 15.2 | - |
| 삼성SDI | | 2차전지 | 210 | 111 | 52.9 | - |
| 삼성전자 로지텍 | | 운송 | 1,518 | 300 | 19.8 | - |
| 세메스 | | 반도체 | 180 | 56 | 31.3 | - |
| HD현대삼호 | | 조선 | 5,180 | 316 | 6.1 | 5월부터 정상추진 중 |
| HMM오션서비스 | | 해운 | 1,270 | 828 | 65.2 | - |
| 우진플라임 | | 사출 | 1,164 | - | 0.0 | 훈련생 모집 중, 8월 실시 예정 |
| LX하우시스 | | 인테리어 | 100 | 21 | 21.0 | - |
| 포스코 | | 철강 | 3,424 | 1,024 | 29.9 | - |
| LS일렉트릭 (한국기술교육대) | | 스마트 팩토리 등 공정관리 | 270 | 18 | 6.7 | - |
| 에드워드코리아 (한국기술교육대) | | 진공펌프 등 품질관리 | 60 | - | 0.0 | 7월 훈련 실시 예정 |
| 코닝정밀소재 (한국기술교육대) | | 반도체 | 60 | - | 0.0 | 7월 훈련 실시 예정 |
| 두산 (한국생산성본부) | | 품질관리 및 AI | 1,175 | 262 | 22.3 | - |
| SK주식회사 | 2025. 4. 8. | AI | 780 | 130 | 16.7 | 25년 신규기관 훈련생 모집 중 |
| LX판토스 | | 운송 | 180 | - | 0.0 |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여건 상 상반기 생산계획 달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운영기관이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승인된 훈련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상반기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참여가 저조한 기업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참여실적 저조는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상 업무를 하는 동시에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18]되어 아직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바, 기존 사업의 모니터링과 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하이테크형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공모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심사와 선정 과정을 단기간에 추진할 예정이나, 심도 있는 심사와 선정을 통해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진 운영기관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운영 근거 규정인 고용노동부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9조[19] 및 제15조[20]에 따르면, 공동훈련센터를 추가로 마련하거나 컨소시엄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심의위원회 또는 컨소시엄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18) 2024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은 122억 중 89억 7,500만원이 집행(실집행률 73.6%)되었음. 또한 2024년 3월 8일 선정된 8개 운영기관은 총 목표인원 1만 851명 중 9,265명을 모집(85.4%)하였고, 2024년 8월 8일 선정된 9개 운영기관은 목표인원 4,721명 중 1,598명(33.8%)를 모집하였음.

<2024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당초 | 수정(A)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C) | | | |
| 12,200 | 12,200 | 12,200 | 12,200 | - | 12,200 | 8,975 | 12,200 | 8,975 | - | 3,225 | 73.6 |

자료: 고용노동부

1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9조(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 · 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5조(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이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지원받은 시설 · 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해당 시설 · 장비의 불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되는 ①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5개소와, ② 대중소 상생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 50개 중 일부 프로그램을 담당할 운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음.

2024년 사업공고부터 선정 후 지원금 지급까지 기간을 보면, 모집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대중소상생아카데미의 2024년 1차 선정의 경우 사업공모에 39일, 심사 및 선정에 20일, 선정 후 실제 훈련 시작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지원금 지급까지 29일이 소요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추진 경과]

| | 구분 | 2024년 | 본예산 (현재 진행 상황) |
|---|---|---|---|
| 사업공모 | 1차 | 2023.12.29.~2024.2.5.(39일 소요) | 2025.1.13.~2025.2.21.(40일 소요) |
| | 2차 | 2024.4.29.~2024.5.31.(33일 소요) | 2025.5.12.~2025.6.13.(33일 소요) |
| | 3차 | 2024.6.7.~2024.6.28.(7일 소요) | - |
| 심사 및 선정 | 1차 | 심사: 2024.2.19.~2024.2.23.(5일 소요)<br>선정: 2024.3.8.(심사 후 15일 소요) | 심사: 2025.3.6.~2025.3.11.(6일 소요)<br>선정: 2025.4.8.(심사 후 29일 소요) |
| | 2차 | 심사: 2024.7.8.~2024.7.12.(5일 소요)<br>선정: 2024.8.8.(심사 후 28일 소요) | 심사: 2025.6.19.~6.30.(12일 소요)<br>심의·선정: 2025. 7~8월 중 예정 |
| | 3차 | 심사: 2024.7.8.~2024.7.12.(5일 소요)<br>선정: 2024.8.8.(심사 후 28일 소요) | - |
| 지원금 지급 | 1차 | ~2024.4.5.(선정 후 29일 소요) | ~2025.4.30.(선정 후 23일 소요) |
| | 2차 | ~2024.9.30.(선정 후 54일 소요) | 2025.7월 중 예정 |
| | 3차 | ~2024.9.30.(선정 후 54일 소요) | - |
| 훈련실시 | 1차 | 2024.4월~ | 2025.5월~ |
| | 2차 | 2024.9월~ | 2025.8월~ |
| | 3차 | 2024.9월~ |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7월 내 추경 편성이 확정되는 경우, 신속한 공모 및 심사 등으로 8월 내 선정 및 지원금 교부를 완료하여 예산의 불용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짧은 기간(하반기) 내에 사업계획 수립 및 훈련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내실있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충분한 훈련 제공 역량과 사업추진 의지를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혹여 추경 물량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전 선정물량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기간 심사와 선정으로 훈련 제공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나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 <지출증액>

# 4. 구직급여: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가. 개 요

**‘구직급여’**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여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조 2,929억원(11.8%)이 증액된 12조 2,09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구직급여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구직급여 | 10,914,396 | 11,787,793 | 10,917,074 | 10,917,074 | 12,209,974 | 1,292,900 | 11.8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자 지원인원 168만명에 2025년 4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지원인원 증가율(6%)를 반영하여 추가 예상 지원인원을 추계하였고, 본예산 당시 추계한 159만 6,106명 보다 18만 7,208명 더 많은 178만 3,314명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른 1조 2,929억원의 추가 지출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구직급여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계획 |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0조 9,170억 7,400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0조 9,133억 6,100만원)<br>- 근로자: 1,596,106명×61,560원×112일<br>= 11조 47억 2,400만원 | 12조 2,099억 7,400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0조 9,133억 6,100만원)<br>- 근로자: **1,783,314명**×61,560원×112일<br>**= 12조 2,976억 2,4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21) 세부사업: 구직급여(1280-350)(고용서비스정책관)

## 나. 검토의견

**구직급여 사업은 추경을 통해 1조 2,929억원의 추가 지출을 편성하여 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으나, 60세 이상 수급자와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구직급여의 목적과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인력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5년 연초 건설경기 악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5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제조업(+0.8천명), 건설업(+0.5천명)에서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자 수도 건설업(+12.3천명), 제조업(6.3천명), 도소매업(+3.9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1~4월 매달 1조원 이상 구직급여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 3~5월 구직급여 신청자수·지급자수 및 증감]

(단위: 천명, %, 증감은 5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업종 | 2025년 월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 | | | | | 2025년 월별 구직급여 지급자수 | | | | |
|---|---|---|---|---|---|---|---|---|---|---|
| | 3월 | 4월 | 5월 | 증감 | 구성비 | 3월 | 4월 | 5월 | 증감 | 구성비 |
| 전산업 | 137 | 103 | 85 | △3 | 100.0 | 693 | 702 | 670 | 24 | (100.0) |
| 제조업 | 15.2 | 16.7 | 14.3 | 0.8 | 16.8 | 109.9 | 112.6 | 109.5 | 6.3 | (16.3) |
| 건설업 | 14.3 | 13.7 | 13.5 | 0.5 | 15.8 | 86.4 | 84.2 | 79.3 | 12.3 | (11.8) |
| 도소매 | 11.9 | 12.3 | 10.2 | △0.4 | 11.9 | 70.7 | 72.8 | 71.1 | 3.9 | (10.6) |
| 사업서비스 | 10.0 | 10.1 | 7.9 | △0.4 | 9.3 | 73.3 | 72.8 | 70.0 | 2.0 | (10.5) |
| 보건복지 | 31.8 | 12.6 | 9.2 | △0.7 | 10.7 | 86.8 | 93.4 | 91.5 | △2.5 | (13.7) |

주1) 구직급여 통계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임금근로자로 작성(자영업자 제외)
2) 구직급여 지급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지급하여 월2회 지급 받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월 2회 지급 시에도 1명으로 집계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년 및 2025년 1~4월 월별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단위: 백만원, %)

| | 1월 | 2월 | 3월 | 4월 |
|---|---|---|---|---|
| 2024년(A) | 988,438 | 1,017,508 | 1,035,492 | 1,121,649 |
| 2025년(B) | 1,024,407 | 1,128,145 | 1,113,231 | 1,217,275 |
| B-A | 35,969 | 110,637 | 77,739 | 95,625 |
| (B-A)/A | 3.6 | 10.9 | 7.5 | 8.5 |

자료: 고용행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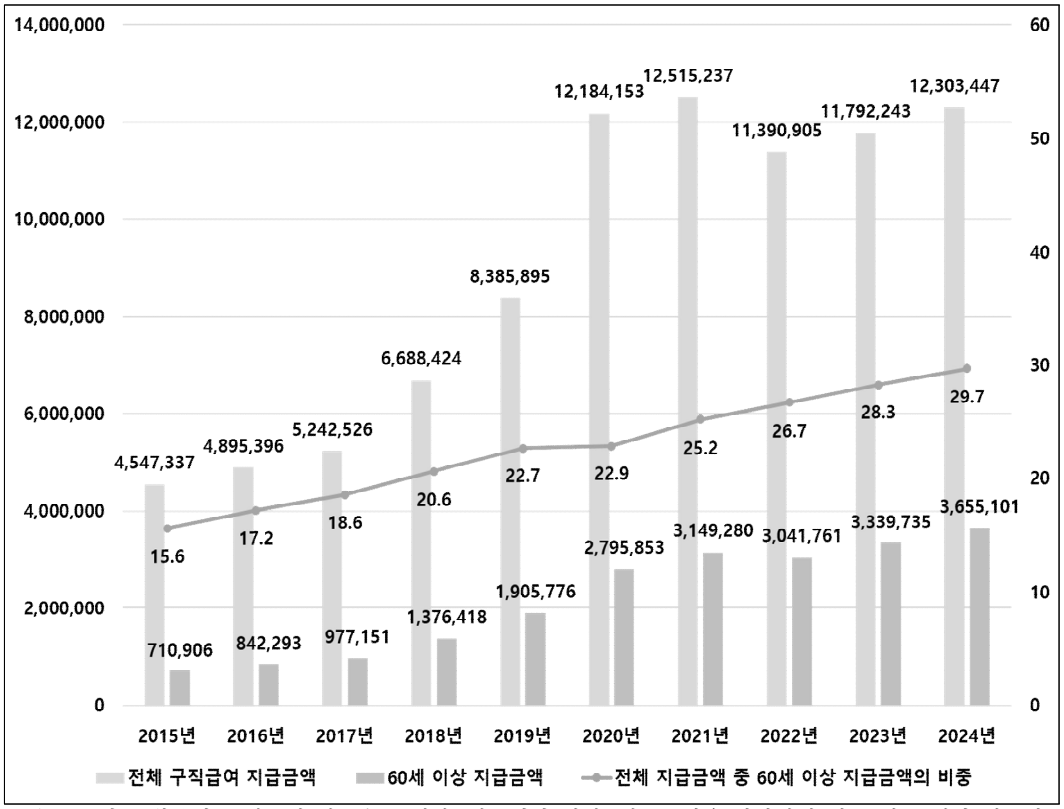
이번 추경안은 구직급여 지급금액을 확대하여 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직급여의 정책 목적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지원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서 끝나지 않고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 구직급여 지급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규모와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재취업률이 정체상태에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고령층 인력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5~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 구직급여 지급금액에서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2024년에는 전체 구직급여 지금액 12조 3,044억의 약 29.7%인 3조 6,551억원이 60세 이상에게 지급되어 30% 가까운 구직급여가 60세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음.

[2015~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주)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자료: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2020~2024년 구직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69세가 가장 많았고, 반복수급자 수 및 지급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22)]

[2020~2024년 연령대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령대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수급자 | 지급액 | 수급자 | 지급액 | 수급자 | 지급액 | 수급자 | 지급액 | 수급자 | 지급액 |
| 20세 이상 29세 미만 | 4,498 | 24,748 | 5,133 | 26,915 | 5,570 | 29,374 | 5,868 | 31,359 | 5,962 | 32,199 |
| 30세 이상 39세 미만 | 12,373 | 67,200 | 12,582 | 65,032 | 12,423 | 63,883 | 13,217 | 69,920 | 13,585 | 72,712 |
| 40세 이상 49세 미만 | 17,681 | 90,889 | 18,490 | 90,935 | 18,298 | 88,383 | 19,065 | 95,510 | 18,453 | 94,185 |
| 50세 이상 59세 미만 | 27,719 | 143,912 | 30,033 | 150,374 | 30,159 | 147,580 | 32,664 | 164,596 | 33,867 | 176,161 |
| 60세 이상 69세 미만 | 30,743 | 153,197 | 34,250 | 165,659 | 35,870 | 169,347 | 39,363 | 191,312 | 40,953 | 205,121 |

주)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수급횟수 기준이며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 각각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반면, 2020~2024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재취업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정체되어있는 측면이 있음.

2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연령대별 구직급여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20~74세 인구 중 60~7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5~2025년 20~74세 총인구 및 60~74세 인구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20~74세인구(A) | 38,218,369 | 38,491,492 | 38,717,749 | 39,060,136 | 39,351,524 | 39,600,041 | 39,696,991 | 39,719,936 | 39,867,982 |
| 60~74세 인구(B) | 6,736,221 | 7,033,971 | 7,323,060 | 7,683,885 | 8,108,241 | 8,647,163 | 9,164,109 | 9,514,209 | 9,867,411 |
| B/A | 17.6% | 18.3% | 18.9% | 19.7% | 20.6% | 21.8% | 23.1% | 24.0% | 24.8% |

자료: 통계청(KOSIS)

[2020~2024년 연령대별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단위: 명, %)

| 연령대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수급자 수 | 재취업률 | 수급자 수 | 재취업률 | 수급자 수 | 재취업률 | 수급자 수 | 재취업률 | 수급자 수 | 재취업률 |
| 20세 미만 | 3,382 | 13.1 | 3,065 | 14.6 | 2,459 | 15.5 | 2,258 | 15.1 | 1,870 | 16.9 |
| 20세 이상 30세 미만 | 277,868 | 23.6 | 295,853 | 24.7 | 282,084 | 25.9 | 280,107 | 27.4 | 270,009 | 27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4,820 | 26.6 | 311,174 | 26.3 | 280,566 | 27 | 288,280 | 30.3 | 295,046 | 30.6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36,898 | 30.5 | 338,248 | 30.4 | 297,583 | 31.2 | 298,244 | 33.9 | 290,700 | 34.7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414,271 | 29.2 | 422,478 | 29.1 | 371,874 | 30.9 | 378,171 | 34.8 | 385,261 | 36.1 |
| 60세 이상 70세 미만 | 345,989 | 23.8 | 392,834 | 23.9 | 385,142 | 25.4 | 410,851 | 26 | 437,637 | 25.8 |
| 70세 이상 | 9,497 | 6.5 | 10,962 | 6.7 | 11,562 | 8.5 | 13,712 | 9.2 | 16,627 | 9.4 |

주1) 수급자 수: 자영업자 제외, 구직급여(연장포함), 2년에 걸쳐 수급하는 경우 각각 포함
2) 재취업률: 수급 중 재취업자수 / 수급 종료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증가의 원인은 ① 높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동성 증가와 고용불안정, ② 일부 실업자가 구직급여 수급에 의존하는 사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23)]

실제로 2022~2024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33.2%에 해당하여 60세 이상 인력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이 있음.

2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운영구조로 인하여 2025년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수령액 보다 구직급여일액의 월환산액이 훨씬 더 크고,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보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최저임금 근로자는 한 달에 약 187만원을 받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약 192만 5천원(8,024원 × 8시간 × 30일 = 1,925,760)원을 수령하게 됨.

[2022~2024년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천명, %)

| 연령대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 계 | 8,156 | 100.0 | 8,122 | 100.0 | 8,459 | 100.0 |
| 20~29세 | 1,414 | 17.3 | 1,423 | 17.5 | 1,461 | 17.3 |
| 30~39세 | 983 | 12.0 | 989 | 12.2 | 1,072 | 12.7 |
| 40~49세 | 1,323 | 16.2 | 1,311 | 16.1 | 1,310 | 15.5 |
| 50~59세 | 1,725 | 21.1 | 1,627 | 20.0 | 1,661 | 19.6 |
| 60세이상 | 2,553 | 31.3 | 2,619 | 32.2 | 2,812 | 33.2 |

주) 각 년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구직급여 지출 소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으나, 구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법정적립배율[24]을 연례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등(공공자금 예수금을 제외할 경우 음의 값) 기금계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임.

---

<2025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월환산액 비교>

(단위: 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A) | 구직급여일액의 월 환산액(B) | 최저임금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월환산액 대비 월 실수령액 비율(B/A) |
|---|---|---|---|
| 1시간 | 189,694 | 240,720 | 126.9 |
| 2시간 | 399,840 | 481,440 | 120.4 |
| 3시간 | 717,880 | 722,160 | 100.6 |
| 4시간 | 954,130 | 962,880 | 100.9 |
| 5시간 | 1,184,960 | 1,203,600 | 101.6 |
| 6시간 | 1,415,250 | 1,444,320 | 102.1 |
| 7시간 | 1,641,045 | 1,685,040 | 102.7 |
| 8시간 | 1,870,601 | 1,925,760 | 102.9 |

주1)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주 소정근무일수는 5일로 가정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미포함)
2) 구직급여일액의 월 환산액: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30일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제도나 세제혜택을 활용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이 더 높아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4)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2020~2024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결산]

(단위: 백만원, %)

| 계정(근로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실업급여 | 수 입(a) | 13,628,678<br>(10,328,678) | 14,814,055<br>(10,840,080) | 13,567,529<br>(13,120,717) | 14,387,917<br>(14,387,917) | 14,910,478<br>(14,910,478) |
| | 사업비(b) | 13,885,952 | 14,413,779 | 14,132,507 | 14,330,660 | 15,154,139 |
| | 수지차(a-b) | △257,275<br>(△3557,275) | 400,277<br>(△3,573,699) | △564,978<br>(△1,011,790) | 57,258<br>(57,258) | △243,662<br>(△243,662) |
| | 연말적립금 | **3,866,572<br>(566,572)** | **4,266,495<br>(△3,007,480)** | **3,695,306<br>(△4,025,481)** | **3,752,509<br>(△3,968,278)** | **3,508,310<br>(△4,212,477)** |
| | 적립금배율 | **0.3<br>(0.0)** | **0.3<br>(△0.2)** | **0.3<br>(△0.3)** | **0.3<br>(△0.3)** | **0.2<br>(△0.3)** |

주) 괄호 안은 공공자금 예수금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향후 구직급여 목적과 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급여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직급여 지출증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임.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지출증액>

# 5. 건강일터조성지원: 폭염 전 적정한 지원을 위한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국소배기장치) 및 폭염재난 대응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50억원(29.5%)이 증액된 50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471,792 | 471,792 | 481,792 | 481,792 | 496,792 | 15,000 | 3.1 |
| 건강일터조성지원 | 15,825 | 15,825 | 35,825 | 35,825 | 50,825 | 15,000 | 29.5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25]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의 수요가 높은 온열질환 예방 장비(이동식에어컨・산업용선풍기・그늘막 등) 지원을 4,762개소에 추가 지원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5)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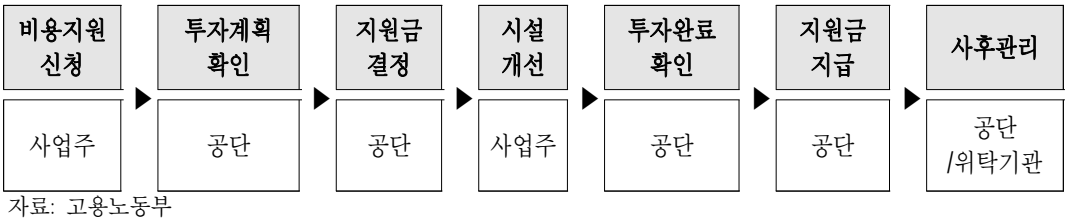
[2025년도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계획 |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358억<br>2,500만원 | ○ 사업출연금(350-02): 358억 2,500만원<br>가.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170억원<br>= 3.15백만원×5,400개소=170억원 | 508억<br>2,500만원 | ○ 사업출연금(350-02): 508억 2,500만원<br>가.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br>**: 170억원 → 320억원 (150억원 증액)**<br>= 3.15백만원×5,400개소=170억원<br>**→ 3.15백만원×10,162개소(+4,762개소)** |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추진됨.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투자계획과 함께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투자계획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결정하고, 사업주가 투자계획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도입하여 시설을 개선한 뒤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2025년도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중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은 폭염 전에 사업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빠르게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나,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생략으로 인해 부적정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기에 수요가 급증하여 이동식에어컨이나 산업용선풍기의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업종[26] 사업주에게 2,000만원을 한도로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선풍기 또는 그늘막 같은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예정임.

26)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조선 등 제조업, 물류・유통업,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2025년도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중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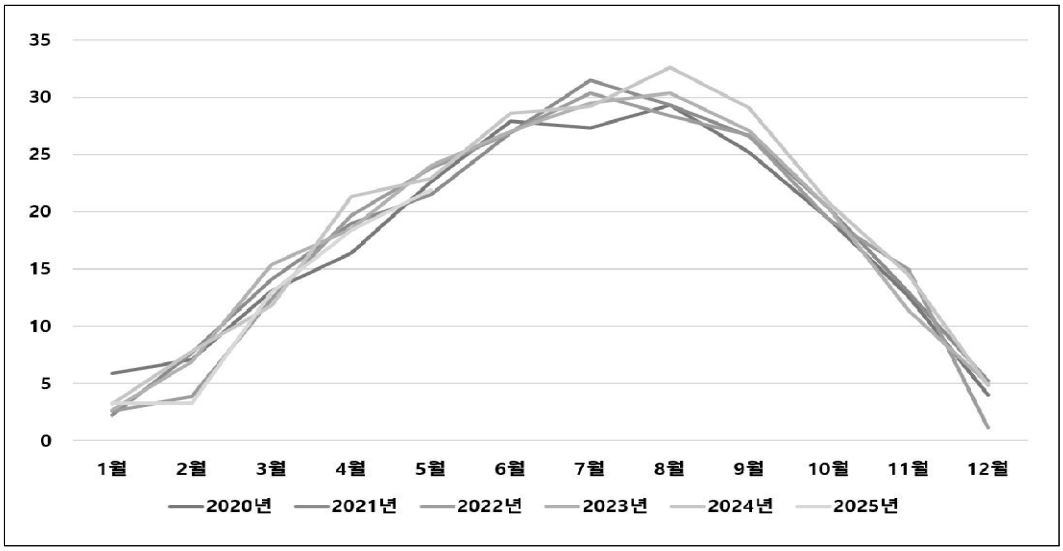
| 이동식 에어컨 | 산업용 선풍기 | 그늘막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이번 추경을 통해 온열 관련 산재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최고 기온이 가장 높아 폭염[27]의 가능성이 높은 8월 이전에 장비들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월별 평균최고기온 변화]

(단위: ℃)




자료: 기상청

27)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하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2020~2024년간 폭염은 6~9월에 발생하였음.

〈2020~2024년 월별 폭염일수〉

| 2020년 | | | | | 2021년 | | | | | 2022년 | | | | | 2023년 | | | | | 2024년 | | | | |
|---|---|---|---|---|---|---|---|---|---|---|---|---|---|---|---|---|---|---|---|---|---|---|---|
| 6월 | 7월 | 8월 | 9월 | 그외 | 6월 | 7월 | 8월 | 9월 | 그외 | 6월 | 7월 | 8월 | 9월 | 그외 | 6월 | 7월 | 8월 | 9월 | 그외 | 6월 | 7월 | 8월 | 9월 | 그외 |
| 1.2 | 0.2 | 2.2 | - | - | - | 12.5 | 2.5 | - | - | 0.3 | 5.8 | 0.5 | - | - | 0.8 | 4.3 | 7.8 | - | - | 2.5 | 1.8 | 14.2 | 3.8 | - |

자료: 기상청

고용노동부는 8월전 장비 공급을 위해 재정지원 신청 및 심사 등 일정을 단축하여 가장 무더운 8월전까지 사업장에 보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28]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사업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 중 보급하겠다고 설명하였음.[29]

[2025년 추경 증액분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 간소화 사항]

| |
|---|
| (본예산) 공고 및 신청(4주) → 지원사업장 선정(2주) → 보조금 지급결정(2주) → 장비 구매・설치(4주) |
| (추경) 공고 및 신청, 즉시 지원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결정(2~3주) → 7월 하순부터 장비 구매・설치 |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증가하는 폭염 산재[30]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집행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사업장의 폭염 취약 업종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생략함에 따라 부적정한 보조금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단기간에 이동식에어컨이나 산업용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8)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 지원이 확정되기 전 사전 홍보 및 사업절차를 단축하여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7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임.

29) 예산의 경우 이동식 에어컨을 현장에 납품 후 투자완료 등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하반기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하였음.

30) < 2018~2024년 폭염 관련 산재 현황 >

(단위: 명)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사망 | 사망외 | 사망 | 사망외 | 사망 | 사망외 | 사망 | 사망외 | 사망 | 사망외 | 사망 | 사망외 | 사망 | 사망외 |
| 12 | 53 | 2 | 18 | 2 | 16 | 3 | 22 | 7 | 21 | 3 | 30 | 2 | 61 |

자료: 고용노동부

## 【임금채권보장기금】

## <지출증액>

# 6.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주 융자 활성화 및 융자 회수 관리 필요

## 가. 개 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① 경영 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②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81억 2,900억원(11.6%)이 증액된 784억 8,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체불청산지원융자 | 40,190 | 77,200 | 70,352 | 70,352 | 78,481 | 8,129 | 11.6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고용노동부는 ① 융자 수요 증가에 따라 2024년 결산액 대비 2025년 부족한 계획액 6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② 추경 확정 이후 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3개월 간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으로, 한시 금리인하 시행에 따른 추가 수요 예상액 15억 6,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5년도 계획 | |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703억<br>5,200만원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703억 5,200만원<br>가. 사업주: 247억 386만 4,000원<br>= 3,816명×647.9만원<br>나. 근로자: 456억 2,776만 4,000원<br>= 5,356명×851.9만원 | 784억<br>8,100만원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784억 8,100만원<br>가. 사업주: 275억 8,110만 3,000원<br>= **4,257명**×647.9만원<br>나. 근로자: 509억 102만 5,000원<br>= **5,975명**×851.9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융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① ‘체불사업주 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이고, ② ‘체불근로자 융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임.

[2025년 체불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융자 비교]

| 구분 | 체불사업주 융자<br>('12.8월~) | 체불근로자 융자<br>('21.6.9. 시행) |
|---|---|---|
| 지원형태 | 융자 | 융자 |
| 지원대상 |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br>(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 |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가동 | 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이상 임금체불<br>② 체불확인서 필요 |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3.7%<br>추경: (담보) 1.2% (△1%p), (신용) 2.7% (△1%p) | 1.5%<br>추경: 1.0% (△0.5%p) |
| 융자금액 |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융자<br>(사업주당 1억5천만원,<br>근로자당 1,500만원 한도) | 총 체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br>(1천만원 한도) |
| 융자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br>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첫째, 한시적인 금리 인하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해소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체불근로자 융자가 시행된 2021년부터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융자의 실적을 비교하면, 매해 편차가 존재하나 전체 융자액의 50%정도가 근로자 융자에 해당하였음.

[2021~2024년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사업주 융자 | 21,255<br>(51.9) | 14,259<br>(43.0) | 25,579<br>(35.1) | 39,806<br>(51.8) |
| 근로자 융자 | 19,724<br>(48.1) | 18,918<br>(57.0) | 47,207<br>(64.9) | 37,112<br>(48.2) |
| 합계 | 40,979<br>(100.0) | 33,177<br>(100.0) | 72,786<br>(100.0) | 76,918<br>(100.0) |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 융자액에서 해당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융자를 통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 융자를 받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책임 아래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주 융자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①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임금체불이라는 법적 분쟁 상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② 임금체불이 해소됨에 따라 근로자 융자 소요금액도 절감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31)]

**둘째, 고용노동부는 추경 후 한시적인 융자금리를 인하할 예정으로, 추경 후 금리인하에 따른 추가수요가 예상되나 융자부실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누적 미상환금액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융자 후 회수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후 7~10월(3개월)간 사업주 융자 이자율을 1%p 인하하고, 근로자 융자 이자율을 0.5%p 인하할 예정으로, 이자 인하 후 추가적인 융자수요를 약 15억 6,3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31) 한국노동연구원(2023)의 「체불 해결을 위한 책임 강화 방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근로자당 1,500만원 한도)인 사업주융자 제도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음.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회복하지 못할 위험이 특정 사업주에게 집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융자실시 후 감시체계를 만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이는 2025년 1~4월 평균집행액에, 2024년 1~2월 한시금리 인하 당시의 월평균 집행액의 증가율 8%에 금리인하 기간 3개월을 적용한 것임.

[2025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인하 시 예상되는 증가분 추계 근거]

- 15억 6,300만원 = 65억 900만원('25.1~4 평균 집행) × 8%(금리인하 효과 증가분)* × 3개월

* 8% = $\frac{\text{66억 4,300만원('24.1~2 금리인하기간 월평균액) - 61억 4,900만원('24.3~8.월평균액)}}{\text{61억 4,900만원('24.3~8 월평균액)}} \times 100$

↳ '24.3.~8. 월평균집행액 대비 '24년 한시 금리인하기간의 월평균집행액의 증가율

자료: 고용노동부

한시적 금리인하를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32] 융자수요 증가에 보완하여 융자회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업주 융자의 경우 부실률이 2021년 19%에서 2022년 24.0%로 증가한 이후 2024년에도 24.0%의 부실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융자의 경우 부실률이 2022년 0.24% 수준에서 2024년 1.06%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2020~2024년 체불청산지원융자 융자 유형별 부실률]

(단위: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사업주 융자 | 21.0 | 19.0 | 24.0 | 23.0 | 24.0 |
| 근로자 융자 | - | - | 0.24 | 0.62 | 1.06 |

주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부실률 = 매년도 말일기준 부실융자잔액* / 매년도 말일기준 융자누적잔액**
* 매년도 말일 기준 부실융자 잔액: 양수 금액 - 양수 채권 회수액
** 매년도 말일 기준 은행 정상채권 잔액(누적 융자액 - 누적 정상 상환액 - 누적 양수액)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부실률(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금액 / 누적 융자금액(신용보증지원금액)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사업주 융자의 경우, 2024년 사업주 융자의 누적 회수율(56.0%)이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30.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사업주 융자의 누적 미상환액이 2020년 185억 8,200만원에서 2024년 483억 2,300만원으로 297억 4,100만원(160.1%) 증가한 사정을 고려하면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2) 이자율 인하 시, ① 정책융자의 이자는 원금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② 현재 체불청산지원융자사업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5년 계획상 공공자금관리금으로부터 570억원을 3.0%의 이자율로 예수할 계획으로,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조달 금리보다 체불청산지원융자금리가 낮은 역마진 구조가 형성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사업주융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융자액 | 누적 융자액 | 상환 예정액 | 누적 상환 예정액(A) | 실제 상환액 | 누적 상환액(B) | 누적 미상환액 (A-B) | 누적 회수율 (B/A) |
|---|---|---|---|---|---|---|---|---|
| 2020 | 19,240 | 72,856 | 14,001 | 39,132 | 6,285 | 20,550 | 18,582 | 52.5 |
| 2021 | 21,255 | 94,111 | 17,058 | 56,190 | 9,254 | 29,804 | 26,386 | 53.0 |
| 2022 | 14,259 | 108,370 | 19,418 | 75,608 | 13,247 | 43,051 | 32,557 | 56.9 |
| 2023 | 25,579 | 133,949 | 18,522 | 94,130 | 10,974 | 54,025 | 40,105 | 57.4 |
| 2024 | 39,806 | 173,755 | 15,698 | 109,828 | 7,480 | 61,505 | 48,323 | 56.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회수율 제고를 위한 「양수채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25.3.14.~) 중이고, 구체적으로 채권연령 4년 미만 신규발생 채권(전체 양수채권 중 65.8%) 집중 관리('25.4.1.~6.30.), 체계적 채권관리를 위한 관리채권 활동목표 부여(보전조치, 회수 활동, 소멸정리 등), 채권관리 역량 지원(신규전입자 교육, 민사채권 실무교육,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2025년 7월 14일부터 구성・운영 예정인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에서 3억 이상 변제금 채권관리 외에 신규발생 융자 양수채권 전담관리 인력을 운영하여 기존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강제집행과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고용노동부는 향후 수립한 계획을 내실있게 이행하여 추경 후 예상되는 융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융자금 회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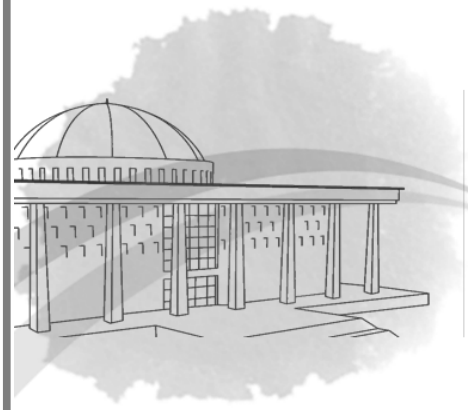
33) 근로자융자의 경우 조기상환(상환예정일 전에 실제상환)으로 매 연도말 상환예정액보다 실제 상환액이 많아 미상환액이 없음.

< 2021~2023년 근로자융자 회수 현황 >

| 연도 | 근로자 융자 | | | | | | | |
|---|---|---|---|---|---|---|---|---|
| | 융자액 | 누적 융자액 | 상환 예정액 | 누적 상환 예정액 | 실제 상환액 | 누적 상환액 | 미상환액 | 누적 회수율 |
| 2021 | 19,724 | 19,724 | - | - | 133 | 133 | - | - |
| 2022 | 18,918 | 38,642 | 1,213 | 1,213 | 2,864 | 2,997 | - | 247.1 |
| 2023 | 47,207 | 85,849 | 6,152 | 7,365 | 9,823 | 12,820 | - | 174.1 |

자료: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27조 6,40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17,152 | 16,921 | 16,921 | 16,921 | - | - |
| 기 금 | 235,663 | 259,488 | 259,488 | 259,488 | - | - |
| 합 계 | 252,814 | 276,409 | 276,409 | 276,409 | - |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60조 1,01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06억원(1.3%) 증가함.

예산은 23조 3,813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64억원(0.8%) 증가하고, 기금은 36조 7,20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6,042억원(1.7%) 증가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236,583 | 227,248 | 231,948 | 233,813 | 1,864 | 0.8 |
| 기 금 | 372,856 | 354,512 | 361,164 | 367,205 | 6,042 | 1.7 |
| 합 계 | 609,439 | 581,760 | 593,112 | 601,018 | 7,906 | 1.3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03억원(△2.2%) 감소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일반회계 | 1,899 | 2,010 | 2,010 | 2,010 | -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48,134 | 137,856 | 141,276 | 137,973 | △3,303 | △2.3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 | 8 | 8 | 8 | -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5,859 | 2,049 | 2,049 | 2,04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804 | 5,837 | 5,837 | 5,837 | - | - |
| 합계 | 161,704 | 147,760 | 151,179 | 147,876 | △3,303 | △2.2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06억원(0.4%) 증가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21,312 | 234,213 | 238,479 | 243,138 | 4,660 | 2.0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48,134 | 137,856 | 141,276 | 137,973 | △3,303 | △2.3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44 | 137 | 137 | 137 | -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5,840 | 2,036 | 2,036 | 2,036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617 | 20,380 | 20,460 | 20,610 | 150 | 0.7 |
| 합계 | 397,047 | 394,621 | 402,387 | 403,894 | 1,506 | 0.4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2개 기금(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04조 3,073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5,060억원(0.5%)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04조 481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5,060억원(0.5%) 증가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계획 | 2025년도 | | | | |
|---|---|---|---|---|---|---|
| |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2,654 | 2,592 | 2,592 | 2,592 | - | - |
| 주택도시기금 | 1,054,003 | 1,033,915 | 1,035,422 | 1,040,481 | 5,060 | 0.5 |
| 합계 | 1,056,657 | 1,036,506 | 1,038,013 | 1,043,073 | 5,060 | 0.5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44조 6,967억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34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3조 1,113억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28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6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신안 압해-화원국도건설' 사업에 각각 1,000억원, 300억원, 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572억원이 증액되었음.

그리고,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PF사업장 지원을 위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에 3,000억원, 준공 전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건설사 자금난 및 공사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사업에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10,182,854 | 9,508,955 | 9,818,862 | 10,897,344 | 1,078,482 | 11.0 |
| 1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79,351 | 77,737 | 77,737 | 134,909 | 57,172 | 73.5 |
| 2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 510,991 | 545,457 | 545,457 | 598,270 | 52,813 | 9.7 |
| 3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 243,794 | 288,382 | 329,057 | 359,057 | 30,000 | 9.1 |
| 4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 57,309 | 27,454 | 27,454 | 43,779 | 16,325 | 59.5 |
| 5 | 일반철도안전및시스템개량 | 594,827 | 561,934 | 561,934 | 621,934 | 60,000 | 10.7 |
| 6 |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신규 | - | - | - | 300,000 | 300,000 | 순증 |
| *7*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전출* | *3,305,982* | *3,276,274* | *3,426,991* | *3,706,991* | *280,000* | *8.2* |
| *8* |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전출* | *4,571,377* | *3,500,146* | *3,600,146* | *3,642,889* | *42,743* | *1.2* |
| *9*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전철* | *819,223* | *1,231,571* | *1,250,086* | *1,489,515* | *239,429* | *19.2* |

2) 국토교통부 소관 2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1개(주택도시기금)임.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교통시설특별회계 | | 2,567,314 | 2,175,726 | 2,293,541 | 2,931,576 | 638,035 | 27.8 |
| 10 |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 241,873 | 75,709 | 75,709 | 83,709 | 8,000 | 10.6 |
| 11 | 신안압해-화원국도건설 | 105,420 | 46,096 | 46,096 | 82,096 | 36,000 | 78.1 |
| 12 | 태안고남-창기국도건설 | 26,043 | 20,735 | 20,735 | 70,735 | 50,000 | 241.1 |
| 13 | 민자도로건설지원 | 843,128 | 979,919 | 979,919 | 991,919 | 12,000 | 1.2 |
| 14 |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 242,038 | 138,645 | 138,645 | 238,645 | 100,000 | 72.1 |
| 15 | 평택-오송2복선화 | 141,462 | 250,000 | 350,000 | 450,000 | 100,000 | 28.6 |
| 16 | 보성-임성리철도건설 | 28,927 | 17,800 | 17,800 | 27,800 | 10,000 | 56.2 |
| 17 | 도담-영천복선전철 | 212,452 | 9,421 | 9,421 | 39,421 | 30,000 | 318.4 |
| 18 |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 188,049 | 33,769 | 33,769 | 63,769 | 30,000 | 88.8 |
| 19 |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 | 18,800 | 63,300 | 63,300 | 73,300 | 10,000 | 15.8 |
| 20 |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 130,000 | 139,857 | 139,857 | 211,317 | 71,460 | 51.1 |
| 21 | 양산도시철도건설 | 41,462 | 53,600 | 53,600 | 65,600 | 12,000 | 22.4 |
| 22 |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 23,000 | 58,686 | 58,686 | 184,600 | 125,914 | 214.6 |
| 23 |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 58,423 | 34,674 | 52,489 | 72,544 | 20,055 | 38.2 |
| 24 | 제주공항시설개선 | 2,579 | 2,321 | 2,321 | 4,441 | 2,120 | 91.3 |
| 25 | 무안국제공항활주로연장 | 10,000 | 7,456 | 7,456 | 10,392 | 2,936 | 39.4 |
| 26 | 드론종합인프라구축및운영 | 7,464 | 10,185 | 10,185 | 13,185 | 3,000 | 29.5 |
| *2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전출* | *246,194* | *233,553* | *233,553* | *248,103* | *14,550* | *6.2*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9,141 | 34,532 | 34,532 | 49,532 | 15,000 | 43.4 |
| 28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내 8개사업 | 29,141 | 34,532 | 34,532 | 49,532 | 15,000 | 43.4 |
| 주택도시기금 | | 15,939,223 | 14,948,447 | 14,948,447 | 16,328,220 | 1,379,773 | 9.2 |
| 29 | 미분양안심환매(융자) | - | - | - | 100,000 | 100,000 | 순증 |
| 30 |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 700,000 | - | - | 400,000 | 400,000 | 순증 |
| 31 | 전세임대(융자) | 4,546,931 | 5,114,122 | 5,114,122 | 5,434,872 | 320,750 | 6.3 |
| 32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413,600 | 337,000 | 337,000 | 396,895 | 59,895 | 17.8 |
| *33*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10,278,692* | *9,497,325* | *9,497,325* | *9,993,813* | *496,488* | *5.2* |
| *34*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 | - | - | *2,640* | *2,640* | *순증* |
| 합계 | | 28,718,532 | 26,667,660 | 27,095,382 | 30,206,672 | 3,111,290 | 11.5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2조 4,547억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1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4개임.

총 감액규모 2조 4,547억원(총계 기준)은, 전액 사업비 감액으로 이루어져 있음. 계약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5,224억원, 사업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납부 지연 등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건설' 사업에서 △367억원 등 15개 사업에서 △2조 4,547억원을 감액하였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계획)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현계획) (A) | 제2회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 | | 37,676,032 | 34,227,383 | 33,747,430 | 31,292,728 | △2,454,702 | △7.3 |
| 일반회계 | | 6,082,195 | 7,887,660 | 7,922,200 | 7,309,688 | △612,512 | △7.7 |
| *1*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전출* | *5,186,160* | *6,790,354* | *6,790,354* | *6,692,150* | *△98,204* | *△1.4* |
| *2*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전출* | *896,035* | *1,097,306* | *1,131,846* | *617,538* | *△514,308* | *△45.4* |
| 교통시설특별회계 | | 1,367,631 | 2,024,536 | 2,024,536 | 1,056,161 | △968,375 | △47.8 |
| 3 |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 95,240 | 204,281 | 204,281 | 22,190 | △182,091 | △89.1 |
| 4 | 동광주-광산고속도로건설 | 14,974 | 36,663 | 36,663 | - | △36,663 | 순감 |
| 5 | 월곶-판교복선전철 | 68,750 | 171,983 | 171,983 | 151,983 | △20,000 | △11.6 |
| 6 | 인덕원-동탄복선전철 | 139,937 | 212,064 | 212,064 | 186,964 | △25,100 | △11.8 |
| 7 | 남부내륙철도 | 237,726 | 118,863 | 118,863 | 68,863 | △50,000 | △42.1 |
| 8 | 충북선고속화 | 39,713 | 19,857 | 19,857 | 9,900 | △9,957 | △50.1 |
| 9 | 용산-상봉광역급행철도 | 234,970 | 296,800 | 296,800 | 174,600 | △122,200 | △41.2 |
| 10 | 가덕도신공항건설 | 536,321 | 964,025 | 964,025 | 441,661 | △522,364 | △54.2 |
| 주택도시기금 | | 30,226,206 | 24,315,187 | 23,800,694 | 22,926,879 | △873,815 | △3.7 |
| 11 | 국민임대(융자) | 157,653 | 187,597 | 187,597 | 94,297 | △93,300 | △49.7 |
| 12 | 공공임대(융자) | 818,896 | 662,758 | 662,758 | 603,970 | △58,788 | △8.9 |
| 13 | 행복주택(융자) | 838,319 | 438,409 | 438,409 | 314,009 | △124,400 | △28.4 |
| *1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7,511,373* | *21,943,516* | *21,429,023* | *20,891,591* | *△537,432* | *△2.5* |
| *1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899,965* | *1,082,907* | *1,082,907* | *1,023,012* | *△59,895* | *△5.5* |
| 합계 | | 37,676,032 | 34,227,383 | 33,747,430 | 31,292,728 | △2,454,702 | △7.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보상비로만 증액 편성되어 있어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으므로,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은 브릿지론 대출을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하는 역할에 머물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셋째, 광역철도 운임인상 및 단위사용료 제도 도입에 따라 2025년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선로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현금·현물 출자 및 신종자본증권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현금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행복주택 물량 감소에 따라 행복주택 융자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으나 행복주택 출자 사업은 감액 편성되지 않았는바, LH의 미집행(상계대상) 출자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SOC 투자: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가. 개 요

이번 추경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철도 등 주요 SOC 사업은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21개 세부사업[3]에 총 4,84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4]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중 주요 SOC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4년도 예산 | 2025년도 | | | | |
|---|---|---|---|---|---|---|---|
| | | | 본예산 (당초) | 제1회 추경 (A) | 제2회 추경안(B) | 증액분 (B-A) | (B-A)/A |
| 교통시설특별회계 | | | | | | | |
| 1 |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 241,873 | 75,709 | 75,709 | 83,709 | 8,000 | 10.6 |
| 2 | 신안압해-화원국도건설 | 105,420 | 46,096 | 46,096 | 82,096 | 36,000 | 78.1 |
| 3 | 태안고남-창기국도건설 | 26,043 | 20,735 | 20,735 | 70,735 | 50,000 | 241.1 |
| 4 | 민자도로건설지원 | 843,128 | 979,919 | 979,919 | 991,919 | 12,000 | 1.2 |
| 5 |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 242,038 | 138,645 | 138,645 | 238,645 | 100,000 | 72.1 |
| 6 | 평택-오송2복선화 | 141,462 | 250,000 | 350,000 | 450,000 | 100,000 | 28.6 |
| 7 | 보성-임성리철도건설 | 28,927 | 17,800 | 17,800 | 27,800 | 10,000 | 56.2 |
| 8 | 도담-영천복선전철 | 212,452 | 9,421 | 9,421 | 39,421 | 30,000 | 318.4 |
| 9 |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 188,049 | 33,769 | 33,769 | 63,769 | 30,000 | 88.8 |
| 10 |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 | 18,800 | 63,300 | 63,300 | 73,300 | 10,000 | 15.8 |
| 11 |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 130,000 | 139,857 | 139,857 | 211,317 | 71,460 | 51.1 |
| 12 | 양산도시철도건설 | 41,462 | 53,600 | 53,600 | 65,600 | 12,000 | 22.4 |
| 13 |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 23,000 | 58,686 | 58,686 | 184,600 | 125,914 | 214.6 |
| 교특회계 합계 | | 2,219,654 | 1,828,851 | 1,928,851 | 2,398,311 | 469,460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14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단위사업) 내 8개 세부사업 | 29,141 | 34,532 | 34,532 | 49,532 | 15,000 | 43.4 |
| 합계 | | 2,248,795 | 1,863,383 | 1,963,383 | 2,447,843 | 484,460 | 24.7 |

3)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8개의 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표시함

4) 증액 및 감액을 모두 포함한 순증 금액임

## 나. 검토의견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보상비로만 증액 편성되어 있어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으므로,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SOC사업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300억원,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500억원, 민자도로건설지원(평택-부여-익산) 120억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13억 9,300만원의 4개 사업(933억 9,300만원)은 전액 보상비로만 증액 편성되었음.

[추경 증액분이 보상비로만 편성된 SOC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추경 증액분=보상비 |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C노선 | 30,000 |
|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 50,000 |
| 민자도로건설지원 | 12,000 |
|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 1,393 |
| 합계 | 93,393 |

자료: 국토교통부

위 사업들 외에도 보상비가 포함된 SOC사업은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100억원 등 3개 사업에 106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상비 증액이 포함된 SOC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추경 증액분 | 보상비 증액분 |
|---|---|---|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 2,936 | 179 |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 10,000 | 500 |
|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 36,000 | 10,000 |
| 합계 | 48,936 | 10,679 |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착공 시기가 당겨지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으나, 추경을 통한 신속한 경기 진작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 공사 발주 없이 보상비만 집행하는 사업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15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토지보상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효과보다는 주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5)]

2015년 추경안 의결시 “정부는 SOC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 등 SOC의 양적 확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질적 투자를 확대하고, SOC 사업 예산이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이 아울러 채택된 바 있음.

따라서 보상비 집행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국토교통부, 「SOC 분야 추경예산 1/6이 토지보상비 보도 관련」. 2015.8.17.
노컷뉴스, 「경제 살린다는 추경, 땅주인만 웃는다- SOC 분야 추경예산 1/6이 토지보상비…고용 효과 거의 없어」, 2015.8.17.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2.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자기자본비율 확대 유도 필요

### 가. 개 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은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하여 민간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3,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5년도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 - | - | - | 300,000 | 300,000 | 순증 |

PF[7)] 사업절차는 토지매매계약 → 브릿지론[8)] → 토지확보 → 인·허가 → 본PF → 착공 → 준공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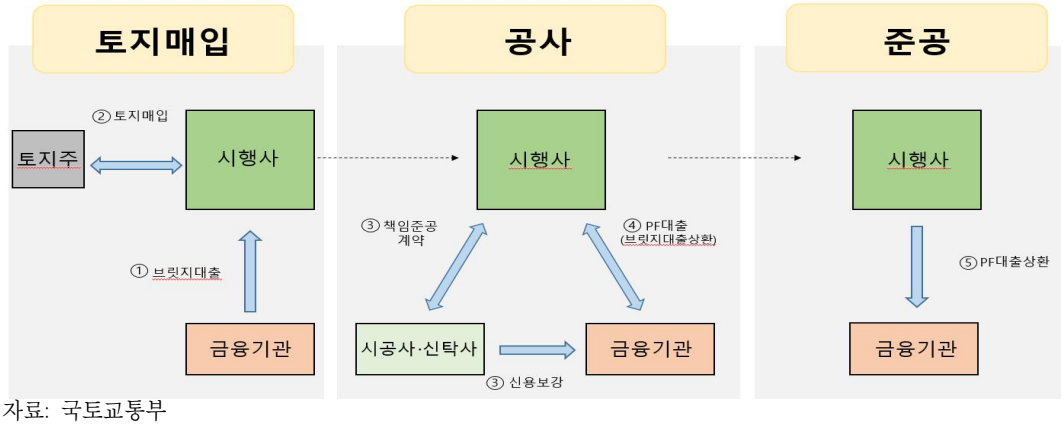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은 낮은 자기자본(총 사업비 대비 10% 이하)으로 시행되어, 토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근 PF 시장 위축과 금융당국 규제의 영향으로 초기 브릿지론 신규 취급이 제한되어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6) 세부사업: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5632 - 320)(주택토지실)

7)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8) 건설사업장들은 인·허가 전 토지확보단계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브릿지론이라는 고금리(10%~15%) 대출을 받음

[PF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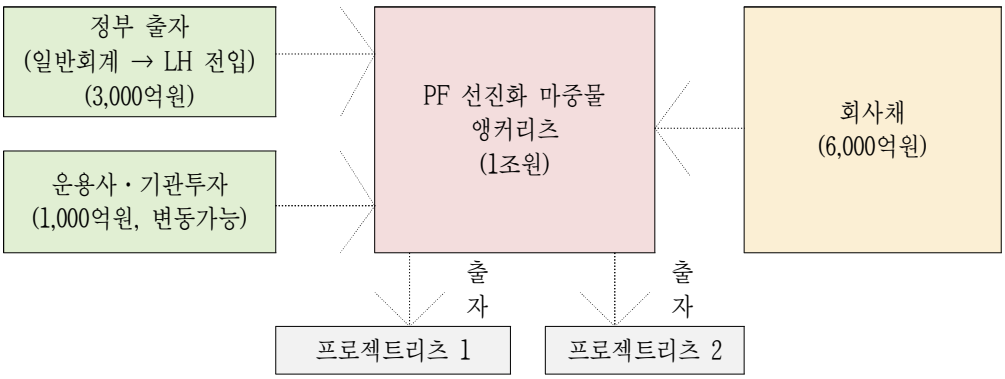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브릿지론을 못 받을 경우, 토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신규 인·허가가 제한되고 건설사업 수주 중단으로 연결되므로, 우량 사업장이 신규 착수가 가능하도록 민간 매칭을 전제로 토지 확보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 先투자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하였고, 정부 재정 3,000억원과 기관투자 1,000억원, 회사채 6,000억원을 포함한 1조원의 리츠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업구조도]




자료: 국토교통부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우수한 개발 사업장이 토지매입시 앵커리츠가 투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대출 시 투자금을 회수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를 반복하는 것임.

앵커리츠의 사업기간은 총 10년이고 종료 시 운영수익을 포함하여 국고로 회수하는 구조이며 투자비율은 총 사업비의 10~20% 수준임.

## 나. 검토의견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은 브릿지론 대출을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하는 역할에 머물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9] 금융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음.[10]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 |
|---|
| 1.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 |
| 2.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 |
| 3.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
| 4.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노력도 차질없이 추진 |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정부는 2024년 11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20%)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현물출자를 통한 사업구조 마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PF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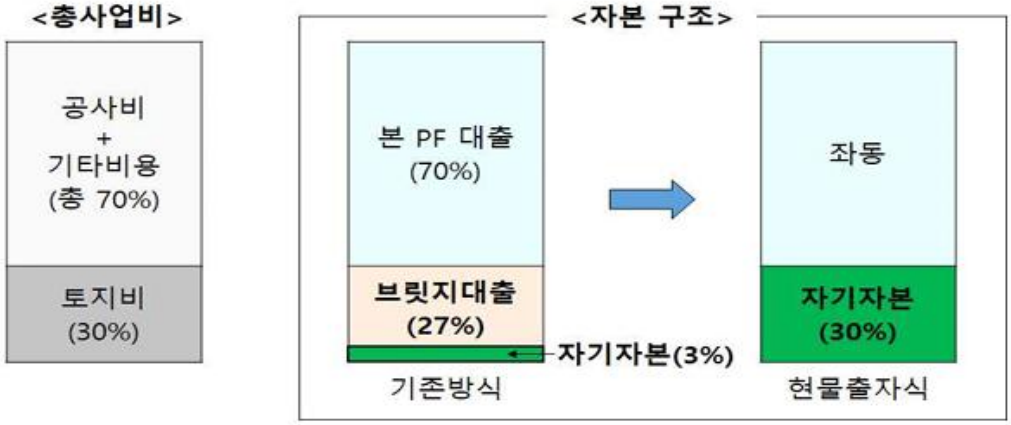
---

9) 금융위원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025.5.

10) 평가기준을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하여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 기존 브릿지대출 vs 현물 출자 시 자본구조 변화(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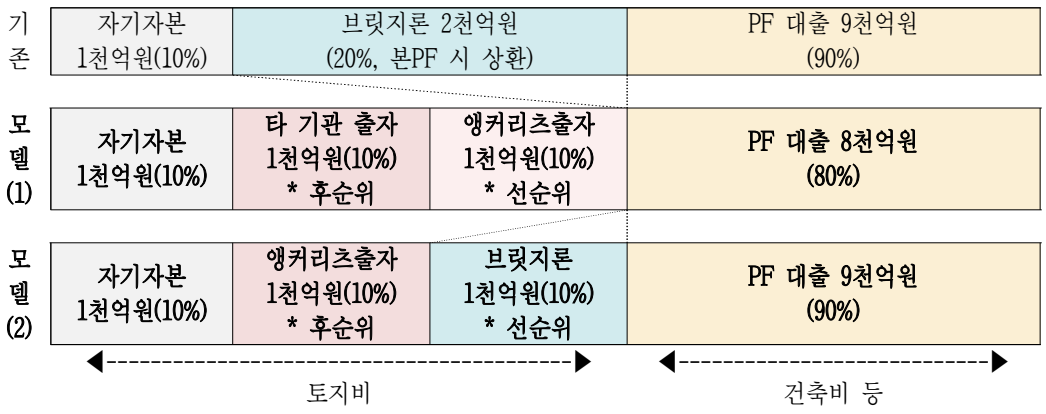



따라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본 PF 전 초기단계의 우수한 사업시행자"로만 지원대상을 추상적으로 설정하였고,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이와 같이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게 되면 사업장 스스로의 자기자본 확보노력을 위축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PF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브릿지론 대출이 단순히 정부의 출자금으로만 대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최소한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구조도 예시 ]



## 3.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선로사용료 추가 징수액 고려 필요

### 가. 개 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은 일반철도시설의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8억 1,300만원(9.6%) 증액된 5,98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 510,991 | 545,457 | 545,457 | 598,270 | 52,813 | 9.6 |

2025년도 예산은 인건비·경비·보수비 등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총액(9,489억 8,700만원) 중 선로사용료 4,035억 3,000만원을 제외한 5,454억 5,700만원이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고, 공단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하여[12)] 사업을 추진함.

일반철도에 대한 선로사용료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매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4,035억원,[13)] SR로부터 영업수입 대비 50%를 징수하여 유지보수비에 충당하고 있음.

---

11) 세부사업: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2731-301(철도국)

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 국가철도공단 · 철도공사 ·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13) 철도공사 일반선 사용료는 운임에 연동되어 있으나, 간선철도는 ’11년 이후 운임 인상이 없어 사용료도 함께 정체(광역철도 운임 인상에 따라 ’17년 200원 인상, 139억원↑)

[선로사용료 징수체계]

| 구분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
| 철도공사 | 영업수입 대비 요율제: 34% | 정액제: 4,035억원 |
| | ※ 철도공사의 경우 제도도입 후 산정기준 1차례 변경('15년부터 적용)<br>☞ (고속) 영업수입의 31% → 34% / (일반) 유지보수비의 70% → 정액제(운임인상 연동) | |
| SR | 영업수입 대비 요율제: 50% | |

자료: 국토교통부

이번 추경안은「시설물안전법」 및 「철도건설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638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528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추경안 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 | 조치대상 (개소) | 2025년 예산 | |
|---|---|---|---|---|
| | | | 본예산 | 추 경 |
| 총 계 | | 10,176 | 5,791 | 52,813 |
| 시설물 안전법 | 소 계 | 638 | 5,791 | 12,828 |
| | · 구조물 | 638 | 5,791 | 12,828 |
| 철도 건설법 | 소 계 | 9,538 | - | 39,985 |
| | 선로시설 | 7,460 | - | 20,000 |
| | 전기시설 | 2,078 | - | 19,985 |
| | · 전철전력 | 802 | - | 13,367 |
| | · 정보통신 | 803 | - | 2,676 |
| | · 신호제어 | 473 | - | 3,942 |

자료: 국토교통부

## 나. 검토의견

**광역철도 운임인상 및 단위사용료 제도 도입에 따라 2025년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선로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간 선로사용료는 "매출 대비 요율" 방식[14]을 적용하여 왔는데 이는 운영자가 총사용료를 노선별로 임의로 배분함에 따라 비용구조가 모호하여 운용 효율화 유도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14) (공사) 영업수입의 34%(고속), (SR) 영업수입의 50%(고속・일반)

[매출액 대비 요율 방식의 문제점]

| |
|---|
| ㅇ 운영자의 총 매출에 연동하는 現 사용료 방식은 열차별 운송원가 분석을 불명확하게 하여 운영 효율화 유도에 한계<br>* 매출 증가(감소)시 비용도 증가(감소)하는 구조이며, 열차별 매출에 따라 사용료를 사후배분(결산)하여 열차별 실소요 비용을 사전에 파악 곤란<br>- 한편, 시설관리자 유지보수 비용 및 건설부채 상환 재원이 운영자 매출에 의존함에 따라, 운영 리스크가 시설관리자까지 영향<br>* 코로나로 인한 교통수요 감소로 사용료 급감 등 ('19년 8,543억원 → '20년 5,301억원)<br>ㅇ 또한, 차량 중량, 선로 혼잡도 등 시설사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능도 부재 |

자료: 국토교통부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 3. 31. 철도산업위원회 의결[15]을 통해 매출연동 구조를 해소하고 시설 사용량(열차별 운행거리)에 비례하는 "단위사용료" 제도[16]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선로사용료 부과 방식 비교]

| 구분 | | 매출액 대비 요율 방식 | 단위사용료 |
|---|---|---|---|
| 개요 및 특징 | | ·수입에 비례하여 부과<br>* 세금 부과 방식 | ·선로사용량(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br>* 전기·수도·가스 요금 방식 |
| | | ·과정이 아닌 결과에 중점 |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 |
| | | ·매출실적이 집계되는 사후에 사용료 결정(예측가능성 저하) | ·사전에 수립되는 운행계획에 따라 사용료 수준 결정 → 실제 운행실적에 따라 추후 정산 |
| 운영단계별 비교 | 운행계획수립단계 | ·사업자의 운행계획 수립에 대한 부담이 적음(적게 벌면 사용료도 적음) | ·수입-비용구조 최적화를 위한 사업자의 면밀한 분석 필요 |
| | | ·그간의 열차운행 관례에 따라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향 | ·수입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있는 운행계획 수립 가능 |
| | | ·지역의 열차운행 요구에도 다소 수동적으로 대응<br>(정무적 판단 중심) | ·지역의 무분별한 열차운행 요구에 대해 적극 대응 가능<br>(객관적인 비용근거를 확보) |
| | 운영 | ·수요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 수립된 운행계획 유지 경향 | ·정밀한 수요분석, 비용의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화된 운영 가능 |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 (산정식) 사용료 총액 = Σ (km당 단가 × 열차별 운행거리(km))± 정책요소(할인 또는 할증)

| 구분 | | 매출액 대비 요율 방식 | 단위사용료 |
|---|---|---|---|
| | 단계 | | * 수요에 대응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공급 조정 유도 |
| | 사후관리단계 | ·운영자가 총사용료를 노선별로 임의로 배분, 비용구조가 모호<br>* 코레일은 과거 열차 중량비율로 배분 → 현재 매출 비율로 배분(수요가 적은 노선의 운행부담이 적음) | ·열차 운행단위로 사용료가 부과되어 비용구조가 명확해 비효율 원인분석이 용이, 효율적 운행계획 수립자료로 활용 가능 |

자료: 국토교통부

적용범위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단독 운영 노선은 제외하고, 공공성 저해 우려가 적은 경우(코레일-SR 공용노선·차량,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자)에 한해 단위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사용료 규모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정액제를 유지하되 광역철도 운임인상을 반영(95억 800만원 증액)하고, SR은 2025년부터 즉시 적용(20억 900만원 증액)하여 총 115억 1,700만원이 추가로 징수될 예정임.[17]

적용시기는 2025년 상반기에 단위사용료를 기준으로 '25~'27년 사용계약을 체결하되 '25.1.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음.[18]

따라서 2025년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추가 선로사용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코레일: [4,035억 3,000만원(당초)+95억 800만원(2023년 광역철도운임 150원 인상)]
SR: [45억 1,500만원(당초) + 20억 900만원(단위사용료 변경)])

18)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2025.3.31.

# 4.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노후시설 교체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

## 가. 개 요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사업은 노후화되어 안전이 취약한 일반철도 시스템 설비를 적기에 개량하여 철도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0억원(10.7%) 증액된 6,219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 594,827 | 561,934 | 561,934 | 621,934 | 60,000 | 10.7 |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후된 선로전환기의 성능개선 등 선로전환기 개량사업에 100억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전반 교체 등 전기설비 개량사업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추경안 증액내역]

| |
|---|
| ① 선로전환기개량 : 노후 선로전환기(NS-AM)*를 성능 향상 및 내구연한이 증가(10→15년)된 통합형으로 개량 비용 반영<br>- (’25) 54,000백만원 → (’25 추경) 64,000백만원 (+10,000백만원)<br>선로전환기 개량 50억원, 기능감시장치 설치 50억원<br>* 선로전환을 기존 20만회에서 30만회로 성능 향상 및 기능감시장치<br>② 전기설비개량 :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 후속대책, 철도건설기준 반영, 노후 전력시설 교체 비용 반영<br>- (’25) 268,230백만원 → (’25추경) 318,230백만원 (+50,000백만원)<br>축전지 교체 및 단전구간 축소 200억원, 무정전 전원장치(UPS), 전차선 급전케이블 교체 200억원, 노후 전력설비(단권변압기, 배전선로) 교체 등 100억원 |

자료: 국토교통부

19) 세부사업: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2731-346)(철도국)

## 나. 검토의견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가철도공단의 “설비별 개량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따르면 선로전환기 개량사업의 경우 내구연한(10년)이 지난 선로전환기를 대상으로 노후도, 동작횟수, 열차통행량, 설치장소 등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선로전환기개량 우선순위 선정기준]

| 구 분 | 평 가 기 준 | 점수 |
|---|---|---|
| 노후도 (50점) | 내구연한 초과 10년 이상 또는 동작횟수 20만회 이상 | 50 |
| | 내구연한 초과 8~10년 미만 | 42.5 |
| | 내구연한 초과 5~8년 미만 | 35 |
| | 내구연한 초과 3~5년 미만 | 25 |
| | 내구연한 초과 3년 미만 | 12.5 |
| 동작횟수(20점) | 환산: 동작횟수/200,000회×20점 | 20 |
| 열차 통행량 (20점) | 일 150회 이상(30), 일 100~150회미만(22.5), 일 30~100회미만(15), 일 30회미만(7.5) | 30 |
| 설치장소(10점) | 본선(10), 부본선(8.5), 측선(7), 차량기지(5), 조차장(2.5) | 10 |

자료: 국토교통부

전기설비개량사업의 경우도 노후도, 열차통행량, 노선중요도 등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전기설비개량 우선순위 선정기준]

| 설 비 명 | 평가항목 및 비율(%) | | | | |
|---|---|---|---|---|---|
| 변전설비 | 노후도 | 열차통행량 | 노선중요도 | 유지보수성 | 사용조건 |
| | 40 | 15 | 15 | 15 | 15 |
| 단권변압기 | 노후1도 | 건전도 | 노선중요도 | 누유 및 부식 | |
| | 30 | 30 | 20 | 20 |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전기설비 개량사업 중 배전선로 개량은 위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체가 시급한 구간(신리~순천)이 선정되었음.

[배전선로 개량 우선순위]

| 순위 | 노선 | 구간 | 시설년도 | 거리(km) | 개량현황 |
|---|---|---|---|---|---|
| 1 | 경부선 | 서울~금정 | 1993~1998 | 27.5 | 시공 중 |
| 2 | 경인선 | 구로~인천 | 1995 | 27 | 시공 중 |
| 3 | 경부선 | 동대구~밀양 | 2003 | 55.3 | 설계 중 |
| 4 | 경부선 | 수원~천안 | 1996 | 55 | |
| 5 | 호남선 | 익산~정읍 | 2003 | 43.5 | 설계 중 |
| 6 | 경부선 | 밀양~부산 | 2003 | 60 | 설계 중 |
| 7 | 호남선 | 정읍~광주송정 | 2003 | 54.3 | 설계 중 |
| 8 | 영동선 | 영주~동백산 | 1975, 1996 | 93.1 | 설계 중 |
| 9 | 태백선 | 입석리~예미 | 1997 | 38.4 | |
| 10 | 태백선 | 예미~백산 | 1997, 2000 | 52 | |
| 11 | 전라선 | 신리~순천 | 1998, 2011 | 110.7 | '25년 2차 추경대상 |
| 12 | 호남선 | 서대전~익산 | 2003 | 82.2 | |
| 13 | 중앙선 | 회기~덕소 | 2004 | 17.2 | |
| 14 | 경부선 | 천안~옥천 | 2004, 2005 | 85.9 | |
| 15 | 영동선 | 동백산~동해 | 2000 | 54.5 | |
| 16 | 충북선 | 조치원~봉양 | 2003 | 115 | 건설사업(충북선 고속화) 중복 검토 |
| 합계 | | | | 971.6 | |

자료: 국토교통부

반면, 기능감시장치신설, 비상용섹션개량, 수도권 선로 내 신호설비 이설, 축전지 화재예방, 전원장치 및 급전케이블 개량, 절연밀폐형 배전반 개량 등 5개 사업 478억원은 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른 교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

[2025년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경안 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건명 | 추경 편성 사유 | 추경안 |
|---|---|---|---|
| 선로 전환기 개량 | 기능감시장치 신설 | - 서해선(평택선), 장항선 개통구간 등 신설 설치 | 5,000 |
| 전기 설비 개량 | 비상용섹션 개량 | - 구로역 사고 후속대책 관련 수도권 단전구간 축소 대상 개량<br>* 경의선(수색~가좌), 경부선(서울~남영, 대방~신길, 금천구청~석수) | 3,000 |
| | 수도권 선로 내 신호설비 이설 | - 구로역 사고 후속대책 관련 수도권 복복선 구간 신호설비 이설<br>* 경부1선 금천구청~수원 간 22개소 | 2,000 |
| | 축전지 화재예방 | - 화재 우려가 있는 노후, 성능이 떨어지는 축전지 전량 개량<br>* (전철전력) 111개소 2,052개, (신호제어) 80개소, 3,086개 | 5,000 |
| | 전원장치 및 급전케이블 (보호장치)개량 | - 철도건설기준 규정, 철도 설계지침 및 편람 개정에 따른 전량 개량<br>* (통합전원장치) 경부선 가천 등 21역, (급전케이블_보호장치) 경부선 3,000개 | 24,000 |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건명 | 추경 편성 사유 | 추경안 |
|---|---|---|---|
| | 절연밀폐형 배전반 개량 | - 노후(노출형) 고압 배전반 작업 시 감전 위험요인 개소 전량 개량<br>* 일산선 원흥역, 경의선 문산역 등 40면 | 8,800 |
| 합계 | | | 47,800 |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노후도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점수와 다르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른 개량계획 수립 취지를 퇴색시키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의 적기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2021 ~ 2025년)」에서,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장애 빈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장 빈도가 높고 사고·장애 시 피해가 큰 시설물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 <세출증액>

## 5.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연내 착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을 위한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0억원(88.8%) 증액된 63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 188,049 | 33,769 | 33,769 | 63,769 | 30,000 | 88.8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은 양주 덕정역~수원역까지 86.46km/14개역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조 6,084억원, 사업기간은 60개월임.

[2025년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 | 2025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33,769백만원 | ○ 민간자본보조(320-07) : 28,182,000천원<br>- 건설보조금(28,182,000천원)×1식<br>=28,182,000천원 | 63,769백만원 | ○ 민간자본보조(320-07) : 28,182,000천원<br>- 건설보조금(28,182,000천원)×1식<br>=28,182,000천원 |

20) 세부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2833 - 314)(철도국)

| 2025년 예산 | | 2025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 사업출연금(350-02) : 5,587,000천원<br>- 공사단계 건설사업관리비(5,587,000천원) | | ○ 사업출연금(350-02) : 5,587,000천원<br>- 공사단계 건설사업관리비(5,587,000천원)<br><br>○ 건설보상비(410-00) : 30,000,000천원<br>-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30,000,000천원) |

자료: 국토교통부

이번 추경안은 공시지가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상비(3,600억원) 외에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추가 보상비(1,400억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300억원의 보상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 나. 검토의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은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금융 조달 및 공사비 현실화 방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바, 연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기념식 개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추진 경과]

| |
|---|
| o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반영 |
| o '18.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36, AHP 0.616) |
| o '21. 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건설 컨소시엄) |
| o '22.1 ~ '22.11 : 창동역 지하화 요구로 감사원 공익감사 |
| o '22.4 ~ '23.2 : KDI 민자적격성 검토 |
| o '23. 7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
| o '23. 8 : 실시협약 체결 |
| o '23.12 : 실시계획 승인 |
| o '24. 1 : 착공기념식 개최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에 편성된 건설보조금 281억 8,2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나, 적기에 보상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안에 3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금융 조달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4.10.2.)[21] 에 따른 물가특례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 컨설팅 및 별도 법령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는 등 하반기에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용지 보상 이후 공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1) GTX-C 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시점이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4.10.2.)에 따른 물가특례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
|---|
| '21~'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 ①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12.31일 이전이면서 ②현재 협약 체결 전인 BTO사업 대상-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기본계획 제168조의4 신설)<br>* '21~'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CPI 상승률(7.6%) 차이의 50%<br>** 이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 등으로 반영<br>(단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고려 가능) |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 <세출감액>

## 6.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은 가덕도신공항과 접근철도 및 접근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23억 6,400만원(△54.2%) 감액된 4,41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가덕도신공항 건설 | 536,321 | 964,025 | 964,025 | 441,661 | △522,364 | △54.2 |

이 사업은 2025년 6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비(5,223억 6,400만원)가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 2025년 추경안 |
|---|---|
|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864,908백만원<br><br>가. 건설보상비 : 160,993백만원<br>나. 기본조사설계비 : 40,879백만원<br><br>**다. 공사비 : 604,084백만원**<br>**· 부지조성 : 604,084백만원,** |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342,544백만원<br><br>가. 건설보상비 : 160,993백만원<br>나. 기본조사설계비 : 40,879백만원<br><br>**다. 공사비 : 81,720백만원**<br>**· 부지조성 : 81,720백만원,** |

22) 세부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3538-308)(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2025년 예산 | 2025년 추경안 |
|---|---|
| * ① 설계비(81,720) ② **공사비(522,364) : 총 공사비(10,530,002)에서 24년 우선시공분(1,000) 및 설계비 제외 공사비(10,447,282)에 대해 연차별 투자 비율 10% 및 2025년도 6월 착공(6개월) 고려**<br>**※ 6개월 공사비 산출식 : (10,530,002-1,000-81,720)×0.1×1/2 = 522,364백만원**<br><br>라. 감리비 : 57,978백만원<br>마. 시설부대비 : 974백만원 | ① 기본 및 실시설계비(81,720)<br><br>라. 감리비 : 57,978백만원<br>마. 시설부대비 : 974백만원 |

## 나. 검토의견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에 따라 공사비가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안전한 건설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은 2024년 10월 수의계약으로 전환 후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으나, 2025년 4월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기본설계를 제출하여[23] 2025년 6월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었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

| |
|---|
| ㅇ '21. 3.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9.17. 시행) |
| ㅇ '21. 5.~ '22.4.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 ㅇ '22. 4.26.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
| ㅇ '22. 4.29.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 ㅇ '23. 8.25. : 기본계획수립(안) 발표 |
| ㅇ '23.10.24.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공포 |
| ㅇ '23.12.29.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 ㅇ '24. 3. ~ 6. : 국제여객터미널 등 건축 설계공모(3.14~), 계약(7.31) |
| ㅇ '24. 5. ~ 9. : 부지조성공사 발주(4회 유찰) |
| * 1·2차 유찰 이후 입찰조건을 변경하였으나, 3·4차 입찰도 단독입찰로 유찰<br>(공사기간 72→84개월, 설계기간 10→12개월, 상위 10대 社 공동수급 제한 2→3개 이내) |
| ㅇ '24. 8.29 : 접근도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 ㅇ '24. 9. 6 : 접근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 ㅇ '24. 9.11 :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전환 방침 |

23) 입찰공고에서 공사기간을 84개월로 제시하였으나 현대건설은 108개월로 제출함

| |
|---|
| ㅇ ’24. 10.28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br>ㅇ ’25. 2. 6 : 접근철도 제1공구 건설공사(T/K) 기본설계 착수<br>ㅇ ’25. 4.10 : 접근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T/K) 기본설계 착수<br>ㅇ ’25. 4.28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접수 및 보완 요구(국토부)<br>ㅇ ’25. 5. 8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미보완 사유서 제출(현대)<br>ㅇ ’25. 5. 9 :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중단 절차 개시<br>ㅇ ’25. 6.16 :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공식 중단 |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 심의단계에서부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24] 2024년에 1,399억 3,700만원이 불용된데 이어 2025년에는 추경안을 통해 감액 편성되었음.

[2024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다음년도 이월액(D) | 불용액 (E) | 예산액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536,321 | 536,321 | 1,986 | △606 | - | 537,701 | 384,092 | 13,672 | 139,937 | 964,025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하면서 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25],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24) 제410회국회(정기회) 예결위 회의록(2023년 11월 20일)

| |
|---|
| ◯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5,300억 정도가, 사실 중기재정계획에서 연차별 투자액수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br>◯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집행가능한 금액을 담았습니다.<br>◯ 이원택 위원: 이것 나중에 불용 생기면 어떡하시려고……<br>◯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열심히 하겠습니다.<br>◯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100% 불용 생길 것 같은데.<br>◯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가능한 규모를 담았고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25)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보완요구에 대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의견 접수」, 2025.5.8.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 및 사업 재추진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세출증액>

## 7.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보조율 검토 필요

### 가. 개 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철도 시설물을 개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0억 5,500만원(38.2%) 증액된 72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5년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 | |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58,423 | 34,674 | 52,489 | 72,544 | 20,055 | 38.2 |

이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신호·통신·전기·궤도·구조물 분야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178억 1,000만원, 부산시에 168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율은 서울시 30%, 부산시 50%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시 국회에서 178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도시철도에 철도통합무선망(LTE-R)[27)]을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

26) 세부사업: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3031-332)(철도국)

27) 사용기한 만료('28. 12. 31.) 예정인 1세대 열차무선설비(VHF)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

고,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동일한 5개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200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추경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대상 | 보조율 | 2025년 1회 추경 | | 2025년 2회 추경안 | |
|---|---|---|---|---|---|
| | | 총사업비 | 국비 | 총사업비 | 국비 |
|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지원** | **-** | **356.30** | **178.15** | **401.1** | **200.55** |
| 부산시(2~4호선) | 50% | 118.50 | 59.25 | 163.3 | 81.65 |
| 인천시(1~2호선) | 50% | 94.00 | 47.00 | 94.00 | 47.00 |
| 대구시(2~3호선) | 50% | 57.10 | 28.55 | 57.10 | 28.55 |
| 대전시(1호선) | 50% | 64.70 | 32.35 | 64.70 | 32.35 |
| 광주시(1호선) | 50% | 22.00 | 11.00 | 22.00 | 11.00 |

자료: 국토교통부

## 나. 검토의견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철도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등 도시철도사업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8]

---

한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교체하여 재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28)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所要資金)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기준 보조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서울은 30%, 그 외 지방은 50%로 지원하고 있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통해 신규로 지원하게 된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도 동일한 보조율(50%)이 적용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도시철도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29]의 기준 보조율(서울 25%, 서울 외 지역 30%)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준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유사 사업 간 기준 보조율 비교]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
|---|---|---|
| 서울 | 30% | 25% |
| 서울 외 지역 | 50% | 30% |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기준 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9)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도시철도 차량의 적기교체를 통한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1,126억 1,600만원임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 <지출증액>

## 8.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현금·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가. 개 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는 보증업무 등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0]

[2025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주택도시보증 공사 출자 | 700,000 | 700,000 | - | - | 400,000 | 400,000 | 순증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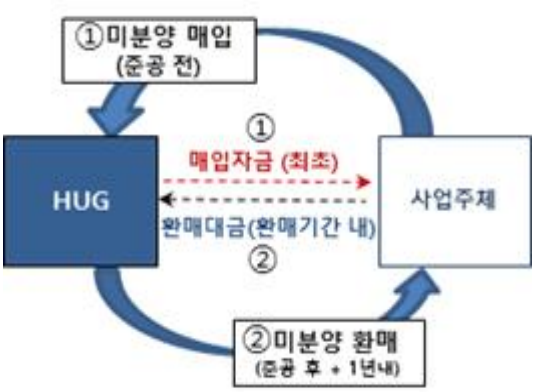
이번 추경안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건설사 자금난 및 공사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2,000억원,[31] 기존 보증제

30) 세부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 - 301)(주택토지실)

도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중소건설사를 위해 맞춤형 PF대출보증 상품을 지원하는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2,000억원이 HUG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되었음.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①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② 공공이 한시적으로 매입하고, ③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하면 ④ 사업주체는 분양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개요]




① (매입대상) 공정률 50% 이상, 분양보증 가입 지방 사업장

② (매입가격) 분양가격 × 50%

③ (환매기간) 준공 후 1년 이내

④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분양가 50%) + 최소 실비용(세금, 이자비용 등)

자료: 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한주택보증(HUG의 전신)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업계 유동성 지원 및 분양보증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방식임.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 추진경과]

| |
|---|
| ㅇ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08.8.21)에 따라 도입 |
| ㅇ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10.4.23) |
| - 연중 매입물량을 당초 5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 |
| - 지방 미분양 우선 매입, 업체당 매입한도 확대 (1,000억원 → 1,500억원) |
| ㅇ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0.8.29) |
| - 업체별 매입한도 추가 확대 (1,500억원 → 2,000억원) |
| ㅇ 「제1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 공모」('12.12.20) |
| - 매입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 전용 85㎡ 이하 주택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 상향 |

자료: 국토교통부

31)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출자 2,000억원, 미분양안심환매(융자) 신규 1,000억원으로 총 3,000억원이 편성되었음

당시 매입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총 12회('08.11월~'13.12월)에 걸쳐 102개 사업장(90개 업체) 1.9만세대, 3.3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였고, 환매(94개소) 또는 HUG의 직접 매각(8개소)을 통해 전액 회수하였음.

[매입 및 처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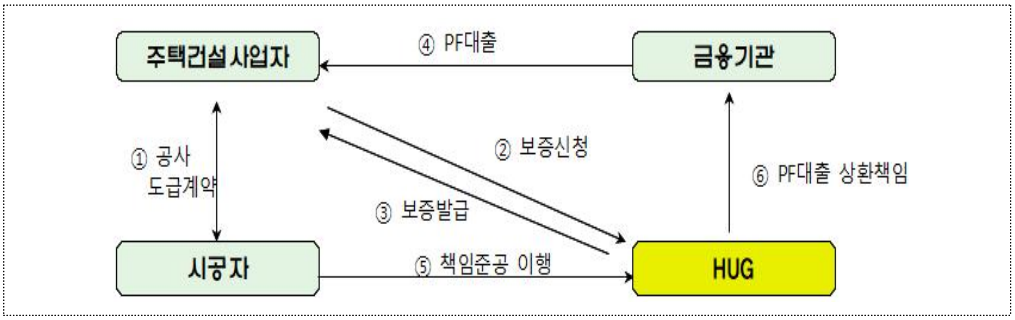
(단위: 만세대, 조원)

| 구분 | | 업체수 | 사업장수 | 세대수 | 금액 |
|---|---|---|---|---|---|
| 매입실적 | | 90 | 102 | 1.9 | 3.3 |
| 처분실적 | 사업자 환매 | 82 | 94 | 1.8 | 3.1 |
| | HUG가 직접 매각 | 8 | 8 | 0.07 | 0.2 |
| 미환매 | | - | - | - | - |

자료: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PF대출보증은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수입을 검토하여, 주택사업자가 대출받은 사업비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임.

[PF대출보증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PF대출보증은 자금 조달의 핵심 지원수단이지만, 보증실적이 시공순위 100위권 사업장에 집중되어 중소건설사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중소건설사의 주요 자금 조달 경로인 제2금융권[32] PF 대출에 대해 HUG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기존 PF 보증과 비교]

32)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등), 저축은행

| | 기존 PF보증(HUG 자체사업) | PF위기 특별보증(정부 출자) |
|---|---|---|
| 보증대상 | 1금융권 + 2금융권<br>건설사 시공순위 제한없음 | 2금융권<br>중소건설사 |
| 시공사요건 | 신용평가등급 BB+이상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br>사업성평가 강화(예상 분양률 등) |
| 보증료율 | 0.563~1.104% | 좌동 |
| 보증한도 | 총사업비 70% | |
| 재원조달 | HUG 자체조달 | 국비 2,000억원 |

자료: 국토교통부

## 나. 검토의견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현금·현물 출자 및 신종자본증권발행을 통해 자본금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현금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33] 2024년 전세보증 사고가 총 6.1조원에 이르면서[34] 보유자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HUG는 2024년 2월 7,000억원의 현금출자, 2024년 3월 4조원의 현물출자, 2024년 12월 7,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이어 2025년 5월 5,650억원의 현물출자까지[35] 2024년 이후 약 6조원의 자본을 확충하였음.

[HUG 자본 확충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 현금 출자 | 현물 출자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021년 | 3,900 | - | - |
| 2023년 | 3,839 | - | - |
| 2024년 | 7,000 | 40,000 | 7,000 |
| 2025년 | - | 5,650* | - |

주) 2025년 현물출자는 국무회의까지만 의결된 상황임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2025년 5월말 기준 HUG의 보증배수는 64.7배로[36] 「주택도시기금법」에

33) 당기순손실: 2022년 0.1조원, 2023년 3.9조원, 2024년 2..5조원

34) 대위변제금액 : 0.3조원('21) → 1.1조원('22) → 4.9조원('23) → 6.1조원('24)

35) 기획재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2025.5.28.

36) 2025년 5월 현물출자는 액면미달 발행으로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에 따른 법원 인가를 아직 얻

따른 보증한도(90배)[37]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보증사고 주택을 HUG가 경매로 직접 매입하여 채권회수 조치가 확대되고 있고,[38] HUG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5년 8,39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HUG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현금 출자가 시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HUG 2024~2028년 재무 전망 ]

(단위: 억원, %, 배)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1. 자산 | 72,873 | 79,099 | 78,828 | 78,966 | 93,693 |
| 2. 부채 | 40,245 | 38,214 | 31,518 | 20,665 | 27,004 |
| ① 금융부채 | 27,306 | 31,731 | 29,485 | 19,476 | 18,476 |
| - 이자부부채 | 25,132 | 22,125 | 12,123 | 2,114 | 1,114 |
| ② 비금융부채 | 12,939 | 6,483 | 2,033 | 1,189 | 8,528 |
| - 보증계약부채 | 11,883 | 5,386 | 890 | - | 7,290 |
| 3. 자본 | 32,629 | 40,886 | 47,309 | 58,301 | 66,689 |
| 4. 부채비율 | 123.3 | 93.5 | 66.6 | 35.4 | 40.5 |
| 5. 이자비용 | 356 | 1,048 | 806 | 357 | 44 |
| 6. 영업이익 | △39,911 | 7,563 | 5,878 | 11,019 | 8,899 |
| 7. 당기순이익 | △38,324 | 8,392 | 6,559 | 11,127 | 8,523 |
| 8. 이자보상배율 | △112.2 | 7.2 | 7.3 | 30.8 | 204.2 |

자료: HUG

**설사 HUG에 대한 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 지원대상 물량으로 한정하여 재정소요를 재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매입 물량이 아니라

지 않은 상황이나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37) 「주택도시기금법」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38) 2021년 4천억원, 2022년 2.8천억원, 2023년 6.3천억원, 2024년 1.5조원

‘2025~2026년 2년간’ 4,000호 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9,760억원[39] 중 30%인 3,000억원을 출자 및 융자[40]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따라서, 2025년 매입 가능한 물량(약 1,000호)을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지원 물량]

| 구분 | | 2025 | 2026 | 2027 | 2028 | 합계 |
|---|---|---|---|---|---|---|
| 매입물량 | | 4,000호 | | 3,000호 | 3,000호 | 1만호 |
| 재정소요 | 매입액 | 9,760억원 | | | | 2.44조원 |
| | 국비 | 3,000억원(30%) | | - | - | 3,000억원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의 경우 비은행권 연간 PF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2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2,0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조원의 보증규모는 3년간의 목표치이므로[41] 2025년 공급규모(약 4천억원)를 기준으로 재정소요를 재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산출내역]

○ (보증규모) 2조원 규모
- 비은행권 연간 PF 신규취급액 11조원('24년) × 상위 20% = 2조원

○ (재정소요) **보증규모 2조원 ÷ 보증배수 10배* = 2,000억원**
* 사고율 추정 10% = '24년 PF 보증사고율 1.7% × 은행보험 대비 부실비율 6배
보증배수 = (사고율의 역수) = 1/0.1 = 10배

자료: 국토교통부

39) 9,760억원 = 4,000호 × 호당 매입액 244백만원(세대당 매입가격) × 50%(분양가 대비 매입가격 한도)

40)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출자 2,000억원, 미분양안심환매(융자)가 신규 1,000억원으로 총 3,000억원이 편성되었음

41) 2025년 4천억원, 2026년 8천억원, 2027년 8천억원으로 3년간 2조원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9. 전세임대: 각 유형별 수요에 대한 검토 필요

## 가. 개 요

**‘전세임대’** 는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3,207억 5,000만원(6.3%)이 증액된 5조 4,34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42)]

[2025년도 전세임대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전세임대 | 4,546,931 | 5,056,531 | 5,114,122 | 5,114,122 | 5,434,872 | 320,750 | 6.3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번 추경안은 전세임대 유형 중 신혼부부Ⅱ[43)] 1,000호, 청년역세권 1,000호, 非아파트형 1,000호 등 3,000호 추가 공급을 위해 3,20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세임대 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 2025년 추경안 |
|---|---|
| ○ 전세임대융자(1337-401) : 5,114,122백만원<br><br>〈신규〉<br>· (일반) 1,557,750백만원 = 16,750호 × 93백만원 × 100%<br>· (고령자) 279,000백만원 = 3,000호 × 93백만원 × 100%<br>· (다자녀) 274,500백만원 = 2,250호 × 122백만원 × 100%<br>· (신혼부부) 570,000백만원 = 6,000호 × 100백만원 × 95% | ○ 전세임대융자(1337-401) : 5,434,872백만원<br><br>〈신규〉<br>· (일반) 1,557,750백만원 = 16,750호 × 93백만원 × 100%<br>· (고령자) 279,000백만원 = 3,000호 × 93백만원 × 100%<br>· (다자녀) 274,500백만원 = 2,250호 × 122백만원 × 100%<br>· (신혼부부) 570,000백만원 = 6,000호 × 100백만원 × 95% |

42) 세부사업: 전세임대(1337-401)(주택토지실)

43)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참고로 신혼부부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

| 2025년 예산 | 2025년 추경안 |
|---|---|
| · (신혼부부II) 204,000백만원 = 1,500호 × 170백만원 × 80%<br>· (청년역세권) 545,063백만원 = 6,750호 × 85백만원 × 95%<br>· (청년셰어형) 445,313백만원 = 3,750호 × 125백만원 × 95%<br>· (비아파트형) 520,000백만원 = 5,000호 × 130백만원 × 80%<br><br>〈재계약〉<br>· (일반·고령자) 296,320백만원 = 74,080호 × 4백만원 × 100%<br>· (다자녀) 73,738백만원 = 3,206호 × 23백만원 × 100%<br>· (신혼부부) 157,793백만원 = 27,683호 × 6백만원 × 95%<br>· (청년) 190,646백만원 = 25,085호 × 8백만원 × 95% | **· (신혼부부II) 340,000백만원 = 2,500호 × 170백만원 × 80%**<br>**· (청년역세권) 625,813백만원 = 7,750호 × 85백만원 × 95%**<br>· (청년셰어형) 445,313백만원 = 3,750호 × 125백만원 × 95%<br>**· (비아파트형) 624,000백만원 = 6,000호 × 130백만원 × 80%**<br><br>〈재계약〉<br>· (일반·고령자) 296,320백만원 = 74,080호 × 4백만원 × 100%<br>· (다자녀) 73,738백만원 = 3,206호 × 23백만원 × 100%<br>· (신혼부부) 157,793백만원 = 27,683호 × 6백만원 × 95%<br>· (청년) 190,646백만원 = 25,085호 × 8백만원 × 95% |

##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非아파트형 전세임대의 경우 2025년 본예산에서 처음 편성된 사업으로 입주자 모집 결과 청약률이 48.6% 수준이고, 전세임대 사업은 매년 기금운용계획변경 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별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유형 중 하나인 전세임대 非아파트형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며, 2025년 4월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음.[44)45)]

非아파트형 전세임대의 1순위 청약결과를 살펴보면, 청약률이 48.6%에 그쳤고, 부산·울산, 전북, 경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신청률 10% 이하로 저조한 편임.

[전세임대 非아파트형 청약결과]

(단위: 호, 명)

| 구분(본부) | 모집 가구 | 청약 신청자 | 청약률 |
|---|---|---|---|
| 합계 | 2,800 | 1,360 | 48.6% |
| 서울 | 249 | 588 | 236.1% |
| 인천 | 10 | 45 | 450.0% |
| 경기남부 | 165 | 287 | 173.9% |
| 경기북부 | 97 | 174 | 179.4% |

44) 국토교통부, 「최대 8년간 안심 거주! 30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2025.5.

45) 2025년 총 5천호 공급 예정(LH 2800호, SH 1200호, GH 500호 iH 500호 배정)

(단위: 호, 명)

| 구분(본부) | 모집 가구 | 청약 신청자 | 청약률 |
|---|---|---|---|
| 부산울산 | 414 | 37 | 8.9% |
| 강원 | 70 | 13 | 18.6% |
| 충북 | 120 | 16 | 13.3% |
| 대전충남 | 397 | 54 | 13.6% |
| 전북 | 223 | 17 | 7.6% |
| 광주전남 | 256 | 26 | 10.2% |
| 대구경북 | 416 | 51 | 12.3% |
| 경남 | 370 | 30 | 8.1% |
| 제주 | 13 | 22 | 169.2%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전세임대사업의 최근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불용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평균 불용액은 351억원에 이르고 있음.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살펴보아도 집행액 1조 7,463억 1,600만원, 집행률 34%에 그치고 있음.

[전세임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 | | 계획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2021 | 4,366,250 | 4,812,750 | 4,812,750 | 4,004,772 | 83.2 | 83.2 | 807,978 |
| 2022 | 4,532,791 | 4,775,041 | 4,775,041 | 4,661,183 | 97.6 | 97.6 | 113,588 |
| 2023 | 4,174,950 | 5,087,730 | 5,087,730 | 4,780,620 | 94.0 | 94.0 | 307,110 |
| 2024 | 4,546,931 | 5,056,531 | 5,056,531 | 4,878,890 | 96.5 | 96.5 | 177,641 |
| 2025.5 | 5,114,122 | 5,114,122 | 5,114,122 | 1,746,316 | 34.1 | 34.1 | - |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전세임대 각 유형별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출감액>

## 10. 행복주택(융자) : 행복주택 출자사업의 미집행 금액 고려 필요

### 가. 개 요

**‘행복주택(융자)’ 는**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244억원(28.4%)이 감액된 3,14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46)]

[2025년도 행복주택(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행복주택(융자) | 838,319 | 838,319 | 438,409 | 438,409 | 314,009 | △124,400 | △28.4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번 추경안은 개별적인 입주자격 요건을 갖고 있었던 기존 공공건설임대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의 신규 승인 물량이 감소하여 행복주택(융자)사업의 불용예상액(1,24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복주택(융자) 사업 변경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 | 2025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40,970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438,409백만원<br>· (매입) 33,510백만원 = 607호 × 8.847백만원/3.3㎡ × 15.6평 × 40% × 100%<br>· (착공) 68,838백만원 = 4,218호 × 9.466백만원/3.3㎡ × 15.6~17.5평 × 40% × | 215,492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314,009백만원<br>· (매입) 21,112백만원 = 382호 × 8.847백만원/3.3㎡ × 15.6평 × 40% × 100%<br>· (착공) 43,369백만원 = 2,657호 × 9.466백만원/3.3㎡ × 15.6~17.5평 × 40% × 25% |

46) 세부사업: 행복주택(융자)(1335-401)(주택토지실)

| 2025년 예산 | | 2025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25%<br>· (준공) 242,217백만원 = 13,185호 × 8.847백만원/3.3㎡ × 15.6~17.5평 × 40% × 30%<br>· (미착공 고려) △48,187백만원(착공 사업분의 70%)<br>· (전년도 미지급) 102,176백만원<br>· (에너지절감 10%추가융자) 39,855백만원 | | · (준공) 152,601백만원 = 8,307호 × 8.847백만원/3.3㎡ × 15.6~17.5평 × 40% × 30%<br>· (미착공 고려) △30,359백만원(착공 사업분의 70%)<br>· (전년도 미지급) 102,176백만원<br>· (에너지절감 10%추가융자) 25,109백만원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행복주택의 재원조달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40%, LH 및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30%, 입주자 보증금 20%, 사업시행자 10%로 구성되며, 이번 추경안에서 행복주택 출자 사업은 현계획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복주택 출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도 | | 2025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행복주택 출자 | 528,783 | 528,783 | 134,594 | 134,594 | 134,594 | - | - |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 나. 검토의견

**행복주택 물량 감소에 따라 행복주택 융자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으나 행복주택 출자 사업은 감액 편성되지 않았는바, LH의 미집행(상계대상) 출자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서 행복주택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융자금은 감액 편성되었으나, 행복주택 출자사업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물량 감소에 따라 미집행 출자금 상계분도 당초 1,633억 8,200만원에서 720억 1,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행복주택 출자사업은 별

도로 예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 행복주택 출자 사업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 | 2025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34,594 백만원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0,977백만원<br>○ 일반출자금(460-01) : 83,617백만원<br><br>·(매입) 25,132백만원 = 607호 × 8.847백만원/3.3㎡ × 15.6평 × 30% × 100%<br>·(착공) 51,628백만원 = 4,218호 × 9.466백만원/3.3㎡ × 15.6~17.5평 × 30% × 25%<br>·(준공) 181,663백만원 = 13,185호 × 8.847백만원/3.3㎡ × 15.6~17.5평 × 30% × 30%<br>·(미착공 고려) △36,140백만원(착공 사업분의 70%)<br>·(전년도 미지급) 75,693백만원<br>**·(출자금 미집행액) △163,382백만원** | 134,594 백만원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0,977백만원<br>○ 일반출자금(460-01) : 83,617백만원<br><br>·(매입) 6,704백만원 = 382호 × 8.847백만원/3.3㎡ × 15.6평 × 30% × 100%<br>·(착공) 32,521백만원 = 2,657호 × 9.466백만원/3.3㎡ × 15.6~17.5평 × 30% × 25%<br>·(준공) 114,454백만원 = 8,307호 × 8.847백만원/3.3㎡ × 15.6~17.5평 × 30% × 30%<br>·(미착공 고려) △22,765백만원(착공 사업분의 70%)<br>·(전년도 미지급) 75,693백만원<br>**·(출자금 미집행액) △72,013백만원** |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2024년말 기준 LH에는 행복주택 출자금 미집행 잔액(상계대상 금액)이 1,432억 6,200만원이 남아있고 2025년 5월 기준 집행액이 0원인 상황에서, 추경안을 통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당초 계획대로 지급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조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LH 행복주택 출자 미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5년 예산 | 2025.5월 집행액 | 집행률(%) | 2024년말 상계대상(잔액) |
|---|---|---|---|---|
| 행복주택 출자 | 83,617 | 0 | 0 | 143,262 |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LH에 유보되어 있는 미집행 출자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신규 출자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